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V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V

결산분석시리즈 III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V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한솔 정성영 안승재 허아름 김민석
권인오 임길환 안태훈 손동희 예산분석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Ⅲ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V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II. 재정총괄 분석

36. 사회보장 급여 지급 기준 분석	3
3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사업 분석	44
37-1. 현 황	44
37-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2
37-3. 산재보험 프로그램	59
37-4.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71
38. 장애인 돌봄 사업 분석	90
3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177
40. 위탁선거경비 분석	237
41. 국가송무체계 분석	271
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분석	311
43.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석	351
44. 지역의료 지원사업 분석	377
44-1.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	378
44-2. 법정계획의 조속한 발표 및 주요 계획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383
44-3.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별 성과관리 강화 필요	387
44-4.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미지정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	392
44-5.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실행률 제고 및 기능 개선 필요	397
44-6.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필요	408
44-7. 공중보건적 충원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모색 필요	411
45.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	420



II. 재정총괄 분석

가. 현황

(1) 사회보장 제도의 현황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의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¹⁾이 규정하듯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적 빈곤 구제가 아니라, 위험의 예방, 위험 발생 시의 보호, 그리고 위험 이후의 회복과 자립 지원까지 포괄하는 국가의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평생사회안전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대상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을 다음의 표처럼 운영하고 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대상 및 소득수준별(기준중위소득) 주요 사회보장제도]

구분	대상	보편지원	32% 이하	40% 이하	50% 이하	63~65% 이하	75~8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20~250% 이하
생애 주기별	영유아 (0~5세)	초단기이용권(일시) 부모급여(0~23개월) 아동수당(0~8세) 어린이집·유치원	생계급여 가정보육(수급)	의료급여 (1·2종)	가정보육 (차상위)	-	아이돌봄 (가 75%) 가정보육 (다자녀80%)	아이돌봄 (나형)	-	아이돌봄 (다형)	아이돌봄 (라형)
	이동· 청소년 (6~15세)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함께돌봄센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특수교육비 지원	-	자유수강권 지역아동센터	-	-	-
	청년 (19~34세)	K-패스(청년 30%) 국민내일배움카드	-	-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청년내일저축 (60%)	-	청년내일저축 (초·중·고·대) 청년월세 (소득기부)	-	-	국정청년(20%) 학자금(250%)
	중장년 (35~64세)	평생교육비우체, 국민내일배움카드	-	-	-	평생교육(특화) 국민취업지원(60%)	-	국민취업지원III	-	-	-
	노인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가족돌봄휴가(70%) 노인맞춤돌봄 노인일자리	차매치로 관리비	-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수급)	-	장애수당 (차상위/수급)	장애수당 (차상위)	-	-	장애인연금	-	-
취약 계층	가족·여성	난임시술비 지원 생리용품(비우체)	-	-	생리용품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청년취업(65%)	-	다문화 교육비 한부모시설 입소	-	다문화 방문교육	-
기본 안전망	진·연령 공통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업급여, 육아휴직 근로장려금(별도)	희망저축 계좌기	-	주거급여 (48%) 희망저축계좌기	-	긴급복지 (75%)	재난지원금	-	-	-

자료: 국회예산처 작성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각 제도는 고유한 정책적 목적을 지니며, 재원 조달 방식과 급여 제공 원리에 따라 뚜렷한 작동 방식을 나타낸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사회적 위험 분산 장치이다. 재원은 주로 노사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며, '기여(Contribution)'를 전제로 작동한다. 이는 질병, 노령, 실업 등 특정 위험 발생 시 시장 경제의 1차적 소득 단절을 방어하는 사전적 예방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제도의 주요 급여는 현재의 빈곤 상태가 아닌, 법정 위험의 발생과 과거의 보험료 납부 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현금 위주의 소득 보장을 넘어 돌봄, 재활, 상담 등 비현금적 지원(In-kind)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 돌봄이나 노인 맞춤 돌봄 등 보편적 욕구 기반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구의 양육 공백이나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 등 '개인의 특정 욕구(Needs)와 돌봄 필요도'에 맞춰 작동한다는 점이며, 소득 수준은 제한 조건보다는 주로 본인부담금 산정의 척도로 활용된다.

반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최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후적이며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기여나 돌봄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앞선 두 제도와 달리,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철저하고 엄격한 자산조사(Means-test)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제도별 목적과 작동 원리가 이처럼 상이함에 따라, 각 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급여 지급기준' 역시 보험료 기여 이력, 소득 및 재산 수준, 인구학적 특성(연령, 장애 유무), 실제 돌봄 필요도(Care Needs)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고도의 다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다층성과 기준의 복잡성은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준 간의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 급여 지급기준은 단순한 행정적 세부 규정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권리 범위와 재분배 수준, 그리고 국가 책임의 실질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급여 지급

기준은 누가 보호받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동시에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충분성의 문제, 유사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얼마나 일관되게 다루는가라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접근성의 문제를 함께 내포한다.

(2) 급여 지급기준의 정책적 함의

제도적 다원성이 심화된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기준은 단순한 일선 행정 관청의 세부 지침이나 공무원의 재량적 도구가 아니다. 이는 국가 책임의 물리적 한계와 한정된 국가 자원 배분의 척도를 결정하는 거시적 핵심 기제이다.

① 권리의 범위와 국가 책임 (Targeting)

지급기준은 가장 먼저 '누구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표적화(Targeting)의 잣대다. 이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제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지급기준을 관대하게 설정하여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제도의 포괄성은 높아지고 행정 비용과 수급자의 심리적 낙인은 감소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반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선별주의적 접근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절박한 계층에 집중(Targeting Efficiency)할 수 있게 하나, 기준을 간발의 차이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양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배제하는 오류를 수반할 수 있다(노대명, 2016)¹⁾. 따라서 자산조사 소득 인정액 기준선, 연령 상한선, 장애 등급 등의 심사 기준은 이 두 이념적 극단 사이에서 국가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보호의 충분성 (Adequacy)

대상을 선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급여액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하는 충분성의 문제다. 지급기준 내에 내포된 급여 산정 공식은 실질적인 빈곤 완화(Poverty Reduction)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좌우한다.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제도는 명목상의 안전망으로 전락하여 수급자의 실질적 구매력 보전

1) 노대명(201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이나 기초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면, 급여 기준선이 최저 임금이나 노동시장의 평균 소득에 과도하게 근접할 경우,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보다 복지 급여에 안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이른바 '빈곤의 함정 (Poverty Trap)'이나 근로 의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박능후, 2003²⁾). 따라서 보충급여 방식에서 기준선의 상향 폭은 노동시장 참여 유인 구조와 최저생활 보장 사이에서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제도적 형평성 (Equity)

형평성은 유사한 필요(Needs)를 가진 집단을 일관되게 대우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다층적 복지 체계 내에서는 제도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제도 간 보호 수준의 역전이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석재은, 2011³).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 놓인 가구가 거주 지역이나 제도 진입 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은 더 큰 빈곤이나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뜻한다. 만약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환산율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사회서비스 자산 심사 기준이 충돌하여 혜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지급기준의 설계가 제도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수급의 접근성 (Accessibility)

법적으로 수급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보호 수준이 충분하더라도, 지급기준 자체가 내포한 심사 기준의 복잡성과 엄격성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는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까다로운 자산 증명 서류,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식, 그리고 단절된 가족 관계를 수급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정보 비대칭성에 취약한 빈곤층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제도 진입을 가로막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이정기·김윤영, 2016⁴). 이러한 행정적 허들은 결국 수급

2) 박능후(2003). 근로유인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3) 석재은(2011). 맞춤형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4) 이정기·김윤영(2016).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보건사회연구, 36(2), 280-310.

포기를 유도하여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임완섭, 2021⁵⁾). 수급의 접근성은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3)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기준 현황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부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역에서 지급기준 설정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은 극대화된다. 공공부조는 제도의 특성상 엄격한 자산조사(Means-test) 메커니즘을 본질로 하므로,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은 국가 복지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양대 축이자 통제 지표로 작동한다.

①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⁶⁾'을 도입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소득 수치인 중위소득을 국가 복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정하여 공표한 값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국가 빈곤 정책의 잣대였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한 것으로,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이 최소한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적 빈곤 해소'에서 국민 전반의 소득 수준과 연동하여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상대적 빈곤 대응'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중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운용하는 80여 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5) 임완섭(2019).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2025)]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이용권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8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9		행복주택 공급
2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1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2		농식품바우처
23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4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25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9		(기초생활) 생계급여
30		해산장제급여
31		긴급복지
32		장애수당(기초)
33		장애수당(차상위)
34		장애아동수당
35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6		(기초생활) 의료급여
37		장애인연금
38		재난적 의료비 지원
3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40		자활근로
4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2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43		발달재활서비스
44		언어발달지원

연번	부처	사업명
45		희망저축계좌(I, II), 청년내일저축계좌
46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9		치매 검진 지원
5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3		장애정도심사 검사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4		아동발달지원계좌
5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6		상병수당 시범사업
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8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0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2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64	성평등가 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 교육비)
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7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등 지원
6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69		위기청소년특별지원)
70		아이돌봄 서비스
7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2		온가족보듬사업
73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	
7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7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78		에너지바우처
79	산자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8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31.)

즉, 기준중위소득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시스템의 포괄 범위와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복지 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26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 원이다.

[기준중위소득 추이(2022-2026)]

(단위: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1인가구	1,944,812	2,077,892	2,228,445	2,392,013	2,564,238
2인가구	3,260,085	3,456,155	3,682,609	3,932,658	4,199,292
3인가구	4,194,701	4,434,816	4,714,657	5,025,353	5,359,036
4인가구	5,121,080	5,400,964	5,729,913	6,097,773	6,494,738
5인가구	6,024,515	6,330,688	6,695,735	7,108,192	7,556,719
6인가구	6,907,004	7,227,981	7,618,369	8,064,805	8,555,952

자료: e-나라지표

기준중위소득⁷⁾은 전년도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⁸⁾을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하지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추가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6년간(2021~2026) 한시 적용하며 이는 정책 지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20년 국민 소득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산출 통계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새롭게 파악된 국민의 실제 소득 중앙값이 기존에 정부가 기준으로 삼던 지표보다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 격차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소득을 바로 반영하여 복지 기준선을 일거에 대폭 상향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여 국가 재정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기본증가율에 추가증가율

7) 중위소득=전년도 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8) <기준 중위소득 現 산정방식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가율 : $\sqrt[3]{\frac{(n-3)\text{년 가급복 중위소득}}{(n-6)\text{년 가급복 중위소득}}} - 1$ ▪ 추가증가율 : $\sqrt[6]{\frac{(n-3)\text{년 가급복 중위소득}}{(n-3)\text{년 기준 중위소득}}} - 1$ <p>⇒ n년도 기준 중위소득 최종 증가율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 1</p>

을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소득 통계와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도출된 기준중위소득을 개별 가구에 적용할 때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출 규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주거비나 공과금과 같은 공동 생활비가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정확히 4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가구 내 소비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가구원수별 균등화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2020~2026년 가구균등화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구균등화지수 추이(2020~2026)]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	0.370	0.630	0.815	1	1.185	1.370
2021	0.375	0.633	0.817	1	1.181	1.359
2022	0.380	0.637	0.819	1	1.176	1.349
2023	0.385	0.640	0.821	1	1.172	1.338
2024	0.389	0.643	0.823	1	1.169	1.330
2025	0.392	0.645	0.824	1	1.166	1.323
2026	0.395	0.647	0.825	1	1.164	1.317

자료: 보건복지부

②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소득만으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가로 막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한정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가구가 보유한 객관적 재산가액에서 기초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재산액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실질적 부채를 공제한 뒤, 남은 순재산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가액}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채와 기본재산액의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적용되며, 산정 결과가 음수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하여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재산조사 대상 재산 및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재산조사 대상 재산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 재 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단위: %)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

보장가구의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의 편차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되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⁹⁾ 가액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9)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은 다른 일반재산(월 4.17%)이나 금융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단위: 만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	8,000	7,700	5,300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객관적인 재산가액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인정되는 공적 부채의 범위에는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및 농지연금 누적액, 법원 판결로 입증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엄격하게 차감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다주택 및 다수 상가 보유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임대보증금 부채를 단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환산 특례 조항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금융재산 조사 시 가구당 500만 원을 필수적인 생활준비금으로 간주하여 재산 산정에서 전액 제외하며, 근로무능력자라면 구성된 가구가 일정 재산 기준(서울 기준 1억 4,300만 원 등)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 자체를 면제하여 더욱 두터운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다.

(월 6.26%)과 달리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의 특성이나 차량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기준이 존재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유형	세부 기준
0%	-장애인 사용 자동차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4.17% (일반재산과 환산율 같음)	-2인 이상 다자녀 및 6인 이상 다인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오래되거나 저렴한 차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 치료 등
100%	-그 외 모든 자동차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나. 분석 의견

(1) 기준중위소득

첫째, 실제 가구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 기준선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의 통계적 적합성과 현실 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기준 통계원을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조사 방식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서,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기존 통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시적인 ‘추가증가율’을 산식에 반영해 왔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단순한 기본 증가율 외에 추가 인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가계소득 수준과 정책 기준 간 괴리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충분히 축소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행 산정체계에서는 산식상 도출된 기본 증가율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2023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도에서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산식상 기본 증가율은 2021년 4.62%, 2025년 6.29%, 2026년 9.19% 수준이었으나, 최종 결정된 기본 증가율은 각각 1.0%, 2.77%, 2.0% 수준에 머물렀다.

[기본증가율 연혁(2021-2026)]

(단위: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산식상 기본 증가율	4.62	4.31	3.57	4.34	6.29	9.19
결정된 기본 증가율	1.0	3.02	3.57	3.47	2.77	2.0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최근 들어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절대적 격차는 가구 규모 전반에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차이는 2021년 약 46.3만 원에서 2024년 약 65.1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인가구는 같은 기간 약 85.1만 원에서 약 161.7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6인가구의 경우에는 격차가 2021년 약 85.7만 원에서 2024년 약 198.6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소득의 증가 속도를 정책 기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반영률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된다. 실제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보면, 1인가구는 2021년 약 79.8%에서 2024년 약 77.8%로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6인가구는 같은 기간 88.6%에서 약 79.3%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다인가구일수록 실제 생활 수준과 정책 기준 간 괴리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교육비, 돌봄비용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중위소득 체계가 가구 규모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2021-2024)]

(단위: 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 중위 소득	비중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 중위 소득	비중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 중위 소득	비중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 중위 소득	비중
1인가구	229.1	182.8	79.8	252.6	194.5	77.0	280.0	207.8	74.2	293.9	228.8	77.8
2인가구	372.3	308.8	82.9	410.4	326.0	79.4	455.0	345.6	76.0	477.6	368.3	77.1
3인가구	473.7	398.4	84.1	522.3	419.5	80.3	579.1	443.5	76.6	607.8	471.5	77.6
4인가구	572.7	487.6	85.1	631.5	512.1	81.1	700.1	540.1	77.1	734.7	573.0	78.0
5인가구	663.9	575.7	86.7	732.0	602.5	82.3	811.5	633.1	78.0	851.7	669.6	78.6
6인가구	748.6	662.9	88.6	825.4	690.7	83.7	915.1	722.8	79.0	960.4	761.8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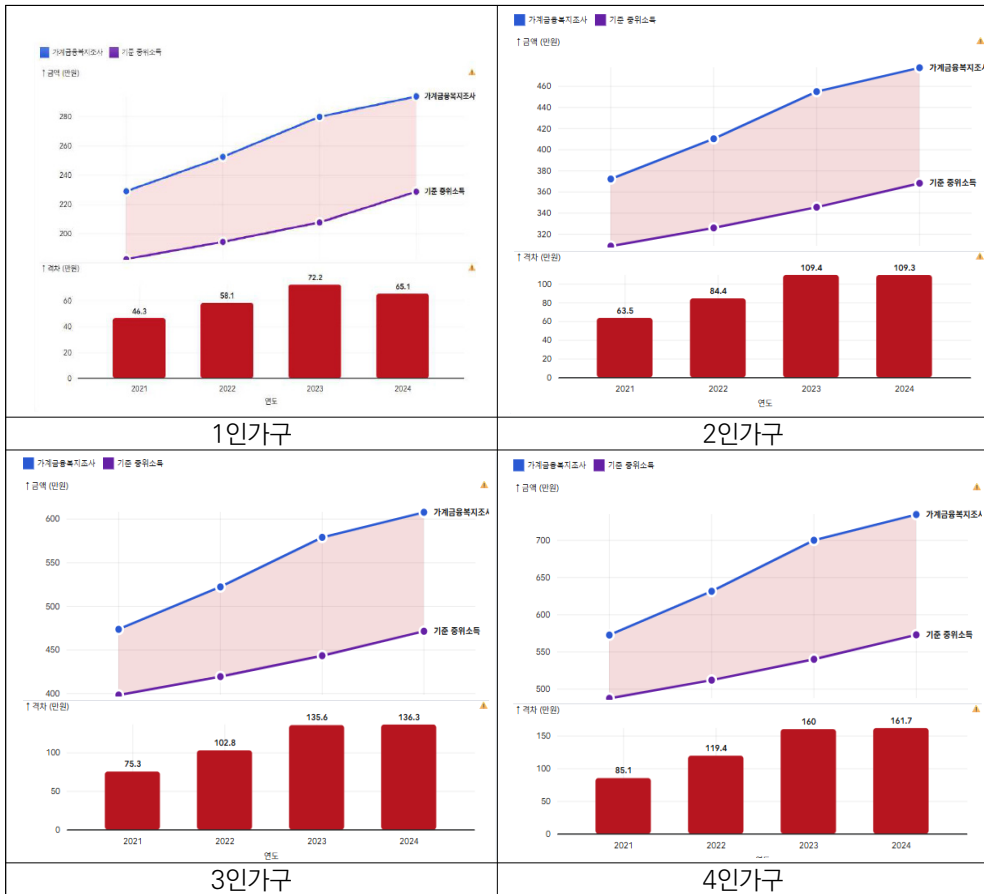
주: * 현재 공식 발표된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5.12월 발표된 '24년 자료

** 행정자료 보완데이터 기준, 경상소득 기준, 가구 균등화지수는 1인가구 1, 2인가구 1.625, 3인가구 2.068, 4인가구 2.500, 5인가구 2.898, 6인가구 3.268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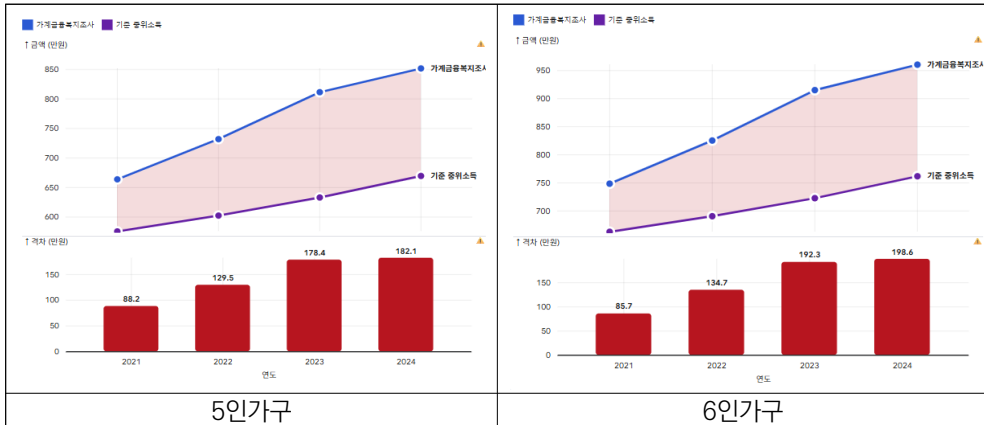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문제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약 7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 지표 간 괴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여유진 외, 2024¹⁰⁾). 이는 2020년 통계원 개편 당시 제시되었던 ‘실제 소득 수준과의 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비교(2021-2024)]



10) 여유진 외(2024).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모색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보건복지부

결국 최근 수년간 추가증가를 반영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국민의 소득 증가와 생활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사회 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 확대는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제도 밖으로 배제되거나, 제도 이용자의 체감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 제도¹¹⁾는 빈곤선과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실제 생활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기준을 산정하는 국가와 노동시장 소득 및 임금수준에 연계하여 기준을 운영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독일·일본·스웨덴·미국 등은 대표적인 지출 기반 국가로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비 수준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기준을 산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은 최저임금이나 사회 전체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소득 기반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단순한 빈곤 측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 공공부조를 사회적 최소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운영할 것인지, 혹은 사회 전체 생활수준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11)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다음의 보고서에서 인용함.
 김태완 외(2020).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공공부조 기준선 사례]

구분	독일	일본	스웨덴
명칭	사회부조는 네가지 형태 - 생계부조: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 수급자 사회법 2권 실업급여 II	-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 근거)	공공부조(Socialbidrag: Social Welfare Allowance)
주요원칙	보충성의 원칙 - 개별화 원칙 - 구체적 수요충족원칙	- 최저생활보장 원칙 - 차별 없는 평등 원칙 - 자립자조 원칙 - 보호보충성의 원칙(=본인노력우선)	최후의 안전망 역할로 공공부조는 최소화 (*Activarion Policy로 수급자는 구직활동, 노동시장 시책에 참여하거나 제공일자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음(단 급여제한 조건은 아님)
선정기준	최저생계비(1인당, 월기준)	최저생활비	소비자청에서 국가기준액(norm) 산정
산출방법	- 소득소비 표본조사(소비지출), 5년단위, 전국조사	- 근로자 소비지출 일정비율(68% 이내) (*연금소득자 역진문제로 조정: 후생노동성 생활보호 기준부회→2013년이후 조정	- 가계지출항목으로 산정한 합리적 생활비용에 근거
급여수준	2년에 한 번씩 '객관적 최저생계수준에 대한 보고서(Bericht über die Höhe des Existenzminimum)' - 사회문화적 최저생계수준	최저생활비를 토대로 개인별, 급지별, 가산액 등을 통해 조정	- 소득지원 기준은 강제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생활비용수준인 국가기준액(national standard)과 국가기준액 외 합리적 비용 - 소비자가격만 반영하여 국민소득 차이가 발생. 공공부조 급여는 기본적 생활욕구에 대한 지출만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산출방법	규정급여(Regelsatz), 주거비용(Kosten der Unterkunft), 난방비용(Heizkosten) 등 세 가지 근거로 수준 결정	최저생활비는 생활, 주택, 교육, 간호, 의료, 출산, 생업, 장애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	- 마켓바스켓 방식: 소비 목록은 총 190개의 식품 항목과 약 1,100여개의 기타 재화와 서비스 항목을 포괄
가구균등화지수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가구 필요비용 추가	개인(연령)과 가구(가구원수, 지역별)	개인과 가구 (국가기준액은 가구구성원의 개인비용과 가구공동비용의 합)

구분	미국	호주	네덜란드
명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은퇴: 노령연금 - 실업: 새출발수당 - 빈곤: 대상별 수당(장애연금, 미망인연금, 청년수당, 한부모 양육수당 등) - 건강: 메디케어(국가공공의료체계)	사회부조(근로사회부조법, Wet Work en Bijstand, 2004 → 참여법, Participatiewet, 2015)
주요원칙	보충성의 원칙 - 개별화 원칙 -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강조	사회보험방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보장 - 강한 대상 표적성, 범주적 성격 -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메디케어는 목적세로 저소득층 면제)	보충성의 원칙(가구소득과 사회적 최저기준 간 차이를 보충)
선정기준	SSI 선정기준 = 연방급여기준(Federal Benefit Rate, FBR) TANF, 현물성 급여 선정기준 = 빈곤지침선(PG)	범주형 공공부조 주를 이루어 연령 등 대상에 따라 수급권 결정 - 각 제도별 기준상이(선정기준 액이 제시됨) - 각 공공부조에 빈곤선을 활용하지 않음. 다만, 빈곤기준으로 헨더슨 빈곤선을 사용 - 헨더슨 빈곤선: 가처분소득 사용	법정최저임금에 연동
산출방법	연방급여기준(FBR) = 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 - 빈곤지침선(PGt) = 빈곤기준선(PTt-2) × (1+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t,t-1)) · 빈곤기준선(PT) = 최저식료품비(Subsistence food budget) × 3	각각 제도별 선정기준 액이 제시됨, 산출근거 없음 - 노령연금의 경우 남성노동자 주급 임금 평균액과 연금수급자 생활비 지표 등이 활용됨	전년도 임금상승률로 조정(4년에 한 번 특별조정, 법적의무)
급여수준	선정기준과 동일	각각 제도별 선정기준 액이 제시됨, 산출근거 없음	법정최저임금에 연동하여 급여 제공 - 독신자 최저임금 50%, 한부모 최저임금 70%, 부부-동거 가구는 최저임금 100% - 가구의 성인수에 의해 결정. 아동수와 연령은 무관 - 급여액 = 수급자의 소득과 기준금액간의 차이로 지급

구분	미국	호주	네덜란드
산출방법	선정기준 산출방법과 동일	가구형태(독신, 부부 등), 자산(소득+재산), 질병,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최저임금은 매년 두 번 조정됨에 따라 사회부조 급여도 매년 두번조정(1월, 7월)됨
가구균등화지수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추가 - 1인과 2인 가구는 65세를 기준으로 세분화 - 2인 가구부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수를 고려	각 공공부조에 빈곤선을 활용하지 않음 - 빈곤선에 활용하는 가구균등화 지수는 가구 구성형태, 가구의 근로유무, 주거비 필요성으로 산출	개인

자료: 김태완 외(2020).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부 발췌

독일은 전국 단위의 소득·소비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최저생활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규정급여(Regelsatz)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5년 단위의 정기적인 조사와 물가·연금 수준 등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급여의 현실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생계수준 보고서를 통해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근로자 소비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최저생활비를 산정하면서 연령, 가구원 수, 지역 급지 외에도 임신부·장애인·한부모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소비자청이 식료품, 의류, 통신, 여가 등 세부 품목별 소비비용을 조사하여 국가기준액(norm)을 설정하고 있으며, 실제 물가 수준과 소비구조를 직접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 역시 전통적으로 최저식료품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거비·의료비 등을 포함한 보완적 빈곤지표(SPM)를 함께 활용하면서 현실 생활비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공공부조 기준을 법정 최저임금과 직접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변동에 맞추어 연 2회 사회부조 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노동시장 변화와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이다. 호주는 단일한 국가 빈곤선보다는 노령연금, 실업급여, 한부모수당 등 대상별 범주형 공공부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적인 정책 판단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기반의 핸더슨 빈곤선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기반 국가들은 공공부조를 사회 전체 임금 및 소득 수준과 연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변화가 복지 기준에도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가구’ 자체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스웨덴·일본 등은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형태, 장애 여부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여기에 주거비 등 가구 공통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 둘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최저임금 등 현실 경제지표를 급여 기준과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 기준이 실제 생활수준 변화와 괴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셋째, 정기적인 조사와 통계 점검을 통해 빈곤선과 급여 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부조를 단순한 행정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최소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준중위소득 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공공부조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절대적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현행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외처럼 개인별 생활 특성과 공통비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보다는 가구원 수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의 주거비·공과금 등 고정비용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이 통계자료와 최근 소득 증가율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방식 변화에 따라 중위소득 추정치가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실제 생활수준이나 체감 물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아울러 네덜란드와 같이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하거나 미국·스웨덴처럼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는 구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중위소득은 경제지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생활보장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임금상승률 등 현실 경제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기준선의 현실 적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통계 기반 안정화와 단계적 제도 조정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해외 주요국 사례는 공공부조 기준이 단순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비와 사회 전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역시 기준중위소득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산정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단순히 산식 구조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구조적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구 규모별 생활비 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실제 소비지출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정책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복지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국가 재정 부담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 범정부적으로 운영되는 약 80여 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변동은 단순한 통계적 조정 차원을 넘어 복지제도의 수급 범위와 재정 규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될 경우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 대상자도 확대되기 때문에, 복지 지출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¹²⁾.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재정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수반되는 대표적인 의무지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재정 증가분은 경기 상황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으로 탄력 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즉 기준중위소득의 조정은 단년도 정책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 구조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누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2) 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나 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는 사업도 존재하고 대상자가 증가하지만 사업여건 상 예산이 한정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조기소진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복지재정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개 관련 부처의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예산 규모는 2024년 31조 6,872억원, 2025년 33조 2,071억원, 2026년 34조 9,9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의 예산증가율 증가율은 2025년 4.8%로 관련부처 예산증가율을 3.0%를 넘어 서고 있으며 2026년에는 5.4%로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예산추이(2024-2026)]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	2025	2026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03,391	1,010,865	1,092,963
2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55	8,910	9,957
3		장애인취업	24,701	26,452	27,480
4		중증장애인근로자출·퇴근 비용지원	8,027	8,039	8,518
5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45,492	34,788	25,055
6		생활안정자금(용자)	118,462	106,342	98,407
7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14,299	20,859	14,345
8	교육부	교육급여	160,399	165,171	171,058
9		국가장학금 지원	4,097,498	4,270,999	4,366,988
10		국비유학생선발파견	5,490	6,545	7,015
11		한국장학재단 출연(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18,863	37,870	내역
1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7,497	7,497	7,497
13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26,219	28,561	28,557	
14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77,568	80,512	80,512
15		생계지원금	11,958	4,242	39,622
16		생활지원금	91,878	91,878	92,981
17	국토부	주거급여지원	2,742,436	2,744,991	2,686,289
18		청년월세 지원	79,351	79,863	68,390
19	농림부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3,466	3,466	3,466
20		농식품 바우처	14,800	38,100	73,991
21		축산물수급관리(학교우유급식)	46,508	39,353	35,200
22	산림청	숲가꾸기	15,018	15,193	17,874
23		산림재해일자리	107,050	108,707	111,619
24		산림복지일자리	4,861	4,755	4,82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	2025	2026
2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7,900	8,400	8,700
26	문체부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239,662	263,581	291,492
2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66,000	60,000	55,000
2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창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3,600	7,200
2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8,000	18,000	28,000
30		법률구조	64,817	67,337	66,602
31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치료명령심리치료비)	205	205	206
32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주1)	138,288	167,232	172,236
3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28,589	25,624	27,173
34		자활사업(자활근로)	659,462	719,545	738,846
35		장애인의료비지원	35,868	35,868	57,357
36		의료급여	8,937,713	8,822,328	10,122,834
37		국가암관리사업 (균등한 암관리 기반구축) 인환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	70	70	70
38		생계급여	7,541,072	8,489,981	9,172,676
39		해산장제급여	42,613	46,645	51,853
40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발달지원)	651	651	669
41		차상위계층 지원 (본인부담차액지원)	450,219	448,610	439,488
42		차상위계층지원 (보험료지원)	37,981	30,505	37,447
43		차상위계층지원 (미지급금 정산)	-	-	31,300
4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500	500	1,373
45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26,733	121,043	155,255
46	장애인보보기기지원 (장애인교부사업)	1,847	1,847	2,025	
47	장애인자립 자금 이차	192	156	118	

(단위: 백만원)

연 번	부 처	사업명	2024	2025	2026
		및 손실 보전금			
48		장애수당(기초)	150,633	156,715	156,733
49		장애수당(차상위 등)	49,715	51,805	52,843
50		장애아동수당	18,803	20,133	20,437
51		장애인연금	893,157	884,658	907,129
52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검진지원))	167,047	150,577	156,665
53		긴급복지	358,494	373,007	418,329
5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7,494	189,022	196,551
5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5,798	24,997	25,642
56		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산출불가	산출불가	산출
5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사업비)	13,921	3,162	4,524
5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6,984	14,639	10,464
59		저소득층 기저구조재분유 지원	44,272	43,453	51,446
60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4,887	64,551	75,422
61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지원	588	705	834
6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 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69,966	243,257	253,210
63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정신 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2,416	2,759	2,917
64		노인건강관리(노인실명예방 관리 수술비지원(노안개안수술))	2,054	2,062	2,811
65		노안건강관리(노안무릎수술비지원)	4,082	4,086	4,092
66		회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2,750	26,673	17,412
67	질 병 청	국가결핵예방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170	170	170
68		국가결핵예방 (결핵 안심 벨트지원)	1,650	1,650	1,650
69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485	485	485
70	여 가 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35,552	552,790	572,203
7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852	2,582	2,185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2024	2025	2026
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250	1,590	1,455
73		양육비 선지급제	-	16,200	32,400
74		아이돌봄 지원	467,866	475,028	597,779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_가족센터운영_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_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사업	16,823	15,626	14,301
7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_ 방문교 육서비스	13,034	13,271	13,194
7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6,425	16,575
7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287	4,287	4,287
79	통일부	의료지원	1,266	1,833	1,843
80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368,211	347,015	124,185
81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1,255	1,559	1,906
82		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	-	400,000	-
83	산자부	연탄쿠폰	23,478	19,824	23,140
84	환경부	LED 보급지원	13,653	10,837	8,823
85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108,333	108,333	106,788
86		에너지바우처	685,606	685,606	569,231
계			31,687,228	33,207,058	34,990,585

주: 동일사업도 회계에 따라 구분되어 사업개수가 기준중위활용사업 목록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 재구성함

사업 대상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사업 지원 대상자는 14,812,981명으로 2024년 12,887,075명보다 1,925,906명(14.9%) 증가하였고 지원 가구 역시 2025년은 4,673,597가구로 2024년보다 396,361가구(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대표 사업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9조 1,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0조 1,228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기준중위소득 적용 사업 지원 대상자 추이]

(단위: 명, 가구, 권)

연 번	부 처	사업명	2024	2025	2026
1	고 용 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315,225	308,615	380,000
2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2,540	2,735	3,000
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3,272	3,530	3,738
4		중증장애인근로자출·퇴근비 용지원	8,730	8,855	9,095
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용자)	4,535	4,312	4,680
6		생활안정자금(용자)	20,306	15,780	15,780
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	757	20,000
8	교 육 부	교육급여	315,463	315,788	275,287 (*'26.6.4.기준)
9		국가장학금 지원	1,014,200	1,186,030	1,200,000
10		국비유학생선발·파견	7	9	선발 진행 중
11		한국장학재단 출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414,440	449,481	619,721
1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855	857	850
13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66,075	65,106	64,442	
14	보 훈 부	생활조정수당	21,099	26,394	27,982
15		생계지원금	6,863	8,629	10,424
16		생활지원금	21,734	22,556	22,827
17	국 토 부	주거급여지원	148.3만 가구	161.6만 가구	170만 가구
18		청년월세 지원	8.4만 가구	4.3만 가구	6만 가구
19	농 림 부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581가구	581가구	581가구
20		농식품 바우처	96,000	76,000	161,000
21		축산물수급관리(학교우유급식)	467,365	427,016	492,000
22	산 림 청	숲가꾸기	566	482	524
23		산림재해일자리	5,718	5,493	4,000
24		산림복지 일자리	195	183	134
2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5,000	70,000	75,000
26	문 체 부	문화예술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	2,580,000	2,640,000	2,700,000
2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예 술활동준비금 지원)	19,995	19,995	18,333
2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2,905	5,905

(단위: 명, 가구, 권)

연 번	부 처	사업명	2024	2025	2026
2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15	114	266
30	법 무 부	법률구조	117,182	130,638	132,516(예상)
31		보호관찰활동 (치료명령심리치료비)	408	462	500
32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주1)	103,523	117,182	110,000
3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68,214	83,443	57,736(531 기준) * 연말 누적 약 11만명 예상
34		자활사업(자활근로)	69,000	72,000	72,000
35		장애인의료비지원	94,642	91,857	92,629
36		의료급여	1,544,591	1,595,452	1,657,251
37		국가암관리사업(균등한암관 리기반 구축)-암환자의료비 지원정보 시스템 운영주2)	1,123	1,111	1,079
38		생계급여	1,268,179가구 1,693,703명	1,392,291가구 1,850,688명	1,337,730가구 1,801,852명
39		해산장제급여	해산 2,188명 장제 72,066구	해산 2,579명 장제 77,200구	해산 2,414명 장제 75,624구
40	복 지 부	장애아동가족지원(언어발달지원)	365	328	450
41		차상위 계층 지원 (본인부담차액지원)			
42		차상위 계층 지원 (보험료 지원)	239,488	306,910	303,724 ('26.3월 기준)
43		차상위 계층 지원 (미지급금 정산)			
4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자살 고위험군 발굴 ·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 비 지원)	2,447	4,305	기준 중위소득 적용 폐지
45		아동발달지원계좌(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59,653	225,050	250,268
46		장애인보조기기지원(장애인 교부사업)	4,209	4,436	5,120
47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 실 보전금	38	34	40

(단위: 명, 가구, 건)

연 번	부 처	사업명	2024	2025	2026
48		장애수당(기초)	311,207	326,881	337,118
49		장애수당(차상위 등)	107,383	101,922	99,795
50		장애아동수당	17,346	18,524	18,605
51		장애인연금	218,283	220,019	220,886
52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치 매검진지원))	39,611	41,420	42,000
53		긴급복지	151,897	161,218	168,956
5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3,061	255,730	209,459
5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587	6,910	5,428
56		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58,021	54,364	산출불가
5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사업비)	8,792건	3,166건	3,650건 (예산상 지급건수)
5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50,735건	61,061건	산출 불가
5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상동)	101,621	92,998	131,310
60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630	5,926	6,254
61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 및 검사비 지원	28,956	32,942	41,410
6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 급지원(자산형성지원(희망저 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50,912	39,125	32,800
63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7,489	6,952	8,500
64		노인건강관리(노인실명예방 관리_수술비지원(노인개안 수술))	8,327	8,250	8,360(목표)
65		노인건강관리(노인무릎수술 비지원)	3,235	3,274	3,429(목표)
6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952	20,264	21,054*
67	질 병 청	국가결핵예방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7건**	10건**	8건**
68		국가결핵예방 (결핵 안심 벨트지원)	1,332	1,009	855

(단위: 명, 가구, 권)

연번	부처	사업명	2024	2025	2026
69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431	405	388
70	여가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240,421	248,967	251,943
7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1,412	1,162	1,099
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760	533	503
73		양육비 선지급제	-	7,880	11,475
74		아이돌봄 지원	118,126가구	159,804가구	126,000가구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_가족센터운영_다문화가족 자녀지원_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사업	4.6만여명	5.2만여명	(예상) 4.7만여명
7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_방문교 육서비스	10,748	9,817	(예상) 1만여명
7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33,358	234,015	239,106	
7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714	3,732	3,800	
79	통일부	의료지원	976	1,348	1,760
80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1,338,056	2,047,302	540,000
81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3,096	11,083	16,040 (2026.5. 누계 실적 6,684)
82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600,000	748,000
83	산자부	연탄쿠폰	41,562	39,476	39,476
84	환경부	LED 보급지원	(가구) 10,412 (시설) 2,083	(가구) 7,710 (시설) 1,424	(가구) 7,374 (시설) 1,420
85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가구) 55,011 (시설) 804	(가구) 54,665 (시설) 855	(가구) 56,000 (시설) 750
86		에너지바우처	(가구) 1,257,927	(가구) 1,399,546	(가구) 1,440,000e
계			12,887,075명 4,277,236가구	14,812,981명 4,673,597가구	

주: 계는 인원 기준(시설, 권 제외)

동일사업도 회계에 따라 구분되어 사업개수가 기준중위활용사업 목록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주요 급여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2025	2026	증감	증감률
생계급여	84,900	91,727	6,827	8.0
의료급여	88,223	101,228	13,005	14.7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5년 약 9.5%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약 50,862명(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증가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수 추이]

(단위: 가구, 명)

구분		2023	2024	2025
일반수급자	가구수	1,200,418	1,268,179	1,392,291
	수급자수	1,523,735	1,602,953	1,754,775
시설수급자		96,019	99,707	104,471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계	1,524,097	1,544,590	1,595,452
기초1종	1,088,831	1,117,893	1,164,345
기초2종	353,015	347,744	352,693
타법	82,251	78,953	78,414

주: 1. 연평균 수급자 수

2.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기초 1종 수급자와 기초 2종 수급자로 구분되며, '타법'이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현상은 기준중위소득 조정이 단순히 개별 급여 수준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 구조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

는 핵심 정책 변수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 증가 속도가 국가 경제의 성장 흐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개편된 이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누적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경제의 총량적 성장 수준과 조세 기반 확대 정도를 나타내는 명목 GDP 증가율은 누적 24.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복지지출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의 상승 속도가 국가의 세입 기반 확대 속도를 일정 부분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및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

(단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4인 가구 기준, A)	2.94	2.68	5.02	5.47	6.09	6.42	6.51	
기본 증가율	산식상 기본증가율	-	4.62	4.32	3.57	4.34	6.29	9.19
		결정된 기본증가율	-	1.0	3.02	3.57	3.47	2.77
	추가증가율	-	1.66	1.94	1.83	2.53	3.55	4.42
명목GDP 증가율(B)	0.88	7.94	4.58	3.65	6.15	4.16	-	
차이 (A-B)	2.06	△5.26	0.44	1.82	△0.06	2.26	-	

자료: 지표누리, KOSIS 국가통계포털

물론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 수준 보장과 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최근 추가 증가율 반영,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확대, 생계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광범위한 복지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선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증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 보장성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 기준중위소득 결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적 필요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거시경제 및 재정 측면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능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 분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기준중위소득이 국가 재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단순한 소득 증가율 반영을 넘어 경제 성장률, 세입 여건, 물가 수준, 국가채무 증가 추이, 중장기 재정 전망 등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정 ○ ○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이 ○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 ○ ○	교육부 차관
		임 ○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 ○ ○	행정안전부 차관
		권 ○ ○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 ○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신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박 ○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 ○ ○	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
	공익	송 ○ ○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김 ○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 ○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김 ○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31.)

결과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복지 통계 지표가 아니라 복지 보장성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 기준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회적 보호 기능 강화와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산정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종 사회서비스 및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로서, 사실상 국가 복지체계 전반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의 변동은 수급 대상 규모와 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복지 재정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종 확정 수치 중심으로만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실제 산정 과정과 결정 논리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기준중위소득은 통상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산식에 적용되는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반영 데이터, 정책적 조정 요인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소득 증가율,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어떠한 비중과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결과인지, 또는 정책적·재정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결과인지에 대해 외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고령가구 확대, 다인가구 감소 등 인구·가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수별 균등화지수 조정 과정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값(1.0)으로 설정하고, 1인 가구 0.4, 2인 가구 0.66, 6인 가구 1.307 등의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수가 실제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변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규모 가구 중심으로 지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인가구의 상대적 생활비 증가 부담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도별 미세 조정의 배경과 정책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 공개와 외부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 우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통계자료, 변수별 반영 비율, 증가율 산출 방식, 가구균등화지수 조정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까지 설명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이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이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이 단순한 행정적 지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적 빈곤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가구균등화지수

최근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구원 수 중심의 획일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향후에는 연령·장애·가구유형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다차원적·개인화된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차이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여 기준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현행 제도는 4인 가구를 기준가구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가구균등화지수는 실제 생활비 수준에 비해 1~2인 가구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에너지비용 상승 등 가구구조 및 소비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균등화지수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태완 외, 2020¹³). 이에 정부는 2020년 이후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통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1인 가구 지수는 2020년 0.370에서 2026년 0.395로, 2인 가구 지수는 0.630에서 0.647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소규모 가구의 상대적 생활비 부담을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13) 김태완 외(2020).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연구. 보건사회연구원.

[가구균등화지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	0.370	0.630	0.815	1	1.185	1.370
2021	0.375	0.633	0.817	1	1.181	1.359
2022	0.380	0.637	0.819	1	1.176	1.349
2023	0.385	0.640	0.821	1	1.172	1.338
2024	0.389	0.643	0.823	1	1.169	1.330
2025	0.392	0.645	0.824	1	1.166	1.323
2026	0.395	0.647	0.825	1	1.164	1.317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구균등화지수는 여전히 가구원 수를 중심으로 설계된 단일 지표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수정, 2024¹⁴). 현재의 지수체계는 가구 규모에 따른 평균적인 소비 차이만을 반영할 뿐, 가구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가구 형태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생애주기가 다른 개인의 경우 필요의 수준이 다르고, 동일한 2인 가구라 하더라도 노인부부가구, 청년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소비구조와 필수 지출 항목이 현저히 다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는 보육·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가구는 교육·훈련 및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지출 수요가 크다. 반면 노인가구는 의료비와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현행 균등화지수는 이러한 생애주기별·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가구 규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의 생애주기별 욕구, 가구특성에 따른 욕구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체계는 가구 내 자원이 구성원 간에 효율적으로 공유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령, 성별,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필요 수준과 자원 접근성이 상이하 며, 가구 내 자원 배분 또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내부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구 규모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14) 김수정(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 개인화의 쟁점. 한국가족복지학, 71(1).

생계급여 체계는 가구 유형과 아동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급여 수준을 산정하고 있으며, 식료품·의류·교육·여가 등 주요 소비 항목별 필요 비용을 반영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구 규모만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따른 실제 욕구를 급여 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규모에 따른 조정 기능을 유지하되, 가구 구성원의 특성과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연령, 장애 여부, 가구 형태,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가중치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추가적인 생활비와 돌봄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균등화지수 외 별도의 가산급여 또는 추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구 단위 중심의 급여 산정체계를 보완하여 개인 단위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가구 내 개별 구성원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표준 소비모형을 활용하여 급여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은 단순히 가구원 수에 따른 산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가구구조와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이다.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 상향 조정은 이러한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에는 가구 규모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구 구성원의 특성과 생애주기적 욕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재산의 소득환산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자동차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조희된 차량가액 전체를 반영하는 등 재산의 유동성과 생활필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빈곤가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액·환산율·자동차 기준을 조정하여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수급권자의 실제 생활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기초하여 국가 지원 이전에 개인과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에 서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된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반면, 자동차는 일부 예외¹⁵⁾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주: 수급(권)자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15) 자동차 가액의 평가 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유형	세부 기준
0%	-장애인 사용 자동차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4.17% (일반재산과 환산율 같음)	-2인 이상 다자녀 및 6인 이상 다인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오래되거나 저렴한 차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 치료 등
100%	-그 외 모든 자동차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성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본재산액 공제, 장애인 차량 특례, 생업용 자동차 예외, 저가·노후 차량 완화 기준 등을 통해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장치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자녀 자동차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산의 유동성과 생활 필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가장 엄격하고 논란이 큰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반드시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현금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을 단기간 내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후주택, 농지, 임야, 공동소유 재산, 생업에 필요한 차량 등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주거용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현금소득은 매우 부족한 이른바 ‘자산빈곤’ 상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현행 재산환산 구조는 재산의 명목가치를 중심으로 생활능력을 평가하고 있어 실제 빈곤 상태에 있음에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성 재산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이중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산 처분을 강하게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 기준은 현행 재산환산제의 문제점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첫째, 자동차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차량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본재산액 공제나 부채 차감도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이 100% 환산 대상이면 월 소득환산액 역시 7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자동차가 실제로 매월 현금소득을 창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고소득 자산처럼 평가되는 구조이다. 동일한 금액의 일반재산이 월 2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한 사치재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와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필수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2008년에 이미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전체 가구수를 넘어섰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의하면 2025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6,514,873대로 국민 2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생존과 직결되는 이동수단이며, 장애인·고령자·질병 가구에겐 의료접근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방문요양 종사자, 배달·운송 노동자, 야간·교대근무자, 건설·일용직 노동자 등 이동 기반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동차는 근로활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적 자산의 성격도 가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자동차 보유 자체를 높은 경제능력의 지표로 간주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자동차 처분과 수급 유지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취업 기회 축소, 병원 이용 제한, 자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장기적으로 빈곤 탈출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둘째, 현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과 차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 자동차 시장 변화와 노동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기준은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중 하나인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기준 역시 최근 중고차 가격 상승과 자동차 가격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노후화되거나 안전성이 낮은 차량만 허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유지비와 안전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¹⁶⁾.

셋째,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¹⁷⁾ 역시 변화한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재산 산정 제외 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사업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플랫폼 노동, 방문서비스, 간헐적 일용노동 등 비정형 노동은 자동차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소득활동 입증과 운행 목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업용 인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사례라도 지자체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16)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령 기준을 통해 규정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행 재산환산제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재산을 산출할 때, 공제해주는 부채의 최대 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산 유형별 환산율, 기본재산액, 자동차 예외기준, 부채 인정 범위, 공동명의 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 국민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담당자별 해석 차이로 민원과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복잡성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크다.

향후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산의 실제 생활 기능과 유동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기준은 현재의 일률적인 월 100% 환산 구조에서 벗어나 차량가액, 용도, 가구 특성, 거주지역의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가·노후 차량, 생업·구직용 차량, 농어촌 필수 차량, 장애·질병 관련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세부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	경형·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이상	9년
		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	경형·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 사업용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경형·소형·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대형	8년
		경형·소형·중형	6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대형	10년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그 밖의 사업용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17) 생업용 자동차: 소득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가구별 1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확대나 별도 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고가·사치성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동차 평가체계 역시 배기량 중심 기준에서 실제 차량가액과 사용 목적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차량가액 기준 역시 물가와 중고차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업용 자동차 인정 범위도 플랫폼 노동, 방문노동, 이동노동 등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탄력적 증빙 인정과 사례 중심 판단체계 강화도 요구된다. 또한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 필요성을 고려한 지역 특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과 보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행 제도는 재산의 실제 유동성과 생활 필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빈곤층의 수급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율은 0.68%p 상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존재한다(이원진 외, 2024¹⁸). 자동차 기준은 빈곤층의 이동권, 노동시장 접근성, 의료 접근성, 사회참여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재산 보유 여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당 재산이 수급권자의 생존과 자립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18) 이원진, 노대명, 하은솔(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37-1. 현 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사업 개요

현재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수립 및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할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사업은 동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¹⁾. 산재기금은 산재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동 기금은 산재보험 급여 지급, 산재예방사업, 행정지원 및 기금운영비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산재기금의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3조 3,102억원(21.2%) 증가한 18조 9,025억 1,500만원으로 2023년 14조 9,677억 7,900만원, 2024년 15조 5,923억 1,500만원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내부지출과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 규모도 9조 6,082억 3,800만원으로 2023년 8조 6,484억 8,800만원, 2024년 9조 1,305억 6,600만원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²⁾.

정한솔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다만 산재기금 사업 외에도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사업으로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39억 3,000만원), 진폐위로금(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16억 6,900만원)가 있다.

2) 정부는 2025.7.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범정부 회의'를 구성하여 일터 혁신 과제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구축을 제시하고,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며,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와 산재보상체계 강화를 약속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규모 확대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은 산재기금 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10.5% 증가한 20조 9,000억원 규모이다.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항목별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주요사업비	9,075,333 (60.6)	9,566,770 (61.4)	10,066,162 (53.3)	10,471,957 (50.1)	4.89
정부내부지출	1,550,090 (10.4)	3,300,000 (21.2)	4,850,000 (25.7)	5,050,000 (24.2)	48.24
여유자금운용	4,342,356 (29.0)	2,725,545 (17.4)	3,986,353 (21.0)	5,378,216 (25.7)	7.39
계	14,967,779	15,592,315	18,902,515	20,900,173	11.77

주. 2023~2025년도는 결산 기준, 2026년도는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나. 산업안전 관련 조직 현황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감독 업무에 관한 전반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통해 수행하였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커짐을 감안해 2021.7. 본부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2025.10. 동 조직을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보건보상정책관)과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구성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수립한 정책에 맞추어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납부 관리 및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와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에도 산재 피해자의 치료·재활을 돕기 위한 산재병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사업, 산재예방시설 건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크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를 평가·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과 사회 곳곳에서 안전 교육, 안전 시설 점검, 안전 규정 준수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1986년 안전보건관리 대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역할 및 기능(기준: '26. 3.)]

정 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지방관서 48개소)	885명 (근로감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제도개선 ❖ 법규 이행 지도감독 및 재해조사
	출연 위탁	↓ ↑ 정책 지원	+	+
공 공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31개소)	2,09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역량 향상 지원 ❖ 고위험 집중관리, 법·제도·정책 현장이행 ❖ 안전문화 확산 및 민간시장 육성·관리
	위탁 평가	↓ ↑ 사업 참여	+	+
민 간	민간재해 예방기관 (지정·등록 2,181기관)	13,400여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단)의 위임·위탁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 대행 및 교육, 컨설팅 등

자료: 고용노동부

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유형

(1) 총괄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법적 정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통계적으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는 넘어짐, 부딪힘, 교통사고 등의 유형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전반을 의미한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요인 등의 작용으로 업무상 사고에 비해 보상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나, 업무 수행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 재해자수와 신체장해자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122,713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 재해자 수는 147,13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장해자수는 2021년 41,772명에서 2025년 54,612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유형별 재해자수(출퇴근 재해 제외)]

(단위: 명)

구분	재해자수			신체장해자수			사망자수		
	사고	질병	합계	사고	질병	합계	사고	질병	합계
2021	102,278	20,435	122,713	31,731	10,041	41,772	828	1,252	2,080
2022	107,214	23,134	130,348	31,660	12,580	44,240	874	1,349	2,223
2023	113,465	23,331	136,796	32,978	13,529	46,507	812	1,204	2,016
2024	115,773	26,998	142,771	35,652	16,577	52,229	827	1,271	2,098
2025	113,305	33,825	147,130	33,800	20,812	54,612	872	1,376	2,248

자료: 고용노동부

(2)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조제1호3)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발생,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사고 발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확인해보면 넘어짐과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넘어짐의 증가율이 다른 사고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업무상 사고 유형별 재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갈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화재 폭발 파열	무리한 동작	교통 사고	기타
2016	82,780	14,679	15,948	2,296	7,020	7,246	416	13,260	8,541	566	2,941	3,971	5,896
2017	80,665	14,308	16,420	2,153	6,720	6,677	379	12,614	8,752	439	2,652	3,792	5,759
2018	90,832	15,558	19,077	2,171	7,315	7,237	483	13,196	9,905	569	3,834	4,724	6,763
2019	94,047	15,103	20,101	2,235	7,828	7,358	610	13,007	10,734	490	4,548	4,917	7,116
2020	92,383	14,406	20,659	2,201	7,503	7,248	535	12,894	10,374	549	4,343	5,533	6,138
2021	102,278	14,775	23,957	2,436	8,219	8,360	510	13,668	11,085	471	5,651	6,883	6,263
2022	107,214	14,387	25,084	2,801	9,283	8,252	466	13,368	10,514	505	7,187	7,951	7,416
2023	113,465	14,357	28,228	3,299	10,218	8,264	597	13,173	10,328	479	7,368	8,020	9,134
2024	115,773	14,655	28,244	3,309	11,220	7,876	538	12,941	10,611	618	8,073	8,315	9,373
2025	113,305	13,277	28,606	2,581	10,051	7,390	409	12,240	11,418	705	8,107	9,009	9,512
연평균 증가율	3.3	-0.6	6.2	1.1	4.2	0.3	-1.5	-1.0	2.7	1.8	10.1	7.6	5.4

주. 기타는 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의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채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등임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조제2호4)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 발생,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6%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질환 및 난청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을뿐만 아니라 타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 질병 대비 그 증가 추세도 빠르다.

[연도별 업무상 질병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기타	소계	근골격계질환				기타
							신체부담작업	요통	사고성요통	기타	
2016	7,876	2,234	1,418	472	344	5,642	2,098	575	2,162	112	695
2017	9,183	3,054	1,553	1,051	450	6,129	2,436	891	1,747	121	934
2018	11,473	3,368	1,451	1,414	503	8,105	3,322	1,210	2,071	112	1,390
2019	15,195	4,035	1,467	1,986	582	11,160	4,988	1,914	2,362	176	1,720
2020	15,996	4,784	1,288	2,711	785	11,212	5,252	1,712	2,465	172	1,611
2021	20,435	6,857	1,506	4,168	1,183	13,578	6,549	2,158	2,900	261	1,710
2022	23,134	9,762	1,679	5,376	2,707	13,372	6,629	2,001	3,090	225	1,427
2023	23,331	8,937	1,930	5,611	1,396	14,394	7,596	2,272	2,932	210	1,384
2024	26,998	9,291	1,883	6,355	1,053	17,707	9,917	3,124	3,003	223	1,440
2025	33,825	10,343	1,665	7,326	1,352	23,482	14,185	4,638	3,020	302	1,337
연평균 증가율	15.6	18.1	4.0	34.7	11.3	14.7	20.6	16.5	4.8	7.9	6.0

자료: 고용노동부

(3) 기업규모별·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사고재해자수 및 사고사망자수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고재해자수와 사고사망자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가 추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 차원의 각종 산재예방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사고재해자수와 사고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사고재해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업규모별·업종별 사고재해자 수 및 사고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고 사망 자수
기업 규모별	5인 미만	33,934	318	34,557	342	34,473	278	36,202	309	36,034	354
	5~49인	44,782	352	45,231	365	48,169	359	46,901	361	46,148	332
	50~299인	16,356	110	17,465	120	19,140	130	19,352	110	18,086	121
	300인 이상	7,206	48	9,961	47	11,683	45	13,318	47	13,037	65
업종별	건설업	26,888	417	27,432	402	26,829	356	25,152	328	21,524	361
	제조업	24,265	184	23,764	184	24,403	165	24,409	187	23,412	164
	서비스업	39,833	123	42,089	150	45,792	140	47,888	145	49,471	140
	운수창고 통신업	9,148	72	11,591	104	14,039	111	15,998	138	16,505	176
	그 외 업종	2,144	32	2,338	34	2,402	40	2,326	29	2,393	31

자료: 고용노동부

사고사망만인율과 질병사망만인율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기업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을 확인하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인다. 또한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을 확인하면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바 이들 업종에 적합한 산재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인다.

[연도별 기업규모별·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및 질병사망만인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3	0.43	0.39	0.39	0.38	
기업규모별 사고사망 만인율	5인 미만	0.99	1.00	0.80	0.87	0.94
	5~49인	0.42	0.42	0.41	0.40	0.35
	50~299인	0.24	0.25	0.27	0.22	0.24
	300인 이상	0.15	0.14	0.13	0.12	0.15
업종별 사고사망 만인율	건설업	1.75	1.61	1.59	1.57	1.54
	제조업	0.46	0.46	0.41	0.46	0.40
	서비스업 (기타의 사업)	0.11	0.13	0.12	0.11	0.11
	운수창고 통신업	0.72	0.97	0.99	0.99	1.12
	그 외 업종	0.30	0.30	0.34	0.24	0.25
질병사망만인율	0.65	0.67	0.58	0.59	0.60	

자료: 고용노동부

라. 분석의 구성

이하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사업에 대해 동 사업의 재원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산업안전 강화 사업을 크게 산재보험 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안전 강화사업 분석 목차 및 주요 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총괄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산재예방 예산 투입과 재해사망·사고간 관계 분석
		적립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관련 분석
산재보험 사업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지급기준 개선 필요
	산재병원지원	노후화된 산재병원 시설의 현대화 필요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등
	산재예방시설용자	사업 집행 후에도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 보완 필요
	업종별재해예방	컨설팅 필요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할 필요 등
	산재예방시설 건립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이용재개를 위한 노력 필요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

37-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 기금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⁵⁾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통해 확보된다.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2025년 결산 기준 기금 전체 수입의 약 49.5%를 차지한다. 이 중 사용자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수입이고, 피고용자부담금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과거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부과되며, 일반적인 보험료와 같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3항⁶⁾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세출 계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약 0.15%의 금액을 전입받는다.

2025년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18조 9,025억 1,500만원이며, 2026년도 계획 기준 총수입은 20조 9,001억 7,300만원이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요 수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A)	2026 (B)	증감	
				B-A	%
총수입	15,592,315	18,902,515	20,900,173	1,997,658	10.6
38 사회보장기여금	9,161,297	9,360,127	10,106,235	746,108	8.0
사용자부담금(38-381)	8,957,314	9,101,142	9,818,176	717,034	7.9
피고용자부담금(38-382)	203,983	258,985	288,059	29,074	11.2
91 전입금	21,300	21,300	31,300	10,000	46.9
일반회계전입금(91-911)	21,300	21,300	31,300	10,000	46.9
산재보험운영지원	6,300	6,300	6,300	-	-
산재예방사업지원	15,000	15,000	25,000	10,000	66.7
92 예탁원금회수	-	4,850,090	4,850,000	△90	△0.1

주. 2024~2025는 결산 기준, 2026년은 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출은 크게 산재보험프로그램, 산재예방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025년 지출액은 10조 661억 6,200만원이다. 프로그램별로 확인하면 산재보험프로그램 지출이 8조 3,19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지출 중 8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재예방프로그램 지출이 1조 2,890억 6,400만원으로 12.8%를, 고용노동행정지원프로그램 지출이 4,579억 2,400만원으로 4.6%를 차지한다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 및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출계(①+②+③)	8,412,601	9,075,333	9,566,770	10,066,162	10,471,957
산재보험프로그램①	6,913,531	7,507,440	7,857,775	8,319,174	8,482,781
산재보험급여	6,686,486	7,284,941	7,633,318	8,004,324	8,146,300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498	76,537	78,372	116,458	87,651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0,275	10,446	12,717	12,665	14,10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663	9,181	10,648	11,526	14,146
산재병원지원	54,820	32,421	32,734	79,654	130,186
산재보험시설건립	7,136	17,714	7,023	6,535	3,309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1,021	15,047	20,059	19,114	23,191

7) 동 지출은 사업비 지출로, 동 기금의 총지출에는 이외에도 기금간거래, 여유자금운용이 포함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7,575	17,768	17,824	18,844	19,348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24,421	27,768	30,816	29,540	30,20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636	15,617	14,264	20,514	14,345
산재예방프로그램②	1,073,787	1,141,048	1,272,791	1,289,064	1,519,58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40,512	458,237	471,652	496,521	537,093
산재예방시설융자	356,327	356,328	458,640	449,775	538,840
업종별재해예방	88,921	126,104	148,410	155,812	236,06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7,623	7,639	6,124	6,034	6,017
유해작업환경개선	76,290	80,441	80,765	75,238	75,032
근로자건강보호	40,111	43,043	43,145	44,292	49,21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392	404	381	383	386
안전보건문화정착	28,987	32,357	32,366	35,166	36,376
산재예방시설건립	23,006	21,025	5,544	4,199	11,395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	-	-	-	11,142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768	8,653	7,749	7,009	7,03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850	6,817	18,015	14,635	9,441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 건 연구개발(R&D)	-	-	-	-	1,554
고용노동행정지원프로그램 (기금운영비)③	425,283	426,845	436,204	457,924	469,596
기금관리비 인건비	139	125	128	136	159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48	509	141	181	197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068	2,089	2,100	2,306	2,68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06,756	204,371	211,083	218,708	227,2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41,751	147,232	151,107	166,609	164,624
기금운영관리	2,738	2,785	2,855	2,941	3,044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95	265	302	278	345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756	950	884	741	855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2,820	2,812	2,572	2,458	2,431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294	35,501	37,381	36,747	39,7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670	15,418	15,905	15,053	15,378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097	1,752	1,304	1,304	2,8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947	647	867	867	304
산재보험 적용징수 보상	11,340	11,776	9,168	9,168	9,244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564	613	407	427	527

주: 2022~2025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산재예방 사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2항⁸⁾에 따라 산재기금의 지출 계획액 중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⁹⁾에 따른 산재예방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용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산재기금 지출 10조 661억 6,200만원 중 약 12.8%인 1조 2,890억 6,400만원을 산재예방프로그램 사업에 지출하였고, 약 1.8%인 1,825억 2,9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기관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20년과 2021년에 전년대비 각각 39.4%와 100.7% 규모로 크게 증가한 바 있고, 그 이후로 전년대비 6.0%, 9.8%, 7.3%, 1.8%, 16.2%로 지속적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9.15.)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다만,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사고재해자 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도별 산재기금 산재예방프로그램 예산 및 산재현황]

(단위: 백만원, %,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재예방 프로그램 예산	368,206 (2.8)	513,397 (39.4)	1,030,213 (100.7)	1,092,165 (6.0)	1,198,698 (9.8)	1,285,634 (7.3)	1,308,156 (1.8)	1,519,580 (16.2)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6 (△9.8)	0.46 (-)	0.43 (△6.5)	0.43 (-)	0.39 (△9.3)	0.39 (-)	0.38 (△2.6)	
사고재해자 수	94,047 (3.5)	92,383 (△1.8)	102,278 (10.7)	107,214 (4.8)	113,465 (5.8)	115,773 (2.0)	113,305 (△2.1)	-
사고사망자 수	855 (△11.9)	882 (3.2)	828 (△6.1)	874 (5.6)	812 (△7.1)	827 (1.8)	872 (5.4)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의 발생에는 산업 특성,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바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재해자 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지표만으로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개별 산재예방 사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지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출의 증가가 실질적인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산재기금의 적립금 규모 및 여유자금 내 공자기금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과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적립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사업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따라 적립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규모와 비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산재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수입(A)	9,527,674 (15.0)	9,047,421 (△5.0)	10,277,507 (13.6)	10,903,936 (6.1)	11,297,597 (3.6)	11,685,988 (3.4)
전체지출(B)	8,008,283 (13.2)	8,412,601 (5.0)	9,075,333 (7.9)	9,566,770 (5.4)	10,066,162 (5.2)	10,471,957 (4.0)
수지차(A-B)	1,519,391 (25.5)	634,820 (△58.2)	1,202,174 (89.4)	1,337,166 (11.2)	1,231,435 (△7.9)	1,214,031 (△1.4)
적립금	22,222,203 (7.3)	22,838,565 (2.8)	24,033,966 (5.2)	25,365,343 (5.5)	26,595,374 (4.8)	27,809,405 (4.6)
여유자금운용	19,652,203 (3.5)	20,808,565 (5.9)	22,483,876 (8.1)	22,065,343 (△1.9)	21,745,374 (△1.5)	22,759,405 (4.7)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2,570,000 (49.1)	2,030,000 (△21.0)	1,550,090 (△23.6)	3,300,000 (112.9)	4,850,000 (47.0)	5,050,000 (4.1)

- 주: 1. 2021~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계획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2. 전체수입은 기금 총수입에서 정부예금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금액을 제외한 것임
 3. 전체지출은 기금 총지출에서 기금간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금액을 제외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적립금의 증가는 산재기금이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은 안정적인 수지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추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수지차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수입 구조상 여유가 있을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재기금은 가입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 중 산재로 피해를 입은 일부 가입자에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적립금 규모를 크게 유지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인다. 오히려 적립금을 산재 관련 R&D에 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을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자기금 예탁금 규모 및 비중과 관련하여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체 적립금 대비 공자기금 예탁 비중은 2024년 13%에서 2025년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산재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자기금 예탁(A)	2,570,000	2,030,000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여유자금 운용(B)	19,652,203	20,808,565	22,483,876	22,065,343	21,745,374	22,759,405
적립금 대비 공자기금 예탁 비율(A/(A+B))	11.6	8.9	6.4	13.0	18.2	18.2

주: 2021~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으로서 중장기자산 비중이 높고, 그 중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우호적인 자산운용 환경에서 2025년 16.65%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2025년 공자기금의 예탁 수익률¹⁰⁾은 1.5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수익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의 연간수익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유자금 수익률	6.47	△7.31	11.63	8.18	16.65
직접운용	1.00	2.07	4.08	3.70	-
위탁운용	7.03	△8.36	12.25	8.56	16.65
공자유탁 수익률	0.81	1.95	4.20	2.45	1.5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존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수익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정 수준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은 예수금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리를 예수기간 3년 이하의 경우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로 정하고 있다.

37-3. 산재보험 프로그램

(1) 산재보험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산재보험급여 종류]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 중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진찰, 처치, 수술 등) → 현물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¹⁾의 70% 지급 ('25년 기준) * 최고: 최고보상기준 고시금액(1일 258,132원)의 70% * 최저: 일반근로자(1일 80,240원, 최저임금 적용), 노무제공자²⁾(1일 48,232원)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 해당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
요양 종결	장 해 급 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종결 후 장애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애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8~14급: 일시금 지급
		진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폐장애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기초연금(최저임금×365×60%)³⁾ + 진폐장해연금* *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애등급별 지급일수 장애등급: 1급(132일), 3급(132일), 5급(72일), 7급(72일), 9급(24일), 11급(24일), 13급(24일) 지급
	간병 급여	치료종결 후 장애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전문간병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수시) 전문간병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직업 재활 급여	요양종결 이후 장애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비용: 훈련비(고시금액) ·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직장복귀지원금⁴⁾ · 1~3급(80만원), 4~9급(60만원), 10~12급(45만원) 직장적응훈련: 45만원, 재활운동지원: 15만원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사 망 시	유 족 급 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수급자격자 희망시 50% 일시금 지급
		진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사망 전 진폐근로자가 수급하던 진폐보상연금액 *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례비	유족 또는 사망자의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8,685,600원, 최저 13,451,380원(25년 기준) * 유족이 아닌 경우 장례실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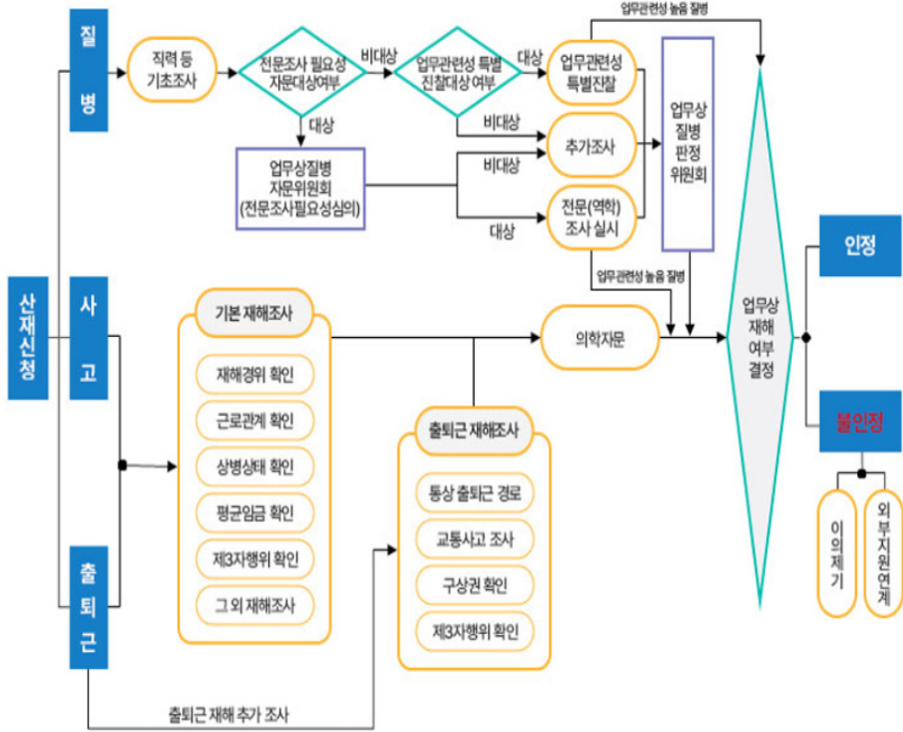
- 주: 1)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이 아닌 별도의 급여임
 4) 최대 12개월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재해발생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상 질병은 해당 질병과 업무상 유해 위험 요인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 조사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급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¹¹⁾, 판정위원회 심의기간, 역학조사 소요기간¹²⁾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¹³⁾. 업무상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고용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② 제 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업무상 사고는 평균 18.9일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244.7일 소요되고 있다. 연도별로 평균 처리기간을 비교해보면 업무상 사고는 2021년 15.3일에서 2025년 18.9일까지 늘어났고, 업무상 질병도 2021년 175.8일에서 2025년 244.7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산재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업무상 사고	처리건수	116,856	122,066	131,281	135,384	134,146
	평균 처리기간	15.3	15.9	16.5	17.7	18.9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	24,871	28,796	31,666	38,219	50,946
	평균 처리기간	175.8	182.0	214.5	227.7	244.7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는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있어 업무가 가중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거쳐 질병과 위험요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 산재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¹⁴⁾.

동 사업의 수급자 수는 2022~2025년간 평균 2.4% 증가하고, 보험급여액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 수급자수와 보험급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 및 그 범위가 제도개선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14)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고,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급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급여 수급자수 및 보험급여 증가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3개년 평균증감률
보 험 급 여	수급자수	390,475	398,324(2.0)	405,539(1.8)	419,432(3.4)	2.4
	보험급여	6,686,486	7,284,941(9.0)	7,633,318(4.8)	8,004,324(4.9)	6.2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보호대상 및 범위 확대 연혁]

연도	내용
2018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소규모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2020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2021	무급가족종사자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제도개선
2022	학생연구자 산재 특례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2023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특례 신설,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및 적용 확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사업¹⁵⁾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 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8조 43억 2,600만원 중 8조 4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15)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2025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보험 급여	8004326	8004326	-	-	8,004,326	8004324	-	2	8146300	8146300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해선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장해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여, 장해급여가 향후 노동능력상실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경우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 종결	장 해 급 여	일반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8~14급: 일시금 지급
		진폐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최저임금×365×60%) + 진폐장해연금* *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장해등급: 1급(132일),3급(132일),5급(72일),7급(72일),9급(24일),11급(24일),13급(24일) 지급

주: 장해급여 외 다른 급여에 관한 내용은 앞의 표 참조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의 경우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2조 7,813억 2,700만원 중 2조 9,660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의 37.1% 수준이며, 2025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유형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연금	전체
2024년 결산	1,540,630 (19.6)	2,072,138 (26.3)	2,703,410 (34.3)	981,157 (12.5)	324,904 (4.1)	7,876,091 (100.0)
2025년 결산	1,457,960 (18.2)	1,957,280 (24.5)	2,966,028 (37.1)	1,053,966 (13.2)	338,045 (4.2)	8,004,324 (100.0)
2026년 계획	1,418,467 (17.4)	2,047,752 (25.1)	2,977,823 (36.6)	1,107,050 (13.6)	384,744 (4.7)	8,146,300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액에서 해당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에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피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될 뿐이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른 향후 노동능력상실분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¹⁶⁾.

[산업재해 장해급여 지급 한도액]

(단위: 원)

장해등급	연금		일시금	
	일수	지급액	일수	지급액
제1급	329일분	7,077,110	1,474일분	380,486,560
제2급	291일분	6,259,700	1,309일분	337,894,780
제3급	257일분	5,528,320	1,155일분	298,142,460
제4급	224일분	4,818,460	1,012일분	261,229,580
제5급	193일분	4,151,620	869일분	224,316,700
제6급	164일분	3,527,800	737일분	190,243,280
제7급	138일분	2,968,510	616일분	159,009,310
제8급	해당없음		495일분	127,775,340
제9급			385일분	99,380,820
제10급			297일분	76,665,200
제11급			220일분	56,789,040
제12급			154일분	39,752,320
제13급			99일분	25,555,060
제14급			55일분	14,197,260

자료: 고용노동부

16) ① (장해연금)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연금일수 / 12월, ② (장해일시금)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일시금일수

이로 인해 장애급여의 평균 지급액 및 최고지급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일시금을 평균 3,215만원 지급받아 가장 높았으며, 연금의 경우 60대가 평균 266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 장애급여 연령별 평균 지급액 및 최고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만원)

구분	일시금				연금			
	지급인원	지급액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평균지급액	최고지급액
10대	61	560	918	13,490	1	17	140	140
20대	1,970	23,284	1,182	12,601	164	2,924	149	358
30대	4,114	57,916	1,408	12,778	920	17,980	163	707
40대	7,040	113,115	1,607	17,389	4,237	97,093	191	707
50대	14,230	255,341	1,794	24,313	12,217	363,008	248	707
60대	20,946	494,577	2,361	19,024	21,939	699,464	266	707
70대	7,973	241,817	3,033	35,371	14,311	418,475	244	707
80대 이상	1,790	57,552	3,215	18,421	4,123	122,906	248	707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와 같이 평균임금과 장애등급만을 반영하여 장애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보상 기준의 일관성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연령대별로 향후 노동 가능 기간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젊은 산재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동능력상실 보전이라는 장애급여의 지급 목적과 실질적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장애급여 지급 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⁷⁾.

17) 다만 고용노동부는 장애급여 산정 시 연령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장애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연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 보전 성격의 보험급여 체계 전반과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마저 조정된다면 사회보장 측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바, 특정 급여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국가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전반적인 보험급여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 산재병원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18)에 근거하여 산재근로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로 산재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산재환자 진료 외에 일반진료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병원 시설현황]

병원명	위 치	설치연도	종별	병상수	개·보수
인천병원	인천	1983	종합병원	285	'18년
안산병원	경기 안산	1985	종합병원	380	'16년
창원병원	경남 창원	1979	종합병원	268	'18년
대구병원	대 구	2012	병원	200	-
순천병원	전남 순천	1985	종합병원	266	'19년
대전병원	대 전	1991	종합병원	232	'23년
태백병원	강원 태백	1977	종합병원	247	'22년
동해병원	강원 동해	1983	종합병원	247	'25~'27년
정선병원	강원 정선	1988	병원	149	-
경기요양병원	경기 화성	1985	요양병원	127	'09년
태백요양병원	강원 태백	2024	요양병원	55	-
서울의원	서 울	2019	의원	-	-
광주의원	광 주	2020	의원	-	-
부산의원	부 산	2022	의원	-	-
구미의원	경북 구미	2025	의원	-	-

자료: 고용노동부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산재병원지원 사업¹⁹⁾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출연 방식으로 전국 15곳의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796억 5,4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병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잔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병원 지원	79,654	79,654	-	-	79,654	79,654	-	-	130,186	130,186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노후화된 산재병원 의료장비의 교체를 통해 산재피해 근로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선에 34억 7,2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에 38억 1,2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산재병원의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산재병원의 시설 개선을 통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노후화된 의료 장비로 인해 반복적으로 의료차질 및 환자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가의의료장비의 교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동해병원의 경우 MRI 장비의 노후화로 고장 빈도가 잦아졌을뿐만 아니라 제조사 부품이 단종되어 안정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2025년 대구병원의 경우 CT 노후화로 인해 제조사 부품이 단종됨에 따라 주요부품 고장 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4-350

[최근 노후 MRI 및 CT 장비로 인한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 발생 사례]

연도	소속병원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 발생 내용
2021	인천병원	CT 노후화로 소음성난청의 업무관련성 여부판단을 위한 이비인후과 진단 촬영 시 영상오류 촬영중단 등으로 환자 1인이 다수로 촬영하는 사례발생
2022	창원병원	MRI 노후로 작동불가시간 증가 및 주요부품(엠프류 등) 고장으로 촬영 중단 사례 발생
2023	순천병원	MRI 노후로 헬륨감소량증가, 칠러 이상으로 인한 냉각수 온도상승 등으로 촬영 중단사례 발생
2024	동해병원	MRI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제조사 부품 단종으로 인해 작동불가시간 증가 MRI 자성을 유지시켜주는 헬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문제(칠러, 콜드헤드 등) 촬영 중단 사례 발생
2025	대구병원	CT 노후화로 인한 작동불가시간 증가 및 제조사 부품 단종으로 인해 주요 부품(튜브, 디텍터 등) 고장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

자료: 근로복지공단

위와 같이 매년 MRI 및 CT 등 고가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병원의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제약으로 MRI 및 CT의 적시 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MRI와 CT 장비는 각각 1대씩만 교체되는 것에 그쳤다.

[연도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개,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06	2,859	85	304	116	374	68	3,784	52	3,812
MRI	-	-	-	-	-	-	-	-	1	1,931
CT	-	-	-	-	-	-	1	1,455	-	-
DR	1	65	-	-	3	105	1	355	1	384
영상	2	297	7	168	2	490	4	736	3	528
검사	32	1,359	34	903	39	1,238	16	544	7	295
수술차기	4	176	6	185	9	220	8	149	2	40
보건	34	453	14	500	20	328	9	217	2	199
재활	21	184	19	139	36	349	22	104	32	191
기타	12	325	5	139	7	84	7	224	4	244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장비의 노후화는 병원에 산재 등으로 입원한 근로자의 치료를 늦출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외면으로 향후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적인 산재병원 경영의 개선과 산재 근로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병원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37-4.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²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급성중독 및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4,967억 9,200만원 중 4,96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100만원을 불용(0.1%)하였다.

[2025회계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81,792	496,792	-	-	496,792	496,521	-	271	537,093	537,093
안전일터 조성지원	110,707	110,707	-	-	110,707	110,659	-	48	160,607	160,607
안전동행 지원	332,000	332,000	-	-	332,000	331,999	-	1	332,000	332,000
건강일터 조성지원	35,825	50,825	-	-	50,825	50,824	-	1	40,825	40,825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사업수행 경비	3,260	3,260	-	-	3,260	3,039	-	221	3,661	3,661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 보급 확산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내역사업 '안전동행 지원'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관점에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유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관련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률 등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건설현장 추락 예방시설 임차 및 구입을 지원하는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과 끼임, 충돌 등 사망 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으로 구분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개요]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및 고소작업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한도 :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20억~50억원미만(50%)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등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한 경우 ▶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등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70%

자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의 경우 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65%를 지원하며, 제조 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된다. 동 사업은 '사업주 지원신청 →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서면·현장방문 등) →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심사위원회) → 사업주의 시설개선(투자계획에 근거하여 4개월 이내) → 공단의 투자완료확인(현장방문) → 적정성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의 절차로 집행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5회계연도 동 사업 집행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714억 6,700만원에서 514억 6,7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총 3,871개의 사업장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예산 및 결산]

(단위: 개소, 백만원,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량	목표 지원 사업장 (A)	8,100	8,900	8,900	8,900	5,769
	실제 지원 사업장 (B)	5,515	7,332	4,943	4,079	3,871
	B/A	68.1	82.4	55.5	45.8	67.1
금액	계획 (C)	65,053	71,467	71,467	71,467	71,467→ 51,467
	결산 (D)	64,464	71,467	60,108	71,467	51,467
	D/C	99.1	100.0	84.1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미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과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 차이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재해발생 비율 차이를 확인해보면 지원 사업장의 재해발생 비율이 미지원 사업장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²¹⁾, 지속적인 재정

21) 다만 미지원 사업장 대비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안전 사고 등에 보다 높은 주의를 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개선되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자체도 큰 변동이 없이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p)

사고재해발생 비율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A)	32.0	32.0	33.0	32.9	34.8
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B)	23.9	25.3	24.3	26.4	27.8
재해발생 비율 차이(A-B)	8.1	6.7	8.7	6.5	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발생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대 중소기업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 하청간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금액을 노후 위험공정 개선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면, 총 4,592개소를 대상으로 3,320억원을 집행하였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기업의 수가 3,383개소로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73.7%를 차지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구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품목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기계·설비 등 공정개선, 화재·폭발 대응 시설 등)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업종 사업장 (뿌리공정, 기계기구·금속 제조 등 6대 업종, 1·2차 전지 제조업 등)
지원비율	50%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40%(원청 10% 부담)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선금	선금 80%(민생경제 사업)(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지원금액	94.2	290.6	2935.1
대상 기업 수	423	786	3,383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통해 보조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하고 위험이 있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기존 위험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타 현장에 반출 및 매각하여 산업현장에 위험을 상존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²²⁾.

2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00 사업장은 끼임/절단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이 잦은 밀링 3대에 대하여 신규 CNC 밀링 3대를 공단에게 지원받고 기존 설비(밀링)는 현장 존치 사용(총 6대 밀링)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동 사업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험개선 목적 외의 장비 도입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기존 위험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원금액을 이용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³⁾. 이는 안전장비 도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조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업의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산재예방시설 용자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사업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용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4,588억 4,000만원 중 4,49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 6,500만원을 불용(2.0%)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예방시설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예방 시설용자	458,840	458,840	-	-	458,840	449,775	-	9,065	538,840	538,840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를 지원한다. 금액 한도는 10억원으로 연리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도록 하며, 설비 활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현장방문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이유로 CNC 선반·밀링 지원 사업장 중 56개 사업장에 기존 설비 대비 70대 초과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2025년 산재예방시설용자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p>용자신청 사업장 중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현장방문 컨설팅 시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확인</p> <p>*우선지원 선정기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p> <p>**용자신청 시 제출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검토 및 투자 설비 적정성 확인</p>
지원품목	<p>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 환경 개선 설비</p> <p>중점 지원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 기계기구 - 유해화학물질·가스 제거용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체설비(지게차, 에어발란스 등) - 작업공정·환경(냉·난방설비 등) 개선설비
지원조건	<p>공단 판단금액 100%(10억 한도),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p>
사후기술 지도	<p>지원사업장 설비 활용실태 등 현장방문 점검(연 1회)</p>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용자 지원 사업장에서 지원 전·후와 비교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동 사업에 따른 지원 전·후 사고사망만인율을 확인해보면 용자를 통해 산재예방시설 도입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3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24년에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과 2024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23년과 2025년에 오히려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산재예방시설용자 지원 전·후(1년) 실적]

(단위: %, %p)

	2022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3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4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1년) 증감	
	2021년	2023년	2022년	2024년	2023년	2025년
사고사망만인율	0	0.29	0.93	0	0.57	0.79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0.29		△0.93		0.22	

주. 2025년 지원사업장의 지원 전·후 실적은 2026년 통계 자료가 집계가 되지 않아 산출 불가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자수 1명 증가에 기인한 변동이라는 점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증가만으로 용자사업의 효과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년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하는 사업장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산재예방시설용자 사업 집행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322,758	356,328	356,328	458,640	458,840

자료: 고용노동부

(3) 업종별 재해예방

업종별재해예방²⁴⁾ 사업은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단이 직접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핵심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지도하거나 민간전문기관²⁵⁾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24)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25)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8조, 제142조)

1,631억 5,200만원 중 1,55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4,000만원을 불용(4.5%)하였다.

[2025회계연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업종별 재해예방	163,152	163,152	-	-	163,152	155,812	22	7,340	236,062	236,062
·산업재해 집중관리	13,386	13,386	-	-	13,386	12,506	22	858	60,234	60,234
·민간 기술지도	51,323	52,793	-	-	52,793	52,542	-	251	51,273	51,273
·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	-	2,620	2,535	-	85	2,620	2,620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95,823	94,353	-	-	94,353	88,207	-	6,146	121,935	121,935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이나 공단이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거나, 지역별 사업주 단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내역사업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지원하여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사망·질병예방 등 핵심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의 내내역사업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공단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통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자기규율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시행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전문성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이해관계나 근로자의 편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근로 환경을 점검·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주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각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업종을 잘 아는 협·단체가 중심이 되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각종 협·단체 중심으로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지원대상	사업주 단체 등
사업내용	① 사업주단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개발, 보급 및 우수사례 확산 ② 업종별 협·단체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 제공 ③ 민간 재해예방기관 컨설턴트 대상 특화 교육 과정 운영
사업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 단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직·업종별 협회·단체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일관적으로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 집행 과정에 있어 협회·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 단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해 집행단계에서의 관리 및 사후평가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선정 협·단체	지원 협·단체(업종)	집행 내용	지원 금액
대한상공회의소	①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공업) ②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장비제조업) ③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제조업)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 안전보건 개선대책 수립 교육 - 협·단체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제공 등	73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④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업)	-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보급 - 건물관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68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⑤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공업)	- 안전보건점검가이드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 사례 공유 등	67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단체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역사업 ‘민간기술지도’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컨설팅의 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우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요 7대 작업 현장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7대 작업 현장이란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옥상방수, 철거해체, 관로설치 현장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작업유형 대상 컨설팅이 아닌 사고 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에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년~2025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사업의 작업유형별 사고 사망자수와 컨설팅 지원 내역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소규모 건설현장 작업지원 작업유형별 사고사망자수 및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명, %, 회, 억원)

작업유형	사고사망자수	컨설팅 지원	
		횟수	금액
지붕 개보수	118 (46.5)	32,089 (7.6)	47 (7.5)
외부도장	40 (15.7)	45,299 (10.7)	67 (10.7)
인테리어	24 (9.5)	191,949 (45.3)	287 (45.7)
리모델링	12 (4.7)	81,324 (19.2)	121 (19.3)
옥상 방수	12 (4.7)	6,379 (1.3)	8 (1.3)
철거 해체	36 (14.1)	33,151 (7.8)	49 (7.8)
관로 설치	12 (4.7)	33,183 (7.8)	49 (7.8)
계	254	423,374	628

자료: 고용노동부

사고 사망자수 대비 컨설팅 지원 횟수를 확인해보면 사고 사망자 수의 46.5%를 차지하는 지붕개보수 유형에 대한 컨설팅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붕 개보수 대상 컨설팅 지원 비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9.5%와 4.7%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컨설팅 지원 비율은 45.3%와 19.2%를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집행 실적을 감안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고 사망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에 대한 컨설팅에 집중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산재예방시설 건립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²⁶⁾은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여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42억원으로 이 중 4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0.1%)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재예방시설 건립	4,200	4,200	-	-	4,200	4,199	-	1	11,395	11,395

주: 수정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²⁷⁾와 제31조²⁸⁾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안전보건 교육을 수행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는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26)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2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8)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 38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9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는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현재 2025년 12월에 재개관한 증부(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8개의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두고 있다²⁹⁾. 그러나 이 중 3개의 교육장은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경북 교육장은 2022년 7월, 충청 교육장은 2023년 7월, 경남 교육장은 2023년 12월부터 이용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및 경북 지역은 30년 개관을 목표로 26년 기존 교육장 해체 및 신규 부지 매입 예정이며, 충청 지역은 31년 개관을 목표로 예산 확보 노력 중이다.

[공공안전체험교육장 운영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사업비(억원)	건립규모(연면적)	비 고
1	제 천	충북 제천시	79.9	1,977.08㎡(599평)	운영중
2	담 양	전남 담양군	71.0	1,525.37㎡(462평)	
3	여 수	전남 여수시	246.2	4,642.72㎡(1,407평)	
4	익 산	전북 익산시	222.7	4,385.42㎡(1,329평)	
5	인 천	인천 부평구	190.4	3,912.38㎡(1,186평)	
6	경 남	경남 김해시	29.2	1,010.8㎡(306평)	운영중단
7	경 북	경북 경산시	35.0	2,493.32㎡(756평)	
8	충 청	충남 공주시	43.0	2,325㎡(705평)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은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 평균적으로 1인당 90,000원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데다가, 일부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관련 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이들의 이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근로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29)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의 수는 총 52개소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보수 공사 및 재개관이 조속히 이루어져 안전교육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도별 공공안전체험교육장 교육인원]

(단위: 명)

교육장	위치	개장일	운영중단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천	인천 부평구	'97.05.	'20.01.	-	-	-	-	-
경남	경남 김해	'02.06.	'23.12.	-	45	865	-	-
경북	경북 경산	'08.02.	'22.07.	-	-	-	-	-
충청	충남 공주	'09.04.	'23.07.	23	519	21	-	-
제천	충북 제천	'19.03.	-	-	1,763	2,868	4,987	5,165
담양	전남 담양	'23.05.	-	-	-	2,065	4,295	4,950
여수	전남 여수	'23.12.	-	-	-	-	8,775	9,942
익산	전북 익산	'24.12.	-	-	-	-	-	8,891
합계				23	2,327	5,819	18,057	28,948

자료: 고용노동부

(5)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사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수사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9억 3,000만원 중 3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 (4.6%)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산업안전 감독역량강화	3,930	3,930	-	-	3,930	3,750	-	180	56,192	56,192

주: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4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4개 법률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신고사건 처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수사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수시직제를 통해 산업안전감독관 기준 정원을 당초 892명에서 1,442명으로 550명 증원하였다. 2026년도에는 정기직제로 650명을 추가 증원하여 기준정원을 2,092명으로 확대하였다.

[산업안전감독관 총원계획]

(단위: 명)

	기존 정원	수시직제 (2025)	2026년 총원계획
산업안전감독관	892	+550	+650
기존정원	892	1,442	2,092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5월 현재 각 관서별로 활동 중인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은 아래와 같다.

[지방고용노동청별 산업안전감독관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청	경기청	충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정원	2,092	214	464	296	365	222	253	281
현원	1,476	152	326	206	244	152	182	21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확대와 함께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확대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수시직제를 통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당초 892명에서 1,442명까지 증가시켰고, 2026년에는 정기직제로 650명을 증원하여 기준정원을 2,092명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재해 발생과 이로 인한 재해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산업안전감독관 확대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집합직무교육 10주와 현장직무교육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기간 동안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수사사례를 학습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연구」(2025.10.)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의 업무 전문성 함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신입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약 1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황]

	한국	영국	독일	일본
기간	22주 집체교육 +OJT	3년 집체교육 +OJT	1~3년 집체교육 + OJT	1년 집체교육 + OJT
주요 내용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 체험 및 실습	법·규제, 법원·사법체계, 위험·예방 원칙 등	법적근거, 직업적 역할, 자기주도 점검 등	근로감독관과 함께 연수 진행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업무는 산업 현장 내 업무 효율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용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로 채용된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충실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제한된 인프라와 기간 내에서도 실습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1) 등록장애인의 유형별 분류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분류·관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등록장애인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궤장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등 총 1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애유형은 크게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및 궤장장애가 포함된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가 해당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령 장애인의 증가와 함께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등록장애인의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허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췌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자료: 보건복지부

(2) 최근 10년간 장애인 현황

① 연령별 등록장애인

2025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016년 251만 1,051명에서 2025년 262만 7,761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016년 108만 9,317명에서 2025년 149만 6,13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등록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도 43.4%에서 56.9%로 확대되었다.

[2016-2025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연령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2,511,051	2,545,637	2,585,850	2,618,724	2,632,328	2,642,922	2,643,696	2,633,262	2,631,356	2,627,761
0~4	5,490	5,673	5,875	6,159	5,771	5,570	5,120	4,585	4,051	3,711
5~9	20,320	21,583	23,334	24,961	25,792	26,733	28,160	30,582	31,981	31,241
10~14	24,127	24,178	24,253	24,925	26,552	28,862	30,518	32,307	34,201	36,107
15~19	39,549	38,352	36,606	34,723	32,056	30,817	30,929	31,476	32,533	34,908
20~24	46,251	46,582	47,363	47,397	47,278	46,085	44,440	42,224	39,830	37,047

(단위: 명)

연령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5~29	45,313	46,388	47,431	49,006	50,575	51,241	51,350	51,877	51,547	51,313
30~34	59,903	54,924	51,742	50,630	49,981	50,431	51,519	52,420	53,744	55,249
35~39	89,316	86,759	84,139	78,424	72,316	66,458	60,714	57,176	55,841	55,111
40~44	121,931	115,110	107,671	102,664	100,013	98,016	95,038	92,189	86,003	79,367
45~49	174,666	167,422	158,633	150,800	142,664	133,340	125,691	117,408	111,613	108,683
50~54	219,551	209,907	208,012	203,540	196,579	190,636	182,521	172,727	163,707	154,861
55~59	294,264	292,310	284,756	272,575	255,020	239,115	227,761	224,503	218,678	211,122
60~64	281,053	286,539	299,568	309,129	313,689	319,906	316,229	305,945	291,845	272,906
65~69	269,794	273,272	270,645	274,886	289,063	303,942	308,935	320,435	329,605	334,263
70~74	273,737	268,465	276,520	282,835	290,448	289,834	291,348	285,364	288,904	304,547
75~79	263,167	287,645	296,506	298,803	294,729	288,128	280,217	284,140	289,750	297,176
80~84	177,817	196,811	218,367	238,297	246,989	258,194	277,853	277,967	276,468	273,426
85~89	77,418	90,810	105,116	122,019	138,277	153,402	164,592	173,417	184,899	190,149
90~94	22,434	26,699	31,710	38,523	44,874	51,273	58,094	62,446	69,830	78,222
95~99	4,333	5,518	6,805	7,514	8,536	9,609	11,111	12,314	14,492	16,362
100세 이상	617	690	798	914	1,126	1,330	1,556	1,760	1,834	1,990

자료 : 보건복지부

②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2025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111만 3,722명(42.4%)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44만 9,269명(17.1%), 시각장애인 24만 5,361명(9.3%), 지적장애인 23만 6,635명(9.0%), 뇌병변장애인 23만 2,655명(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인은 2016년 2만 2,853명에서 2025년 5만 1,689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2025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2511,051	2,545,637	2,585,850	2,618,724	2,632,328	2,642,922	2,643,696	2,633,262	2,631,356	2,627,761
간	11,042	11,843	12,524	13,154	13,806	14,427	15,022	15,609	16,098	16,438
뇌병변	250,456	252,819	253,076	252,112	250,130	247,636	242,939	237,562	234,703	232,655
뇌전증	6,956	6,935	7,021	7,054	7,093	7,077	7,068	6,987	6,889	6,760
시각	252,794	252,632	252,953	253,039	252,275	251,489	250,064	247,821	246,182	245,361
신장	78,750	83,562	87,892	92,399	97,496	102,045	105,195	107,636	111,084	114,761
심장	5,507	5,399	5,303	5,264	5,226	5,151	5,030	4,854	4,781	4,686
안면	2,680	2,692	2,689	2,672	2,676	2,710	2,719	2,747	2,756	2,773
언어	19,409	20,321	20,744	21,482	22,380	23,034	23,242	22,685	22,389	21,909
자폐성	22,853	24,698	26,703	28,678	30,802	33,650	37,596	42,732	47,350	51,689
장루·요루	14,404	14,718	15,027	15,290	15,424	16,003	16,691	17,074	17,397	17,919
정신	100,069	101,175	102,140	102,974	103,502	104,152	104,175	103,907	103,215	102,945
지적	195,283	200,903	206,916	212,930	217,084	221,500	225,457	229,511	233,322	236,635
지체	1,267,174	1,254,130	1,238,521	1,223,088	1,207,197	1,191,036	1,173,652	1,151,503	1,132,644	1,113,722
청각	271,843	302,003	342,580	377,068	395,707	411,528	423,589	431,869	442,034	449,269
호흡기	11,831	11,807	11,761	11,520	11,530	11,484	11,257	10,765	10,512	10,239

자료 : 보건복지부

③ **성별 등록장애인**

2016~2025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은 145만 7,588명에서 152만 4,995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 등록장애인은 105만 3,463명에서 110만 2,766명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기준 남성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58.0%, 여성이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이러한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6-2025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성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2511,051	2545,637	2,585,850	2,618,724	2,632,328	2,642,922	2,643,696	2,633,262	2,631,356	2,627,761
남	1,457,588	1,475,550	1,496,287	1,513,099	1,520,852	1,527,233	1,529,440	1,524,697	1,525,056	1,524,995
여	1,053,463	1,070,087	1,089,563	1,105,625	1,111,476	1,115,689	1,114,256	1,108,565	1,106,300	1,102,766

자료 : 보건복지부

④ 2025년 기준 장애유형·연령별 등록장애인

2025년 기준 장애유형별·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아동·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별 연령구조와 돌봄 수요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기준 장애유형·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연령	합계	간	뇌병 변	뇌전 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 성	장루 ·요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 기
합계	2627,761	16,438	232,655	6,760	245,361	114,761	4,686	2,773	21,909	51,689	17,919	102,945	236,635	1,113,722	449,269	10,239
0~4	3,711	42	1,766	6	45	17	16	3	232	524	16	-	402	168	473	1
5~9	31,241	93	2,548	66	349	26	48	4	2,732	14,727	57	-	9,241	452	894	4
10-14	36,107	116	2,753	113	744	55	96	8	996	11,467	57	1	17,555	1,026	1,108	12
15-19	34,908	162	2,369	147	1,049	132	95	14	226	6,788	74	58	20,155	2,304	1,306	29
20-24	37,047	180	2,918	170	1,643	288	173	39	299	4,755	89	495	21,187	3,214	1,559	38
25-29	51,313	189	3,921	282	2,829	732	276	49	313	5,852	83	1,647	27,055	5,648	2,378	59
30-34	55,249	180	3,652	336	4,174	1,574	217	76	246	4,224	119	3,428	25,512	8,609	2,827	75
35-39	55,111	231	3,986	359	4,965	2,570	145	123	351	2,293	142	4,466	19,801	12,776	2,832	71
40-44	79,367	423	6,277	543	8,483	4,831	182	207	700	730	250	6,828	18,804	26,955	4,010	144
45-49	108,683	675	8,151	682	11,988	7,353	191	272	954	196	342	9,725	17,084	45,253	5,602	215

(단위: 명)

연령별	합계	간	뇌병 변	뇌전 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 성	장루 ·요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 기
50-54	154,861	1,288	12,318	861	16,438	11,109	253	335	1,420	85	666	14,985	16,273	70,038	8,402	390
55-59	211,122	2,237	17,737	892	21,074	14,400	339	318	1,888	29	1,152	18,703	14,373	104,117	13,247	616
60-64	272,906	3,207	25,104	927	26,494	16,446	471	380	2,342	13	1,847	16,866	11,861	141,114	24,586	1,248
65-69	334,263	3,554	33,008	719	31,574	17,738	594	327	2,839	4	2,652	13,452	9,073	175,429	41,327	1,973
70-74	304,547	2,280	31,707	417	28,752	13,956	530	255	2,350	2	2,684	7,323	4,629	156,979	50,519	2,164
75-79	297,176	1,199	29,645	172	30,779	10,957	518	196	1,887	-	2,884	3,185	2,099	139,802	72,088	1,765
80-84	273,426	327	25,206	47	27,357	7,659	332	107	1,305	-	2,461	1,312	1,006	116,318	88,975	1,014
85-89	190,149	50	14,385	16	17,973	3,882	168	44	655	-	1,611	369	404	72,916	77,337	339
90-94	78,222	5	4,456	5	6,954	907	38	14	146	-	612	88	102	25,778	39,052	65
95-99	16,362	-	669	0	1,505	117	3	1	24	-	109	12	15	4,354	9,538	15
100세 이상	1,990	-	79	-	192	12	1	1	4	-	12	2	4	472	1,209	2

자료 : 보건복지부

(3) 장애인 돌봄 정책 추진 현황

① 장애인 돌봄 관련 법령 및 제도

장애인 돌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돌봄에 대한 단일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요 정책 및 계획으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2022)」 등이 있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최종증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새로운 돌봄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 돌봄 관련 법령 및 주요 계획]

법안명/계획명	주요내용	비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11.1.4.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 지원, 권리옹호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	'14.5.20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동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11.8.4 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81.6.5 제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성평등가족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제공 ※ 아이돌보미(일반·경증장애) 사업(여성가족부)에서 장애 아동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리('09년~)	'04.2.9 제정

법안명/계획명	주요내용	비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년) (2023)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권리보장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복지,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등 9개 분야 세부과제 추진	
제1차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2026~2030)	①아플 때, ②회복할 때, ③건강할 때 장애인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보장 방안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202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통한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국정과제	79-1.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79-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발달 장애인 지원
국정과제	79-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26.) 본사업 추진('2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
국정과제	79-3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자료: 보건복지부

② 2025년 장애인 돌봄 정책 중점 추진사항

정부는 2025년 장애인 돌봄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월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12만 4천 명에서 13만 3천 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확대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도 개인예산제를 적용하였다.

[2025년 장애인 돌봄 정책 중점 추진사항]

주요내용
<p>【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신규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확대(131 →135시간, 12.4→13.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상향(6→9세 미만, +1.8만명) - 신규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 24시간 의료지원 ○ (일상생활) 온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신규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68억원), 개인예산제 확대*로 일상의 편의성·선택권 강화 * (現)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20% → (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0%)도 추가¹⁾

주 1) 2025년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각 20%)도 추가 적용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2024.8)

(4) 장애인 돌봄 사업 현황

장애인 돌봄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있으나,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개념은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통합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관련 주요 계획으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등이 있으며, 이들 계획에서도 장애인 돌봄의 개념과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계 법

령과 정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돌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단위사업 기준) 중 장애인선택적복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돌봄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돌봄 사업은 크게 ‘돌봄서비스 분야’와 ‘돌봄체계 개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돌봄체계 개편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업으로서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으며, 돌봄체계 개편 분야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이들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돌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돌봄 사업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분야	대상	주요내용
장애인선택적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돌봄서비스	6~65세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장애아동가족지원	돌봄서비스	①장애아가족양육지원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①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

단위 사업	세부사업	분야	대상	주요내용
			②발달재활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③언어발달지원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장애인)	비스 제공, 가족휴식지원서비스 제공 ② 발달재활서비스(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제공 ③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독서지도 등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교육지원) 등록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등록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제공 지원 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지원	돌봄서비스	등록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돌봄지원) 공공후견, 부모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및 방과후), 재산관리 지원, 긴급돌봄, 최종증 통합돌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돌봄체계 개편	4종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 ①활동지원, ②발달장애인 주간활동, ③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④발달재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참여자가 수급량의 20% 이내를 개인예산으로 신청하여 이용계획 수립 후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이용하도록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	돌봄서비스	해당 거주시설 입소 이용자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

단위 사업	세부사업	분야	대상	주요내용
	장애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돌봄서비스	해당 복지시설 입소 이용자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자립 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돌봄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원 및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 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돌봄체계 개편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입소 장애인,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의 재가장애인 등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활동지원·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② 최근 10년간 장애인 돌봄 대상자 현황

최근 10년간 장애인 돌봄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2017년 6만 5,000명에서 2026년 13만 9,715명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아동가족지원은 4만 9,086명에서 11만 8,950명으로 확대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또한 2017년 22만 5,601명에서 2025년 28만 8,324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대상자는 2017년 2만 4,018명에서 2026년 2만 816명으로 감소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각각 2024년, 2022년부터 신규 추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돌봄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세부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활동지원	65,000	71,000	81,000	91,174	99,000	107,000	115,000	123,715	132,715	139,715
장애아동가족지원	49,086	56,759	61,649	65,649	69,649	77,950	87,950	94,950	112,950	118,950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교육지원	108,127	99,930	98,860	99,613	101,733	112,965	80,599	80,924	84,884
	출산비용 지원	1,402	1,252	1,235	1,096	1,013	1,026	927	850	841
발달장애인 지원	25,601	23,609	24,638	24,886	25,150	23,053	22,243	20,672	28,324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	-	-	-	-	86	207	532	96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4,018	23,757	23,056	23,066	22,700	22,286	21,733	21,312	21,041	20,81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0,980	30,693	29,676	29,637	29,086	28,566	27,946	27,352	26,987	26,66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개소) ¹⁾	61	61	71	75	75	75	75	75	75	75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누적)	-	-	-	-	-	200	400	600	600	800

주 1. 대상자는 예산 편성 인원 기준으로 작성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준으로 작성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은 모의적용임

자료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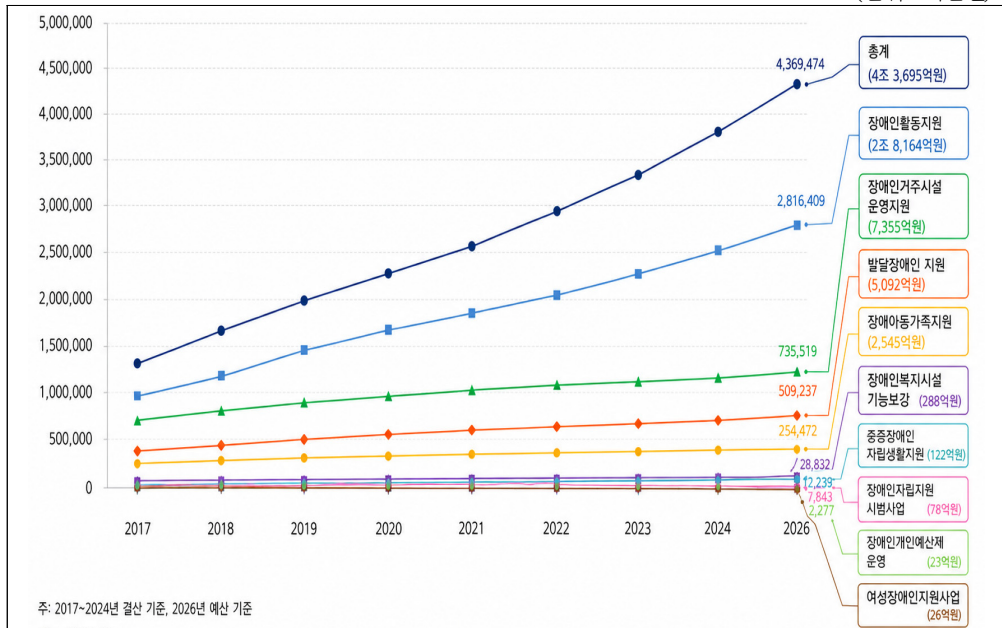
(5)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 현황

①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 추이

최근 10년간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2017년 1조 1,867억 원에서 2026년 4조 3,695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하였다.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6,058억 원에서 2026년 2조 8,164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 돌봄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또한 2017년 4,551억 원에서 2026년 7,355억 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2017년 91억 원에서 2026년 5,092억 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역시 같은 기간 793억 원에서 2,54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아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각각 2023년과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예산은 2023년 6억 원에서 2026년 2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2022년 22억 원에서 2026년 7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연도별 기능보강 수요에 따라 230억 원~ 390억 원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총계	2,422,038	1,185,708	1,318,821	1,773,912	2,056,618	2,337,537	2,755,738	3,092,316	3,548,464	3,925,370	4,369,474
장애인 활동지원	1,630,077	605,795	719,310	1,106,014	1,301,332	1,521,560	1,745,014	1,991,810	2,280,510	2,532,353	2,816,409
장애아동 가족지원	150,238	79,280	88,072	100,952	110,668	117,326	149,151	175,706	194,047	232,654	254,472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	26,950	2,818	2,842	2,759	2,731	2,744	2,764	2,513	2,544	2,589	2,646
발달 장애인 지원	199,602	9,071	8,556	38,060	77,952	128,760	189,925	255,563	356,687	422,251	509,237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	5,369	-	-	-	-	-	-	580	965	1,547	2,27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89,516	455,098	470,933	480,881	527,414	582,848	622,396	634,600	669,549	690,308	735,519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97,796	29,367	23,721	38,960	30,007	27,631	35,476	26,415	28,732	28,655	28,832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7,633	5,279	5,387	6,286	6,534	6,668	8,918	7,325	9,432	9,565	12,23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6,277	-	-	-	-	-	2,154	4,834	5,998	5,448	7,843

주: 2017~2025년 결산 기준, 2026년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② 2021-2025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현황

최근 5년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장애인돌

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또한 98% 이상의 집행률을 유지하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2021년 1조 5,216억 원에서 2025년 2조 5,324억 원으로 집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99~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역시 매년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2021년 1,288억 원에서 2025년 4,223억 원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21년 5,712억 원에서 2025년 6,90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집행률도 97.9~99.9%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21~2023년 98%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2024년 91.8%, 2025년 91.0%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2023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집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집행률이 60.9%로 나타났으며, 이후 2024년 89.0%, 2025년 98.6%로 개선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되어 대부분 9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돌봄 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액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소계		15,726,344	15,746,070	15,700,402	99.7
2021	장애인활동지원	1,506,974	1,521,619	1,521,560	100.0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26	121,136	121,136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744	2,756	2,755	100
	발달장애인 지원	152,352	128,760	128,760	100.0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82,848	582,848	571,169	97.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631	27,631	27,267	98.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6,668	6,668	6,668	1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	-	-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액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2	장애인활동지원	1,740,523	1,760,426	1,745,014	99.1
	장애아동가족지원	149,151	149,151	149,151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764	2,764	2,764	100
	발달장애인 지원	208,017	190,232	189,925	99.8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22,396	622,396	621,502	99.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476	35,476	35,230	99.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8,918	8,924	8,924	1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154	2,154	2,154	100
2023	장애인활동지원	1,991,879	1,991,828	1,991,810	100.0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06	175,706	175,706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13	2,513	2,513	100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257,063	255,563	99.4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580	580	353	60.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34,600	634,600	634,434	99.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415	26,415	26,316	99.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325	7,325	7,275	99.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834	4,834	4,683	96.9	
2024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	2,280,808	2,280,510	100.0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	194,047	194,047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44	2,544	2,544	100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358,470	356,867	99.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65	1,141	1,015	89.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69,549	669,549	668,963	99.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732	28,732	26,369	91.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432	9,432	8,878	94.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982	5,998	5,997	99.9
2025	장애인활동지원	2,532,343	2,532,428	2,532,353	100.0
	장애아동가족지원	232,654	232,654	232,654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89	2,589	2,589	100
	발달장애인 지원	402,962	428,213	422,251	98.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547	1,645	1,622	98.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90,308	690,308	690,122	99.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655	28,655	26,083	9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565	9,604	9,458	98.5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5,448	5,448	100

주: 1. (예산현액) 일반회계 예산에 추경예산도,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임

자료: 보건복지부

③ 2025회계연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2025회계연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조 9,315억 원 중 3조 9,22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99.8%로 나타났다. 2026년 예산안은 4조 3,48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돌봄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조 5,324억 원 중 2조 5,32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도 100% 집행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282억 원 중 4,22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6%를 나타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903억 원 중 6,90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를 기록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현액 287억 원 중 26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1.0%로 나타났다.

돌봄체계 개편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원 중 1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6%를 기록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54억 원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사업 규모 측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전체 장애인 돌봄사업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으나, 최근 장애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돌봄체계 개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 돌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구분	사업명	2024 결산	본예산 (당초)	최종예산 (수정)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 예산
소계			3,583,797	3,906,071	3,930,962	3,931,544	3,922,580	99.8	4,369,474
일반 회계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2,280,510	2,532,343	2,532,343	2,532,428	2,532,353	100	2,816,409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232,654	232,654	232,654	232,654	232,654	100	254,472
	돌봄서비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544	2,589	2,589	2,589	2,589	100	2,646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	356,867	402,962	427,853	428,213	422,251	98.6	509,237
	돌봄체계 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015	1,547	1,547	1,645	1,622	98.6	2,277
	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68,963	690,308	690,308	690,308	690,122	99.9	735,519
	돌봄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369	28,655	28,655	28,655	26,083	91.0	28,832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8,878	9,565	9,565	9,604	9,458	98.5	12,239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돌봄체계 개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997	5,448	5,448	5,448	5,448	100	7,843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1)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이용률이 낮거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돌봄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급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수요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반영한 공급체계 개선과 함께 돌봄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비 및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조 5,324억 2,900만 원 중 2조 5,3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은 예산현액 4,282억 1,300만 원 중 4,22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은 예산현액 2,326억 5,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세 사업 모두 집행률은 높은 수준이나, 실제 서비스 이용률, 대기자 발생, 제공기관 및 돌봄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장애인활동지원	2532343	2532343	43	42	2532429	2532353	64	10	2816,409	2816,409
발달장애인 지원	402,962	427,853	380	20	428,213	422,251	184	578	488,006	509,237
장애아동가족지원	232,654	232,654	-	-	232,654	232,654	-	-	254,472	254,472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①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제고 및 활동지원사 연계체계 개선 필요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활동지원사 연계체계와 장기 미이용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제공,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산급여,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2조 5,323억 4,300만 원 중 2조 5,32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을 이월하고 1,000만 원을 불용하였다.

최근 활동지원급여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5년 171,2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이용률은 80~8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2021년 81.3%에서 2022년 80.3%로 하락한 이후 2025년에도 8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인정받고도 실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급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정체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미이용자의 절대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약 2만 3천 명 수준이던 미이용자는 2025년 약 3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며, 급여 인정 이후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필요성을 시사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	171,204	139,104	32,100	81.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체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중 최근 6개월 동안 부여된 급여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평균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기 사용, 섭식 지원 등 상시 돌봄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급여 미사용 비율이 33.3%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상시 돌봄 필요 장애인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272.74시간으로 전체 평균(178.59시간)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돌봄 의존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단위: 시간, %)

구분		전체	상시 돌봄 필요
월평균 이용시간		178.59	272.74
지난 6개월간 급여 모두 사용여부	모두 사용	86.5	66.7
	모두 사용하지 못함	13.5	33.3
시간 남은 이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18.3	32.0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시간 제한을 두어서	11.8	12.0
	서비스 시간대가 맞지 않음	6.8	16.0
	낮 시간 동안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서	13.0	8.0
	제공 기관에서 야간 및 공휴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5.2	4.0
	입원, 시설 입소 등 부재해서	2.6	4.0
	활동지원사 전문성이 낮아서	0.8	0.0

(단위: 시간, %)

구분		전체	상시 돌봄 필요
	활동지원사와 불편해서	3.0	0.0
	총급여 시간을 몰라서	0.8	0.0
	시간이 다 필요하지 않음	9.0	4.0
	기타	28.9	20.0

자료: 황주희 외(2023).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급여 미사용 사유를 살펴보면, 상시 돌봄 필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서비스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가 16.0%, ‘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시간 제한을 두어서’가 12.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낮 시간 동안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야간·공휴일 이용 제한, 입원 및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반면 ‘활동지원사 전문성이 낮아서’라는 응답은 상시 돌봄 필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품질 문제보다는 실제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 간의 불일치, 그리고 필요한 시간대에 적절한 인력을 연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야간 돌봄, 체위 변경, 섭식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지속적이고 밀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돌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사 수급 부족으로 인해 야간·공휴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특정 시간대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며, 지역 간 공급 여건 차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적으로 충분한 급여 시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병원 입원이나 시설 이용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이후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재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순 장기 미이용자뿐 아니라 서비스 일시 중단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담과 재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확대 등 기존 활동지원체계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돌봄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주야간 개별지원, 행동지원, 긴급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특화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정책 방향은 최중증 장애인의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화서비스 확대가 실제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및 지역사회 공급체계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급여 확대만으로는 실제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중증 장애인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사 전문교육 강화, 야간·공휴일 서비스 연계 확대, 지역 간 활동지원사 수급 불균형 완화,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서비스 운영 기반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급여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단순 이용률 중심의 성과관리는 실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최중증 장애인의 지원 수준이나 서비스 연계 실효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최중증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매칭률, 장기 미이용자 감소율, 가산급여 대상자의 실제 서비스 연계율, 활동지원사 전문교육 이수율 등 서비스 연계성과 질적 수준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써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공급 및 연계체계와 관련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문돌봄 인력 확충, 유연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특화서비스와 기존 활동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 장기 미이용자 및 서비스 중단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② 발달장애인 지원: 이용률 제고 및 최종증 통합돌봄체계 강화 필요²⁾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주간, 방과후 활동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4,278억 5,300만 원 중 4,22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 57억 7,800만 원을 불용하였다.

②-1.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해소 필요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실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대기자가 많으므로 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최근 두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2021년 46.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5년에는 94.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실집행률이 2021년 25.4%에서 상승하여 2025년에는 93.9%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및 실집행현황(2021~2025년)]

(단위: 명, %)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연도	예산 편성 인원(A)	실제 이용 인원(B)	이용률 (B/A)	실 집행률	연도	예산 편성 인원(A)	실제 이용 인원(B)	이용률 (B/A)	실 집행률
2021	9,000	4,974	55.3	46.6	2021	10,000	4,005	40.1	25.4
2022	9,000	6,974	77.5	57.0	2022	10,000	5,511	55.1	39.5
2023	10,000	9,513	95.1	79.4	2023	10,000	7,305	73.1	70.1
2024	11,000	11,580	105.3	94.1	2024	10,000	8,838	88.4	88.1
2025	14,800*	13,519	91.3	94.3	2025	11,000	10,040	91.3	93.9

자료 : 보건복지부

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더욱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선정자 대비 이용률은 2021년 78.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4년 80.7%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대기자의 경우 2024년 2,762명으로 나타났다. 2025년 추경을 통하여 지원인원을 14,800명으로 늘렸으나 이용률은 82.0%에 이르고 있으며 2,976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67.3%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5년 이용률은 64.5%로 낮아졌으며 5,529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5년)]

(단위: 명, %)

연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선정자 (A)	이용자 (B)	이용률 (B/A)	대기자	선정자 (C)	이용자 (D)	이용률 (D/C)	대기자
2021	6,366	4,974	78.1	1,392	6,241	4,005	64.2	2,236
2022	9,211	6,974	75.7	2,237	8,933	5,511	61.7	3,422
2023	12,676	9,513	75.1	3,163	11,961	7,305	61.1	4,656
2024	14,342	11,580	80.7	2,762	13,142	8,838	67.3	4,304
2025	16,495	13,519	82.0	2,976	15,569	10,040	64.5	5,529

자료 : 보건복지부

이러한 현상은 공급능력을 넘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공기관에 대한 규정이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으나 신규 지정 속도가 낮아 정원 대비 실가동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이용 승인자는 많지만 실제 배치 가능한 정원이 부족해 대기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지원의 경우 학교·치료·통학이 집중되는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아 이동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와 제공기관 간 연계가 약하면 등록을 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수요들이 쌓이게 될 수 있어 이용률은 낮지만 수요가 높은 시간에는 새로운 대기자들이 계속 쌓일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유연공급을 증가, 이동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대기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②-2.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사업 기반 조속히 마련 필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참여 및 제공기관 확보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사자 및 제공기관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³⁾에게 일상생활, 자립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⁴⁾이 2024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3개의 유형이 있는데, 먼저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으로 낮활동 및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낮활동 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활동 지원을 1:1로 지원하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은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낮활동에 그룹의 형태로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
지원 인원	340명	500명	1,500명
주요 내용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3)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이란,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
제공 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주간) 10:00~17:00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법적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대기 수요와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지원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산 집행 측면에서 2025년 실집행률은 사업 도입 초기인 202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24시간 개별지원 서비스는 46.9%에서 57.1%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는 13.1%에서 48.3%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운영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공급체계의 한계를 시사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예산액	2024 실집행액	2024 실집행률	2025 예산액	2025년 실집행액	2025 실집행률
24시간 개별 1:1 지원	17,563	8,238	46.9	25,394	13,737	57.1
주간 개별 1:1 지원	14,192	6,386	45.0	17,782	11,827	68.2
주간 그룹 1:1 지원	35,552	4,671	13.1	43,986	20,622	48.3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신청자 대비 실제 선정자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신청자 417명 중 65.9%인 275명만이 서비스에 선정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신청자 42명 중 54.8%인 23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⁵⁾. 더욱이 신청자의 상당수가 최종증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급체계는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도별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 및 선정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신청자	선정자	24시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개별 1:1 선정자	1:1 선정자	1:1 선정자
서울특별시	417	275	30	76	169
부산광역시	148	110	7	30	73
대구광역시	126	93	18	30	45
인천광역시	90	60	3	21	36
대전광역시	89	60	6	15	39
광주광역시	100	71	13	5	53
울산광역시	52	39	9	12	18
경기도	353	275	25	65	185
강원특별자치도	112	86	15	11	60
충청북도	143	121	17	27	77
충청남도	123	75	9	17	49
경상북도	122	107	16	25	66
경상남도	202	111	13	21	77
전라남도	131	83	10	15	58
전북특별자치도	146	106	11	21	74
제주특별자치도	42	23	4	5	14
세종특별자치시	32	31	5	5	21
계	2,428	1,726	235	402	1,115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역시 사업추진에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인천, 대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4시간 지원 제공기관이 단 1개소에 불과한데, 지역 간 인프라 격차 개선을 위해 여러 제공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⁶⁾. 이는 주

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종증 사업의 경우 도전행동이 심하여 방문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도전행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정 내 보호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돌봄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활동 집중지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의 대체 서비스를 감안하더라도, 기관 운영 중단 시의 일정 정도 돌봄 공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시도별 최종증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기관 수	정원	기관 수	정원	기관 수	정원
서울특별시	5	20	18	72	24	139
부산광역시	2	10	6	24	11	90
대구광역시	4	20	8	32	7	91
인천광역시	1	10	5	20	9	44
대전광역시	1	10	5	20	7	40
광주광역시	4	20	4	16	5	46
울산광역시	1	10	5	20	3	25
경기도	3	30	10	40	36	219
강원특별자치도	2	20	4	16	11	74
충청북도	2	18	6	24	12	61
충청남도	2	20	8	32	8	36
경상북도	3	16	6	24	11	65
경상남도	4	20	6	24	29	112
전라남도	4	20	7	28	17	51
전북특별자치도	1	10	8	32	10	79
제주특별자치도	1	10	2	8	3	8
세종특별자치시	1	10	1	4	4	17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현황은 몇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첫째, 최종증 돌봄의 높은 난이도와 위험성으로 인해 민간 제공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도전적 행동에 따른 사고 위험과 높은 노동 강도는 기관 운영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정원 미충원이나 사업 참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1:1 밀착 돌봄이 필수적인 서비스 특성상 전문 인력 확보가

6)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주, 세종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으며 여러 개의 기관으로 분산 운영 필요성이 낮고 주간활동 집중지원, 장애인 시설 등으로 일정 정도의 돌봄 대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핵심이나,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과 보호체계가 미흡하여 인력 유입과 유지가 어려운 구조이다. 셋째, 서비스 유형 간 공급 불균형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운영 부담이 낮은 주간 그룹형 서비스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실제 수요가 높은 개별 밀착형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종사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최종증 돌봄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제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돌봄종사자 인력 확충과 집행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인상('25년 5만 원 → '26년 20만 원) 및 주간 그룹 1:1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당 인상이 종사자 확보와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증 돌봄의 특수성과 현장 부담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 기반의 유연한 정원 관리와 지역별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 등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제공기관이 설치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 돌봄을 넘어 도전적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분석 기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컨설팅 및 지도·감독 체계를 상시화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예산 부족이라기보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종사자 전문수당과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여 공급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현장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행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였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정교한 인프라 전략을 추진할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장애아동가족지원: 수요·공급 여건을 반영한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사업 운영체계 개선 필요)**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 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일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2,326억 5,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③-1.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해소 및 수요기반 예산 편성 필요 등**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자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 인원이 편성 기준을 초과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용단가 상승으로 바우처의 실질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수요 기반 예산 편성, 대기자 관리, 지원단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감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격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자치단체경상보조·민간위탁 사업이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2025년 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안 중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1,673억 8,800만 원으로, 2024년 1,384억 4,100만 원 대비 289억 4,700만 원 증가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비 기준 예산은 2020년 889억 9,900만원에서 2025년 1,673억 8,8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은 6만 1,094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제 이용 인원은 7만 8,782명에서 11만 7,182명으로 증가하였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연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국비)	88,999	94,968	100,081	127,226	138,441	167,388
예산 편성 기준 인원(A)	61,094	65,094	69,000	79,000	86,000	104,000
이용 인원(B)	78,782	84,411	91,044	97,469	103,523	117,182
초과 인원(B-A)	17,688	19,317	22,044	18,469	17,523	13,182

자료: 보건복지부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예산과 편성 기준 인원이 확대되었음에도 실제 이용 인원은 매년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에는 편성 기준 인원 6만 1,094명 대비 이용 인원이 7만 8,782명으로 1만 7,688명 많았고, 2022년에는 그 차이가 2만 2,044명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편성 기준 인원 10만 4,000명 대비 이용 인원이 11만 7,182명으로, 실제 이용 인원이 1만 3,182명 많았다. 예산 확대에 따라 편성 기준 인원과 이용 인원 간 차이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실제 이용 규모가 편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대기 현황에서도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확인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인원은 2024년 5,451명에서 2025년 4,392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대기 인원은 1,0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서비스 대기현황]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전체 대기 인원	5,451	4,392	△1,059
3개월 미만	2,811	2,618	△19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62	1,095	133
6개월 이상~1년 미만	1,143	531	△612
1년 이상	535	148	△387
6개월 이상 합계	1,678	679	△999

주: 대기자는 등록 장애인 미등록장애인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재구성

특히 6개월 이상 1년 미만 대기자는 2024년 1,143명에서 2025년 531명으로, 1년 이상 대기자는 535명에서 148명으로 감소하여 장기 대기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5년에도 전체 대기자는 4,392명,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는 679명에 이르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기기간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지연을 넘어 서비스의 적시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장기 대기 규모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대기자가 존재하는 만큼 잔여 대기자의 규모와 대기기간, 지역별 분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급 불균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우처 지원 단가와 실제 이용단가 간의 관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재활서비스의 편성 기준 바우처 지원 단가는 2022년 월평균 18만원이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월평균 2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1회 평균 이용단가는 2022년 4만 3,583원에서 2023년 4만 9,396원, 2024년 5만 1,546원, 2025년 5만 3,795원으로 상승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단가 및 이용단가]

(단위: 천원,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편성 기준 바우처 지원 단가 ⁸⁾ (천원)(A)	월평균 180	월평균 200	월평균 200	월평균 200
이용 단가(원) (1회 평균)(B)	43,583	49,396	51,546	53,795
이용가능횟수(A/B)	4.1	4.0	3.9	3.7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1회 평균 이용단가는 4만 3,583원에서 5만 3,795원으로 약 23.4%(1만 212원) 상승하였다. 반면 바우처 지원단가는 2023년 이후 월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동일한 지원금으로 이용할

8) 발달재활서비스 산출내역 : 167,388백만원
 = 167,232백만원(바우처) + 156백만원(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 운영비)
 - 바우처지원 : 167,232백만원 = 104,000명 × 200천원 × 12개월 × 67%

수 있는 서비스 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바우처 지원단가와 이용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이용 가능 횟수는 2022년 4.1회에서 2025년 3.7 회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원단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단가가 상승할 경우 바우처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횟수를 줄이거나, 기존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종합하면, 발달재활서비스는 예산 규모와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 인원은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대기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바우처 지원단가는 2023년 이후 월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와 본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달재활서비스는 단순한 예산 총량 확대를 넘어 실제 수요와 이용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예산 편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산정 시에는 등록장애아동 수와 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 규모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자 증가 추이, 지역별 대기자 수 및 대기기간,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분포 등 수요·공급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 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대기 현황과 공급 기반을 연계하여 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단가 상승이 이용자의 실제 이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 본인부담 수준, 소득계층별 이용 지속률, 서비스 유형별 단가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바우처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2.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잠재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 규모와 집행률이 낮고, 제공기관·제공인력 기반도 발달재활서비스 대비 현저히 부족하여 대상자 발굴, 지역별 공급 격차 해소, 기관 참여 유인 강화 등 수요·공급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언어발달지원 내역사업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부 또는 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 등으로 둔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은 6억 5,100만 원이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장애부모 가정의 비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양육 역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7억 9,600만 원에서 2022년 6억 5,100만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다. 편성기준 인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50명으로 동일하다. 반면 집행행액은 2022년 5억 9,400만 원에서 2025년 3억 8,5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집행률은 2021년 64.6%, 2022년 91.2%, 2023년 71.0%, 2024년 62.5%, 2025년 60.0%로 나타났다. 2022년을 제외하면 집행행률은 대체로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수 역시 2021년 435명에서 2024년 365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실제 이용자 수는 328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인 450명에 미달하고 있어, 사업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편성 금액(A)	796	651	651	651	651
실집행액(B)	514	594	462	407	391
실집행률(B/A)	64.6	91.2	71.0	62.5	60.0
편성기준 인원	450	450	450	450	450
이용자 수	435	405	400	365	328

자료: 보건복지부

잠재적 지원 대상 규모와 실제 이용 규모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을 부모 중 한 명으로 둔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1만 9,610명으로 추정된다. 물

론 잠재 대상 아동 전체가 실제 서비스 이용 필요 아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 실제 이용자가 328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 규모에 비해 이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업 인지도, 대상자 발굴체계, 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급 기반 측면에서도 제약 요인이 확인된다. 2025년 기준 언어발달지원 제공 기관은 159개소, 제공인력은 269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6개소, 서울 21개소, 충남 14개소, 광주 13개소 순으로 제공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제 결제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서비스와 비교하면 공급 기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843개소, 제공인력은 1만 4,183명인 반면, 언어발달지원은 제공기관 159개소, 제공인력 269명에 불과하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대비 제공기관은 5.5%, 제공인력은 1.9%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활동 제공기관 수	활동 제공인력 수	활동 제공기관 수	활동 제공인력 수
서울특별시	618	2,835	21	34
부산광역시	245	1,099	3	7
대구광역시	242	1,070	5	9
인천광역시	307	1,238	7	11
대전광역시	121	509	5	13
광주광역시	130	584	13	30
울산광역시	100	392	5	6
경기도	1,092	4,797	46	63
강원특별자치도	168	528	-	-
충청북도	144	499	6	8
충청남도	240	785	14	21
경상북도	328	1,072	9	16
경상남도	314	1,022	9	12
전라남도	199	748	5	12

(단위: 개소, 명)

시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활동 제공기관 수	활동 제공인력 수	활동 제공기관 수	활동 제공인력 수
전북특별자치도	174	617	8	19
제주특별자치도	73	320	3	8
세종특별자치시	76	228	-	-
합계(중복제거)	2,843	14,183	159	269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순한 수요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잠재적 지원 대상은 일정 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이용 규모는 제한적이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대상자 발굴체계 미흡,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부족, 지역별 접근성 제약 등 수요·공급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언어발달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는 정책 대상은 다르지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갖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언어발달지원은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언어·청능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기관과 전문인력 기반은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이용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지원 수준 및 기관 참여 유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집행 부진의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장애부모를 둔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실제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 규모와 지역별 분포, 서비스 이용 의향, 미이용 사유 등을 파악하여 잠재 수요와 실제 수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 및 안내 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이 아닌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비해 대상 가구의 사업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록 정보와 아동 연령 정보를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고, 읍·면·동 복지상담,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행정자료만으로는 대상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복지기관을 통한 발굴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어 발달지원 제공기관이 부재한 지역이 존재하고 전체 제공인력도 269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언어발달지원 병행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단가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제공기관 확보 기준을 마련하거나 인접 지역 연계, 순회형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일부 서비스 영역 및 전문인력 기반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 수준 차이가 클 경우 제공기관 참여와 이용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업의 지원 단가와 실제 이용단가를 비교·분석하고, 필요 시 단계적인 지원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과 제한적인 이용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 대상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 간 공급 격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는 실제 서비스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상자 발굴 체계 강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확충, 지원단가 적정성 검토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모두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예산과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활동지원사 부족, 제공기관 및 전문인력 미흡, 대기자 발생 등 공급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와 공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돌봄인력 및 제공기관 확충, 대기자 및 장기 미이용자 관리, 신규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체계 개선 및 돌봄 인프라 강화 필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 돌봄 인프라이나 일부 신규 돌봄사업의 실적 부진과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거주시설의 기능 변화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와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단순 보호 중심에서 의료·돌봄·자립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활용한 신규 돌봄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 또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돌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능보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신규 돌봄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및 실효성 제고 필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24시간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2만 816명의 입소 장애인과 1만 8,3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에 따라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의료·돌봄·자립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8조
사업목적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연령	제한없음
	소득기준	제한없음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내용	24시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자 현황	20,816명
관련 인력 현황	18,383명
사업 추진체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조금지출)</p> <p>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 시·군·구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p> <p>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 시·군·구 ← (집행실적 보고 및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p> </div>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6,903억 800만 원 중 6,90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9%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90,308	690,308	-	-	690,308	690,122	31	155	735,519	735,51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84,550	684,550	-	-	684,550	684,550	-	-	728,930	728,930
장애인 거주시설 IoT·AI활 용 물품사업	442	442	-	-	442	442	-	34	442	442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558	558	-	-	558	558	-	-	729	72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①-1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장애인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은 기술기반 돌봄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참여시설 모집 부진 등으로 사업 수요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향후 신규 디지털 돌봄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수요를 충분히 검증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입소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의 유지 보수비 및 통신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설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의 설치 목표는 총 518개소였으나 실제 설치는 224개소에 그쳐 목표 대비 43.2%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는 목표 85개소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2차년도는 목표 170개소 중 85개소(50.0%), 3차년도는 목표 263개소 중 54개소(20.5%)만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월액과 불용액도 발생하였다. 특히 3차년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모집 미달로 20억 3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설치 현황 및 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020.8.7. ~2021.6.30.)	2차년도 (2021.7.1. ~2022.6.30.)	3차년도 (2022.7.1. ~2023.12.31.)
목표 개소 수	518	85	170	263
달성 개소 수	224	85	85	54
예산	6,900	1,148	2,295	3,457
이월액	-	398	581	3,297 ¹⁾
불용액	-	-	296 ²⁾	2,030 ³⁾

주: 1) 3차년도 IoT 시범사업(센서 구매 설치 3차) 용역발주 업체 선정과 최종 물품계약 체결 이후 설치착수기간 6개월 정도 예상되어 사업기간 6개월(2023.12.31.) 연장하고 예산 이월
 2) 시범사업 장애인거주시설 모집 미달(85개 설치/170개 목표)로 센서 구매 설치용역 계약금 변경 및 출장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296백만원) 발생
 3) 시범사업 장애인거주시설 모집 미달(54개 설치/263개 목표)로 불용액(2,030백만원) 발생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시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준 실집행률은 73.2%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서울(0%), 부산(59.3%), 광주(65.2%), 경기(67.4%) 등 일부 지역의 집행률이 평균을 크게 하회한 반면, 충남과 제주(각 100%)는 전액 집행하는 등 지역 간 집행실적 편차가 발생하였다.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 사업 시도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 도 이월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실집 행률 (C/A)
	본예 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 액 (C)			
지방자치단체	112	112	78	78	-	78	57	78	57	-	21	73.2
서울	7.7	7.7	7.7	7.7		7.7	-	7.7	-		7.7	0
부산	7.5	7.5	7.5	7.5		7.5	4.4	7.5	4.4		3.0	59.3
대구	3.2	3.2	3.2	3.2		3.2	2.4	3.2	2.4		0.8	74.2
인천	9.8	9.8	9.8	9.8		9.8	8.9	9.8	8.9		0.9	91.0
광주	2.9	2.9	2.9	2.9		2.9	1.9	2.9	1.9		1.0	65.2
대전	4.0	4.0	4.0	4.0		4.0	3.6	4.0	3.6		0.4	89.4
울산	1.2	1.2	1.2	1.2		1.2	1.1	1.2	1.1		0.1	93.8
경기	6.5	6.5	6.5	6.5		6.5	4.4	6.5	4.4		2.1	67.4
충북	7.2	7.2	7.2	7.2		7.2	6.2	7.2	6.2		1.0	86.9
충남	5.3	5.3	5.3	5.3		5.3	5.3	5.3	5.3		0	100
전북	8.6	8.6	8.6	8.6		8.6	7.5	8.6	7.5		1.1	86.5
전남	3.9	3.9	3.9	3.9		3.9	3.2	3.9	3.2		0.7	80.3
경북	4.0	4.0	4.0	4.0		4.0	2.9	4.0	2.9		1.1	73.3
경남	2.5	2.5	2.5	2.5		2.5	1.9	2.5	1.9		0.6	76.5
제주	1.8	1.8	1.8	1.8		1.8	1.8	1.8	1.8		0	100
강원	2.1	2.1	2.1	2.1		2.1	1.8	2.1	1.8		0.3	83.5
유보액	33.6	33.6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과 현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시간

상시적 대면 돌봄이 이뤄지는 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사업 실효성이 낮았으며, 센서 오작동 및 반복적인 응급알림 발생, 장비 사용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 장애 정도, 시설 규모 및 운영환경이 다양하여 동일한 IoT·AI 기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규 디지털 돌봄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조사와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2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필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최종증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과 의료인력 운영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운영모델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종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간호인력 확충과 의료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에는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로템’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개요]

<p>■ 시설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업 자: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시설종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 설 명: 로템(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81) -이 용 자: 정원 30 / 현원 30 -종 사 자: 정원 41 / 현원 40('25.말 기준, 간호사 4명 및 돌봄인력 6명 총원 운영) <p>자료: 보건복지부</p>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운영비 예산현액 1억 5,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 원을 불용하여 실적행률이 5.7%에 그치는 등 집행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능보강비 예산 4억 원은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시설 개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 도 이월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실집 행률 (C/A)
			본예 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 액 (C)			
330	01	지방자치단체	158	158	158	158	-	158	9	158	9	-	149	5.7
330	03	지방자치단체	400	400	400	400	-	400	-	400	-	400	-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해 간호사 4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 등 총 10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현황]

직위	총원인력	근무형태	업무
간호사	4명	상근 24시간 교대근무	의사 의료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경장영양식 지원 및 위물관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상처 드레싱 등
생활 재활교사	6명	상근 24시간 교대근무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식사, 신변 처리 등)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실제 채용 인원은 간호사 1명, 생활재활교사 3명 등 총 4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인건비 1억 5,800만 원 중 약 1,900만 원만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약 12% 수준에 머물렀다.9)

[의료집중형 운영 관련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집행 현황]

기준월	종사자 채용현황			인건비 집행현황	비고
	합계	간호사	생활재활교사		
채용 목표	10명	4명	6명		
25년 12월까지 채용 현황	4명	1명	3명	18,772,960원	국고 50%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시범사업 기관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설계용역 및 인력 채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5년 7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이후 수정사업계획 승인,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설계용역 계약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추경 편성 일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지연과 건축설계 용역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기능보강 사업비 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추가 인력 채용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9) 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5호봉 기준으로 추가 필요인력 간호사 및 생활재활교사 각 1인당 연간 인건비 산정, 연간 10명 분 총 필요액 373백만원에서 6개월 치 반영

[2025년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 추진 현황]

일정	주요내용
'25.7.30.	2025년 의료집중형 시범사업 선정평가 결과 통보
'25.8.25.	시범사업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25.9.2.	국고보조금 교부(복지부→지자체)
'25.9.6.	디자인 용역 계약체결 및 건축설계 계약 미체결
'25.12.22.	국, 시비 보조금 교부 완료, 기능보강 사업비 4억 원 이월 요청 * 지자체 추경예산 일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지연 및 건축설계 용역기간(3~4 개월) 소요에 따른 사고이월

주: 2025년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동 사업은 별도의 상근 의사를 추가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튜브섭식’, ‘공기흡입산소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의료지도 하에 개별 지시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25.1.)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동 사업은 최종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의료인력별 역할과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매뉴얼」 연구용역(~2026.9.)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동 사업은 최종증 장애인의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다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채용과 기능보강 사업이 지연되고, 별도 상근 의사 없이 기존 의료인력 체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향후 본사업 추진 시에는 의료인력 운영체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의료기관 연계체계 및 운영모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 지연 최소화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필요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나, 최근 실행률이 50~60% 수준에 머물고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설계·인허가·공사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1,516개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85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34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9개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8조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지원 대상	연령	제한없음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 내용		노후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지원
대상자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1,516개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85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34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9개소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17개소
사업 추진체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교부) 17개 시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지출) 시·군·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복지법인 및 시설</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집행실적 보고 및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17개 시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div> </div>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현액 286억 5,500만 원 중 260억 8,3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1.0%로 나타났다. 전체 집행률은 90%를 상회 하였으나 일부 세부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별 집행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655	28,655	-	-	28,655	26,083	-	2,572	28,832	28,832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5,148	5,148	-	-	5,148	5,127	-	21	7,993	7,993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보강	1,350	1,350	-	-	1,350	1,345	-	5	1,100	1,100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9,190	9,190	-	-	9,190	8,920	-	270	7,997	7,997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	170	170	-	-	170	149	-	21	170	17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328	1,328	-	-	1,328	1,328	-	-	1,390	1,390
공립장애인 복합지원시설 건립	2,874	2,874	-	-	2,874	619	-	-	2,255	2,255
발달· 중증장애인 공립복합 허브센터 건립	4,681	4,681	-	-	4,681	4,681	-	-	4,016	4,016
장애인가족 공립복합 허브센터 건립	3,750	3,750	-	-	3,750	3,750	-	-	6,000	6,000
사업 운영비	164	164	-	-	164	164	-	-	166	16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적행률은 2021년 85.6%에서 2022년 55.1%, 2023년 51.9%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2024년 64.1%, 2025년 67.2%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 되고 있다. 또한 이월액은 2021년 27억 4,400만 원에서 2025년 141억 9,5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27,631	27,631	27,267	27,267	-	27,267	23,337	2,744	1,186	85.6
2022	35,476	35,476	35,230	35,230	2,744	37,974	19,400	17,380	1,194	55.1
2023	26,415	26,415	26,316	26,316	9,369	35,685	18,503	16,755	427	51.9
2024	28,732	28,732	26,369	26,369	12,143	38,512	24,668	13,528	316	64.1
2025	28,655	28,655	26,083	26,083	20,121	46,204	31,037	14,195	972	67.2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사업별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내역사업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적행률은 61.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59.7%에 그쳤으며, 집행잔액도 각각 10억 5,600만 원, 6,000만 원 발생하였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역시 실적행률이 84.9%에 머물고 17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은 실적행률이 98.6%로 나타나 사업별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11,173	8,438	6,000	5,720	5,148
	예산현액(A)	10,928	10,699	5,999	5,631	5,845
	실집행액(B)	8,060	8,152	3,958	5,599	4,692
	실집행률(B/A)	73.8	76.2	66.0	99.4	80.3
	집행잔액(A-B)	2,868	2,547	2,041	32	1,15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	1,778	2,356	1,645	1,350
	예산현액(A)	-	1,527	2,426	1,645	2,734
	실집행액(B)	-	1,345	2,268	543	1,678
	실집행률(B/A)	-	88.1	93.5	33.0	61.4
	집행잔액(A-B)	-	182	158	1,102	1,0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14,153	11,298	9,458	10,211	9,190
	예산현액(A)	14,055	11,260	9,450	10,203	11,283
	실집행액(B)	13,600	8,012	7,577	7,220	9,576
	실집행률(B/A)	96.8	71.2	80.2	70.8	84.9
	집행잔액(A-B)	455	3,248	1,873	2,983	1,70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379	303	242	218	170
	예산현액(A)	379	303	242	178	149
	실집행액(B)	368	261	239	173	89
	실집행률(B/A)	97.1	86.1	98.8	97.2	59.7
	집행잔액(A-B)	11	42	3	5	6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	예산액	1,157	1,174	1,192	1,292	1,328
	예산현액(A)	1,157	1,174	1,195	1,296	1,328
	실집행액(B)	1,157	1,174	1,195	1,284	1,309
	실집행률(B/A)	100.0	100.0	100.0	99.1	98.6
	집행잔액(A-B)	-	-	-	12	19
공립장애인복합 수련시설건립	예산액	100	6,703	4,001	5,000	2,874
	예산현액(A)	1,289	6,803	10,774	15,660	9,450
	실집행액(B)	1,189	30	113	6,829	8,831
	실집행률(B/A)	92.2	0.4	1.0	43.6	93.4
	집행잔액(A-B)	100	6,773	10,661	8,831	619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예산액	600	4,894	-	-	4,681
	예산현액(A)	600	5,369	-	-	10,075
	실집행액(B)	125	481	-	172	2,357
	실집행률(B/A)	20.8	9.0	-	-	23.4
	집행잔액(A-B)	475	4,888	-	△172	7,718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예산액	-	500	1,000	500	3,750
	예산현액(A)	-	500	1,500	1,983	4,676
	실집행액(B)	-	-	17	1,057	673
	실집행률(B/A)	-	-	1.1	53.3	14.4
	집행잔액(A-B)	-	500	1,483	926	4,003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운영비	예산액	69	89	216	166	164
	예산현액(A)	69	89	201	166	164
	실집행액(B)	48	88	201	165	164
	실집행률(B/A)	69.6	98.9	100.0	99.4	100.0
	집행잔액(A-B)	21	1	-	1	-
집행잔액 합계		3,930	18,181	16,219	13,720	16,335

주: 1. 국비 기준

2. 예산현액은 예산 교부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시설유형별 기능보강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전반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월 규모를 합산하면 2022년 51억 1,500만 원, 2023년 41억 7,000만 원, 2024년 45억 4,700만 원, 2025년 30억 2,7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액은 2022년 24억 7,800만 원, 2023년 16억 2,500만 원, 2024년 7억 1,800만 원, 2025년 7억 1,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합계	8,480	2,478	5,999	1,625	5,626	718	5,127	710
서울	344	63	380	119	282	43	246	53
부산	221		80		70		24	
대구	693		207		486	7	193	40
인천	680	579	389		339		803	
광주	349	167	156		57		179	
대전	693	100	220	209	525		343	
울산	239		245		115		136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세종	-		-		-		-	
경기	1,433	398	619		1,074	246	992	72
강원	441	110	145	58	586		548	225
충북	187	300	198	99	288	189	109	
충남	481	210	557		270		351	
전북	547	132	654	620	333	25	213	
전남	201	25	737	311	249	110	61	11
경북	1,031	271	544	209	405	98	333	200
경남	487		419		454		475	109
제주	453	124	449		92		119	

주: 1) ()안의 금액은 재이월액으로, 보건복지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함.

자료: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2025년 이월액은 12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등에서는 이전 연도에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합계	11,297	2,493	9,450	1,543	10,203	2,363	9,189	1,247
서울	752	76	719	-	700	-	800	85
부산	265	-	130	-	391	-	172	-
대구	224	10	392	345	141	-	135	-
인천	843	207	454	-	278	-	418	-
광주	614	-	358	-	343	-	521	-
대전	239	15	459	-	513	-	140	-
울산	485	122	114	17	45	-	540	-
세종	45	-	-	-	46	26	60	15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경기	2,305	112	1,099	375	966	12	1,256	-
강원	1,133	244	368	-	1,170	166	1,011	15
충북	334	-	838	-	1,503	873	494	-
충남	716	257	484	184	575	205	670	-
전북	1,115	803	15	-	630	-	739	304
전남	363	247	1,431	502	787	618	971	678
경북	199	-	822	-	589	414	508	-
경남	980	12	1,278	120	930	-	419	-
제주	685	388	489	-	596	49	335	150

주: 1) ()안의 금액은 재이월액으로, 보건복지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함.

자료: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25년의 경우 총 10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강원도는 3억 4,900만 원, 충청북도는 6억 9,200만 원을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도에도 전라북도 2023년 5억 2,400만 원, 전라남도 2023년 3억 2,100만 원, 2024년 6억 7,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합계	1,525	144	2,280	1,002	1,646	1,389(321)	1,344	1,070
서울	197	-	113	-	29	-	43	-
부산	39	-	22	-	17	-	0	-
대구	56	-	34	-	81	-	17	-
인천	90	-	64	-	35	-	11	-
광주	36	-	6	-	4	-	30	-
대전	31	-	61	-	24	-	60	-
울산	54	-	38	-	3	-	17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2025년 보조금	2025년 이월액
세종	41	-	30	-	14	-	12	-
경기	379	78	439	126	88	-	186	24
강원	52	-	125	-	47	27	379	349
충북	15	-	34	-	695	692	11	692(692)
충남	132	68	61	3	13	-	104	-
전북	117	-	623	524	35	-	19	-
전남	110	-	349	321	354	670(321)	103	5
경북	44	-	91	28	16	-	40	-
경남	93	-	139	-	152	-	194	-
제주	39	-	51	-	39	-	118	-

주: 1) ()안의 금액은 재이월액으로, 보건복지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이월은 기능보강 사업의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신축·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의 특성상 설계, 인허가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기회 또한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과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적인 집행잔액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돌봄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총사업비 사업은 설계·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관리와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돌봄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및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설계·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 대상 사업 개요]

<p>□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26(舊인화학교 부지) ○ 사 업 비: 34,545백만원 (국비 17,272.5 , 지방비 17,272.5) ○ 사업규모: 부지17,973㎡, 연면적 11,584.94㎡(2개동) ○ 사업기간: 2019. ~ 2026.2월 ○ 사업내용: 숙박·회의·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심신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개념에 힐링, 치유를 접목시켜 복합수련시설로 설치 - 인권기념관 및 장애체험교육장 등 장애인 인권신장과 장애인식 개선의 장 활용 <p>□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을 승언리 18-1 ○ 사 업 비: 총 28,927백만원 (국비 13,790, 지방비 15,137) ○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6,542㎡ ○ 사업기간: 2021년~2027년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 및 휴식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함 <p>□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 힐링센터 건립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30-92 ○ 사 업 비 : 총 29,000백만원 (국비 14,500, 지방비 14,500) ○ 사업규모 : 부지 25,000㎡, 건축연면적 6,628㎡(지상 2층, 지하 1층) ○ 사업기간 : 2022년~2027년 ○ 사업내용 : 장애인심신수련을 지원하고, 돌봄 부담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휴식제공을 위한 복합 힐링센터 건립
--

자료: 보건복지부

총사업비 대상 사업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은 2022~2023년 각각 67억 7,300만 원, 106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중증 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도 2022년 이후 매년 4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대상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내역사업명							
공립장애인복합수련 시설 건립	1,590 [-]	122 [523]	100 [1,189]	6,703 [30]	4,001 [113]	5,000 [6,829]	619 [8,832]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	-	500 [25]	4,894 [481]	- [400]	- [173]	4,681 [1,278]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	-	-	-	500 [-]	1,000 [17]	500 [1,057]	3,750 [673]

주: [] 안의 숫자는 당해연도 실적행금액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총사업비 대상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을 살펴보면, 3개 사업 모두 당초 목표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에야 착공하였다.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9월에야 착공하였다.

또한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설계용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2022년 12월 설계용역 완료 이후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6월 착공하였으며,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도 설계용역 완료 이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총사업비 사업은 설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약 3년 지연되었으며,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과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대상 사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예산액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공립 장애인 복합수련 시설 건립	2019	1,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4)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19. 5.~10.)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 수립 	
	2020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6.) 건축기획 심의 등 ○('20.12.~'22.12.) 설계용역 추진 	
	2021	100	○('20.12.~'22.12.) 설계용역 추진	
	2022	6,7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22.12.) 설계용역 추진 ○('22.1.~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 인허가 ○('22.5.~12.) 설계 적정성 및 단가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1.~7.) 총사업비 조정심의(기획재정부) ○('23.9.)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조달청) 	
	2024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1.~5.)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추진 ○('24.6.) 건축공사 착공: 	
	2025	619	○('25.1.~12.) 공사 추진	
	2026	-	○('26.2.) 건립공사 준공	
발달중증 장애인 공립복합 힐링센터 건립	2021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11.) 건축 기획업무, 공공건축심의, 설계 사전 준비 ○('21.12.~'22.2.) 설계 공모 및 선정 	
	2022	4,894	○('22.3.~7.) 설계 착수 및 자문위원회 개최	
	2023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4.)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및 힐링센터 중간설계 완료 ○('23.9.)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2.) 총사업비 1차 조정 완료 ○('24.4.)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4.7.) 조달청 감리비 검토 완료, 분할측량 완료 	
	2025	4,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1.) 총사업비 2차 조정 완료 ○('25.3.) 총사업비 3차 조정 완료 ○('25.4.) 실시설계 완료 ○('25.5.) 총사업비 4차 조정 요청 ○('25.9.) 시공사 계약 및 착공 	
	2026	4,016	○('26.1.~12.) 공사 추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예산액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장애인가족 공립복합 힐링센터 건립	2022	500	○('22.3.~'23.6.)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 기획용역 ○('22.10.) 지방재정투자 심사(조건부 승인)
	2023	1,000	○('23.3.) 부지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3.9.)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4	500	○('24.3.)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선정 ○('24.4.)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5	3,750	○('25.11.)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5.12.) 공사 공모
	2026	6,000	○('26.6.) 시공사 선정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사업은 각 단계가 종료된 이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 3개 사업은 설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추진 단계와 실제 집행 간 시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총사업비 대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립장애인 복합수련 시설 건립	예산현액(A)	1,590	1,712	1,289	6,803	10,774	15,660	9,450
	실집행액(B)	-	523	1,189	30	113	6,829	8,831
	집행잔액(A-B)	1,590	1,189	100	6,773	10,661	8,831	619
발달중증 장애인 공립복합힐링 센터 건립	예산현액(A)	-	-	500	5,369	4,888	4,488	10,075
	실집행액(B)	-	-	25	481	400	173	2,357
	집행잔액(A-B)	-	-	475	4,888	4,488	4,315	7,718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 힐링센터 건립	예산현액(A)	-	-	-	500	1,500	1,983	4,676
	실집행액(B)	-	-	-	0	17	1,057	673
	집행잔액(A-B)	-	-	-	0	1,483	926	4,003
집행잔액 합계		1,590	1,189	575	11,661	16,632	14,072	12,340

주: 국비 기준, '25년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총사업비 대상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별 집행실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연도말 기준 집행잔액은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 6억 1,900만원, 발달·중증장애인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 77억 1,800만 원, 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 40억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총사업비 사업에서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총사업비 대상 사업 실집행 및 집행잔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예산 편성액	실집행액							2025 연도말 기준 집행 잔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립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 건립	2019	1,590	-	523	1,067	-	-	-	-	-
	2020	122	-	-	122	-	-	-	-	-
	2021	100	-	-	-	30	70	-	-	-
	2022	6,703	-	-	-	-	43	6,660	-	-
	2023	4,001	-	-	-	-	-	169	3,832	-
	2024	5,000	-	-	-	-	-	-	5,000	-
	2025	619	-	-	-	-	-	-	-	619
	합계	18,135	0	523	1,189	30	113	6,829	8,832	619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예산 편성액	실집행액							2025 연도말 기준 집행 잔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발달중증 장애인 공립복합 힐링센터 건립	2021	500	-	-	25	475	-	-	-	-
	2022	4,894	-	-	-	6	400	173	1,278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4,681	-	-	-	-	-	-	-	7,718
	합계	10,075	-	-	25	481	400	173	1,278	7,718
장애인 가족 공립 복합힐링 센터 건립	2022	500	-	-	-	-	17	483	-	-
	2023	1,000	-	-	-	-	-	574	426	-
	2024	500	-	-	-	-	-	-	247	253
	2025	3,750	-	-	-	-	-	-	-	4,003
	합계	5,750	0	0	0	0	17	1,057	673	4,003

주: 국비 기준, 2025년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사업 지연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시설 이용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공사비 상승, 추가 재정투입 및 사업효과 감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총사업비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공정관리와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총사업비 협의·공사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 돌봄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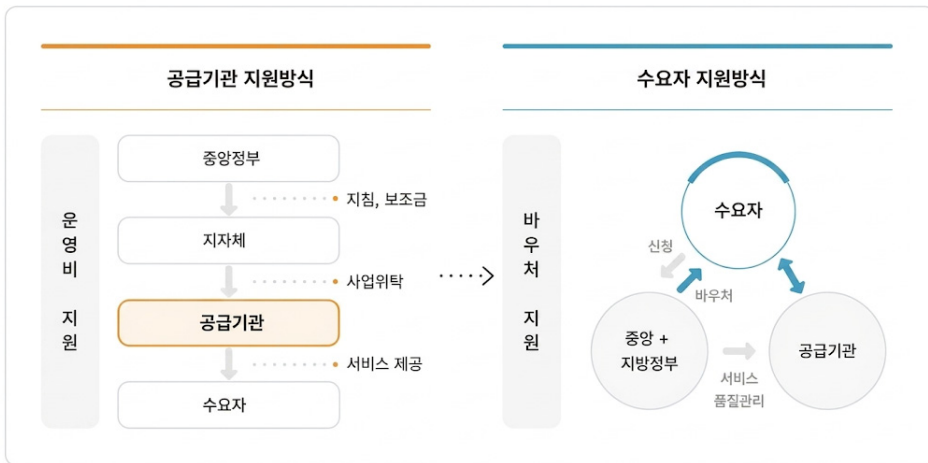
종합하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다만 기능보강 사업 전반에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총사업비 사업은 설계 및 공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과 집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증가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필요¹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최근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부 사업과 지역에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고위험 사업 및 지역 중심의 정밀관리, 환수·제재 실효성 강화, 제공기관 책임성 제고, 서비스 실질 중심 품질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현금이나 지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바우처 카드, 모바일 결제 앱 등)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직접 구매력을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방식으로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복지 전달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바우처제도와 공급자 지원방식의 차이점]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현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노인 및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임신부 및 아동분야,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인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16,047개의 제공기관에서 257,402명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47,471명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현황(2025)]

(단위: 명, 개소, 억원)

사업명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예탁액 ¹⁾	집행액
계	847,471	16,047	257,402	50,634	48,351
장애인활동지원	148,027	1,171	151,871	36,638	35,48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76,261	1,227	32,942	2,553	2,54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910	382	4,765	326	26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73,303	5,685	20,849	2,611	2,416
발달재활서비스	117,182	2,843	14,183	2,427	2,150
언어발달지원사업	328	157	266	10	6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1,407	262	411	19	14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14,194	811	10,796	3,576	3,360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1,045	561	6,030	962	88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81,387	1,702	4,265	408	396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13,664	832	7,317	550	480
긴급돌봄 지원사업	2,961	197	2,121	45	40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802	217	1,586	509	309

주: 전자바우처 예탁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할 대금을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 지방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예탁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면 이후 제공기관으로 대금을 송금함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2021년 252,490건에서 2025년 941,905건으로 증가하였고, 적발액도 같은 기간 73억 3,500만원에서 478억 7,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건수 기준 약 3.7배, 금액 기준 약 6.5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점점 강화와 데이터

기반 탐지 확대 등의 영향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전자바우처 결제·제공·정산 과정에서 관리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 선택권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시간, 결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건수 (결제건기준)	부정수급 (적발)액	회수결정건수 (통지건기준)	회수결정액수*
2021	총 계	252,490	7,335	74	724.4
	발달재활	12,220	294	5	6.8
	산모신생아	-	-	1	0.5
	언어발달지원	-	-	1	2.2
	장애인활동지원	59,001	3,122	53	598.8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81,269	3,919	14	116.1
2022	총 계	260,084	11,734	61	991.0
	발달재활	12,141	400	2	4.4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891	68	-	
	장애인활동지원	125,313	7,889	48	713.9
	주간활동서비스	7,080	5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14,659	2,871	11	272.7
2023	총 계	356,116	18,537	99	2,344.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50	13	-	
	발달재활	16,800	543	4	97.9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9,793	632	2	42.7
	장애인활동지원	275,451	15,289	80	1,837.0
	주간활동서비스	11,578	81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41,944	1,245	13	367.3
2024	총 계	620,568	29,707	83	2,878.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4,365	120	1	0.0
	발달재활	44,227	1,506	1	3.4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5	-	-	
	산모신생아	5,685	408	1	0.2
	장애인활동지원	414,999	22,474	68	2,632.6
	주간활동서비스	16,076	1,139	2	4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35,211	4,060	10	196.6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건수 (결제건기준)	부정수급 (적발)액	회수결정건수 (통지건기준)	회수결정액수*
2025	총 계	941,905	47,878	110	3,251.5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74	4	2	7.1
	발달재활	89,184	3,214	3	24.3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	-	1	2.0
	장애인활동지원	561,509	34,637	92	2,954.9
	전국민마음투자	9,455	453	-	-
	주간활동서비스	30,014	2,793	2	218.9
	지역사회서비스투자	251,669	6,777	10	44.3

주: 당해연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지된 환수결정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부정수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2025년 기준 전체 부정수급 건수 941,905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은 561,509건으로 약 59.6%를 차지하였고, 적발액은 전체 478억 7,800만원 중 346억 3,700만원으로 약 72.3%에 달하였다. 회수결정액 역시 전체 32억 5,150만원 중 29억 5,49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방문형·대인서비스 특성상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허위결제나 시간 부풀리기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정교한 예방·점검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증가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41,944건에서 2025년 251,669건으로 증가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역시 2021년 12,220건에서 2025년 89,184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사업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관 유형이 다양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실제 제공 여부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 결제자료 확인을 넘어 서비스 제공기록, 제공인력 자격, 이용자 만족도, 실제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적발액과 회수결정액 간의 격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2025년 기준 전체 적발액은 478억 7,800원이지만 회수결정액은 32억 5,150만원으로

약 6.8%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적발 이후 조사, 소명, 행정처분, 환수결정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적발 이후 환수와 제재 절차가 충분히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은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와 책임 부과까지 이어질 때 확보될 수 있다.

지역별 자료에서도 관리체계의 정교화 필요성이 확인된다. 2025년 기준 경기도는 부정수급 건수 221,224건, 적발액 113억 6,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고, 서울특별시는 142,236건, 112억 1,700만원으로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의 적발액을 보였다. 부산광역시는 103,988건, 51억 5,100만원, 충청남도는 102,441건, 45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부정수급현황(2025년)]

(단위: 건, 백만원)

지역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건수 (결제건기준)	부정수급 (적발)액	회수결정건수 (통지건기준)	회수결정액수*
-	총합계	941,905	47,878	110	3,251.5
강원도	소계	9,903	949	-	-
	장애인활동지원	249	14	-	-
	주간활동	9,654	935	-	-
경기도	소계	221,224	11,360	21	592.5
	가사간병	5	-	1	0.1
	발달재활	6,864	279	-	-
	장애인활동지원	155,478	8,608	18	591.5
	주간활동	8,133	1,030	-	-
	지역사회서비스	50,744	1,442	2	0.9
경상남도	소계	3,825	129	4	54.1
	발달재활	-	-	1	19.0
	장애인활동지원	3,825	129	3	35.1
경상북도	소계	88,766	2,113	-	-
	발달재활	5,351	177	-	-
	장애인활동지원	11,815	705	-	-
	지역사회서비스	71,600	1,231	-	-

(단위: 건, 백만원)

지역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건수 (결제건기준)	부정수급 (적발)액	회수결정건수 (통지건기준)	회수결정액수*
광주광역시	소계	41,634	2,236	4	150.8
	가사간병	-	-	1	7.0
	발달재활	18,466	518	-	.
	장애인활동지원	23,168	1,718	3	143.8
대구광역시	소계	37,608	1,832	4	54.5
	발달재활	-	-	1	0.2
	장애인활동지원	34,955	1,792	2	54.2
	지역사회서비스	2,653	40	1	0.1
대전광역시	소계	27,924	1,161	3	35.1
	장애인활동지원	4,502	154	1	5.7
	지역사회서비스	23,422	1,007	2	29.4
부산광역시	소계	103,988	5,151	19	411.7
	발달재활	26,508	922	1	5.1
	장애인활동지원	45,893	3,074	14	349.5
	주간활동	2,051	175	1	51.4
	지역사회서비스	29,536	980	3	5.7
서울특별시	소계	142,236	11,217	31	1,502.4
	마음투자	1,440	98	-	.
	장애인활동지원	139,038	11,044	30	1,334.8
	주간활동	-	-	1	167.6
	지역사회서비스	1,758	76	-	.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1,817	125	-	.
	마음투자	683	46	-	.
	장애인활동지원	1,134	80	-	.
인천광역시	소계	69,042	3,607	7	160.8
	가사간병	69	4	-	.
	발달재활	9,721	405	-	.
	방과후활동	-	-	1	2.0
	장애인활동지원	35,597	2,131	6	158.8
	주간활동	10,176	652	-	.
	지역사회서비스	13,479	415	-	.

(단위: 건, 백만원)

지역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건수 (결제건기준)	부정수급 (적발)액	회수결정건수 (통지건기준)	회수결정액수*
전라남도	소계	9,991	495	2	68.0
	마음투자	123	9	-	.
	발달재활	3,741	137	-	.
	장애인활동지원	6,127	349	2	68.0
전라북도	소계	11,798	582	4	160.0
	장애인활동지원	11,798	582	4	149.4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	-	1	5.3
	장애인활동지원	-	-	1	5.3
충청남도	소계	102,441	4,570	7	40.4
	마음투자	7,209	301	-	.
	발달재활	18,533	776	-	.
	장애인활동지원	72,103	3,320	7	40.4
	지역사회서비스	4,596	173	-	.
충청북도	소계	69,708	2,351	3	26.6
	장애인활동지원	15,827	938	1	18.5
	지역사회서비스	53,881	1,413	2	8.1

주: 당해연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지된 환수결정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들 지역은 인구 규모와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부정수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 지역으로서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회수결정액이 15억 2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경기도는 5억 9,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적발 건수와 적발액이 있음에도 회수결정건수나 회수결정액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부정수급 발생 규모뿐 아니라 적발 이후 환수결정으로 이어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서비스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적발액 112억 1,700만원 중 장애인활동지원이 110억 4,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기도 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적발액이 86억 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부산광역시도 장애인활동지원 적발액이 30억 7,400만원으로 높

다. 반면 경상북도는 지역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71,600건, 적발액 12억 3,1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충청북도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53,881건, 적발액 14억 1,3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난다. 강원도는 주간활동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9,654건, 적발액 9억 3,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별 서비스 구조와 위험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부정수급 관리는 전국 공통 기준과 지역별 위험기반 접근이 결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단순 적발 중심에서 예방·탐지·환수·품질관리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동일 시간대 중복결제, 비정상적 제공시간, 특정 기관 집중 결제, 급격한 이용패턴 변화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 이상결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경고·현장점검·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발 이후 환수·제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별 위험유형에 맞는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단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수행하는 책임주체로서 내부통제와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서비스 실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즉 단순 결제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결과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종합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돌봄·재활·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앞으로도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 규모 증가와 특정 사업·지역 중심의 위험 집중 현상은 사업 확대에 상응하는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고위험 사업 집중관리, 지역별 위험기반 점검, 환수·제재 실효성 강화, 서비스 품질 중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권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돌봄체계 개편

(가) 장애인 정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돌봄체계 개편 추진 필요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고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각각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과 「79-3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과 국정과제 「79-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고도화를 통한 본사업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장애인 돌봄체계의 지역사회 중심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국정과제 세부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p>79-3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및 유연한 서비스 선택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추진 * 바우처(활동지원 등 4개) 급여량의 20% 내 범위를 개인예산 설정하고,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예산으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p>79-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26.) 본사업 추진('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 필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나, 시범 사업 과정에서 참여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본사업 전환에 앞서 수요 예측 체계와 재정운영 방안을 정교화하고 기존 바우처 사업과의 연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4종 바우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복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17개 시군구 53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2조의6
사업목적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4종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 ①활동지원, ②발달장애인 주간활동, ③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④발달재활
지원 내용	수급권이 있는 바우처 총 급여의 20% 이내를 개인예산으로 이용
대상자 현황	(‘25) 17개 시군구, 532명 (‘26) 33개 시군구, 960명 목표
사업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사업 총괄, 사업 모델 고도화, 민간 보조금 교부 및 관련 모니터링, 평가 ■(지자체) 서비스 신청 접수, 자격심의 확인, 급여 제공, 지원위원회 운영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대상자 정보 관리, 예약금 관리·운영(바우처 생성 및 이용금액 환급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모니터링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범사업 현장 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 (복지전문기관) 참여자 상담 및 이용계획 수립 지원 ▪ (청년인턴) 사업 안내 및 참여자 이용계획 입력 및 수기정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2025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6억 4,500만 원이며 이중 16억 2,2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6%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범사업 시스템 운영과 급여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가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2026년 예산은 2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547	1,547	98	-	1,645	1,622	-	23	2,277	2,277
시범사업 시스템 운영	211	211	-	-	211	211	-	-	659	659
급여유연화 시범사업 개인 예산제 서비스	1,097	1,097	-	-	1,097	1,097	-	-	1,602	1,60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급여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초연구(2022년)와 모의적용(2023년)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상 바우처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1종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포함한 4종으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모의적용 단계인 2023년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사업 규모와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모의 적용('23년)	시범사업		
		1차년도('24년)	2차년도('25년)	3차년도('26년)
규모 (달성/목표)	86/120명	207/210명	528/410명	진행중/960명
대상지역	4개 시군구	8개 시군구	17개 시군구	33개 시군구
바우처대상	1종 (활동지원)		4종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발달재활)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모의적용 단계인 2023년 4개 시군구 12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사업 규모와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 실적은 2023년 86명(계획 대비 71.6%)에서 2024년 207명(98.6%), 2025년 532명(129.8%)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 지역도 2023년 4개 시군구에서 2025년 17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업 모델은 초기 활동지원 중심의 급여유연화 모델¹¹⁾에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바우처 확대 모델¹²⁾로 발전하였으며, 2026년에는 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급여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예산은 2024년 9억 6,500만 원(8개 시군구, 207명)에서 2025년 15억 4,700만 원(17개 시군구, 532명)으로 확대되었다.

11) 1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을 지원

12) 4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을 지원

[2023-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구분		모의적용('23년)		시범사업		
				'24년	'25년	'26년
사업 규모	계획	4개 시군구, 120명		8개 시군구, 210명	17개 시군구, 410명	33개 시군구, 960명
	실적	4개 시군구, 86명 (계획 대비 71.6%)		8개 시군구, 207명 (계획 대비 98.6%)	17개 시군구, 532명 (계획 대비 129.8%)	33개 시군구(진행중)
대상 지역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세종시, 충남 예산	서울 강북, 부산 금정, 대구 달성군, 대전 서·동구, 경기 시흥, 충남 예산, 전남 해남	(계속) '24년 참여 8개 시군구	(계속) '25년 참여 16개 시군구	
				(신규) 9개 시군구 서울 관악·도봉,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신규) 16개 시군구 서울 중랑·은평, 대전 대덕구, 광주 남·서구, 울산 울주, 강원 춘천, 경기 연천, 전북 고창군, 전남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시, 세종시,	
사업 기간		'23.6.~11.(6개월)	'24.7.~12.(6개월)	(계속) '25.1.~6.(6개월) (신규) '25.4.~9.(6개월)	'26.5.~10.(6개월)	
사업 예산		580백만원	965백만원	1,547백만원	2,277백만원	
사업 모델	(모델1) 급여	(모델2) 필요 서비스	(모델1·모델2 통합) 활동지원 기반	('24년 참여 지자체) 활동지원 기반 모델 (207명)	바우처 확대 모델	

구분	모의적용('23년)		시범사업		
			'24년	'25년	'26년
	유연화 모델	제공 인력 활용 모델	모델	('25년 신규 지자체) 바우처 확대 모델 (325명)	
개인 예산액	본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본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	본인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10%, 15%, 20% 중 택일)		
개인 예산 이용 범위	일상·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주거·건강 등 6개 영역, 지정 용도 제한)	특수 자격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 선택·이용 (특수 자격 종류·단가 제한)	<p>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고 급여 기본요건 (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 적정성) 충족 시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자유롭게 선택·이용</p> <p>* 주류·담배·복권구입, 저축·부채상환 등 불가</p>		
전달 체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복지전문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024~2025년)의 서비스 용도별 정산(이용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활동모델 5억 1,980만 원에서 2025년 활동모델 5억 7,260만원, 2025년 확대모델 6억 4,54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서비스 이용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과 2025년에 서비스 이용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적 건강 분

야는 전체 이용액의 39.6%(2024년 활동모델)에서 38.3%(2025년 활동모델), 31.0%(2025년 확대모델)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보육 및 교육 분야는 17.3%에서 18.0%, 29.0%로 증가하였다. 문화 및 여가 분야도 같은 기간 8.8%에서 9.5%, 1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적용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범위가 건강 중심에서 교육·발달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체적 건강 분야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서비스 이용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비스 용도별 정산 현황(실적)]

(단위: 원, %)

구분		24년 활동 모델		25년 활동 모델		25년 확대 모델	
전체		519,845,938	100.0	572,637,201	100.0	645,436,432	100.0
신체적 건강	건강증진	33,515,388	6.45	40,844,009	7.13	40,633,405	6.30
	재활	25,882,725	4.98	23,829,644	4.16	53,045,708	8.22
	장애인보조기기	58,164,615	11.19	42,522,152	7.43	59,773,213	9.26
	의료용소모품	14,203,081	2.73	22,497,606	3.93	8,405,311	1.30
	기타 건강지원 제품	74,079,985	14.25	89,410,892	15.61	37,992,705	5.89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 증진	150,000	0.03	-	0.00	-	0.00
	검사, 진단	274,300	0.05	-	0.00	563,350	0.09
	상담 및 치료	6,168,400	1.19	4,819,800	0.84	3,881,100	0.60
	기타 정신적 건강지원 제품	28,900	0.01	400,810	0.07	298,200	0.05
주거	주택개조	7,699,870	1.48	300,000	0.05	14,073,998	2.18
	주거지원서비스	26,286,670	5.06	19,920,400	3.48	7,715,500	1.20
	주거지원 물품	27,966,829	5.38	36,687,136	6.41	58,000,171	8.99
일상 생활	일상생활 유지 돌봄 지원 서비스	8,805,274	1.69	2,592,000	0.45	4,733,100	0.73
	일상생활 용품 지원	66,734,169	12.84	106,484,475	18.60	42,104,014	6.52

(단위: 원, %)

구분		24년 활동 모델		25년 활동 모델		25년 확대 모델	
	이동지원	5,625,460	1.08	6,806,295	1.19	5,350,300	0.83
	기타 일상지원 서비스	16,826,760	3.24	5,347,970	0.93	1,990,870	0.31
일자리	직업(유지) 교육 및 훈련	1,363,237	0.26	1,525,100	0.27	3,073,770	0.48
	일자리 관련 물품 지원	9,137,790	1.76	11,213,280	1.96	12,296,170	1.91
	기타 일자리 관련 서비스	776,800	0.15	-	0.00	-	0.00
	전환교육 및 훈련	-	0.00	-	0.00	3,278,570	0.51
	전환 교육 관련 물품 지원	-	0.00	-	0.00	1,295,700	0.20
보육 및 교육	발달재활	78,565,440	15.11	97,157,250	16.97	107,109,220	16.59
	보육 및 교육 지원 물품 및 서비스	11,582,370	2.23	6,122,681	1.07	79,996,721	12.39
문화 및 여가	문화여가 활동지원	24,397,582	4.69	34,281,366	5.99	49,022,192	7.60
	평생교육	5,573,540	1.07	6,102,230	1.07	7,866,450	1.22
	기타 문화 및 여가 지원 물품 및 서비스	16,036,753	3.08	13,772,105	2.41	13,464,074	2.09
바우처 유연화	활동지원	-	0.00	-	0.00	1,312,220	0.20
	발달재활	-	0.00	-	0.00	28,160,400	4.36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2025년 시범사업 바우처 확대모델은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4종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325명 중 바우처 1종 보유자는 277명(8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187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바우처 2종 보유자는 44명(13.5%), 바우처 3종 보유자는 4명(1.2%)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2종 보유자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참여자가 31명(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부 참여자가 복수의 바우처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예산제를 통해 서비스 간 연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시범사업 바우처 확대모델 참여자 현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실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바우처 1종 보유	활동지원	200	100.0	187	57.5
	주간활동			4	1.2
	방과후활동			82	25.2
	발달재활			4	1.2
	소계			277	85.2
바우처 2종 보유	활동지원+주간	200	100.0	1	0.3
	활동지원+방과후			31	9.5
	활동지원+재활			5	1.5
	방과후+재활			7	2.2
	소계			44	13.5
바우처 3종 보유	활동지원+방과후+재활	200	100.0	4	1.2
	활동지원+주간+재활			0	0
합계		200	100.0	325	100.0

주 1. 발달 방과후는 학생 대상, 발달 주간은 성인 대상이므로 최대 3종까지만 중복 가능
 2. 참여자 선발 시 연령, 장애유형, 성별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바우처 종류에 따른 참여 차등을 두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더욱이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급여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는 2025년 예산현액 10억 9,700만 원 중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이 71.6%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범사업 참여자는 532명으로 당초 목표인 410명을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 부진은 참여자 부족보다는 예산 추계와 실제 이용행태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개별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097	1,097	1,097	1,097	0	1,097	785	1,097	785	0	312	71.6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대상 바우처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1종에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4종으로 확대하면서 2종 이상 중복수혜자를 고려하여 1인당 지원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바우처 이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제 1인당 개인예산 급여액이 예산 편성 시 가정한 수준을 하회 하였다.

[2024-2025년 개인예산액 예상치 및 실제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예산			결산		
	기준단가	개인예산 예상치 (기준단가*20%)	목표 인원	실제 1인당 개인예산 급여액		실제인원
'24년 (활동지원 모델)	2,115,000	423,000	210	415,831		207
'25 년	활동지원 모델	2,115,000	210	40814	37399	207
	바우처 확대 모델	4,062,000	200	33205		325

주: 1. 24년 기준단가 (장애인활동지원) 16,150(원)*131(시간)=2,115,650원

2. 25년 기준 단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6,620(원)*154(시간)=2,559,480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 16,620(원)*66(시간)=1,096,920원

- (발달재활서비스) 200,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참여자의 바우처 이용 유형과 서비스 선택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예산 추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유형 및 지역별 특성 분석, 참여자 및 공급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은 향후 장애인 돌봄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실제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와 기존 바우처 사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 및 예산 추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특성과 서비스 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운영체계와 재정운영 방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대비한 사업 운영체계 정비 필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향후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목표 대비 실적이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본사업 전환에 앞서 대상자 수요, 주거·활동지원 연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활동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교육, 단기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활동지원 추가지원, 보조기기, 건강유지비 지원과 함께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사업목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원의 개인별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지원 등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 자립교육, 단기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모니터링 등 -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조성, 활동지원 추가지원, 보조기기, 건강유지비 지원 -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장애인일자리, 지역보건의료센터, 재산관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대상자 현황(누적)	481명('25.12월)
관련 인력 현황	자립지원 전담인력 144명('25.12월)
사업 추진체계	장애인개발원(중앙센터), 지역별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사회복지사 등) * 사회복지서비스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자체 등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기준 예산현액 54억 4,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	-	-	5,448	5,448	-	-	7,843	7,84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은 단순히 주거지원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활동지원, 의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사업 운영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동 사업의 2022~2025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목표 200명 대비 29명(14.5%), 2023년에는 400명 대비 105명(26.3%), 2024년에는 600명 대비 288명(48.0%), 2025년에는 600명 대비 481명(80.2%)이 참여하였다.

즉, 참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추진 이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자립지원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2-2025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구분	2022 (1년차)	2023 (2년차)	2024	2025	계(누적)
목표	200	400	600	600	600
실적	29	105	288	481	481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활동지원, 주거환경개선, 자립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25년 기준 자립지원형 활동지원은 목표 400명 대비 277명(69.3%), 건강검진비 지원은 목표 400명 대비 81명(20.3%)에 그쳤으며, 자립보조기기 지원 또한 목표 50건 대비 21건(4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단순한 주거 이전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022-2025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유형별 실적]

(단위: 명, 건)

구분	활동지원			주거 환경개선 ²⁾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자립 유지형	자립 지원형	집중 지원형				
2022	목표 ¹⁾	-	200	-	100	200	200
	실적	-	16	13	38	13	21
2023	목표 ¹⁾	-	400	-	200	200	400
	실적	-	72	32	51	32	68
2024	목표 ¹⁾	-	406	-	200	200	406
	실적	-	198	61	98	35	147
2025	목표 ¹⁾	-	400	-	100	50	400
	실적	74	277	95	117	21	81

주 : 1) 목표 : 예산편성 기준

2) 대상자 입주 전후 주거환경개선 실적(건)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향후 본사업 전환 시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가 예상되며, 주거·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토대로 실제 장애인의 자립지원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과 재정 소요 규모 및 재원지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사업 추진에 대비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만큼 사업 성과와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와 재정 소요 규모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실제 자립지원 수요와 주거·활동지원·의료서비스 간 연계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실적, 이용자 만족도, 자립생활 유지 수준 및 서비스 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장애인 돌봄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시범사업의 정책효과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향후 장애인 돌봄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인바, 현재의 참여도·만족도 중심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의 정책효과와 재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돌봄체계 자체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성과 검증이 중요하다. 특히 두 사업 모두 향후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효과와 재정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단계적 확대 추진 필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제한된 대상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동 사업은 ‘폐지13)’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과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참여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크게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참여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도인 만큼, 현재의 참여도 중심 성과지표만으로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렵다.

사업명	평가명	주요내용
13)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	보조사업 연장평가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폐지(2026년 말)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5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할 필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본사업은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추진. 실행행률이 낮음

따라서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 이용자 만족도, 삶의 질 변화, 기존 바우처 사업과의 관계 및 재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 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참여도 (단위: %)	목표	-	-	85	88	91	전년도 목표 대비 3.5% 상향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 수/ 목표인원 수)x100	연구용역 결과자료
	실적	-	-	215.8	230.5	-			
	달성 도	-	-	달성	달성	-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향후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및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 변화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지원 규모와 대상자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전달체계 운영비용 및 지역 간 운영 편차 등을 함께 분석하여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참여 실적 중심의 평가를 넘어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 삶의 질 개선 정도 및 재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성과 및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중심 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연계하여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은 2026년 통합재정평가 결과 ‘사업개선14’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본사업 전환에 앞서 사업 성과와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현재 성과지표는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 실적은 85.3점으로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유지에 있는 만큼, 현재의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만으로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자립생활 유지 여부, 서비스 지속 이용 현황, 의료·주거·활동지원 연계 수준,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 및 재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0	86	85	85	'23년~'25년 실적 평균값 83.9점으로 '25년 목표치와 동일 수준으로 설정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중양장애 인지역사 회통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79.8	86.5	85.3	-	-			
	달성도	-	108.1	99.2	-	-			

자료: 보건복지부

14)

사업명	평가명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개선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주택공급·전담인력 확보 한계를 보완할 제도 개선과, 지자체 자립지원 정책과 연계·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 필요

또한 자립지원 본사업이 확대 될 경우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대상자 특성별 자립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 및 자원조달 체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지역사회 정착 여부가 아니라 자립생활 유지 수준, 서비스 연계 효과 및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향후 장애인 돌봄 체계 개편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만큼 사업 확대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책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운영체계를 보완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성과관리가 참여도 및 만족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나 자립생활 유지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서비스 선택권 확대 효과, 자립생활 유지 수준, 서비스 연계 실효성, 삶의 질 변화 및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1) 개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하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¹⁾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에 근거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과 민간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정책을 연계·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³⁾

행정기관위원회는 권한과 기능에 따라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기구와 인력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처: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제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조정·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의사결정권은 행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갖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권한은 없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중앙행정기관을 구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종합·조정하는 위원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없다.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을 보유하여 행정 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없음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업무 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함 • 업무가 계속·상시성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업무 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세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에 기속 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 이 외의 ③의결, 심의가 모두 가능한 위원회가 있음
사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의 조직체계상 부·처·청 및 부처형 위원회 등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를 신설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며, 설치 이후에는 개별 위원회의 소

속기관과 주관부처⁴⁾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⁵⁾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존속기한을 포함하여 소관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폐지·통합 등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구성 현황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⁶⁾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다만, 각 연도별로 하반기에도 행정기관위원회 폐지·신설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연도별·분기별 행정기관위원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25

4) 주관부처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실제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위원회 현황을 제시한다.

2025년 12월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81개이며,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41개, 자문위원회는 540개로 전체 위원회 수 대비 각각 7.1%, 92.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42개에서 2024년 39개로 감소한 후 2025년 41개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자문위원회는 2022년 594개에서 2023년 573개, 2024년 532개로 감소한 뒤 2025년 540개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2024년보다 증가하였으나, 2022년과 비교하면 행정위원회는 1개, 자문위원회는 54개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55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위원회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계
2022	위원회 수	42	594	636
	(비중)	(6.6)	(93.4)	(100.0)
2023	위원회 수	42	573	615
	(비중)	(6.8)	(93.2)	(100.0)
2024	위원회 수	39	532	571
	(비중)	(6.8)	(93.2)	(100.0)
2025	위원회 수	41	540	581
	(비중)	(7.1)	(92.9)	(100.0)

주: 각 연도별 12월말 기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540개로 전체 위원회 중 대부분인 9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41개로 전체 위원회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근거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법률	대통령령	계
행정위원회	41	-	41
자문위원회	499	41	540
계 (비중)	540 (92.9)	41 (7.1)	581 (100.0)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행정기관위원회의 소속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이 20개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은 62개로 10.7%, 각 부처 소속은 499개로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중 8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현황]

(단위: 개)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계
위원회 수 (비중)	20 (3.4)	62 (10.7)	499 (85.9)	581 (100.0)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① 소속별 현황

행정기관위원회를 소속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을 제외한 각 부처별 소속 위원회 현황⁷⁾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51개(행정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 48개)가 운영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43개(행정위원회 1개, 자문위원회 42개), 기후에너지환경부 31개(행정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29개), 교육부 30개(행정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28개), 농림축산식품부 28개(행정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26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처 공동 소속인 위원회까지 포함한 내역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2025년 12월말 기준 2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동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총 8개로, 공동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 것이다.

[소속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단위: 개)

소속	소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속	소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대통령	20	1	19	법무부	21	2	19
국무총리	62	10	52	법제처	2	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병무청	2	1	1
경찰청, 해양경찰청	1	0	1	보건복지부	42	1	41
고용노동부	15	3	12	복지부, 식약처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1	산림청	6	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0	24	산업통상부	21	1	20
관세청	4	0	4	산업부, 국토부	1	0	1
교육부	28	2	26	산업부, 기재부	1	0	1
교육부, 문체부	2	0	2	성평등가족부	8	0	8
국가보훈부	3	1	2	소방청	5	0	5
국가유산청	8	0	8	식품의약품안전처	15	0	15
국무조정실	1	0	1	외교부	4	0	4
국민권익위원회	2	1	1	우주항공청	1	0	1
국방부	19	1	18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2
국세청	4	0	4	인사혁신처	7	2	5
국토교통부	50	3	47	재외동포청	1	0	1
금융위원회	12	1	11	중소벤처기업부	12	0	12
기상청	1	0	1	지식재산처	2	0	2
기획재정부	21	1	20	질병관리청	5	0	5
기후에너지환경부	30	2	28	통일부	5	1	4
기후부, 해수부	1	0	1	해양경찰청	2	0	2
농림축산식품부	28	2	26	해양수산부	12	0	12
농촌진흥청	3	0	3	해수부, 산업부	1	0	1
문화체육관광부	24	2	22	행정안전부	25	3	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	0	11				
방위사업청	1	0	1	총계	581	41	540

주: 1. 2025년 12월말 기준

2. 행정기관위원회가 없는 부처는 제외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25.6.)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② 유형별 현황

행정기관위원회는 유형별로,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와, 2) 위원회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위원회의 세부 현황을 소속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이 1개, 국무총리 소속이 10개, 각 부처 소속이 30개인데,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경우 10개 중 7개가 과거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행정기관위원회 중 행정위원회 현황]

소 속	위원회명	근거법률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총리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 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 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소 속	위원회명	근거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現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문화체육 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법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법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자문위원회의 소속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이고, 국무총리 소속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52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 부처(중앙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469개가 운영되었다.

[행정기관위원회 중 자문위원회 현황]

소속	위원회명	
<p>대통령 (19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바이오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우주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p>국무총리 (52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소비자정책위원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양자전략위원회 · 원자력진흥위원회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마약류대책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 수소경제위원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소속	위원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새만금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사회대개혁위원회 ·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 국토정책위원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 중앙경제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469개)	·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469개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

① 행정기관위원회 주관부처별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예산은 총 2,49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162억 2,4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86.8%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간의 차액은 329억 2,600만원이다.

주관부처별 행정기관위원회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예산편성액 615억 800만원 중 605억 3,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4%)하여 가장 큰 규모를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부가 27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96.3%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249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률은 64.8%에 그쳤고, 국무조정실은 238억 2,600만원 중 226억 5,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5.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가장 큰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135억 6,000만원이었으며, 이어 보건복지부 66억 8,6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3억 3,8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억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액 109억 6,500만원 중 42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고, 기상청과 금융위원회도 각각 51.4%와 54.4%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는 예산편성액 2억 5,600만원보다 많은 5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30.3%에 달하였는데, 이는 2025년 6월 1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외국인보호위원회 회의비 및 사무국 운영 경비 3억 5,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방청과 관세청도 각각 126.2%와 114.6%로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이는 당초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 외에 타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위원회 운영 등에 활용함에 따라 예산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타 세부사업의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각각 1,260만원과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부처별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주관부처 ¹⁾	위원회 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B-A	집행률 (B/A)
검찰청, 경찰청	1	0.3	0.2	△0.1	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63	58	△5	91.9
경찰청	2	341	241	△100	70.7
경찰청, 해양경찰청	1	25.0	24.8	△0.2	99.1
고용노동부	16	61,508	60,534	△974	98.4
공정거래위원회	2	29	29	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4,162	3,505	△658	84.2
관세청	4	186	213	27	114.6
교육부	32	28,169	27,126	△1,043	96.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	1.2	1.2	0	100.0
국가데이터처	1	44	44	0	100.0
국가보훈부	3	2,733	2,554	△179	93.5
국가유산청	8	1,271	1,182	△89	93.0
국무조정실	16	23,826	22,652	△1,174	95.1
국무총리비서실	1	0	0	0	-
국민권익위원회	2	7,009	6,355	△654	90.7
국방부	18	12,720	12,386	△335	97.4
국세청	4	777	754	△22	97.1
국토교통부	55	11,908	10,785	△1,123	90.6
금융위원회	12	391	213	△178	54.4
기상청	1	8.1	4.1	△4	51.4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9	877	816	△61	93.0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12	2,340	1,759	△581	75.2
기후에너지환경부	35	9,558	7,220	△2,338	75.5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1	0.7	0.0	△0.7	0.0
농림축산식품부	30	4,393	3,998	△395	91.0
농촌진흥청	3	0	12.6	12.6	순증
문화체육관광부	30	8,960	6,932	△2,028	7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	354	249	△105	70.4
방위사업청	3	60	49	△11	81.2
법무부	22	256	590	334	230.3
법제처	2	174	174	0	100.3

(단위: 개, 백만원, %)

주관부처 ¹⁾	위원회 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B-A	집행률 (B/A)
병무청	2	935	855	△80	91.5
보건복지부	49	10,965	4,279	△6,686	39.0
산림청	6	212	181	△30	85.7
산업통상부	23	1,699	1,569	△130	92.4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1	0	0	0	-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1	1,884	1,884	0	100.0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1	3,293	3,275	△18	99.4
성평등가족부	10	0	43	43	순증
소방청	5	22	28	6	126.2
식품의약품안전처	15	376	328	△49	87.1
외교부	4	28	24	△4	84.3
우주항공청	2	30	30	0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0	0	-
인사혁신처	9	5,520	5,001	△519	90.6
재외동포청	1	0	0	0	-
중소벤처기업부	12	500	489	△12	97.7
지식재산처	3	2,277	2,144	△133	94.2
질병관리청	5	28	25	△3	89.9
통일부	5	344	280	△64	81.4
해양경찰청	2	189	189	0	100.0
해양수산부	14	182	182	0	100.0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1	7.1	4.5	△2.6	63.4
행정안전부	38	38,514	24,954	△13,560	64.8
합 계	581	249,149	216,224	△32,926	86.8

주: 1) 위원회 운영 등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속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있음

1. 일부 부처(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상 수치 오류가 있어, 해당 부처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② 용도별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예산은 용도에 따라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및 사업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회의경비는 예산편성액 350억 4,500만원 중 302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3% 수준이다. 주관부처별 집행액은 고용노동부가 95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편성액 91억 2,1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에 따라 집행률은 105.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이 43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9%로 확인되었다.

반면, 회의경비로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주관부처도 확인되었는데, 통일부가 예산편성액 4,200만원 중 약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4.7%로 저조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12억 2,800만원 중 4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8.6%에 그쳤다. 또한, 기상청은 51.4%, 금융위원회는 54.4%,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소관 위원회는 55.4%의 집행률을 보였고,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액 37억 4,700만원 중 21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6.3%에 머물렀으며, 미집행액은 약 16억 3,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저조(70% 미만)한 부처 중 가장 큰 규모였다.⁸⁾

[주관부처별 행정기관위원회 회의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검찰청, 경찰청	300	240	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00	54,900	91.5
경찰청	327,247	234,307	71.6
고용노동부	9,121,264	9,574,257	105.0
공정거래위원회	28,700	28,70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9,028	859,599	85.2
관세청	185,600	212,754	114.6
교육부	398,922	391,003	98.0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1,200	1,200	100.0

8) 그밖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원회는 편성된 회의경비 7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국가데이터처	10,614	10,614	100.0
국가보훈부	1,136,250	969,975	85.4
국가유산청	1,271,098	1,182,016	93.0
국무조정실	4,655,644	4,322,842	92.9
국민권익위원회	371,841	322,426	86.7
국방부	512,657	388,384	75.8
국세청	776,600	754,159	97.1
국토교통부	1,641,976	1,415,441	86.2
금융위원회	391,180	212,716	54.4
기상청	8,070	4,149	51.4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245,800	218,625	88.9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585,080	324,413	55.4
기후에너지환경부	1,318,992	980,569	74.3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700	0	0.0
농림축산식품부	621,694	409,884	65.9
농촌진흥청	-	12,600	순증
문화체육관광부	843,691	568,636	6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53,100	106,970	69.9
방위사업청	60,000	48,740	81.2
법무부	248,325	301,629	121.5
법제처	173,600	174,050	100.3
병무청	274,750	233,150	84.9
보건복지부	1,228,051	473,449	38.6
산림청	114,945	84,632	73.6
산업통상부	715,900	594,309	83.0
성평등가족부	-	42,770	순증
소방청	22,300	28,133	126.2
식품의약품안전처	376,460	327,750	87.1
외교부	28,000	23,609	84.3
우주항공청	30,000	30,000	100.0
인사혁신처	1,569,588	1,472,821	93.8
중소벤처기업부	59,180	47,680	80.6
지식재산처	271,586	286,020	105.3
질병관리청	28,000	25,159	89.9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통일부	42,214	10,440	24.7
해양경찰청	188,800	188,800	100.0
해양수산부	182,000	182,000	100.0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7,140	4,528	63.4
행정안전부	3,746,524	2,108,448	56.3
합 계	35,044,611	30,249,496	86.3

주: 1) 위원회 운영 등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속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있음

1. 회의경비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2. 예산 편성 내역이 없으나, 집행액이 있는 경우는 타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활용하여 회의경비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임
3.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활용하여 회의경비로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것임
4. 일부 부처(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상 수치 오류가 있어, 해당 부처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의 사무국 경비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액 1,037억 4,100만원 중 894억 5,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2%였다. 주관부처 중 고용노동부의 집행액이 392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편성액 378억 2,4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률은 103.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112억 1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9%를 보였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집행액은 각각 60억 7,000만원과 60억 4,200만원이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액 143억 4,000만원 중 42.1%만 집행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집행률도 각각 39.0%, 49.9%, 66.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반면, 법무부는 2025년 6월 1일부로 상설 위원회인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경비를 타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예산편성액 400만원보다 많은 2억 8,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부처별 행정기관위원회 사무국 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00	2,699	100.0
경찰청	14,032	7,000	49.9
고용노동부	37,824,243	39,228,089	10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8,312	2,499,972	83.1
교육부	11,801,443	11,201,498	94.9
국가보훈부	938,710	936,118	99.7
국무조정실	2,989,598	2,806,802	93.9
국민권익위원회	1,212,306	1,039,674	85.8
국방부	383,649	417,348	108.8
국토교통부	6,678,054	6,069,609	90.9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631,000	597,000	94.6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755,000	1,435,024	81.8
기후에너지환경부	750,270	617,869	82.4
농림축산식품부	1,779,306	1,649,295	92.7
문화체육관광부	4,347,671	2,877,032	6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8,000	0	0.0
법무부	4,000	285,738	7,143.5
병무청	114,724	101,250	88.3
보건복지부	4,758,369	1,857,084	39.0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884,000	1,884,000	100.0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3,293,000	3,274,559	99.4
인사혁신처	3,950,218	3,527,726	89.3
중소벤처기업부	179,450	179,450	100.0
지식재산처	1,043,814	917,400	87.9
행정안전부	14,339,587	6,041,512	42.1
합 계	103,741,456	89,453,748	86.2

주: 1) 위원회 운영 등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속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있음

1. 사무국 경비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2.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활용하여 사무국 경비로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것임
3. 일부 부처(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상 수치 오류가 있어, 해당 부처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경비는 2025년도 예산편성액 1,103억 6,300만원 중 965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세 가지 용도 중 가장 높은 87.5%의 집행률을 보였다. 주관부처별로 살펴 보면, 행정안전부가 168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집행률은 82.3%였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155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155억 2,200만원(집행률 95.9%)과 117억 3,200만원(집행률 80.6%)을 집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액 49억 7,900만원 중 19억 4,900만원을 집행하면서 39.1%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주관부처별 행정기관위원회 사업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경찰청, 해양경찰청	25,000	24,774	99.1
고용노동부	14,562,307	11,731,577	8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5,000	145,000	100.0
교육부	15,969,000	15,533,598	97.3
국가데이터처	33,748	33,748	100.0
국가보훈부	658,260	648,260	98.5
국무조정실	16,180,558	15,522,438	95.9
국민권익위원회	5,425,000	4,993,293	92.0
국방부	11,823,911	11,579,920	97.9
국토교통부	3,588,016	3,300,055	92.0
기후에너지환경부	7,489,100	5,621,535	75.1
농림축산식품부	1,992,000	1,938,775	97.3
문화체육관광부	3,768,242	3,485,990	9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2,900	142,314	99.6
법무부	4,000	2,905	72.6
병무청	545,276	520,731	95.5
보건복지부	4,978,800	1,948,500	39.1
산림청	96,771	96,771	100.0
산업통상부	983,100	975,100	99.2

(단위: 천원, %)

주관부처	예산 편성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중소벤처기업부	261,370	261,370	100.0
지식재산처	961,400	940,280	97.8
통일부	301,717	269,525	89.3
행정안전부	20,427,650	16,803,805	82.3
합 계	110,363,126	96,520,264	87.5

주: 1) 위원회 운영 등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속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있음

1. 사업경비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2.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활용하여 사무국 경비로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것임
3. 일부 부처(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상 수치 오류가 있어, 해당 부처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③ 주요 행정기관위원회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행정기관위원회 581개 중 집행액 규모가 큰 상위 10개 위원회의 예산편성액은 총 1,256억 9,300만원이며, 이 중 1,222억 1,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집행액 2,162억 2,400만원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부 주요 위원회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행정기관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의 집행액이 534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편성액 539억 7,4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8.9%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집행액은 회의경비 68억 6,200만원, 사무국 경비 348억 1,100만원 및 사업경비 117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집행액의 24.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가 예산편성액 246억 4,100만원 중 238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97.0%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방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79억 5,000만원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각각 69억 4,200만원과 56억 8,700만원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5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의 집행액은 50억 3,100만원,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49억 9,000만원,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47억 2,500만원,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억 7,2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액 규모 기준 상위 10개 위원회의 집행률은 모두 90%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위원회 2025회계연도 집행액 규모 상위 10개 위원회]

(단위: 백만원, %)

소속	위원회명	예산 편성액(A)	집행액				
			소계 (B)	회의 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 경비	집행률 (B/A)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53,974	53,405	6,862	34,811	11,732	98.9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24,641	23,893	7	8,425	15,461	97.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8,195	7,950	43	146	7,760	97.0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7,034	6,942	180	0	6,762	98.7
국무총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5,710	5,687	62	19	5,605	99.6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424	5,218	1,323	3,895	0	96.2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5,466	5,031	38	0	4,993	92.0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5,396	4,990	168	375	4,447	92.5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5,049	4,725	1,018	2,090	1,618	93.6
국무총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804	4,372	149	1,801	2,422	91.0
합계		125,693	122,212	9,850	51,563	60,799	97.2

주: 2025년도 기준 행정기관위원회의 전체 집행액(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위원회를 추출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1) 위원 구성 관련

① 여성위원 위촉비율 준수 필요

성평등가족부가 행정기관위원회의 양성 참여비율 관리 및 법정비율 위반에 대하여 각 부처에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향후 위원 위촉 시 성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 정책심의 과정에 양성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9)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공표하고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이행점검, 개선권고 및 기준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위원의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에 관한 자문·조정·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만약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해당 성별과 다른 경험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위

9)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원 구성에서 성별 균형이 확보되면 의사결정이 특정 관점으로 편중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정책대상별로 상이한 수요와 정책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OECD(2023)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경우 서로 다른 관점이 반영되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현실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성별 균형이 부족할 경우 중요한 관점이 배제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⁰⁾

또한,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숙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참여 인원이 적은 경우 발언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여성의 참여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경우 성별에 따른 발언권과 영향력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는 소수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 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균형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성별 균형은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실험연구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있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가 그렇지 않은 위원회보다 더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²⁾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성별비율은 위원회 구성의 외형적 균형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이 정책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대응성 및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행정기관위원회의 법정 성별비율 준수 현황¹³⁾을 살

10) OECD(2023), *Joining Forc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holding us back?*, OECD Publishing, Paris.

11) Karpowitz CF, Mendelberg T, Shaker L., Gender Inequality in Deliberative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2, 106(3): 533~547.

12) Kao K, Lust E, Shalaby M, Weiss CM., Female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Evidence from a Harmonized Experiment in Jordan, Morocco, and Tunis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24, 118(1): 495~503.

펴보면, 미준수 위원회의 비율은 2021년 18.6%에서 2022년 17.1%로 하락한 이후 2023년 23.3%로 상승하였고, 2024년에는 20.4%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전체 473개 위원회 중 117개 위원회가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미준수 비율이 24.7%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4년 기준 97개 위원회에 비해 미준수 위원회가 20개 증가하고, 미준수 비율도 4.3%p 상승한 것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 현황]

(단위: 개, %)

연 도	전체 위원회 (A)	미준수 위원회 (B)	미준수 비율 (B/A)	미달성 사유					
				임기 미도래	여성인력 부족	남성인력 부족	추천권한 외부	사실상 당연직	기타
2021	565	105	18.6	18	45	1	21	7	13
2022	531	91	17.1	19	38	2	15	2	15
2023	511	119	23.3	26	45	1	20	5	22
2024	476	97	20.4	22	45	0	13	7	10
2025	473	117	24.7	34	45	0	19	2	17

주: 법정기준 미달성이나 추천권한 외부 등의 사유로 개선권고 예외 인정된 위원회는 제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미달성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여성인력 부족’을 사유로 제시한 위원회가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임기 미도래’ 34개, ‘추천권한 외부’ 19개, ‘기타’ 17개, ‘사실상 당연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성인력 부족을 사유로 제시한 위원회는 2022년 38개를 제외하면 매년 45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임기 미도래를 사유로 한 위원회도 2024년 22개에서 2025년 34개로 증가하였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외부 기관에 위원 추천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부처가 단기간 내에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조정하는 데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임기와 교체 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기 위촉 계획에 반영하거나, 외부 추천기관에 성별 균형을 고려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통해 법정비율 미준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 법정기준 미달성이나 추천권한 외부 등의 사유로 개선권고 예외 인정된 위원회는 제외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로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2개이며, 이들 위원회의 2025년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확인한 결과 39개 위원회가 2025년에도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위원회의 75.0%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7개,¹⁴⁾ 1~19%인 위원회는 12개, 20~39%인 위원회는 19개로, 전체 52개 위원회 중 38개 위원회(73.1%)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또한, 관련 법령상 특정 성별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나,¹⁵⁾ 1개 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여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간 3회 이상 권고 받은 위원회의 2025년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종합)]
(단위: 개)

법정 성별비율 미준수로 2021~2024년간 3회 이상 권고 받은 위원회	2025년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2025년 성별비율 미준수 위원회 소계
	0%	1~19%	20~39%	40~60%	61~100%	
52개 위원회	7	12	19	13	1	39 (75.0%)

주: 1. 법정기준 미달성이나 추천권한 외부 등의 사유로 개선권고 예외 인정된 위원회는 제외함

2. 40~60%는 법정 기준(특정 성별 비율 60%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준수하는 범위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14) 주파수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및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최근 4년간 3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2025년 여성위원 비율이 0%로 나타났다.

15) 이는 법정 성별비율이 단순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성별에도 위원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2024년간 3회 이상 권고 받은 위원회별 2025년 여성위원 비율]

(단위: %)

부처명	3회 이상 권고 위원회	2025년 여성위원 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심의위원회	0.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0.0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0.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0.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0.0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0.0
보건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0.0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6.6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6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1.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2.0
경찰청	경찰위원회	14.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	14.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5.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16.7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정책심의회	17.4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18.1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18.8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19.6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4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22.2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2.2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2.2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23.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25.0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26.5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6.9
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28.6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30.0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33.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33.3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33.3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33.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35.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37.5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	37.5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40.0
산업통상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41.7

(단위: %)

부처명	3회 이상 권고 위원회	2025년 여성위원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42.6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	42.9
해양수산부	동물원및수족관동물관리위원회	43.8
산업통상부	산업표준심의회	4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44.4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정책위원회	45.5
산업통상부	에너지위원회	47.4
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5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50.0
소방청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50.0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8.3
교육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75.0

주: 1. 법정기준 미달성이나 추천권한 외부 등의 사유로 개선권고 예외 인정된 위원회는 제외함

2. 40~60%는 법정 기준(특정 성별 비율 60%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준수하는 범위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처럼 행정기관위원회의 성별 균형은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 관점에 편중되지 않은 논의를 촉진하고 정책대상별로 상이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개선 권고를 받은 위원회의 상당수가 2025년에도 법정 성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일부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성평등가족부의 권고 방식만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기관위원회를 주관하는 각 부처는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와 교체 시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및 남성 전문가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며, 외부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때에도 법정 성별비율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사유로 법정비율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가가 실제로 부족한지, 기존 후보자 발굴 및 추천 경로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정비율의 준수 여부를 단순히 위원 위촉 당시의 수치로만 관리하기 보다는, 위원의 중도 사임·해촉 등에 따른 성별비율 변동, 위원별 회의 참석률, 발

언 및 안전 제안 기회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반복적으로 법정 성별비율을 미준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미준수 사유,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행정기관위원회의 정책심의·의결 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 제고 노력 필요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에 관한 자문·조정·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책과정에 다양한 경험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인구구조, 산업기반, 생활SOC, 교통·의료·교육 접근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 집행 여건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¹⁶⁾

따라서 전국에 동일한 정책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책 설계와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¹⁷⁾ 비수도권 위원의 참여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장의 정보를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위원 확대는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의의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생활여건과 정책수요가 국가정책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당시 27.2%였던 행정기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¹⁸⁾ 이후 2020년에는 당초 제시한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였다.¹⁹⁾²⁰⁾

16) OECD (2025),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 OEC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17) Fabrizio Barca, Philip McCann & Andrés Rodríguez-Pose (2012), “The Case For Regional Development Intervention: Place-Based Versus Place-Neutral Approach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2(1): 134~152.

18)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8.3.

최근에는 「202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비수도권 위원의 위촉을 확대 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부문) 조직 지표에 반영하여 중점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2024~2025년) 행정기관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²¹⁾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분석대상²²⁾인 49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9,068명 중 비수도권 위원이 총 3,756명으로 비수도권 위원 비율은 41.4%로 나타났다. 즉, 2025년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으며, 당초 정부가 2022년 달성 목표로 제시한 비수도권 위원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2년간(2024~2025년) 행정기관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위원회 수	위촉위원 수	비수도권 위원 수	비수도권 위원 비율
2024	484	9,154	3,786	41.4
2025	491	9,068	3,756	41.4

주: 각 연도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 위촉위원이 없거나, 위촉위원이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 구성 확인이 불가한 위원회의 현황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2024년 484개에서 2025년 491개로 7개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위원 수는 오히려 3,786명에서 3,756명으로 30명 감소하는 등 정부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1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5.15.

20) 다만, 비수도권 위원 50%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비율과 같이 위반 시 법률상 미준수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니며, 정부가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한 정책적·행정관리상 목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1) 비수도권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중 사무소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인 위원을 의미한다.

22) 본 분석의 대상으로 연도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 위촉위원이 없거나, 위촉위원이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 구성 확인이 불가한 위원회를 제외하였다.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다.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51개, 0% 초과 25% 이하인 위원회는 108개, 25% 초과 50% 미만인 위원회는 132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위원회는 총 291개로, 전체 분석대상 위원회 492개의 59.3%를 차지하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위원회의 비중은 60.1%에서 59.3%로 0.8%p 하락하였으나, 위원회 수는 291개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50% 이상인 위원회는 2024년 193개에서 2025년 200개로 일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부 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위원 위축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다수의 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비수도권 위원 비율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2년간(2024~2025년) 행정기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 구간별 현황]
(단위: 개, %, %p)

구분		2024년 (A)	2025년 (B)	B-A
비수도권 위원 비율	0%	42	51	9
	0% 초과 ~ 25% 이하	120	108	△12
	25% 초과 ~ 50% 미만	129	132	3
	소계	291	291	-
	(비중 ¹⁾)	(60.1)	(59.3)	(△0.8)
	50% 이상	193	200	7
총계		484	491	7

주: 1) 비중은 분석대상 행정기관위원회 대비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0~50% 미만인 위원회의 비중임
1. 각 연도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 위촉위원이 없거나, 위촉위원이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 구성 확인이 불가능한 위원회의 현황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비수도권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증가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 위원 비율이 0%인 위원회는 2024년 42개에서 2025년 51개로 9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 비수도권 위촉위원이 없는 42개 위원회 중 대부분인 35개 위원회가 2025년에도 비수도권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비수도권 위촉위원이 없는 위원회 중 2025년 비수도권 미위촉 위원회 현황]
(단위: %)

구분	위원회명	비수도권 위원 비율
2025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0.0
2025	가상자산위원회	0.0
2025	가족친화인증위원회	0.0
2025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0.0
202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0.0
2025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0.0
2025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0.0
2025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²³⁾	0.0
2025	공적자금관리위원회	0.0
2025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0.0
2025	공증인징계위원회	0.0
2025	국가경찰위원회	0.0
202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0.0
20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0.0
2025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0.0
2025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0.0
202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0.0
2025	무역위원회	0.0
2025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0.0
2025	비정규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	0.0
2025	사업전환심의위원회	0.0
2025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0
2025	상생조정위원회	0.0
2025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위원회	0.0

(단위: %)

구분	위원회명	비수도권 위원 비율
2025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0.0
2025	인신매매등방지 정책조정협의회	0.0
2025	자살예방정책위원회	0.0
2025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0.0
2025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0.0
2025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0.0
202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0.0
2025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0.0
2025	증권선물위원회	0.0
2025	통신분쟁조정위원회	0.0
2025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0.0
소계	35개 위원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는 비수도권 전문가 발굴 및 위촉위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시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반복적으로 비수도권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41.4%로 당초 정부가 제시하였던 목표(50%)에 미달하고 있고, 비수도권 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비수도권 위원이 없었던 위원회 중 상당수가 2025년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구성원의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부처는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위촉 시 비수도권 전문가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위원 임기 만료 및 결원 발생 시 비수도권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위촉 단계에서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위

23)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4.5.31.~2026.5.30.으로 2025년도에는 위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위촉할 수요가 없었으며, 2026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3명 중 1명은 비수도권 위원으로 추천받아 2026년 6월 30일 신규 위촉하는 등 비수도권 위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이 전무한 위원회 및 비수도권 위원 위촉 목표 비율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미달 사유, 차기 위촉계획, 전문가 후보군 확보 현황 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비수도권 위원의 산정 기준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무소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권역별 분포, 해당 행정기관위원회의 정책대상 지역과 위촉위원의 전문성 간의 연계성, 실제 회의 참석률 및 지역 현안 관련 안건 제안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여 비수도권 위원 확대 정책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저조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중 상당수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위원회는 회의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위원회 미구성,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부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이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 안건 발굴 및 회의 개최 계획을 면밀히 관리하고, 실제 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의경비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581개 행정기관위원회의 2025년도 회의 개최 실적은 위원회별 평균 15.9회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회의 방식별로 살펴보면 대면(출석) 회의가 평균 13.0회, 서면회의가 평균 2.9회로 집계되었다.

[2025년도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대면(출석)	서면	합계
행정기관위원회 (581개)	13.0	2.9	15.9

주: 1. 2025.1.~2025.12.기간 동안의 현황임

2.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평균한 수치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회의 개최 횟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중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6개로 가장 많았으며, 1회 개최 위원회 78개, 2회 개최 위원회 73개, 3회 개최 위원회 39개, 4회 개최 위원회 53개 등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기관위원회 중 상당수는 연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5~10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97개, 11~20회 개최 위원회는 64개, 21회 이상 개최 위원회는 71개로 집계되어 위원회별 회의 운영 실적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별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10회	11~20회	21회 이상
위원회 수	581	106	78	73	39	53	97	64	71

주: 2025.1.~2025.12.기간 동안의 현황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14개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2025년 회의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14개 위원회에 편성된 2025년 회의경비 예산액은 약 7억 6,400만원이며, 이 중 약 1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2025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

주관부처	위원회명	유형	회의경비		회의 개최실적
			2025 예산액	2025 집행액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미구성	107,444	0	-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회 미구성	42,275	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범부처 거버넌스 정리 논의 등을 고려한 미개최	164,000	14,571	-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29,730	29,66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미구성	326,000	61,000	-
행정안전부	행정협약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및 위원회 미구성	10,800	0	-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3,000	0	-
기획재정부 (現 기획예산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2,800	2,800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3,600	0	-

(단위: 천원, 회)

주관부처	위원회명	유형	회의경비		회의 개최실적
			2025 예산액	2025 집행액	
산업통상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한 미개최	48,000	48,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9,000	0	-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6,000	1,982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회 미구성	8,424	0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3,000	0	-
합계	14개 행정기관위원회		764,073	158,017	-

주: 회의 개최 실적은 2025.1.~2025.12.기간 동안의 현황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사회보장위원회,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국무조정실 소관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국방부 소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보건위원회 등은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회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범부처 거버넌스 정리 논의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2025년도에 회의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던 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회의 개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 개최 실적 저조 사유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2025년도 회의경비 예산 1억 74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미구성으로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동 위원회의 최근 4년간(2022~2025년)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본회의를 1회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회의 개최 지연이라기보다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회의 운영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단위: 회)

구분	합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소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소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1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2025년	-	-	-	-	-	-	-
계	1	1	1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5월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²⁴⁾되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06611	2024.12.17.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소속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 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된 법정위원회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법령상 예정된 심의·자문 기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향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가능성, 위원 구성 일정, 법률 개정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경비 예산 규모를 보다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²⁵⁾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최근 회의 운영 실적에 장기간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소속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위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경비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 사유와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에는 실제 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②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 저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일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 소속 행정기관위원회의 개최 실적 제고 필요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안건 발굴 등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을 높여나가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다.

25)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구성시기 등을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2026년의 경우 제9기 위원회가 2026년 2월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으나(26.2~6월 기간 총 11회 회의 개최), 당초 2026년 예산 편성과정 중 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장기 불용을 사유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관련 사업명	총괄, 통일정책추진(1031-30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등	주의	통일부
	지적 사항	○ 통일부가 운영중인 소속 위원회(4개) 중 법령상 국회 (또는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위원회(남북관계발 전위원회 2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0회)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운영이 국회 추천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3회, 남 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4회)도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바,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에 비수도권, 여성 등 다양 한 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직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 요구 사항	○ 통일부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확보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사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개최 실적	○ 적극적인 안건 발굴 등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회, 4월말 기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0*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미구성
	평화경제특구위원회	1
위원 구성	* 남북피해자 보상금 등 신청 감소로 개최 실적 저조	
	○ '25년 4월말 기준, 통일부에 구성된 위원회들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50%로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상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법정기준(40%)을 충족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13%)는 외부 추천비율이 높아 여성위원 위촉비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통일부 장관 임명 4명 중 여성이 2인으로 통일부는 50%를 여성으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추천 절차 진행 시 성별 균형을 맞춘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여 위촉 비율 달성에 노력하겠음. - 또한 민간위원 신규 위촉시 북한·통일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참여시키도록 독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23.12.) 8.3% → ('24.12.) 32.5% → ('25.4.) 34.4%	
조치 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통일부 소관 위원회의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에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024년 총 3회에서 2025년 총 2회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2024년 총 6회에서 2025년 총 3회로 감소하였고,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2025년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주로 서면회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면 논의와 심의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4~2025년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현황]

(단위: 회)

구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합계	출석	서면	합계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	2	3	-	2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0	6	6	-	3	3
통일부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0	1	1	-	-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0	0	0	-	-	-
통일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0	0	0	-	2	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회의경비 예산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실제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25년도 회의경비 예산 842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회의 개최 및 집행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 정요구 이후에도 일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통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경비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합계	회의경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6,310	16,310	4,158	4,15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7,000	7,000	2,300	2,300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9,000	6,000	4,982	1,982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10,224	8,424	0	0
평화경제특구위원회	301,397	4,480	268,525	2,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www.org.go.kr>)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물론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전후남북자법에 따른 피해위로 금 등 지급 신청자가 없어 2025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일부의 설명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7기 위원회 임기가 2025년 11월 만료

된 이후 2026년에 제8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운영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 위원회는 남북피해자 인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라는 점에서,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안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증진전문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국회에 의해 추천되는 만큼, 통일부는 법상 위원회 미구성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통일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회의 안전 발굴, 회의 개최계획 수립, 위원 구성 일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의 개최 사유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의경비 예산의 편성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집행과 실제 위원회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7조²⁶⁾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된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회의경비 예산 4,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 중심에서 인공지능 활용 촉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성격이 변경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2025년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회의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

주관부처	위원회명	유형	회의경비		회의 개최실적
			2025 예산액	2025 집행액	
산업통상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한 미개최	48,000	48,000	-

주: 회의 개최 실적은 2025.1.~2025.12.기간 동안의 현황임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

위원회명	미개최 사유	향후 계획
산업디지털전환 위원회	- 법률 전반의 적용 범위를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25.12.31. 공포)함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이 변경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개최	- 심의 대상을 산업디지털전환 관련 정책에서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 촉진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26.7.1. 시행)

자료: 산업통상부

구체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2025년 12월 30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도 기

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기능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체제에서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개편된 위원회 체제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자 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이 2025년 예산 편성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 회의경비 예산 편성 자체를 부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 사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에 더해 인공지능 활용 촉진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 추진과정에서 기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정책 심의·점검 기능이 수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기존 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만큼,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상황 점검,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정책과제 정리, 하위법령 개정 방향 및 향후 위원회 운영체계에 대한 사전 논의 등은 기존 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따라서 정부는 향후 행정기관위원회의 개편 또는 법령 개정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회의 법정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편 이후 지체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안건 발굴, 위원 구성, 회의 일정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28)에 따라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

27) 다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 협의·점검 절차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2025년 중 5차례의 산업 AX·DX 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디지털전환위원회의 개편을 준비하였다는 입장이다.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치된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간 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 잔여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 유전자검사 제한 등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의경비 예산 4,227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제7기 위원회 미구성으로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고, 해당 회의경비도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2024~2026년)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개최계획은 매년 4회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의 개최 실적은 2024년 1회, 2025년 0회, 2026년 5월말 기준 0회에 그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및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

주관부처	위원회명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		
		2024		2025		2026		2025	2025	202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예산	결산	예산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4	1	4	0	4	0	42,275	0	60,400

주: 2026년 회의 개최 실적은 5월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회의경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있으나, 위원회가 계획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정 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유전자검사 및 배아연구, 연명의료 등 사회적 논의와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회의 운영이 장기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2026년 4월 10일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하여 현재 제7기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2026년에는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회의 미개최 사유는 해소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2026년에는 연간 회의 개최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행정기관위원회 성과 점검

일부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 담당 인력 부족, 조직·제도 정착 지연 등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 및 역할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는 인력 확충, 처리기간 관리, 조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환경의 복잡화와 정책 분야의 전문화에 대응하여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심의·조정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성과는 단순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회의를 개최하였는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성과관리의 기본 취지가 기관의 임무와 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역시 처리 건수, 회의 개최 횟수 등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법정기한 준수 여부, 정책 반영도, 국민 체감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나 생활상 피해구제 등과 같이 국민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설·운영되어 왔으나, 일부 위원회는 기능 중복, 회의 실적 저조,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기관위원회의 성과 점검은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운영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즉, 성과 점검은 위원회 축소나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소관 위원회별 설치 목적과 법정 기능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재점검하고, 처리기간, 안전 처리 결과, 정책 반영 여부, 국민 권리구제 효과 등

실질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과 점검 결과를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인력·예산 조정,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미흡 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환류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책임성·투명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국토교통부 소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²⁹⁾

국토교통부 소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담당 사건 수의 증가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법정기한 내 완수되도록 관리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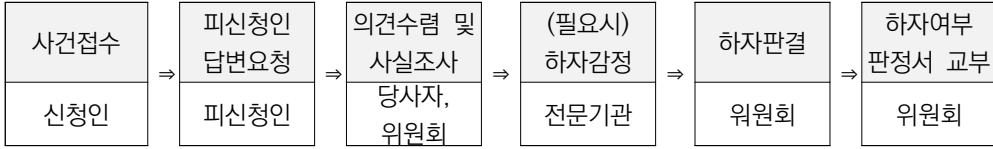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하는 하자심사 업무와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및 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조정안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락하거나 기한까지 답변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조정서 정보를 송달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보를 송달하며 당사자가 송달된 날부터 60일 내에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7.

[하자심사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분쟁조정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때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내,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³⁰⁾

30)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휴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공동주택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건수’로 매년 4,300건의 처리를 목표로 하여 102~110% 정도의 달성도를 보여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달성도]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공동주택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건수	목표	4,300	4,300	4,300	4,300
	실적	4,370	4,559	4,663	4,761
	달성도	102	106	108	110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최근 3년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을 처리기간별로 나누어보면 기준연도에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2021년의 경우 2,800건 이상의 사건이, 2022년의 경우 3,700건 이상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3,300여 건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으나 여전히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기간별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0일 이내	1,771	566	791	892	1,425
90일 초과 120일 이내	304	183	133	394	755
120일 초과 150일 이내	326	110	302	261	628
150일 초과 180일 이내	311	78	132	859	776
180일 초과 1년 이내	1,571	1,694	1,084	1,470	968
1년 초과	361	1,647	2,026	528	172
합계	4,644	4,278	4,468	4,404	4,724

주: 해당연도에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만을 포함하여 집계함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의 [별표 4]에 따를 때, 공동주택 전유부분 마감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냉난방시설, 가스 및 전기 시설 등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적시에 마치는 것이 신속한 하자 치유 및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치는데, 재심의 처리기간도 최초 하자심사와 동일하기 때문에³¹⁾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양적 실적 뿐 아니라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실적도 중요한 성과로 보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관련 사건접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 전년 대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하자심사 접수가 4,346건, 분쟁조정 접수가 391건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접수 건수]

(단위: 건수)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하자심사 접수건수	7,090	2,699	2,914	3,472	4,346
분쟁조정 접수건수	455	243	236	267	391

자료: 국토교통부

31)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하자심사 등) ④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을 의결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특히 아파트의 하자심사 접수건수는 2023년 1,872건에서 2025년 3,3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심사건수 및 하자결정건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신청 접수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구 분		2023		2024		2025	
		아파트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하자 심사	접수건수	1,872	1,215	2,565	303	3,382	71
	심사건수	780	662	837	224	1,380	30
	하자결정건수	551	479	601	172	741	28
분쟁 조정	접수건수	201	56	189	51	222	39
	조정건수	60	20	57	22	57	23
	조정성립건수	25	15	28	21	31	23

주: 하자결정 및 조정성립건수는 해당연도에 종결된 사건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하자결정건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41건 이후 2025년 69건까지 연도별로 등락이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하자 여부 의결을 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심의를 맡은 분과위원회에 조사·분석 담당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초 하자심사 접수사건을 심사할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소송건수의 경우 2021년 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모두 패소하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기된 3건의 소송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위한 행정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기간별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하자결정건수	2,785	1,591	2,084	1,774	2,079	
이의신청건수	141	59	125	77	69	
소송 건수	전체	2	2	0	1	1
	승소	0	1	0	0	0
	패소	2	0	0	0	0
	소송중	0	1	0	1	1

주: 소송건수의 경우 해당연도에 최초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집계하여, 동일 사건의 1~3심은 모두 1건으로 집계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처리기간 미준수의 주요 원인이 조사·분석 담당 인력 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연도별 인력을 살펴보면, 전체 인력은 34~4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중 기타는 민원담당 및 법률검토 등 사건조사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을 의미한다. 기타를 제외한 사건조사 인원은 2025년에 25명으로 2024년 대비 1명 감소하였다.

[연도별 위원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구원	3	10	9	12	12
연구보조원	3	1	0	0	0
보조원	4	4	1	1	2
현장조사원	11	10	11	13	11
기 타	13	14	13	13	15
합 계	34	39	34	39	40

주: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그 외 현장조사원 및 기타 구분은 정규직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례적으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처리기간 미준수의 주요 원인이 조사·분석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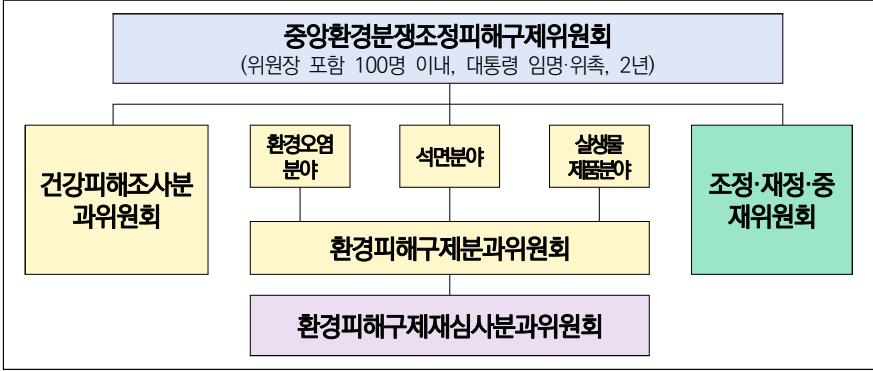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조직, 제도 정착이 지연됨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건강피해조사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하여 건강피해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991년에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2025년에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소속	-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시·도에 두는 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기능	-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관련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div>
위원회 구성	-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지방위원회는 30명 이내)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며,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구분	내용
분과 위원회	<p>-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직도〉</p>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각 법률·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전후 수행 주체 비교]

구분	(기존) 환경분쟁조정	(이관, 신규) 건강영향조사(청원)	(이관, 신규)피해구제		
			석면	환경오염	살생물제품
근거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91~)	환경보건법 (‘09~)	석면피해구제법 (‘11~)	환경오염피해구 제법 (‘16~)	화학제품안전법 (‘21~)
목적	국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환경피해의 모니터링	피해자 및 유족의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총괄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		
접수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기술원)		
조사	중조위	과학원	환경부(기술원)		
심의	조정·재정·중재 위원회	보건위원회	석면판정위, 피해구제심사위, 피해구제재심사위	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 피해구제정책위,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개정 前, 전체 위원수 총 145명(개별 피해구제委 115명, 중앙조정委 30명 등)



개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5개 분과위 + 조정·재정·중재위(100명 이내, 대통령 위촉·임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건강영향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의 기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실질적인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는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집행절차]

업무	부처	집행	사업수행주체
건강피해조사	중양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500백만원, 재배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오염피해구제		=> (820백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제피해구제		=> (324백만원)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 (150백만원)	
원스톱서비스 추진 교육·홍보		=> (4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내역사업 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사업에서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강피해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선금 지급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원을 불용하였다.

[2025년 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내역
분쟁조정피해구 제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백만원 ① 분과위원회 운영 1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위원·전문가 자문비 107백만원 - 분과위원회 임차료 1백만원 - 조사단 현지조사 및 위원회 참석 여비 17백만원 - 분과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② 건강피해조사 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X500백만원 = 500백만원 ③ 환경오염피해조사 8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1,200명×90천원=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84백만원 ① 분과위원회 운영 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위원·전문가 자문비 51백만원 - 분과위원회 임차료 1백만원 - 조사단 현지조사 및 위원회 참석 여비 17백만원 - 분과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② 건강피해조사 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피해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선금 지급 80백만원 ③ 환경오염피해조사 8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1,200명×90천원=108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내역
	백만원, 본조사 1,503명×474천원=712백만원 ④ 살생물제피해조사 324백만원 - 피해조사 200명×1,620천원=324백만원 ⑤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백만원 ⑥ 원스톱서비스추진 교육·홍보 40백만원	백만원, 본조사 1,503명×474천원=712백만원 ④ 살생물제피해조사 324백만원 - 피해조사 200명×1,620천원=324백만원 ⑤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백만원 ⑥ 원스톱서비스추진 교육·홍보 4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2025년 건강피해조사 수행건수가 전무하여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피해조사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³³⁾와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³⁴⁾로 나뉘는데, 2025년

3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회의 의결에 따라 비

에는 두 유형에 따른 조사 건수가 전무하였다.

또한, 2022~2025년간 건강피해조사 현황을 보면, 4년간 총 4건의 청원 접수 건수가 있었으나, 이 중 수용(조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5 건강피해조사 청원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2	'23	'24	'25
계	4	-	1	-	3
수용	0	0	0	0	0
불수용	2	-	1	-	1
불수리	1	-	-	-	1
기타 (반복·이중청원 등)	1	-	-	-	1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건강피해조사 청원이 3건 접수되었으나 불수리(요건 불충족)·불수용(분과위 심의·의결) 결정으로 청원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및 분과위 구성 지연, 조사 운영기반 마련 등 제도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장 직권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건강피해조사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청원일	지역	조사기간	소요예산	조사내용	
〈'09~'24.12.31. 「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12.9.18.	대구	'13.4.~'14.6.	500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14.8.4.	강원 동해	'15.6.~'16.6.	428	강원 동해시 동해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17.2.28.	인천	청원 '17.12.~'18.8.	270	사월마을 주변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18.12.~'19.8.	230		
'17.4.17.	전북 익산	'17.12.~'19.4.	246	장점마을에 인근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9.4.22.	충북 청주	청원 '19.12.~'20.12.	1,070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로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22.7.~'23.12.	932		
'20.2.25.	강원 횡성	'20.10.~'21.10.	320	양적리 가축분뇨 퇴비공정 주변 주민 건강피해조사	
'20.3.30.	충남 천안	청원 '20.10.~'21.10.	280	장산리 전선 및 필름제조공장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직권 '21.12.~'22.6.	230		
〈'25.1.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4.12.30.	인천 미추홀	청원	불수용	-	인천 미추홀구 상수도관 연결부위 납밀봉으로 인한 건강피해
'25.2.12.	강원 횡성	청원	불수리	-	횡성군 우천 일반산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25.10.14.	경기 여주	청원	불수리	-	폐기물 처리업체 등 인근업체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주: 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간 중의 취하, 불수리, 불수용건 등은 자료에서 제외
 2) 지역별 조사 예산은 조사대상 주민 수, 배출원 크기, 조사기간 등에 따라 상이
 3) 주민요구,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가·보완조사(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직권조사 등)도 실시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3건의 신규 접수예상 건에 대해 검토 중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접수예상 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피해조사 신규 접수예상 건]

청원피해 분류	민원 내용
A지역 폐기물매립장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으로 주민 암발생 등 조사요청
B지역 선박도금업체	조선도금 업체로부터 비산된 도료·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 요청
C지역 산업폐기물 소각장	30년 이상 운영해온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 요청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다만, 건강피해조사는 건강피해발생이 비정기적이라는 점, 소요예산 규모가 조사 대상 주민 수, 배출원 크기, 조사기간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연차별 조사계획 수립, 적극적인 위원장 직권조사 수요 발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1) 위탁선거경비의 의의

① 개 념

위탁선거경비란 「선거관리위원회법」¹⁾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말한다.

위탁선거에는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한체육회장·지방체육회장 선거 등이 있으며, 법령에 따라 대상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 임의위탁선거로 구분된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위탁선거의 구분]

구분	의무위탁선거	임의위탁선거
내용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단체가 재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대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학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그 밖에 의무·임의위탁선거 대상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위탁선거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경비와 위탁단체가 부담할 경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고, 후자는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제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이다.³⁾

전자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위탁단체로부터 별도로 납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하고 남은 경비는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경비의 구분]

구분	국가 부담 경비	위탁단체 부담 경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 ○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 ○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운영 ○ 집행잔액은 위탁단체에 반환

자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위탁선거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며,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공성이 높은 민간단체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금권 선거 등 부정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의 규제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나, 각 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위탁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선관위 위탁관리,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엄격한 제한, 임직원의 선거개입 금지, 강력한 처벌 등으로 요약된다.

위탁선거 및 위탁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3조(정의)에서 위탁선거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등을 정의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정의]

구분	정 의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자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또한, “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에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에서는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① 선거관리 전반(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②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에서는 전술하였듯이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와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를 구분하는 이외에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위탁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일반법인 반면,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2014년 위탁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이 명시되어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 법률들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2021년 개정으로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에 따라 지역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2023년 개정으로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선거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따라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따른 의무위탁선거 현황]

법률명	대상	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협 조합장	§51④
	농협 중앙회장	§130⑧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 조합장	§107①, §112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수협 조합장	§54②
	수협 중앙회장	§134⑦
산림조합법	조합장	§40의3②
	산림조합 중앙회장	§104⑦
새마을금고법	지역금고 이사장	§23의2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64의2⑥
신용협동조합법	신협 이사장 및 중앙회장	§27의3②
교육공무원법	대학의 장 후보자	§24의3①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장	§33⑦
	지방체육회장	§33의2⑦
	대한장애인체육회장	§34⑧

자료: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작성

(2) 위탁선거경비 현황

① 최근 위탁선거경비 수입·지출 현황

최근 5년간 실시된 위탁선거경비와 관련하여 국가가 세입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경비와 세입세출예산 외로 위탁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집행하는 위탁선거 경비의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탁선거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세출예산	114	199	488	230	128
세입세출예산 외	908	2,387	34,002	700	22,311
합계(A)	1,022	2,586	34,490	930	22,439
선관위 결산 총액(B)	359,938	839,892	399,967	854,516	815,584
비중(A/B)	0.28	0.31	8.6	0.11	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는 그 규모가 미미하다. 가장 위탁선거경비의 규모가 컸던 2023년의 경우 전체 경비 344억 9,000만원 중 세입세출예산 결산액 4억 8,800만원의 비중은 1.4%에 불과하였고, 가장 규모가 작았던 2024년의 경우 전체 경비 9억 3,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으로 비중은 24.7%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위탁선거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전체 결산액 대비 8.6%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보였으나 2024년의 경우에는 전체 결산액 대비 0.11%를 차지하여 위탁선거 실시 규모와 선관위 결산액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위탁선거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위탁선거경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최근 5년간 실시된 위탁선거경비 현황을 위탁선거 건수,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동시조합장선거 실시로 위탁선거 건수와 집행액이 가장 많았으며, 2025년에는 동시이사장선거로 인해 건수와 집행액이 높게 나타났다. 위탁선거경비 집행률은 2023년에 89.1%로 가장 높았으며, 2025년 57.5%로 가장 낮았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선거 대상 새마을금고 간 합병, 무투표당선 등으로 다수의 선거가 미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위탁선거경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선거 건수	의무	37	263	1,376 ¹⁾	39	1,189 ²⁾
	임의	-	2	-	-	1
	합계	37	265	1,376	39	1,190
납부액(A)		1,237	3,703	38,163	1,051	38,835
집행액(B)		908	2,387	34,002	700	22,311
반환액(C)		329	1,316	4,161	351	16,524
집행률(B/A)		73.4	64.5	89.1	66.6	57.5

주: 1) 동시조합장선거 1,347회 포함

2) 동시이사장선거 1,101회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최근 위탁선거 실시 현황 및 향후 주요 위탁선거 일정

최근 5년간 실시된 위탁선거의 선거종류별 구체적인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선거종류별 위탁선거 실시 현황]

(단위: 건)

위탁 유형	선거명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2,907	37	265	1,376	39	1,190	
의무	동시조합장	1,347	-	-	1,347	-	-	
	동시이사장	1,101	-	-	-	-	1,101	
	개 별 조합 장	농협 (축협포함)	77	12	7	5	18	35
		수협	7	2	2	1	1	1
		산림조합	13	4	3	-	4	2
	개 별 이 사 장	새마을금고	30	-	-	-	-	30
		신협	-	-	-	-	-	-
	국립대학 총장	50	12	7	14	7	10	
	대한체육회장	2	1	-	-	-	1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	1	-	-	-	1	
	지방체육회장	268	3	244	6	8	7	
	중 앙 회 장	농협	1	-	-	-	1	-
		수협	1	-	-	1	-	-
		산림조합	1	-	-	1	-	-
		새마을금고	3	1	-	1	-	1
신협		1	1	-	-	-	-	
임의	중소기업중앙회장	-	-	-	-	-	-	
	새마을금고 임원	-	-	-	-	-	-	
	신협 임원	-	-	-	-	-	-	
	기타	3	-	2	-	-	1	

주: 개별조합장, 개별이사장 선거는 재보궐선거, 신설, 합병·분할, 동시선거 제외 등 사유로 실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가 실시되었던 2023년 및 2025년의 위탁선거 실시 건수가 1,000회 이상 실시되어 급증했으며, 임의위탁 선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향후 실시될 주요 위탁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이사장선거는 2029년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주요 위탁선거 실시 일정]

연도	선거명	선거시기	비고
2026	2026 지방체육회장선거	2026년 12월	
2027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7년 3월	
2029	제2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29년 3월	
2029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	2029년 11월	최초 실시
2030	2030 지방체육회장선거	2030년 12월	
2031	제5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31년 3월	
2033	제3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33년 3월	
2033	제2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	2033년 11월	
2034	2034 지방체육회장선거	2034년 12월	

주: 전국 단위 의무위탁선거 기준. 국립대학총장임용후보자선거 및 각 조합중앙회장 선거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2025년 위탁선거경비 결산 현황

2025년에 실시된 위탁선거경비에 대하여 선거종류별, 업무성질별, 비목별 결산 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선거종류별 결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종류	위탁건수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합 계	1,190	38,835	22,311	16,524
의무위탁	소 계	1,189	38,804	22,286	16,518
	동시이사장	1,101	36,812	21,160	15,652
	개별조합장	38	911	706	205
	개별이사장	30	730	210	520
	국립대학총장	10	179	106	73
	시도체육회장	1	17	12	5
	시군구체육회장	6	75	34	41
	대한체육회장	1	29	21	8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	22	10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	29	27	2
	임의위탁	소 계	1	31	25
국기원장		1	31	25	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실시된 위탁선거 중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경비로 총 2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위탁선거경비 집행액 223억 1,100만원의 94.8%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성질별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집행률
합 계	38,835	22,311	16,524	57.5
선거관리일반	6,233	5,111	1,122	82.0
선거운동관리	5,527	2,356	3,171	42.6
투표관리	8,312	5,068	3,244	61.0
개표관리	3,422	1,406	2,016	41.1
계도·홍보	825	697	128	84.4
예방·단속	13,479	7,552	5,927	56.0
포상금	703	115	588	16.4
부가경비	334	6	328	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위탁선거경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선거 대상 새마을금고 간 합병, 무투표당선 등 다수의 선거가 미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선거운동관리, 개표관리의 집행률이 낮았으며, 포상금(16.4%) 및 부가경비(1.5%)의 집행률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목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요금및제세(27.8%)와 손실보상금(1.2%) 및 포상금(16.6%)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무투표당선 등에 따른 선거공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의 집행 저조, 손실보상금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대상 사고의 낮은 발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별		납부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반환액	집행률
합 계		38,835	△1,990 1,990	38,835	22,311	16,524	57.5
110	소 계	8,664	△23 34	8,675	6,222	2,453	71.7
	04 일용임금	8,664	△23 34	8,675	6,222	2,453	71.7
210	소 계	25,002	△1,830 1,820	24,992	13,407	11,585	53.6
	01 일반수용비	11,174	△1,605 113	9,682	5,734	3,948	59.2
	02 공공요금및제세	6,498	△145 589	6,942	1,930	5,012	27.8
	05 특근매식비	1,059	△12 38	1,085	606	479	55.9
	07 임차료	3,215	△48 377	3,544	2,462	1,082	69.5
	08 유류비	124	△4 3	123	51	72	41.5
	14 일반용역비	790	△14 47	823	472	351	57.4
	15 관리용역비	2,104	△2 653	2,755	2,125	630	77.1
	16 기타운영비	38		38	27	11	71.1
220	소 계	1,977	△132 127	1,972	883	1,089	44.8
	01 국내여비	1,977	△132 127	1,972	883	1,089	44.8
240	소 계	918		918	638	280	69.5
	01 사업추진비	780		780	524	256	67.2
	02 관서업무추진비	138		138	114	24	82.6
310	소 계	802	△4 5	803	121	682	15.1
	01 손실보상금	84	△2	82	1	81	1.2
	03 포상금	718	△2 5	721	120	601	16.6
320	소 계	957	△1 4	960	525	435	54.7
	09 고용부담금	957	△1 4	960	525	435	54.7
430	소 계	515		515	515	-	100.0
	01 자산취득비	515		515	515	-	1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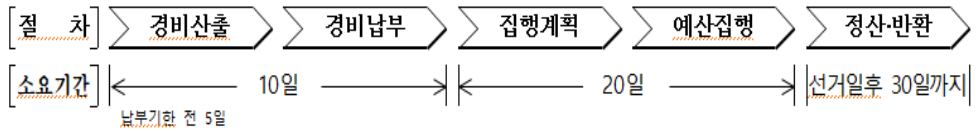
(3) 위탁선거경비 운용 구조

위탁선거경비의 운용은 경비산출 → 납부 → 집행 → 반환의 절차를 거친다. 위탁선거경비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하는 위탁선거절차 사무편람에 관리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구분	내 용	
	위탁단체	국가
경비부담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이하 운용방식 설명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통상적인 국가재정 절차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 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정산·반환 (선관위 →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자료: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202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경비산출

위탁선거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한다.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위탁선거경비는 별도로 산출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경비 산출 후 지체없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산출명세를 보고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산출내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산출단가 및 기본통계 적용기준일은 위탁신청서 접수일이 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신청 간주일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다. 단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적용하며, 물량은 경비 산출 기준에 정하여진 경우 그 물량을 적용하되,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물량을 적용한다.

현재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은 2025년 8월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후에 개정된 위탁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은 없으며, 최종 개정된 산출기준은 2024년 8월에 개정되었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경비 산출기준(2023) 예시]

<공통경비>

경비·세목	항목	산출기준
1. 선거관리일반		
110-01 (보수)	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⁵⁾	10개 이하 조합:(6급)단가×인원수(5급이하)×25시간 11개 이상 조합:(6급)단가×인원수(5급이하)×40시간 ※ 조합수: 대항 조합수 포함
110-04 (일용임금)	가. 사무보조원 인부임	5~9개 조합: 단가×1인×25일×1월 10~14개 조합: 단가×1인×25일×2월 15개 이상 조합: 단가×2인×25일×2월 ※ 조합수: 대항 조합수 포함
	나. 사무보조원 초과근무임	5~9개 조합: 단가×1인×15시간×1월 10~14개 조합: 단가×1인×20시간×2월 15개 이상 조합: 단가×2인×20시간×2월 ※ 조합수: 대항 조합수 포함
	다. 선거장비 운반·정리인부임	10개 이하 조합: 단가×2인×2일 11개 이상 조합: 단가×3인×2일 ※ 조합수: 대항 조합수 포함
210-01 (일반수용비)	가. 선거업무협조자 사례금	100,000원×선거담당자수 ※ 선거담당자: 관할조합별 1인
	나. 사무용품 등 구입비	150,000원+[30,000원×(조합수×0.5)]
	다. 행정장비 유지·수선비	200,000원×3종
	라. 입후보안내자료 인쇄비	5,000원×후보자수×3부
	마. 위원수당	단가×정수×3회
	바. 선거사무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단가(100원)×50회×3월×조합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탁선거 사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선관위 일반사무와 별도로 산정·측정하여 위탁선거경비로 납부받아 집행했으며, 이후 동시이사장선거경비 산출근거(2025)에서는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하였다는 설명이다.

② 납부

납부요구시기는 위탁선거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이다. 위탁단체의 납부기한은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전 60일까지이나 재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이며,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재해보상준비금은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이다.

③ 집행

관할 또는 대행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중앙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위탁선거사무 중 선거장비·물품 등의 구입·제작 등 일정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 집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목간 전용 또는 동일 목내 세목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목간 전용액이 1건당 100만원 또는 누계액 300만원 초과 시 상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용하되, 사업추진비(240-01), 관서업무비(240-02) 세목은 산출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위탁선거경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규정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사무편람 등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선거경비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외 경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산 및 반환

위탁선거 종료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질별·세목별로 선거경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지급부와 함께 상급 위원회에 제출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받은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한다.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위탁선거경비(통합사무경비)를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

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며, 대행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위탁선거경비를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5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한다.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위탁선거경비를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한다.

동시조합장·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아울러, 관할위원회(구·시·군위원회)와 시·도위원회는 각각 상급위원회인 시·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지방·위탁경비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보고하되, 대행위원회는 증명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관할위원회는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1) 위탁선거경비의 특성

위탁선거경비는 민간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해 주는 대가로 볼 때는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선거의 민주성, 투명성 등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국가가 위탁기관들의 선거업무를 대행해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수입금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① 수수료·부담금적 성격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⁶⁾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부담원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유발자부담금, 협력·정책목적 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위탁선거경비는 위탁선거를 실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공공단체가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위탁단체가 당해 선거관리로 인해 이익을 얻기에 수익자부담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은 그 부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권력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탁선거경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징수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위탁선거경비는 위탁선거 대상단체라는 특정 수익자가 존재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서비스라는 특정 행정서비스가 존재하며, 위탁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관리의 실비를 부담한다는 비용보상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조세, 부담금, 수수료 비교]

구분	조세	부담금	수수료
법적 성격	국가·지자체의 일반 재정조달을 위한 강제부담	특정 공익사업의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전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
부과 목적	일반 재정수입 확보	특정 정책사업 재원 조달	행정서비스 비용 회수
대가성	없음	직접적 대가성은 없으나 특정 수익·원인행위과 관련	있음
사용 용도	국가·지자체 일반 경비	특정 사업·기금에 사용	해당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
납부 대상	국민 일반	특정 원인행위자 또는 수익자	서비스를 신청·이용한 자
사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수수료, 인지대, 등기수수료, 공증수수료
법적 근거	조세법률주의 적용	법률에 근거 필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 필요
징수 주체	국가·지자체	국가·공공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자료: 국가법령센터 등을 바탕으로 작성

② 국가기관 수입금으로서의 특성

선관위가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민간 기관들의 선거를 위탁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은 정부가 전액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위탁선거경비는 부담금의 성격과 수수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수수료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수수료의 성격으로 볼 때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대가이면서 국가기관이 수납하는 공공수입으로서 세외수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수납주체는 선관위가 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며, 위탁선거 대상단체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선거 관리 비용에 충당한다는 수납 목적을 가지게 되어 국가기관의 수입금으로서 특성도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위탁선거경비는 단순한 민사상 위탁계약 비용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위탁선거의 경우 선관위만이 수행 가능하고, 법률에 의해 경비 부담의 의무가 발생하며, 경비 산정 기준도 법령 및 선관위 경비산출 기준에 따르게 되어 사법상 계약수입이 아니라 공법상 수입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로 보면 국가기관이 제공한 행정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세외수입의 성격을 지닌다.

(2) 예산총계주의

① 예산총계주의의 의의

예산총계주의란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⁷⁾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예산에 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재정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재정을 통제하는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면 실제 재정규모가 숨겨질 수 있어 모든 재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재정 전반을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⁸⁾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관 부처가 이를 임의를 집행할 수 없고 반드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국가재정 활동에 적용되며,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 과정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⁹⁾에서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초과지출,

8)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9)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대차관 초과지출의 5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에 대하여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2026.9.11. 부로 시행될 예정이다.¹⁰⁾

수입대체경비란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또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수수료나 공무원 시험 응시료와 같이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등에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은 사업 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현물출자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¹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자금이 신규로 소요되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정부출자기관에 전환되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구성만 변동되고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인정되고 있다.

전대차관(轉貸借款)이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차관 도입 시 계약당사자는 외국 금융기관 등 차관 공여자와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차입된 자금의 실수요자는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0)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시행일: 2026.9.11.]

11)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 받아 왔으나, 1998년 IMF 구조조정 차관 2차분을 마지막으로 도입이 중지되었다. 정부는 자금의 연계 과정에서 창구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차입된 자금, 즉 전대차관의 도입은 국내 민간부문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외로 운영한다. 다만, 전대차관을 상환할 때에는 세입세출 예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는 외국의 실물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원자재차관과 자본차관으로 구분된다. 차관물자대는 1989년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전년도 인출 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법」상 예외 외에도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기업예산법」¹²⁾에 따른 회전자금이 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대하여 물품자금을 지불하고 수요기관 또는 실수요자로부터는 물품대금 및 수수료를 수납하는 자금으로서, 조달청 회전자금은 조달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¹³⁾에 따른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이 있다. 국고금 수입은 조세 납부시기에 따라 월별·일별로 수납되지만, 지출은 연중 상시적으

12)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이루어지므로 조세수납액과 지출액의 시차에 따라 국고금에서 일시적인 잉여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최상위 계정인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이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이나 개별 법률에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들도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치 근거와 관련한 법률은 있으나, 예산 외 지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용되는 자금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경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¹⁴⁾, 산림청의 녹색자금¹⁵⁾ 등이 있다.

그 밖에 별도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 기성회비가 있다.

한편,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다가 국가재정 내로 편입된 사례로는 산업통상부 소관의 기술료 징수액(2014년부터 산업기술진흥기금으로 편입), 대법원 소관의 법원 공탁금(2016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편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익사업적립금(2018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 등이 있다.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및 예산 외 자금의 유형]

구분		자금
국가재정법에서 인정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초과지출, 전대차관 초과지출
국가재정법 에서 미인정	예산 외 지출의 법적 근거 있음	회전자금,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
	설치법은 있으나, 예산 외 지출의 법적 근거 없음	위탁선거경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녹색자금
	별도 규정 없음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자료: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2021)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현행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의 문제점

① 예산총계주의 위배

국회는 선관위의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수입대체경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위탁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사무로서 국가사무이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을 뿐 예산 외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6, 2018, 2019, 2021, 2023,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실시하여 왔다.

[위탁선거경비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시정요구사항(유형)
2016회계연도 결산	○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2018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019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23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4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17조 상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 외로 위탁선거경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외에 예산, 결산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¹⁶⁾ 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16)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2021.3.), 재정성과연구원

②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저하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예결산 심사, 감사원 결산검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선거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되어 반환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나 위탁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지급결의서를 변조·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선관위 자체 감사의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⁷⁾

또한, 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¹⁸⁾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을 지급¹⁹⁾하고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지급을 중단한 상태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경비를 집행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위탁선거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탁선거관리가 선관위의 본연의 사무임에도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으며, 위탁선거 사무는 국가가 행하는 사무로 위탁선거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위탁단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⁰⁾ 그럼에도 아직까지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선관위 규칙에 존속하고 있다.

17) KBS뉴스, “충북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원 임의 지출에 위·변조까지”, 2025.3.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5289&ref=A>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2019년 3억 4,300만원, 2020년 3,500만원 지급(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강석호, 오제세, 김현권 의원안) 검토보고서(2018.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현재 선관위는 위탁선거경비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2025.8.14.)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선거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 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탁선거경비의 집행 규모 및 일부 내역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되어 예결산 심사의 대상이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 제출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과는 투명성의 정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4) 제도개선 및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①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 외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1년 위탁선거경비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용역에서는 위탁선거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편입, 기금 설치, 수입대체경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러한 방안은 위탁선거관리업무와 위탁선거경비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회계 편입은 수입과 지출이 단절되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특정 지출에 한정하는 연계성이 모호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다음으로 기금 설치의 위탁선거경비가 규모가 작고, 연도간 변동폭이 크다는 점과 위탁선거경비는 잔액을 바로 반환해 잔액의 적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입대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탁선거는 국가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며, 위탁선거 수요의 연도간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수입대체경비와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는 짧은 관리기간 내에 초과 지출 승인을 통한 적기 예산확보가 어렵고, 사고이월 다수 발생으로 이월금 관리 등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아울러, 수입대체경비는 일반회계 틀 속에서

운영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되 일부 초과된 수입분에 대해서만 신축적인 운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해당 위탁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위탁선거경비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연구용역은 현행과 같이 예산 외로 운용하되,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것과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산명세서의 국회 보고 등 관련 규칙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제도개선 경과 및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위탁선거경비 결산명세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2021.8.30. 시행)하였다. 이후 위탁선거경비 결산서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고, 경비산출기준을 정한 때에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8.14.부로 시행 중에 있다.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 국회 제출 관련 위탁선거법 심사 경과]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심사경과	비고
220793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양부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발의 (2025.2.6.) 대안반영폐기 (2025.7.23.)	위탁선거 경비 관련 내용 반영 없이 대안반영 폐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선거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²¹⁾

한편, 세입세출예산 외로 위탁선거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0대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는데, 제20대국회와 제21대국회에서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되어 1건은 폐기되고, 1건이 계류 중이다.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 근거 마련 관련 위탁선거법 발의 현황]

대수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비고
제20대국회	2014935	백승주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적 근거 명시 ○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 명시	임기만료폐기
제21대국회	2104455	이해식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적 근거 명시 ○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 명시	임기만료폐기
	2109879	임호선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위탁선거경비 관련 내용 반영 없이 대안반영폐기
	2119266	전봉민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임기만료폐기
제22대국회	2207939	양부남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및 산출기준, 결산서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위탁선거경비 관련 내용 반영 없이 대안반영폐기
	2212401	양부남 의원	○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상임위 계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4)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① 선관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실비변상 차원에서 위탁선거경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맞지 않고, 위탁단체 부담 경비를 국가재정에 편입할 경우 모든 예결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민간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탁선거경비가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선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국가수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선관위의 위탁선거관리 업무가 선관위의 주요 사무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어 위탁선거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예결산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계 되는 투명성 및 책임성과 민간재정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익 형량할 때 과연 민간의 자율성이 더 크게 침해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 포함 시 회계절차 준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위탁단체의 수시변동(신설·통합·소멸) 및 재보궐선거 수시 발생으로 사전에 위탁선거경비의 적정 규모를 편성하기 곤란하고,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세입세출예산 편입 시 선거일 후 예산이 재배정되어 원활한 선거관리 및 예산 집행이 곤란하고 집행잔액을 차년도 결산 및 차차년도에 반환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민간단체 재정에 침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위탁선거경비의 적정 규모를 편성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위탁선거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임의위탁선거가 아닌 의무위탁선거로 사전에 선거의 규모와 비용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위탁단체의 수시변동이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재보궐선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추이를 산정하여 위탁단체의 수시변동이나 재보궐선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가능하다는 점,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현재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2개 회계연도에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선거계획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방식

으로 2개 회계연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국가재정은 현행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방식처럼 위탁선거경비의 수입과 지출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으므로 예산배정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행잔액의 처리도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 편입 및 운영방안

위탁선거경비를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고 수입과 지출이 일대일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경비 등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경비의 수수료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대체경비는 재정 운용에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비이다. 따라서, 위탁선거경비는 국가가 제공하는 선거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 징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적합한 구조로 생각되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집행의 신축성이 보장된다.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대체경비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당해연도에 실시될 위탁선거의 수와 단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고, 해당 위탁선거 실시 전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으로 납부받아 그 세입 내에서 위탁선거경비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선거의 특성상 무투표당선 등으로 예산집행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불용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금의 처리방식으로 집행잔액만큼을 세입에서 차감하여 위탁선거 대상단체에 반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납입처리

와 반환처리 시 각각 세입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세입과 세출의 일대일 대응이 국가회계시스템상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국가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일대일로 대응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으로 선 집행하고, 실제 집행한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대체경비의 성격은 감소하며, 위탁선거경비의 특성상 위탁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일대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은 오히려 세입과 세출이 일대일로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하여, 시행이 예정된 위탁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선거에 대한 실적치 평균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에서 우선 위탁선거경비를 선 집행하고, 위탁선거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후 가급적 당해연도 내에 위탁단체에 비용을 청구하여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경비산출 → 경비납부 → 예산집행 → 정산·반환의 구조를 세출예산편성 → (신청) → 예산집행 → 정산 → 경비청구 → 세입의 구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청구한 경비를 위탁선거 대상단체가 납부하지 않는 등 세입 미수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대상단체가 공공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수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은 위탁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일대일로 대응이 가능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고, 실제 집행한 비용만 납부하여 세입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위탁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탁선거경비가 국가가 제공하는 선거관리 서비스의 대가로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족하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그 밖의 투명성 제고 방안

현재 선관위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그 외에 재정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탁선거경비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명세서 작성 전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탁선거경비운용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탁선거경비의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는 상급 선관위의 확인·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탁선거경비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명세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세입세출 예결산서와는 달리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 개 요

국가가 수행하는 송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송무는 크게 2가지 소송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법 제2조). 행정소송의 경우, 그 개념과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외에 소송사무의 관리와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4가지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1) 국가소송의 수행체계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법 제2조).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을 수행자로 지정하고,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다만,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이 경우 수행자인 행정청의 직원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 제3조제3항).

추가로,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직원을 지휘하는 경우 모두 변호사(정부법무공단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 제3조제4항).

[국가소송 수행에서의 법무부장관의 권한]

구분	내용	근거
수행자 지정	검사·공익법무관 등을 수행자로 지정	국가소송법 제3조제1항
지휘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 지휘	국가소송법 제3조제3항
대리인 선임	수행자 지정 또는 지휘 시 변호사 선임 가능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3가지 권한은 모두 국가소송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의하여,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법 제 13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을 수임한다(법 시행령 제2조).

[법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수임자	수임 범위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소송 사건
고등검찰청검사장	·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소송 사건 ·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국가소송 사건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지방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국가 소송 사건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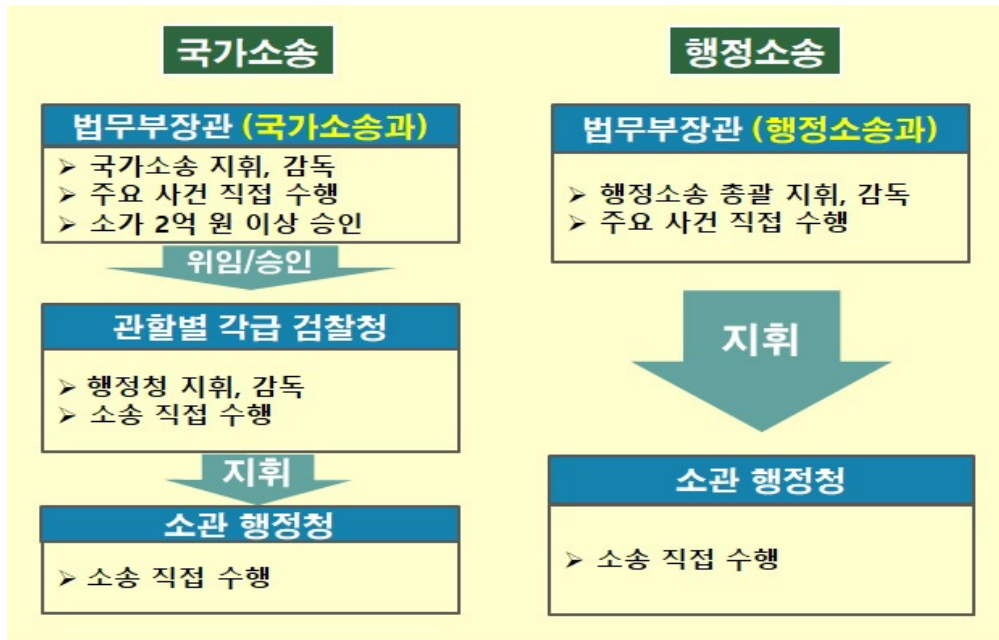
다만,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을 둔다(법 시행령 제3조).

(2) 행정소송의 수행체계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한다(법 제5조제1항). 이 때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다만, 모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 및 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 제6조제1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할 수도 있다(법 제6조제2항).

[국가소송무 지휘·승인 체계]



자료: 법무부

요약하면,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소가 제기되면, 국가소송은 검찰청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으로 소장이 송달되며, 소송수행자가 지정된 후 소송이 진행된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문이 국가소송의 경우 검찰청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으로 송달되며, 항소·상고 여부는 국가소송의 경우 검찰이 지휘하고 행정소송은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가송무 사건의 수행 절차]

□ 소송 진행 절차

- 국가 원고 또는 피고 소제기 → 소장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소송수행자 지정(검사, 공익법무관, 법무부 직원, 소송수행청 공무원) → 소송진행 및 보고(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법정출석 대응) →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항소·상고 여부 판단(국가소송은 검찰지휘, 행정소송은 법무부) → 확정 또는 항소심, 상고심 진행

자료: 법무부

(3) 국가송무와 국가재정과의 관계

국가송무(국가소송, 행정소송)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은 세입으로 계상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의 채무는 세출로 집행될 수 있다.

세입에서의 대표적인 예로 과징금 취소소송의 (일부)승소 결과 발생하는 채권에 의하여 국가가 과징금을 수납하는 경우 과징금(56-565) 비목으로 계상되며, 국가배상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변상금(57-571) 비목으로, 사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지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57-572) 비목으로 계상된다.

세출에서의 대표적인 예는 배상금과 손실보상금이다. 사인이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배상금(310-02) 비목으로 지출된다. 또한,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손실보상금(310-01) 비목으로 집행된다.

세입에서 국가송무가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을 중심으로 결산을 살펴보면,¹⁾ 2025회계연도 과징금의 예산현액은 7,741억원이고, 1조 5,73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125억원을 수납하고 8,608억원을 미수납하였다. 수납률은 45.3%

1) 다만, 각 비목에서의 세입 수납이 모두 소송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과 자발적인 납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목의 세입이 전부 국가송무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송무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다. 위약금의 경우,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3,602억원 중 178억원만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4.9%에 불과하였다. 변상금 역시 징수결정액 4,451억원 중 586억원만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13.2%에 불과하다.

[주요 수입목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회계 연도	수입목	예산현액	징수결정	수납	미수납	불납결손
2022	과징금	5,150	16,153	8,573	7,571	9
	변상금	684	4,104	782	3,319	3
	위약금	2,169	5,182	1,148	4,033	1
2023	과징금	5,690	12,811	8,244	4,563	5
	변상금	728	4,168	535	3,630	4
	위약금	2,016	4,116	100	4,016	0
2024	과징금	6,618	11,784	3,897	7,874	12
	변상금	766	4,313	464	3,826	23
	위약금	2,084	5,179	333	4,845	1
2025	과징금	7,741	15,735	7,125	8,608	2
	변상금	782	4,451	586	3,845	20
	위약금	1,297	3,602	178	3,412	1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과징금 목에서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636억원을 수납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세입처리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순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징수결정액 중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수납하였으나(1,972억원, 수납률 98.6%),²⁾ 나머지 기관은 수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25년 4월 SKT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과징금 수납금액 상위 5개 기관]

(단위: 억원, %)

소관	예산현액	징수결정	수납	미수납	불납결손	수납률
공정거래위원회	5,348	7,926	3,636	4,290	0	4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8	2,000	1,972	27	0	98.6
금융위원회	599	1,544	774	770	0	50.1
보건복지부	225	1,113	284	830	0	25.5
기후에너지환경부	316	1,850	202	1,649	0	10.9

주.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중 수납금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에서 재작성

세출에서 국가송무가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목을 중심으로 결산을 살펴 보면, 배상금의 경우 2025회계연도 현액 4,334억원보다 많은 1조 562억원을 지출 하였다.3) 이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배상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상금이 계획보다 많이 지급된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배상금 예산 현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지출세목명	확정예산	예산현액	지출	이월	불용
2022	배상금	5,096	5,096	5,120	205	745
	손실보상금	16,373	41,827	49,734	114	432
2023	배상금	4,180	4,180	4,875	1	636
	손실보상금	12,470	12,470	12,700	59	714
2024	배상금	4,302	4,420	6,371	2	18
	손실보상금	6,708	6,704	8,140	4	190
2025	배상금	4,333	4,334	10,562	24	427
	손실보상금	7,564	7,563	8,143	19	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배상금의 경우 통상 손해를 입은 사인이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세입에서의 과징금 등과 달리 국가송무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배상금 비목에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⁴⁾ 법무부가 4,3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순이었다.

[2025회계연도 배상금 지출금액 상위 5개 기관]

(단위: 억원, %)

소관	확정예산	예산현액	지출	이월	불용	집행률
법무부	1,311	1,311	4,364	0	0	332.9
행정안전부	2,419	2,419	1,946	0	55	80.5
국방부	177	1,896	1,794	1	100	94.6
보건복지부	1	2	906	0	42	45,300
국토교통부	105	105	506	21	27	4.8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중 지출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에서 재작성

법원에서의 패소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전에 대하여 본예산이 부족한 경우, 각 부처는 예비비의 편성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는 2025년 배상금 본예산이 7월에 이미 소진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였고, 총 3,053억원의 예비비를 국가배상금으로 집행하였다.

4) 배상금 비목의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소송법 제10조는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을 국가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무부로 하되,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배상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는 것으로(「국가배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동 소관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배상금이 지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25년 4월 메이슨 대 대한민국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정부의 패소판정이 확정됨에 따라⁵⁾ 손해배상 원금 등 법원의 판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예비비 946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90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⁶⁾

나. 현황

국가소송의 경우, 2025년 접수건수는 2024년 대비 19.1% 증가한 14,843건이다. 2025년 국가소송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35.2%가 증가하여 5,892건이었다. 승소율 역시 전년 대비 9.2%p 감소한 30.1%이다.

[국가소송 접수건수 및 승·패소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건수	10,695	11,176	11,049	9,598	12,466	14,843
처리건수	4,396	4,390	4,600	4,958	4,357	5,892
승소건수	1,664	1,736	1,750	1,919	1,713	1,776
승소율	37.9	39.5	38	38.7	39.3	30.1
패소건수	508	465	450	459	390	505
패소율	11.6	10.6	9.8	9.3	9	8.6

- 주: 1. 접수건수: 전년도 이월사건과 당해연도 접수사건을 합산한 건수
 2. 처리건수: 재판이 확정된 건수
 3. 승소건수: 국가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4. 승소율: 집계년도 처리건 중 승소건수의 비율(승소건수/처리건수 x 100%)
 5. 패소건수: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패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6. 패소율: 집계년도 처리건 중 패소건수의 비율(패소건수/처리건수 x 100%)

자료: 전국 검찰청, 「국가소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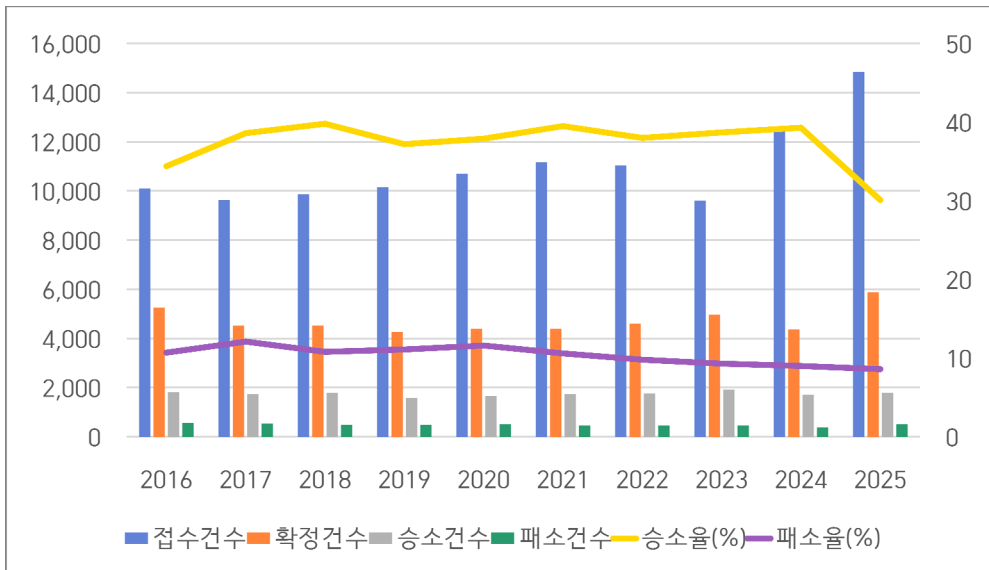
국가소송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2023년 최저인 9,598건이었다가 2024년과 2025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승소율은 2025년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30.1%를 나타냈다.

5)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社は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 신청을 하였다. 2024년 4월 중재판정이 있었고, 싱가포르 법원에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25.4.18.)되었다.

6) 불용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급해야하는 판정금이 외화(\$)로 정해져 있어, 예비비 편성 당시 환율과 지급시 환율 차이로 일부 집행잔액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편성시 1\$=1,445원(직전 3개월 평균) / 지급시 1\$=1,377원).

이와 같은 2025년의 국가소송 증가 및 승소율의 감소는, 최근 증가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소송 중 사건 비중이 높은 국가배상 사건 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시기와 연관이 있으며, 위원회 1기 활동기간('05.12~'10.06) 이후 국가배상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위원회 2기 활동기간('20.10~'25.11)에도 역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과거사 진상규명 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 국가배상 사건의 전반적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⁷⁾

[10년간 국가소송 접수건수 및 승·패소율 추이]



자료: 국가소송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소송의 경우, 2025년 접수건수는 2024년 대비 다소 감소하여 43,312건이다. 처리건수는 2024년 20,109건에서 감소한 16,172건이고, 승소율은 2024년 66.4%보다 5.4%p 감소한 59.0%이다. 패소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12.3%이다.

7) e-나라지표, 2026.3.5.,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3, (2026.5.11. 확인)

[행정소송 접수건수 및 승·패소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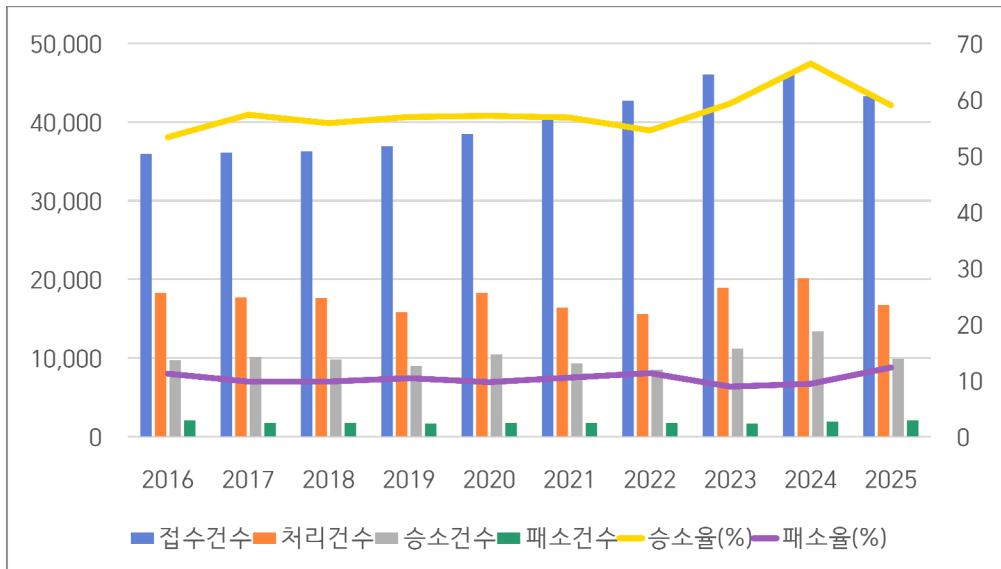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건수	38,479	40,978	42,736	46,021	46,083	43,312
처리건수	18,260	16,387	15,561	18,922	20,109	16,712
승소건수	10,431	9,302	8,478	11,223	13,348	9,875
승소율	57.1	56.8	54.5	59.3	66.4	59.0
패소건수	1,769	1,719	1,752	1,692	1,887	2,065
패소율	9.7	10.5	11.3	8.9	9.4	12.3

- 주: 1. 접수건수: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년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건과 이월건의 합계
- 2. 처리건수: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종결(확정, 소취하 등) 처리한 건 수
- 3. 승소건수: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승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 4. 승소율: 집계년도 처리건 중 승소건수의 비율(승소건수/처리건수 x 100%)
- 5. 패소건수: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패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 6. 패소율: 집계년도 처리건 중 패소건수의 비율(패소건수/처리건수 x 100%)

자료: 국가송무정보시스템

2016년 이후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행정소송의 접수건수가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승소율은 약 60% 수준으로 일정하였고 2024년 잠시 상승하였으나 2025년 59%로 감소하였다.

[10년간 행정소송 접수건수 및 승·패소율 추이]



자료: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분석의견

(1) 소송수행해태 관리 강화

국가송무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 및 소송 지휘하거나(국가소송), 행정청의 장 및 수행자를 지휘하기 때문에(행정소송), 소송의 수행자가 지휘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소송 수행상의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수행해태는 국가송무의 체계적인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리 및 방지는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소송수행해태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4조).

[소송수행해태에 대한 조치 절차]

<p>*국가소송 ①소송수행해태행위 → ②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및 소송총괄관에게 통보 → ③소송총괄관이 행정청의 장에게 징계건의 → ④행정청의 장의 조치</p>
<p>*행정소송 ①소송수행해태행위 → ②법무부장관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 → ③소송총괄관이 행정청의 장에게 징계건의 → ④행정청의 장의 조치</p>

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에 따르면, 소송수행해태는 실무상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로 통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내부규정 등을 통해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8) 소송총괄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자로 임명한 사람을 뜻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 제 8조). 구체적으로 소송총괄관은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소송수행해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소송의 경우 2025년 총 31건의 해태행위가 있었으며, 대체로 상소기간 등을 방치하여 도과하게 경우(11건)와 소송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임의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19건)가 다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소송의 소송수행해태 현황]

(단위: 건)

구분	기간 도과		소송지휘 위반		계
	착오	방치	적극위반	소극위반	
2021	1	6	2	16	25
2022	-	8	6	11	25
2023	-	16	5	28	49
2024	2	6	5	13	26
2025	1	11	7	19	31

- 주: 1. 착오: 상소기간 등의 계산 착오,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관련 착오
 2. 방치: 사건의 방치 등으로 인한 상소기간 도과 등
 3. 적극위반: 응소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지휘에 반하는 소송행위를 한 경우
 4. 소극위반: 소송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

자료: 법무부

행정소송의 경우, 2025년 총 27건의 해태행위가 적발되었으며, 대체로 소송지휘를 받지 않고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15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소송수행해태 현황]

구분	기간 도과		소송지휘 위반		계
	착오	방치	적극위반	소극위반	
2021	1	0	0	1	2
2022	0	0	0	2	2
2023	6	1	8	5	20
2024	6	4	9	12	31
2025	3	2	7	15	27

자료: 법무부

첫째, 현재 체계에서는 소송수행해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휘청(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오로지 ‘통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보 외에 징계건의 내지 감사원에의 통지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소관 행정청의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 국가송무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지휘청에서 소송수행해태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지휘청이 송부하는 ‘소송수행해태통보’에서는 해태행위를 한 자의 인적정보, 해태의 사유와 해태 결과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청의 장이 판단하는 적정 수준의 조치 의견의 경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통보 서식]

기관명		년	월	일
문서번호:		발신: 법무부장관		
수신: ○○○부(처·청) 소송총괄관				
소송수행해태통보				
1. 인적사항	2. 해태사유	3. 해태결과	4. 비고	

자료: 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따라서 지휘청이 소송수행해태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수행청에 해태 행위를 알려주는 통보의 수준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휘청이 소송수행해태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태에 따른 결과의 경중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해태 행위를 유형화하며, 그 유형에 따라 징계나 재발방지대책 등 조치의 수준을 정하여 소송총괄관에게 권고하고, 수행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휘청이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송수행해태로 인하여 해당 수행청에 재정적 손실까지 끼친 경우라면 지휘청이 감사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감사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감사원예의 통지 등 사후 조치는 법무부가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소송수행해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1심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아 제1심에서 패소한 사례(재외공관),⁹⁾ 제출기간 도과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례(근로복지공단),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육군),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지 않고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1심 피신청인 패소 확정된 사례(경남개발공사) 등, 단순히 지휘에 응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외에도 소송행위 자체를 하지 않거나 불변기간을 도과한 사례들이 나타났으므로, 향후 관리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수행해태 통보 이후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법무부가 회신받도록 하고, 추후 국가송무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해태에 따른 소송총괄관 통보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결과를 회신받고 있으나,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해태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조치결과를 파악하지 못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법무부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수행해태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27건을 회신받았으나, 국가소송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해태에 따른 소송총괄관의 통보 현황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지만, 국가소송의 경우는 각급 검찰청에서 해태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법무부는 통보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¹⁰⁾

9)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26. 6. 19.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기간(2026. 7. 8.까지) 진행 중에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사례의 처분 기관은 재외공관이고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외교부가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사례가 아니고, 소장의 피고 표시 오류 등으로 인해 재외공관 담당 직원이 조치의 필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 표시 오류의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 권고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나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지휘 없이 판결을 내렸던 점, 사안의 경중 면에서 불변기간 도과 사례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0) 다만,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해태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있다. 즉, 현재 법무부는 소송수행해태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각급 청의 소송수행해태에 따른 ‘통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수행해태에 따른 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소송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행정소송	2	2	20	31	27

주. 행정소송 통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결과를 법무부가 회신받았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그러나 국가송무체계에서의 최종적인 지휘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법무부이므로, 국가소송의 소송수행해태에 대하여 법무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단순히 국가소송에서의 소해태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 외에도, 통지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면밀히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¹⁾

(2) 지휘청과 수행청 간 의견 불일치 상황의 개선 필요

국가송무체계는 국가소송의 주요 사건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그 외에는 지휘청을 중심으로 송무를 일원화하되 실제 소송 수행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행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휘청-수행청의 국가송무 구조에서는 지휘청과 수행청 간 소송계속에 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수행청은 소송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지휘청은 상소를 제기하고자 한다거나, 반대로 수행청은 소송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지휘청은 상소포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리하면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불일치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11) 한편, 현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는 소송수행해태 유형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는 수기로 소송수행해태 유형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유형해태의 발생과 통보, 조치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송무 지휘에서의 의견 불일치]

지휘청 \ 수행정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제기	의견 일치	불일치
상소 포기	불일치	의견 일치

2025년 국가소송에서 수행청의 상소포기에 지휘청이 상소제기로 지휘한 경우는 115건, 수행청의 상소제기에 지휘청이 상소포기로 지휘한 경우는 14건이다.

[2025년 국가소송 지휘에서의 의견 불일치 현황]

(단위: 건)

지휘청 \ 수행정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제기	159	115
상소 포기	14	367

자료: 법무부

2025년 행정소송에서 수행청의 상소포기에 지휘청이 상소제기로 지휘한 경우는 33건, 수행청의 상소제기에 지휘청이 상소포기로 지휘한 경우는 130건이다.

[2025년 행정소송 지휘에서의 의견 불일치 현황]

(단위: 건)

지휘청 \ 수행정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제기	1,244	33
상소 포기	130	1,847

자료: 법무부

국가송무에서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소송의 경우 수행청의 상소포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청이 상소 제기로 지휘한 사례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청이 상소제기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지휘청에서 상소를 포기한 예는 2025년 9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송에서의 지휘청과 수행청 의견 불일치 현황]

(단위: 건, %)

지휘요청-지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행청포기-지휘청제기	건수	11	11	16	59	115
	상소심선고	8	7	12	34	55
	상소심패소	7	6	9	16	26
	상소심패소율	87.5	85.7	75.0	47.1	47.3
수행청제기-지휘청포기	건수	8	9	5	12	9

자료: 법무부

한편, 행정소송에서는 수행청의 포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청이 상소 제기한 건이 2025년 33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청이 상소제기 의견이었으나 지휘청에서 상소를 포기한 사례가 130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에서의 지휘청과 수행청 의견 불일치 현황]

(단위: 건, %)

지휘요청-지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행청포기-지휘청제기	건수	10	6	44	53	33
	상소심선고	9	6	42	48	24
	상소심패소	6	5	32	35	17
	상소심패소율	66.7	83.3	76.2	72.9	70.8
수행청제기-지휘청포기	건수	112	123	140	109	130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의견불일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휘청이 수행청의 의견과 달리 상소를 제기한 경우의 패소율이 높아, 수행청과의 의견수렴 및 조율 과정을 강화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5년 국가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8.6%, 행정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12.3%에 불과하다. 반면, 위와 같은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지휘청의 상소심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경우 47.3%, 행정소송에서는 70.8%로 통상적인 국가·행정소송에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의 승패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에서 패소한 것 자체로 지휘청의 잘못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현황은, 지휘청-수행청 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국가송무에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기본적으로 유선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국가소송의 경우 검사·공익법무관이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중요정도에 따라 지휘부 결재를 득한 뒤 상소 지휘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개별 사건 담당자(공익법무관, 사무관)가 상소에 관한 수행청 의견 검토 후 해당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지휘부 결재를 득한 뒤 상소 지휘한다. 상소 지휘를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 또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에서 나아가 의견서의 내용과 근거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의 조율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국가송무시스템 개선 필요

국가송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NDSL은 국가·행정 소송에 관한 사건 및 진행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국가송무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행청 담당자는 사건관리, 불변관리, 배상관리, 수행청관리, 통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NDSL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스템상 구현된 일부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NDSL은 본래 단순히 지휘·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3월 법무부가 작성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Non-ActiveX 전환 및 개선」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휘청은 국가배상금 지급관리,

불변관리, 장부·통계관리가 가능하고, 수행청에서는 수행청 국가송무 통계 추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23년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34개 기능 중 ‘구상권 행사 현황’과 ‘구상권 행사 금액’의 경우, 시스템상 기능 구현은 되었으나,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통계의 경우 시스템상 입력하는 값과 실제 값 간의 오차가 있고, 이에 구상권과 관련된 통계는 각급 청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필요 시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유사하게, 2023년 제안요청서에서는 ‘국가배상금 지급·미지급 현황 등 통계 및 장부’를 구현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지만, 해당 기능 자체는 시스템상 도입되었음에도 담당자의 입력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사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배상금 임의변제 지급관리 등 업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지 않고, 각 검찰청 담당자들이 임의변제 등 업무처리 후 그 현황을 사후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개발된 기능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역시 개선을 요한다.

둘째, 통계시스템에서 추가로 갖추어야 할 기능이 존재한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NDSL에 2023년경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나, 국가소송의 경우 각 심급별로 지휘청을 달리하지는 등 행정소송과 달리 관리의 통일성이 없어 시스템상 개발이 어렵고 별도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기능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등 기능을 개발하였다. 즉, 소송회수 현황 확인 기능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회수는 행정소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송에서도 발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은 국가소송에서도 중요하다는 점, 현재의 현황 관리 및 통계에서는 ‘건수’만 파악되어 실질적으로 소송회수 금액과 미회수 금액에 대한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는 ① 건수 외에 금액 현황까지 관리·파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② 국가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12)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임의변제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각 심급 선고만 있어도 신청인의 재량에 따라 재판 진행(항소, 상고 등)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 신청(가집행 가능)하고, 사건이 가집행 선고 또는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지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각 경우에 따른 입력 방법이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능은 사용자 교육 등이 필요한데, 인사이동 등에 따른 교육을 받기 전 사용자의 시스템 입력 등으로 내용에 오기, 누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확한 통계 산출 및 검증을 위해 각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출 및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로서는 수행청별·심급별 자료 및 소송단계별 소요 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가송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NDSL의 메뉴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동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각 행정청들의 정보를 개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만 되는 실정이다. 이 부분 역시 정책자료의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 국가소송법과 하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무가 NDSL에 구현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되거나, 혹은 일부만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사무로서 NDSL을 통하여 관리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시스템상 구현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나 통계 관리의 측면에서도 실익이 존재하므로 추후 NDSL의 고도화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요구되는 사무 중 NDSL 구현 여부]

구분	명칭	구현 여부	이용방법 또는 세부내용	비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확정후 조치사항	△	[국가소송]-[기록보존]-[사후관리] 최종심 종결 사건의 사후관리에서 전자 관리	건별 입력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으나, 관련 양식에 따른 장부는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소송비용 회수부	△	[국가소송]-[기록보존]-[사후관리] 최종심 종결 사건의 사후관리 소송비용회수란에서 전자 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채무명의이첩 사건지휘감독부	×	검찰청의 채무명의 이첩내역 관리 기능만 구현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임의변제 청구서	×	각급 검찰청별로 비치 및 최고 시 안내	

구분	명칭	구현 여부	이용방법 또는 세부내용	비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임의변제 청구위임장	×	각급 검찰청별로 비치 및 최고 시 안내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임의변제 상황보고	△	[국가배상관리시스템]-[국가배상통계및장부]-[지급통계및장부] NDSL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공문으로 보고(실무는 공문보고를 원칙으로 함)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방법 복잡하여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행협손해 배상사건 임의변제보고	×	각급 검찰청이 공문으로 보고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영수증	×	각급 검찰청별이 종이 영수증 회수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소송수행 해태통보	△	행정소송의 경우 공문통보 후 조치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개발하여 활용 국가소송은 공문으로 통보	건별 입력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망실국유재산 처리현황	×	필요 시 공문으로 송부	관련 양식에 따른 장부는 수기로 관리 중

주. △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식(사무) 중 일부 항목만 시스템상 구현된 것을 의미함
자료: 법무부

셋째, 통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소송의 경우, 유형별 통계에서의 ‘유형’은 국가가 원고인 경우 부동산-기타 2가지 유형, 국가가 피고인 경우 부동산-국가배상-기타의 3가지 유형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순화된 유형으로는 다양한 국가송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2025년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의 국가소송 처리 소가는 부동산이 177억 700만원이지만, ‘기타’ 유형이 3,364억 9,600만원으로 19배에 달한다. 국가원고 사건의 소가 중 ‘기타’ 유형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만으로는 국가소송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가 피고인 국가소송 사건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소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국가원고	부동산	38,069	17,766	17,707
	기타	412,635	336,892	336,496
	소 계	450,704	354,658	354,204
국가피고	부동산	118,990	103,568	169,773
	국가배상	400,680	275,968	501,289
	기타	1,829,332	451,030	325,827
	소 계	2,349,002	830,565	996,889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행정소송은 조세·인허가·신분자격·지식재산권·행정벌·기타의 6가지 유형으로 비교적 여러 종류로 집계되고 있지만, 조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등, 신분자격의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난민불인정결정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기준 행정소송 중 ‘신분자격’ 유형이 4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유형이 29.3%로 많았으며, 그 외에 ‘조세’(13.5%), ‘인허가’(13.3%) 순이어서 여전히 ‘기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부적인 유형에 따른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의 대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는 NDSL의 통계로부터 ‘국가소송 사건 수’, ‘행정소송 사건 수’(접수건수, 확정건수, 승소율, 패소건수, 패소율)만을 e-나라지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NDSL에 의하여 추출 및 관리되는 통계는 총 41종이나, 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통계 목록]

연번	통계명	연번	통계명
1	국가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22	국가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2	국가소송 사건 접수 건수	23	행정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3	국가소송 사건 소가	24	행정소송 사건 접수 건수
4	국가소송 사건 원피고별 접수 건수	25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건수
5	국가소송 사건 원피고별 소가	26	행정소송 사건 처리 건수
6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건수	27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건수
7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소가	28	행정소송 사건 승소 현황
8	국가소송 사건 처리 건수	29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승소 현황
9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건수	30	행정소송 사건 패소 현황
10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소가	31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패소 현황
11	국가소송 사건 승소 현황	32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 파기환송률
12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승소 현황	33	국가소송 항소율
13	국가소송 국가피고 부동산 사건 승소 현황	34	국가소송 상고율
14	국가소송 국가피고 국가배상 사건 승소 현황	35	행정소송 항소율
15	국가소송 사건 패소 현황	36	행정소송 상고율
16	국가소송사건 유형별 패소 현황	37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회수대상 사건
17	국가소송 국가피고 부동산 사건 패소 현황	38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회수포기 사건
18	국가소송 국가피고 국가배상 사건 패소 현황	39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조기회수율
19	국가소송 상고심 사건 파기환송률	40	국가소송 항소심 국가 및 상대방 상고율
20	구상권 행사 금액	41	행정소송 항소심 행정청 및 상대방 상고율
21	구상권 행사 현황	-	-

자료: 법무부

현재 NDSL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현황과 추이를 유형별 또는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학계와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계’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한 재판이나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와는 무관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할 여지도 크지 않다.¹³⁾

13)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자료 외 다른 자료는 소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 소송비용회수 관리 강화

소송비용의 회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송무의 총괄 부처인 법무부가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수행청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절차에서 소요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 또는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총칭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¹⁴⁾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따라서 국가 및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그런데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조기회수율(소송비용확정 사건이 확정된 후 3개월 내에 소송비용을 회수한 비율)을 살펴보면,¹⁵⁾ 2025년 회수대상사건은 2,697건이나 그 중 조기회수가 이루어진 것은 138건으로 5.1%에 불과하였다. 완결된 사건 중에서도 ‘기타’ 사유가 23건으로, 전액회수가 이루어진 것은 92건에 불과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뒤에도 3개월 이내의 조기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또는,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15) 국가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은 발생한다. 다만, 현재 국가소송의 소송비용회수 현황 기능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에 구현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으며, 이에 관련된 통계는 없어 여기서는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수행청 소송비용 조기회수율 현황]

(단위: 건, %)

구분	회수대상사건		완결사건						미완결 사건
			소계	전액 회수	회수 불능	회수대상 금부재	회수포기	기타	
2024	건수	2,043	186	137	0	18	0	31	1,857
	비율	100.0	9.1	6.7	0	0.9	0	1.5	90.9
2025	건수	2,697	138	92	1	22	0	23	2,559
	비율	100.0	5.1	3.4	0	0.8	0	0.9	94.9

- 주: 1.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 현황은 2024년부터 집계하였으며, 현 시스템상 금액은 확인불가
 2. 회수포기란 30만원 미만의 소액, 자체 기준 등에 맞는 경우 회수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고, 회수 불능은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자료: 법무부

소송비용 회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부의 경우, 2021~2025년 기간 동안 368건의 소송비용 회수대상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전액회수된 사건은 181건에 불과하여, 전액회수율은 49.1%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회수포기한 사건은 124건으로, 전체의 33.7%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 소송비용회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회수대상사건		완결사건				미완결 사건
			소계	전액회수	진행중	회수포기	
2021	건수	45	45	0	3	42	-
	비율	100.0	100.0	0	6.7	93.3	-
2022	건수	58	58	35	4	19	-
	비율	100.0	100.0	60.3	6.9	32.8	-
2023	건수	66	66	51	8	7	-
	비율	100.0	100.0	77.3	12.1	10.6	-
2024	건수	110	110	65	14	31	-
	비율	100.0	100.0	59.1	12.7	28.2	-
2025	건수	89	83	30	28	25	6
	비율	100.0	93.3	33.7	31.5	28.1	6.7

- 주: 1. 연도는 소송비용확정 사건이 확정된 연도를 의미함
 2. 미완결사건 6건은 2026년 5월 기준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자료: 국가보훈부

국세청의 경우, 2021~2025년 기간 동안 매년 회수대상사건 대비 회수 비율은 20% 수준으로 낮았고, 매년 미회수 금액이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도 247건의 회수대상사건이 있었으나, 46건만 회수하였다. 같은 해 미회수 금액은 37억 4,800만원이다.

[국세청 소송비용회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회수대상				회수	미회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시효완성			
'21년	건수	225	161	79	15	59	166
	금액	4,781	2,994	1,913	126	1,378	3,403
'22년	건수	233	166	67	0	53	180
	금액	4,780	3,403	1,377	0	1,271	3,509
'23년	건수	221	180	48	7	40	181
	금액	4,959	3,509	1,584	134	1,161	3,798
'24년	건수	234	181	55	2	35	199
	금액	4,969	3,798	1,228	57	1,130	3,839
'25년	건수	247	199	55	7	46	201
	금액	5,016	3,839	1,278	101	1,268	3,748

주: 미회수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회수절차 진행하였으나 미회수된 사건(금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매년 회수대상사건 대비 회수사건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회수대상사건은 175건, 대상금액은 12억 3,800만원이었으나, 이 중 57건만 회수하였고, 118건(6억 6,600만원)은 미회수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비용회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회수대상				회수	미회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시효완성		
'21년	건수	199	99	100	-	100	99
	금액	1,506	379.5	1,126.5	-	1,077	429
'22년	건수	181	99	82	-	73	108
	금액	1,390	429	961	-	834	556
'23년	건수	220	108	112	-	101	119
	금액	1,651	555.5	1,095.5	-	1,078	573
'24년	건수	197	119	78	-	79	118
	금액	1,710	573	1,137	-	1,049	661
'25년	건수	175	118	57	-	57	118
	금액	1,238	660.5	577.5	-	572	66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국가의 승소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수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회수될 경우 세입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수포기의 비율 또는 미회수율, 미회수금액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회수율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송무의 총괄 부처인 법무부가 세부적인 현황(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 부처별 회수율 등)을 파악하고, 수행청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방향성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가 실시하는 송무지도점검에서 소송비용회수와 관련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5) 과징금

강학상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의미한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으로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개념에 포함한다. 「행정기본법」 제 28조는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을 개념화하고 있다.

과징금과 관련된 국가송무는 통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이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며, 피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송무 현황을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년간 376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총 70건을 패소하여 패소율은 18.6% 수준이다. 참고로 2025년 국가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8.6%, 행정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12.3%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송무 현황]

(단위: 건, %)

연도	종결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계	376	70	18.6
2021	79	12	15.1
2022	74	22	29.7
2023	58	17	29.3
2024	65	9	13.8
2025	100	10	10

주. 소송이 확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함. 패소에는 일부패소가 포함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련 소송의 과징금액을 살펴보면, 5년간 2조 6,332억 5,2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소송 심급별 과징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계	고등법원(1심)	대법원(상고심)	파기환송심 이상
계	2,633,252	288,668	2,316,366	28,218
2021	312,966	21,408	280,223	11,335
2022	148,178	35,244	111,123	1,811
2023	1,254,071	88,089	1,163,988	1,994
2024	577,766	62,208	506,740	8,818
2025	340,271	81,719	254,292	4,260

주: 1. 소송이 확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함
 2.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타 행정소송(3심)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2심제로 진행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2025년 45.9%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은 4,289억 8,500만원이다.¹⁶⁾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387,907	387,907	387,907	1,203,120	669,885	172.7	55.7	533,030	204
2023	417,067	417,067	417,067	837,557	552,104	132.4	65.9	285,151	302
2024	445,557	445,557	445,557	735,182	169,627	38.1	23.1	565,158	396
2025	534,811	534,811	534,811	792,633	363,648	68.0	45.9	428,98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5년간 과징금 소송에서의 소가는 93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미수납액 중 3,491억 4,000만원(81.4%)은 당해연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납기 미도래액 1,615억 1,800만원 및 징수유예액 1,876억 2,200만원)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을 제외한 징수결정액(4,434억 9,300만원)에 따른 실질 수납률은 82%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과징금 소송 심급별 소가]

(단위: 백만원)

연도 \ 심급	계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이상
계	9,371	3,164	2,914	2,626	667
2021	3,606	2,060	735	811	0
2022	1,875	0	150	1,058	667
2023	82	0	23	59	0
2024	2,467	756	1,511	200	0
2025	1,341	348	495	498	0

주. 소송이 확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2025년 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은 769억 7,5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과징금 수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5,721	25,721	25,721	61,842	43,552	169.3	70.4	18,113	177
2023	44,542	44,542	44,542	99,364	47,560	106.8	47.9	51,804	-
2024	49,532	49,532	49,532	170,661	113,736	229.6	66.6	56,926	-
2025	59,907	59,907	59,907	154,396	77,421	129.2	50.1	76,975	-

자료: 금융위원회

과징금의 경우, 일부 수행청에서 승소하더라도 수납률이 낮고 미수납액이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송무의 원활한 수행에 따라 승소하더라도 실제 수납되지 아니하면 과징금 세입을 제고하기 어려우므로, 수납률이 낮은 수행청에서는 과징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송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배상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국가소송)으로 진행되는데, 2025년 기준 국가소송 사건은 14,843건이었으며, 그 중 국가배상 사건이 6,171건(4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건수]

(단위: 건, %)

구분		2023		2024		2025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국가 원고	부동산	644	6.7	668	5.4	812	5.5
	기타	1,931	20.1	2,949	23.7	3,032	20.4
	소 계	2,575	26.8	3,617	29.0	3,844	25.9
국가 피고	부동산	1,998	20.8	1,858	14.9	1,828	12.3
	국가배상	2,146	22.4	4,070	32.6	6,171	41.6
	기타	2,857	29.8	2,905	23.3	2,983	20.1
소 계	7,001	72.9	8,833	70.9	10,982	74.0	
국가 참가	부동산	0	0	0	0	2	0
	기타	22	0.2	16	0.1	15	0.1
	소 계	22	0.2	16	0.1	17	0.1
총계		9,598	100.0	12,466	100.0	14,843	100.0

자료: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그런데 최근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패소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배상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23년 2,146건이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2025년 6,171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가를 기준으로 보아도, 2023년 국가배상사건의 소가는 1조 1,077억 2,900만원이었으나, 2025년 기준 3조 2,729억 1,2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국가배상사건에서의 패소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배상사건에서의 패소 확정사건은 2023년 363건에서 2025년 9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부패소확정 사건 역시 2023년 14건에서 2025년 161건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배상사건 패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패소확정		전부패소확정		일부패소확정	
	건수	소가	건수	소가	건수	소가
2023	363	262,375	14	1,140	349	261,235
2024	384	140,215	101	14,870	283	125,344
2025	936	325,259	161	33,044	775	292,216

자료: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와 같은 국가배상사건 및 패소건수의 증가는 최근 주요 과거사 사건에서 다수의 소가 제기되었고, 일부 사건에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포기하였던 건에 기인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활동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고 이 중 다수의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2025년 9월 2일 116차 전체위원회 의결을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643명, 선감학원 사건 230명, 영화숙·재생원 사건 171명, 실미도 사건 31명, 삼청교육대 사건 692명, 건국대학교 사건 80명에 달한다.¹⁷⁾

법무부는 2023.12.14.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하면서 관련 사건에서의 항소를 포기하였고, 2025.8.18.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 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다. 결정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소송 42건 이 재판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⁸⁾ 뒤이어 2025.9.29.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1.13.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81건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서는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하였다.¹⁹⁾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https://www.jinsil.go.kr/fnt/bbm/bbs/selectBoardArticleView.do?nttId=317491>, (2026.6.8. 확인)

1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2025.8.18., <https://www.moj.go.kr/moj/22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 Tg5JTJGNTk4MDI4JTJGYXJOY2xWaWV3LmRvJTNG>, (2026.6.8. 확인)

이와 같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사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배상금 예산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2024회계연도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77억 4,3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였고, 2025회계연도에는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배상금 예산을 소진하여 예비비 3,053억원을 지출하였다. 본예산은 1,317억 6,500만원에 불과하였다.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150,000	150,000	343	-	150,343	149,311	99.5	99.3	1,032
2023	100,000	100,000	254	-	100,254	100,253	100.2	99.9	1
2024	100,000	100,000	7,743	-	107,743	107,743	107.7	100.0	-
2025	131,765	131,765	215	305,300	437,280	437,279	331.9	99.9	1
2026	144,835	144,835	-	-	-	-	-	-	-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비비 또는 이·전용으로 증가된 배상금 소요에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적정 범위 내에서 배상금 예산을 추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5년 2차에 걸쳐 예비비 사용신청을 했으며, 2026년의 경우에도 3월에 이미 배상금 본예산이 소진되어 26.5.14. 2,457억원의 예비비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는 않았고, 대신 77억 4,300만 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해서 집행하였다.

19) 법무부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2025.11.19.

[국가배상금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일자	금액
2026.5.	배상금 본예산 소진 시점	'26.3.	
	예비비 사용신청	'26.5.14.	245,700
	국무회의 심의	'26.5.20.	245,700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제출 예정*	
	집행	-	210,830
2025 (2차)	배상금 본예산 소진 시점	'25.7.	
	예비비 사용신청	'25.12.12.	62,200
	국무회의 심의	'25.12.23.	62,200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	-
	집행		437,279
2025 (1차)	배상금 본예산 소진 시점	'25.7.	
	예비비 사용신청	'25.11.21.	243,100
	국무회의 심의	'25.12.2.	243,100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	-
	집행		437,279

자료: 법무부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국가재정법」 제22조). 또한, 예비비는 따라서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본예산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예비비를 대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배상사건의 승패소 여부, 판결 확정 시기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나, 최근 배상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소송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차년도 국가배상금 소요가 상당 부분 증가 또는 감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의 소 제기 및 재판 진행 현황,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배상금 소요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예비비 또는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접수기간이므로, 진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3기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거사 사건(불법 민간인 집단사망·고문사건,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집단수용시설 구금사건 등)이 추가로 진실규명되어 국가배상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에는 총 4,647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건수가 접수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1,500건)이나 집단시설 사건(1,284건)은 사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신청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 수
항일독립운동	13
해외동포사건	0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084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1,500
적대세력 관련 사건	146
확정판결재심 사건	26
역사적 중요 사건	34
해외입양	437
집단시설	1,284
3·15 의거 사건	2
기타	121
합 계	4,647

주. 2026.5.31. 기준

자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셋째,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는 부득이하게 배상금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것으로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 가능하다면 예비비의 지출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예비비 승인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도 불법행위일부터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을 따르므로 민사법정이율(연 5%)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379조),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된다.²⁰⁾ 즉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12%의 이율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빠르게 배상금을 갚을수록 유리하다. 결국 신속한 배상금 지급은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라는 측면은 물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으로 4,372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연손해금 역시 244억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매년 수백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미 122억 2,7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12%의 이율이 적용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12%가 가산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국가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배상금 총 지급액(a)	지연손해금 지급액(b)	(b/a)*100
2021	124,450	84,304	67.7
2022	149,311	21,397	14.3
2023	100,253	15,293	15.3
2024	107,743	13,768	12.8
2025	437,279	24,405	5.6
2026.5.	210,816	12,227	5.8

자료: 법무부

또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금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미지급한 국가배상금이 2,113억 2,500만원으로, 향후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만 88억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국가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단위: 백만원)

구분	미지급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2026.5.	211,325	8,827

자료: 법무부

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지체없이 전보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라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지연손해금의 발생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7) 구상권 행사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구상권의 행사 절차를 살펴보면,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¹⁾ 이는 국가배상소송이 종결된 다음의 사후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야기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국가와 공무원 간의 공평한 내부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구상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검토대상사건이 644건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사 관련 사건이 최근 증가하면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여야 할 사례도 많아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검찰은 600건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중 591건에 대해서 불행사를 결정하였으며, 9건을 행사하여 구상권 행사액은 13억 5,800만원이다.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구상권 행사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검토대상사건 수	행사 여부 결정건수			구상권 행사액수
		계	행사	불행사	
2021	54	37	6	31	1,363,745,508
2022	68	48	7	41	2,339,064,594
2023	163	137	10	127	5,858,236,993
2024	159	136	8	128	1,645,746,750
2025	644	600	9	591	1,357,556,332

주. 검토대상사건: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국가배상소송 중 제1심 지휘 검찰청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존부 등에 따라 '구상권 행사 검토대상사건'으로 결정한 사건

자료: 법무부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상금의 최종적인 수납 현황에 대하여 국가송무 총괄부처인 법무부가 파악하고,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와 같은 ‘구상권 행사 액수’는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구상금을 수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구상금의 수납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납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무상 각 수행청이 승소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이에 관한 결과를 회신받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의 구상금이 온전히 회수되었는지 파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사건의 적정한 마무리를 위하여는, 구상권을 단순히 행사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구상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가배상사건을 총괄하는 법무부에서 구상금의 수납 결과에 대해서 회신받고, 그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상금 결정 및 행사 절차가 각 고등 및 지방검찰청의 재량에 따라 다르거나, 일부 절차가 비공개된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통일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일선 고지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담당자의 결정 이후 결재를 받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재량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절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심도 있는 구상권 행사 결정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이를 훈령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배상금이 5,000만원을 넘는 사건의 경우에 구상권을 불행사하려고 때에는, 지휘 검찰청에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인 절차는 외부에 비공개하는 법무부의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소송법 시행령은 국가배상사건 중 일부의 경우에 구상권의 불행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하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의 취지와는 다른 제한(승인절차)을 두면서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비공개 지침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소송무체계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구상권 행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외부에 비공개하여야 할 당위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예컨대, 국방부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공무상요양비) 지급 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시 관련 절차를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로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납금의 관리, 구상권 행사의 종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²²⁾

따라서,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의 경우 국가소송법의 하위 법령이나 법무부의 공개된 지침 등을 통하여 통일적인 형태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2) 다만, 「군인 재해보상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도록 이미 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조제1항 단서), 불행사 결정 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예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현 황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및 운영체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국토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급격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자원 및 인구 집중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 지특회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도입 초기 약 5.4조 원 규모로 시작된 본 회계는 지난 20여 년간 정권의 교체와 행정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명칭과 구조, 운영 방식에서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 왔다.

시기별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법률 제정과 함께 기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균형발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였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5+2 광역경제권’¹⁾ 및 ‘기초생활권’²⁾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계정과 지역계정체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4747)

(동 분석은 2026년 7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의 분석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1) 기존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5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권(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대광역권 단위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등장한 광역계정의 분류단위이다.
- 2) 전국 163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에 따라 등장한 지역계정의 분류단위이다.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축과 주민 체감형 '새뜰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계정도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 등으로 정비하여 밀착형 복지 및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혁신체계를 복원하고자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회계 명칭(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다시 변경하고 포괄보조사업인 지역자율계정의 비중을 대폭 늘렸으며, 2020년에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이양하였다.

2023년에는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시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 재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주도성과 재정적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

구분	2005~2006	2007~2009	2010~2014	2015~2018	2019~2023	2024~
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 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광역발전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개발계정	생활기반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자율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근거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2004.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2006.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2009.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2014.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2018.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2023. 7.)
회계 목적	균형발전사업을 통합 지원해 국가 불균형 해소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화 발전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 력 강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및 국가 균형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자료: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계정개요」, 각 년도

현행 지특회계의 편성구조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지만, 크게 지자체가 자율편성하는 사업(지역자율계정)과 중앙부처가 직접편성하는 사업(지역지원계정)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계 및 계정명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본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기본 구조상의 특징은 먼저, 사업 성격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연계 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자율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해야 하는 반면,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두 계정의 일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일부는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특회계의 편성구조]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 시·군·구 기반 구축사업등 포함	* 시·군·구 기반 구축사업 등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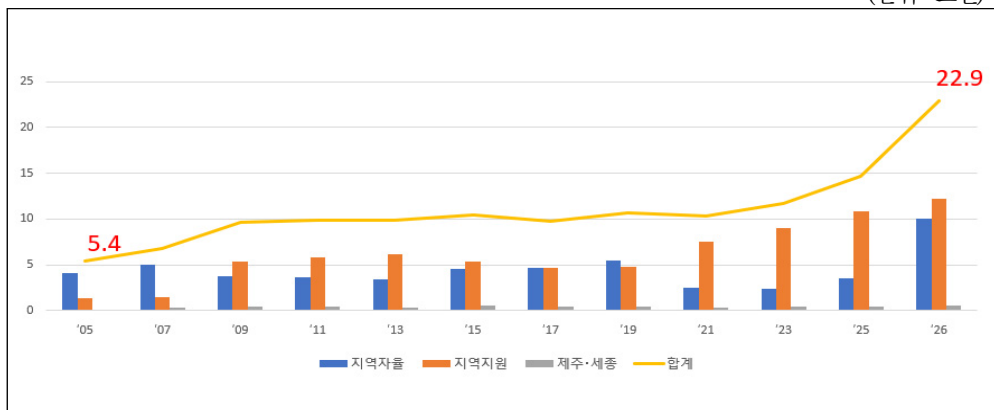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원규모 및 예산추이

2005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통합하여 약 5.4조원 규모로 시작한 지특회계는 2009년 9.6조원 규모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9년~2017년 사이에는 9~10조원 안팎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재정분권과 지자체 기능 이양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1·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특회계로 지원되던 다수의 사업(일반지방도로 정비, 하수도 정비 등)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기능이양)되면서 2020~2021년 일시적으로 지특회계 자체의 예산규모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지특회계 예산규모가 상승하면서 2026년에는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55.8%로 대폭 증액하여 22.9조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지특회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80.5%)은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6.6조원 증가(188.6%)하여 총 10.1조원 규모가 되었다. 이는 전체 지특회계 예산의 44.1%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역지원계정의 예산(12.2조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예산 추이]

(단위: 조원)

계정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25	'26
지역자율	4.1	5.0	3.8	3.6	3.4	4.5	4.7	5.5	2.5	2.4	3.5	10.1
지역지원	1.3	1.5	5.4	5.8	6.2	5.4	4.7	4.8	7.5	9.0	10.8	12.2
제주·세종	-	0.3	0.4	0.4	0.3	0.5	0.4	0.4	0.3	0.4	0.4	0.6
합계	5.4	6.8	9.6	9.9	9.9	10.4	9.8	10.7	10.3	11.7	14.7	22.9

주: 2021년 지역자율계정 예산 감소는 재정분권 연계조치로 인한 지자체 기능이양에 따른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지특회계 예산의 상승 폭이 커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예산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2026년 기준 4조 5,8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4조 4,268억원, 농림 수산 분야가 3조 3,649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특회계 예산의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금액 (a)	금액 (b)	증가율 (b-a/a)	금액 (c)	증가율 (c-b/b)
공공질서및안전	956,164	951,533	△0.5	1,134,305	19.2
과학기술	337,560	544,322	61.3	762,316	40.0
교육	405,838	382,137	△5.8	407,103	6.5
교통및물류	959,298	847,129	△11.7	984,279	16.2
국토및지역개발	1,326,963	1,332,233	0.4	1,358,488	2.0
농림수산	1,556,416	2,231,428	43.4	3,364,884	50.8
문화및관광	386,796	535,714	38.5	537,566	0.3
보건	351,313	214,785	△38.9	532,075	147.7
사회복지	1,599,264	1,658,693	3.7	4,426,761	166.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17,108	1,604,333	△0.8	1,897,133	18.3
일반·지방행정	1,684,529	1,424,083	△15.5	2,655,127	86.4
통신	272,199	243,198	△10.7	266,328	9.5
환경	2,018,442	2,774,360	37.5	4,584,777	65.3
합계	13,471,890	14,743,948	6.5	22,911,142	55.4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예산의 변화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분야별 비중과 유사하게 2026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가 4조 4,81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 분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조 3,89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3조 7,325억원, SOC 분야의 국토교통부가 2조 1,334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특회계 예산의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금액 (a)	금액 (b)	증가율 (b-a/a)	금액 (c)	증가율 (c-b/b)	
경찰청	4,860	5,006	3.0	5,146	2.8	
고용노동부	183,887	122,902	△33.2	265,986	11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3,110	920,355	23.9	1,314,159	42.8	
교육부	358,484	325,595	△9.2	233,255	△28.4	
국가보훈부	2,315	2,384	3.0	2,453	2.9	
국가유산청	-	29,608	-	44,509	50.3	
국토교통부	2,161,729	2,038,003	△5.7	2,133,368	4.7	
농림축산식품부	795,256	1,362,423	71.3	1,916,153	40.6	
농촌진흥청	85,234	113,812	33.5	132,804	16.7	
문화체육관광부	386,796	506,106	30.8	493,057	△2.6	
보건복지부	1,770,342	1,623,360	△8.3	4,481,731	176.1	
산림청	376,292	397,328	5.6	882,925	122.1	
산업통상부 (舊산업통상자원부)	1,225,888	1,187,801	△3.1	1,403,763	18.2	
식품의약품안전처	3,841	3,841	-	56,268	1,365.0	
성평등가족부 (舊여성가족부)	84,227	91,663	8.8	141,617	54.5	
중소벤처기업부	393,064	414,809	5.5	467,162	12.6	
해양수산부	503,761	639,194	26.9	814,602	27.4	
행정안전부	2,688,538	2,363,064	△12.1	3,732,472	57.9	
기후에너지환경부 (舊환경부)	1,897,357	2,596,694	24.1	4,389,712	69.1	
합계	13,470,889	14,743,948	6.5	22,911,142	55.4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나. 분석의견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구조 및 운영실태 분석

첫째, 지특회계의 독자 세원인 주세와 법정부담금으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고, 법정부담금의 경우 목적성이 강해 재원의 전략적·탄력적 배분에 제한이 있어 독자 세원 확보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입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81조 각 1항에 따라 주세, 각종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정별로 주요 세입원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등 통상적인 재무 활동에 따른 세입원을 제외하고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전입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이 주요한 세입원이다. 지역지원계정도 통상적인 재무 활동을 제외하면, 주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입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이 주요 세입원이다. 제주세종 계정의 경우 통상적인 재무 활동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주요 세입원이다.

주세의 경우, 전체 주세 수입(100%) 전액을 40:60의 비율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다. 주세는 지특회계 도입으로 인해 폐지된 지방양여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특회계 도입 후에도 주요한 세입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지역지원계정과 달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특회계의 세입원은 2005년 도입 이래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주세의 계정 간 배분율의 경우, 당초 지역개발계정(現지역자율계정)에 80%, 지역혁신계정(現지역지원계정)에 20% 배분되다가 2009년부터 현재와 같이 40:60의 비율로 각각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배분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지특회계 계정별 세입원 현황]

계정	주요 세입원
지역 자율 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기타 일시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지역 지원 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타 용자금의 원리금, 일시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제주특 별자치 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타 일시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세종특 별자치 시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타 일시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9조~제81조

지특회계의 예산은 아래와 같이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포괄보조금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자율계정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특회계 계정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자율계정	2,838,076	2,859,652	2,553,359	3,288,492	3,540,052	10,051,012
지역지원계정	7,501,028	8,206,994	9,039,080	10,232,019	10,789,187	12,223,974
제주계정	211,132	270,408	277,510	294,300	316,551	554,188
세종계정	72,785	71,602	57,331	54,109	57,855	82,061
합계	10,623,021	11,408,656	11,927,280	13,868,920	14,703,645	22,911,235

주: 각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기획예산처의 공식 발표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지역자율계정의 주요세입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세, 전입금(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는 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026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증가하여 이를 역전하였다.

[지역자율계정 주요 세입원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세	1,299,680	1,494,960	1,286,040	1,430,360	1,283,720	1,258,032
일반회계전입금	313,806	307,610	222,942	306,516	634,194	5,206,275
특별회계전입금	952,256	760,339	765,892	1,208,963	1,136,489	2,907,769
법정부담금	212,554	216,025	222,505	277,767	268,313	305,775
기타	59,780	80,718	55,980	64,886	217,336	373,161
합계	2,838,076	2,859,652	2,553,359	3,288,492	3,540,052	10,051,012

주: 각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지역지원계정의 주요세입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세, 전입금(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 따라 주세 비중이 줄고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지원계정 주요 세입원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세	1,949,520	2,242,440	1,929,060	2,145,540	1,925,580	1,887,048
일반회계전입금	3,292,423	3,551,256	4,560,966	5,590,044	4,986,707	7,038,984
특별회계전입금	1,716,929	1,742,749	1,873,008	1,802,925	3,112,144	2,576,890
법정부담금	266,321	244,466	250,189	225,414	247,752	248,869
기타	275,835	426,083	425,857	468,096	517,004	472,183
합계	7,501,028	8,206,994	9,039,080	10,232,019	10,789,187	12,223,974

주: 각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지특회계의 세입예산 중 전입금을 제외한 주요 세원은 주세와 각종 법정 부담금이다. 주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경기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주세 수입 추이를 보면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이래 3조원 초·중반대에서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특회계의 주세관련 세입예산 대비 수납 실적도 일정하지 않다.

[지특회계 주세수입의 연도별 예산 및 수납 현황]

(단위: 조원)

세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주세	3.2	2.7	3.7	3.8	3.2	3.6	3.6	3.3	3.2	3.2	3.1

주: 각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특히, 지특회계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입원으로서 주세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있어 안정적 독자 세원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특회계 세입원의 주세 및 법정부담금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금액 (a)	비중 (a/b)	금액 (a)	비중 (a/b)	금액 (a)	비중 (a/b)	금액 (a)	비중 (a/b)	금액 (a)	비중 (a/b)	금액 (a)	비중 (a/b)
주세	3.2	302	3.7	325	3.2	269	3.6	259	3.2	218	3.1	135
법정부담금	0.5	4.7	0.5	4.4	0.5	4.2	0.5	3.6	0.5	3.4	0.6	2.6
세입총액 (b)	106	100	11.4	100	11.9	100	13.9	100	14.7	100	22.9	100

주: 각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법정부담금의 경우, 지특회계의 전체 세입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 아니라,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으로 지특회계의 다양한 사업에 자유롭게 배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원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은 법령에서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원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법령에서 사용 용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³⁾

[지특회계 세입원의 법정부담금 현황]

계정	주요 세입원
지역자율 계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지역지원 계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제79조~제81조

이와 같이 주세와 법정부담금은 지특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전입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를 확

3)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관련 교통시설 구축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다.

대하고 있으나 전입금의 경우 후술할 문제점들로 인해 안정적인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특회계 세출예산 확대 기초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특회계의 독자 세원 확보 등 세입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특회계 예산 확대를 위해 전입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반회계전입금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세수 결손에 따라 전입금 규모가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특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세 및 부담금 등 독자 세원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전입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예산 기준 지특회계의 전입금 규모는 전체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전입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특회계 세입원 중 전입금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금액(a)	비중(a/b)
전입금	6,698,546	7,730,940	9,240,993	10,231,546	18,336,646	80.0
일반회계	4,183,975	4,858,286	6,197,012	5,953,324	12,713,576	55.5
특별회계	2,514,571	2,872,654	3,043,981	4,278,222	5,623,070	24.5
세입 총액(b)	11,408,656	11,927,280	13,868,920	14,703,645	22,911,235	100.0

주: 1. 각연도 본예산 기준

2. 전입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지특회계의 주요 세입 재원인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법정전출금⁴⁾인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하면 모두 임의전출금이기 때문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2조제1항은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81조는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법률에 따라 세수의 일정 비율을 전출받는 법정전출금이며 나머지 계정으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령에서 전입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는 임의전출금이다.

에 안정적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지특회계의 계정별 전입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특회계 전입금이 각각 3,132억원, 7,759억원이 미지급된 바 있다.

2023년의 경우,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자율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액 2,229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858억원만 집행되었으며, 지역지원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도 예산액 4조 5,610억원 중 4조 1,772억원만 집행되고 3,837억원이 미지급되었다. 2024년의 경우에도, 30.8조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이 7,759억원 미지급되었다.

[지특회계 세입원 중 전입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미집행액(a-b)	
2023 회계연도	지역 지원 계정	일반회계	4,560,966	4,177,247	383,719
		특별회계	1,873,008	1,873,008	-
	지역 자율 계정	일반회계	222,942	185,786	37,156
		특별회계	765,892	873,577	-
	제주 계정	일반회계	233,754	233,754	-
		특별회계	18,264	18,264	-
	세종 계정	일반회계	52,332	52,332	-
		특별회계	-	-	-
	합계		7,727,158	7,413,968	313,190
	2024 회계연도	지역 지원 계정	일반회계	5,590,044	5,340,044
특별회계			1,802,925	1,677,097	125,828
지역 자율 계정		일반회계	306,516	306,516	-
		특별회계	1,208,963	808,899	400,064
제주 계정		일반회계	255,596	255,596	-
		특별회계	31,214	31,214	-
세종 계정		일반회계	44,856	44,856	-
		특별회계	879	879	-
합계		9,240,993	8,465,101	775,892	

주: 미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과소 집행된 경우에 한해 작성
 자료: 기획예산처(舊기획재정부)

2023년 회계연도의 경우, 지역자율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2조제1항5)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특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관련 세입 실적 기준 전입금(징수실적의 2%)인 2,16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급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는 법정전출금인 지역자율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예산액 전액이 지급된 반면, 법정전출금이 아닌 지역지원계정의 일반회계·특별회계전입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인다.⁶⁾

[2023년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수납액 (실제 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실적	세입실적 기준 전입금 (징수실적의 2%)
2023	222,942	185,786	10,843,590	216,87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절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특회계의 경우, 세출사업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입금의 조정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10년간 지특회계의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면 2015년~2021년까지 매년 세입 결손으로 결산잉여금이 이월소요보다 부족하여 일부 사업은 진도율에 상관없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연례적인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로 인한 것이다.⁷⁾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6) 참고로 2023년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일반회계전입금 미지급에 대해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법정 규모 수준으로 일반회계 법정전출금을 전출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7)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을 다음 연도 세입에 우선 이입하도록 하여, 이월하는 세출예산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상 잉여금의 이입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상 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지 않고 세출예산만 이월하기도 하는데, 이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칭한다.

결론적으로 지특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을 구성하는 전입금이 임의전출금 중심의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증액된 세출예산에 상응하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거 반복되었던 세입결손 및 예산이월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회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구조 및 편성체계 분석

첫째,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계정간 사업범위가 중복될 뿐 아니라 사업간 경계가 모호한 정의 규정이 많아 사업 범위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특회계의 계정별 세출사업의 범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81조의 각 2항에서 매우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각 계정의 명확한 정의와 구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매년 배포하는 각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특회계 및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을 구분하는 기본 구조상의 특징(사업 성격)을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세종계정의 경우 별도의 정의가 없지만,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대상 사업의 구분 없이 지특회계 대상 사업 중에 지역적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특회계 및 계정별 대상 사업의 성격]

구분	기본 구조상의 특징(사업 성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성격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연계 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자율계정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
지역지원계정	(부처직접편성사업)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각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지특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연계 투자 효과가 있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면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여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이 필요하여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면 지역지원계정에 편성하여 부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 계정의 구분은 수행주체(국가/지자체)와 지역의 범위(특정지역 국한/권역간 연계)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의 범위 중에 각종 경비나 통상적인 재무활동을 제외하고 전술한 지특회계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려보면 다음 표와 같다.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사업을 정리하면, 기초생활권(시·군·구) 생활기반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령에서 지원제외대상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외에는 구분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 역시 초광역권 및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특화 및 초광역권산업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지방대학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지역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8) 제주·세종계정의 경우,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의 조항을 모두 재인용하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의 범위]

구분	세출사업 범위	법적 근거
지역 자율 계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섬,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농어촌, 산촌개발 등)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78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제78조 제2항
지역 지원 계정	①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용자 ②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③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④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⑤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⑥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⑦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⑧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 제2항

자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대상 세출사업을 굳이 구분하자면, 지역지원계정이 과학기술(R&D) 분야와 대학 등 인적자원개발(HRD)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출연·보조 또는 용자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 계정의 대상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지역지원계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법정 세출사업의 범위에서는 초광역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양 계정의 대상사업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상의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 범위는 계정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는 수준이며, 이와 같은 법정 기준의 모호성은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지특회계 대상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회계 규모를 확충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⁹⁾

따라서, 정부는 현행 법률상의 지특회계 세출사업 범위를 수행주체와 지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다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하여 회계 및 계정 구분의 실익을 확보하고 사업이관 검토 등 회계 규모 확충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이관을 통해 포괄보조사업 유형이 126개로 다원화되면서 사업범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성격의 사업 등을 통합하여 유형을 단순화하고 지자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은 지속적인 신규 이관대상 사업 발굴을 통해 계정의 규모를 확충하여 온 결과, 2026년 현재 포괄보조사업 목록 중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 120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이 6개로 총 126개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수의 변화]

(단위: 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시·도 자율편성	13	23	37	47	120
시·군·구 자율편성	5	5	5	5	6
합계	18	28	42	52	126

주: 포괄보조사업은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자율편성하는 사업과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자율편성하는 사업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자료: 기획예산처

9)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이관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2024회계연도 결산), “하수관로정비BTL사업”(2025년도 예산안), “전통문화 체험지원”(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원봉사 활성화지원”(2025년도 예산안) 등이다.

정부는 포괄보조사업의 유형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126개 유형 중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유형을 취사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가 지자체별로 할당된 지출 한도(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필요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포괄보조사업의 유형이 많아지면 사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선택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게 된다.

통상적인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개념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용도를 정한 특정보조금(국고보조사업) 사이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운영방식을 말한다. 즉,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자원배분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포괄보조의 사업적 특징은 재정사업 묶음(Package)의 크기, 사업의 선택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포괄보조로 묶인 사업의 범위 또는 규모가 얼마나 포괄적인가에 따라 포괄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약한 것을 구분하는데, 예컨대 3~5개 사업을 하나의 포괄보조 패키지로 묶는 것과 10~15개 사업을 패키지로 묶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자율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범주의 포괄성이 클수록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포괄보조 개념화]

요소		일반 보조	포괄보조		특정(개별) 보조
			(재량)←	→(규제)	
사업	범주	무제한	광·대범위	협·소범위	개별사업
	선택범위	무제한	선택 가능	부분 선택 가능	선택 불가
자원운용	평가·정산	無	효과·포괄정산	보조기준·사업별정산	개별사업
	자원배분	완전자율	최소기준	사업별 규율	규율
	매칭방식	정액	정액·정률(높은 보조율)	정률(낮은 보조율)	정률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2023)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7조¹⁰⁾에서는 포괄보조사업을 사업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단위는 단위사업 하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126개 포괄보조사업의 유형(메뉴판)이 제시된 것은 사업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아니라 사업범주의 포괄성을 협소하게 만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126개 포괄보조사업 중 시·군·구 자율편성(6개)를 제외한 120개 사업의 경우 사업 범주가 포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명을 통해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업범위가 특정된 사업들을 찾을 수 있다.

[2026년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시도 자율편성			시도 자율편성		
1	교육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61	문체부	광역권 관광개발
2	과기부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	62	문체부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3	행안부	접경권발전지원	63	문체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4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64	농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
5	문체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5	농식품부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6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66	농식품부	농기계임대
7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67	농식품부	농촌경제활성화지원
8	문체부	생태녹색관광활성화	68	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증단지
9	문체부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69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10	문체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	70	농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	문체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71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12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72	농식품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13	농식품부	반려동물인프라구축	73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14	농식품부	농촌유후시설활용지역활성화	74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5	농식품부	농촌형교통모델	75	산업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6	기후부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76	산업부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
17	기후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77	산업부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18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8	복지부	경로당 지원
19	복지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7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80	기후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21	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81	기후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2	복지부	봉안시설 설치	82	기후부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23	복지부	농어촌보건의료 등 이전신축	83	기후부	하수처리장 설치
24	기후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84	기후부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25	기후부	노후상수도정비	85	기후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26	기후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86	기후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27	기후부	슬레이트관리	87	기후부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28	기후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88	기후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29	성평등부	가족센터 건립	89	기후부	습지보전관리
30	국토부	혼잡도로 건설	90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31	국토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1	성평등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2	국토부	도시형교통모델	92	국토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3	국토부	벽지노선지원	93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34	국토부	수소도시지원	94	국토부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35	해수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95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36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96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37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97	국토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38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98	해수부	관상어산업육성
39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99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40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00	해수부	수산식품새싹기업도약지원
41	산림청	정원도시조성	101	해수부	수산장비(임대)활용
42	산림청	임도시설	102	해수부	친환경 어구보급
43	산림청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	103	해수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4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조성	104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45	산림청	생활권도시숲조성	105	해수부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46	과기부	디지털배움터	106	해수부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
47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107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기반
48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108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49	과기부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 Lab 육성지원	109	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50	과기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110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51	과기부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111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52	과기부	특구 기반시설 구축	112	산림청	산림생명산업
53	과기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113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54	과기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항공우주분야)	114	산림청	숲가꾸기
55	행안부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15	산림청	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
56	행안부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16	산림청	조림
57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17	산업부	지역투자촉진(세종)
58	문체부	지역 공영예술 인프라 조성	118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59	문체부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19	농식품부	토양개량제사업(제주)
60	문체부	관광자원 기반조성	120	기후부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2026)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에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포괄보조사업 중 사업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였으나, 사업명 자체가 겹치는 2개 사업군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했을 뿐 여전히 사업 범주의 포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목적·성격이 유사한 사업 통합 및 개편]

(단위: 억원)

개편전	'26예산	개편후	'26예산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율·제주·세종계정)	2,528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지원 (자율·제주·세종계정)	2,891 (+362)
<input type="checkbox"/>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자율·제주·세종계정)	788	<input type="checkbox"/>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자율·제주·세종계정)	792 (+4)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지원 (자율·제주·세종계정)	366		
○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 등 특성화 교육	36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4		
<input type="checkbox"/> 문화도시 조성 (자율계정)	180	<input type="checkbox"/> 문화도시 조성 (자율·세종계정)	680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자율·세종계정)	500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2026)

실제로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의 유형이 다양화되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3~2025년 3년간 수행한 포괄보조사업의 수를 살펴 본 결과,¹¹⁾ 대부분의 시·도가 많은 유형의 포괄보조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도 간 사업 수가 다른 것은 사업유형이 도시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도는 선택 가능한 포괄보조사업 목록의 80% 수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시·도별로 선택한 포괄보조사업의 유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의 폭이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포괄보조사업(세부사업)에 대하여 자체 편성한 내역사업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업

11) 2026년의 경우, 2025년 8월에 추가이관을 통해 64개 포괄보조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편성한 사업이 아니라 이관 전에 부처 직접편성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범주 자체가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대부분의 내역사업 역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된 것일 뿐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2023		2024		2025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전체	23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37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47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서울	10	23	20	42	20	43
부산	16	33	23	38	27	46
대전	13	24	19	28	23	36
대구	15	24	24	36	25	38
인천	16	31	25	39	33	41
광주	13	21	18	28	22	32
울산	13	20	21	27	18	24
평균	13.71	25.14	21.43	34.00	24.00	37.14
경기	22	36	34	67	38	75
충북	19	27	31	54	33	56
충남	22	32	32	65	39	73
강원	22	41	33	76	36	80
전북	21	34	33	67	38	77
전남	24	52	35	86	38	82
경북	23	45	33	81	38	88
경남	23	41	33	66	36	84
평균	22.00	38.50	33.00	70.25	37.00	76.88

주: 세부사업 수는 정부가 제시한 각년도 포괄보조사업의 유형 중에 해당 지자체가 선택한 사업의 수이며, 지자체 내역사업의 수는 지자체가 선택한 세부사업(포괄보조사업 유형)에 대하여 다시 자율적으로 내역사업을 편성한 사업의 수입

자료: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소관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현행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운영 방식은 포괄보조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며 2026년 포괄보조사업의 대규모 이관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유사 사업간 통폐합 등을 통해 포괄보조사업 유형을 단순화하는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예컨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내역사업이 분리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내용이며,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리한 내역사업이 많은 것일 뿐 하나의 포괄보조사업(세부사업) 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편성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셋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고, 강원, 전북의 특별계정 신설 요구 및 계정 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지특회계 계정 편성체계 전반의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¹³⁾ 주요 내용 중에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7년 시행에 따라 기존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편성된 지특회계 계정에 특별계정이 추가되는 구조가 될 예정이다.

초광역특별계정은 초광역권 단위 사업을 통합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계정으로, 5극 3특 전략의 핵심 과제인 초광역 경제권 조성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한 재정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특회계 편성체계는 5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광역권특별계정 신설 후 지특회계의 편성구조]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초광역특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		⑤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⑨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13) 의안번호 2213398(2025.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 중이다.

초광역권특별계정의 사업은 부처 직접편성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다만, 초광역권 협력 사업의 특성 상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복수의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민간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될 예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초광역권특별계정의 신설로 지특회계 5개 계정 중에 3개 계정이 특별계정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나,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계정 신설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별계정 중심의 기형적인 계정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소관 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에 지특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¹⁴⁾을 근거로 꾸준히 특별계정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세종특별계정과 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특회계 편성체계는 전술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계정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 방식이기 때문에 부처별·사업별 칸막이 운영 방식 및 분절적 추진에 따른 사업간 연계 추진의 한계 등 기존 부처 주관 사업(타 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¹⁵⁾

이와 같이 지특회계는 복잡한 계정 편성구조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등 계정편성체계 전반의 재구조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므로, 정부는 초광역권 특별계정 신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타 계정의 편성체계에 대해서도 개편 논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서는 각각 소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15)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지특회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초광역권특별계정 신설을 위한 개편연구 등 다수의 편성체계 개편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개편 없이 초광역권특별계정의 신설만 반영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되었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실태 분석

첫째,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운영방식이 기획예산처의 편성지침과 소관부처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책임성 사이에서 표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은 정부의 계정규모 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급격한 예산증가와 함께 포괄보조사업의 유형이 126개로 확대되었다. 이에 유사한 사업유형 간 통·폐합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범주의 포괄성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자율편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포괄보조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운영 현황, 기획예산처의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과 소관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통상적인 포괄보조사업의 성격은 ① 사업선택 범주의 포괄성, ② 사업편성의 자율성, ③ 자원배분의 자율성, ④ 통합적인 평가 및 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⁶⁾

[포괄보조 개념화]

요소		일반 보조	포괄보조		특정(개별) 보조
			(재량)←	→(규제)	
사업	범주	무제한	광·대범위	협·소범위	개별사업
	선택범위	무제한	선택 가능	부분 선택 가능	선택 불가
자원운용	평가·정산	無	효과·포괄정산	보조기준·사업별정산	개별사업
	자원배분	완전자율	최소기준	사업별 규율	규율
	매칭방식	정액	정액·정률(높은 보조율)	정률(낮은 보조율)	정률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2023)

본 장에서는 이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편성의 자율성 및 자원배분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현행 포괄보조사업 운영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사업편성 및 자원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2024)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2018) 등 다수 연구자료 및 논문을 참조하여 포괄보조사업의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다.

배분의 자율성이란 정부가 제시한 포괄보조사업 유형(시도 자율편성 120개) 중 하나의 사업(세부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한 후에 해당 시도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하위 내역사업을 편성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포괄보조사업 유형별 사업범주의 포괄성이 확보될 경우,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역사업)을 차별화하여 기획·편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기획하여 재원을 배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개 시도가 편성한 포괄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정부의 포괄보조사업(세부사업) 당 2개 내외의 내역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2023		2024		2025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세부사업 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수
전체	23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37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47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서울	10	23	20	42	20	43
부산	16	33	23	38	27	46
대전	13	24	19	28	23	36
대구	15	24	24	36	25	38
인천	16	31	25	39	33	41
광주	13	21	18	28	22	32
울산	13	20	21	27	18	24
평균	13.71	25.14	21.43	34.00	24.00	37.14
경기	22	36	34	67	38	75
충북	19	27	31	54	33	56
충남	22	32	32	65	39	73
강원	22	41	33	76	36	80
전북	21	34	33	67	38	77
전남	24	52	35	86	38	82
경북	23	45	33	81	38	88
경남	23	41	33	66	36	84
평균	22.00	38.50	33.00	70.25	37.00	76.88

주: 세부사업 수는 정부가 제시한 각년도 포괄보조사업의 유형 중에 해당 지자체가 선택한 사업의 수이며, 지자체 내역사업의 수는 지자체가 선택한 세부사업(포괄보조사업 유형)에 대하여 다시 자율적으로 내역사업을 편성한 사업의 수입

자료: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소관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구체적인 사업편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도 기준 가장 많은 지자체 내역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경북의 내역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았다.

2025년도 경북의 경우, 47개 포괄보조사업 유형 중 38개의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88개의 지자체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세부사업 내에서 복수의 내역사업을 편성한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이며, 해당 세부사업의 총 내역사업의 수는 62개로 나타났다.

[경북의 포괄보조사업 중 복수의 내역사업을 편성한 사업현황(2025)]

소관부처명	포괄보조사업 유형 (세부사업)	지자체 내역사업명
국토교통부	도시형교통모델(자율)	공공형버스 지원
		공공형택시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강구대교
		단산-부석사
		마령재터널
		운문-도계
		포항-안동
		효자-상원
		온정-원남
		죽장-달산
		강동-안강
		고령-성주
상원-청하		
기후에너지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자율)	포항시 노후상수관망정비('24)
		택전정수장 개량('22공모)
		경주시 노후상수관망정비('24)
		탐동정수장 개량('24)
		가흥정수장 개량('22공모)
		풍기정수장 개량('24)
		흥덕정수장 개량('24)
		경산시 노후상수관망정비
		청송군 노후상수관망정비('23)
		영덕군 노후상수관망정비('24)
		고령군 노후상수관망정비('24)
		봉화군 노후상수관망정비('24)
		남양정수장 개량('24)
		의성군 노후상수관망정비('25)
		울릉군 노후상수관망정비('25)
청도군 노후상수관망정비('25)		

소관부처명	포괄보조사업 유형 (세부사업)	지자체 내역사업명
		영천시 노후상수관망정비(25) 예천군 노후상수관망정비(25) 상주시 노후상수관망정비(25) 구미시 노후상수관망정비(25)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자율)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인프라 구축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자율)	김천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건립 상주시 소규모체육관 건립 일월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호명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칠곡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건립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 자사업(자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자율)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산림청	임도시설(자율)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생활권도시숲 조성	자녀안심그린숲 생활밀착형숲(소읍지역)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해양수산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해양쓰레기정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자율)	고령대가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안강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풍기토종인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영주문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큰동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영일대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자료: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소관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당 평균 6개 가까운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기초지자체(군) 등 지역별로 내역사업을 분리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11개 내역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20개 내역사업),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5개 내역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6개 내역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평균 3개 내외의 내역사업을 편성한 것이다.¹⁷⁾

그런데, 해당 내역사업도 소관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역사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편성한 내역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재원배분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소관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역사업 유형별 국비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특정 포괄보조사업 유형(세부사업)을 선택하면 편성 가능한 내역사업과 내역사업별 재원배분 규모까지 확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성가능한 내역사업의 범위와 사업내용, 지원조건, 지원규모 및 보조율(매칭비율)까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내용별 프로그램 예시까지 별도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를 벗어난 사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¹⁸⁾

-
- 17) 포괄보조사업의 취지는 유사사업의 통합하여 사업용도를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유로운 세부내역 편성 및 재원배분을 보장하는 것인 반면, 기초지자체 단위의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범주가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한 것이다.
 - 18)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야영장시설의 종류) 및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며 그 밖의 프로그램도 운영된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안전)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계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물처리 시설 · (위생)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	(공공)사업체당 최대 4천만원 (민간)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지원	(공공)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 (민간)사업체당 최대 1.5천만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여행 프로그램, 각종 체험 프로그램, 오락/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지원 항목 제외, 등록야영장이 아닌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공공/민간)프로그램당 최대 1억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덤프스테이션 설치, 야영장 진입로, 부지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 야영기반 구축 지원	(공공)사업체당 최대 6천만원 (민간)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예산처의 각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소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지자체의 경우 차년도 국비를 반영하지 않으며, 차등지원 평가에서도 준수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우 소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업편성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6년 현재 포괄보조사업 유형을 운영하는 13개 부처·청 중에서 별도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한 곳 뿐이며, 나머지 12개 부처·청¹⁹⁾이 매년 소관 포괄보조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지침과 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세한 사업운영지침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사업기획·운영·관리 능력이 떨어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들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역자율계정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강화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7조²⁰⁾에서는 포괄보조사업을 사업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단위는 단위사업 하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6조²¹⁾에서는 정부가 포괄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행 부처별 가이드라인은 세부내역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포괄보조사업 유형별 사업범주를 포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포괄적 사업범주에 적합한 사업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편성과 자원 배분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포괄보조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 운영·관리 과정의 운영 미숙, 집행 부진, 개선과제 등의 문제점은 사업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특회계 사업평가와 새로 도입된 시행계획 평가는 공통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동일한 절차로 시행되고 있으나, 목적, 대상, 환류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여 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특회계 사업평가는 주관기관의 변화를 기준으로 세 차례 평가체계가 변화하였으며,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행 체계를 갖추었으나 정부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지역지원계정 평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로 이관되었다. 그 간 지특회계 평가체계는 관련 법률 및 정책 개편에 따라 평가주관기관, 평가절차 등 평가체계의 기본 골격이 변화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현행 체계가 정착되었다.

2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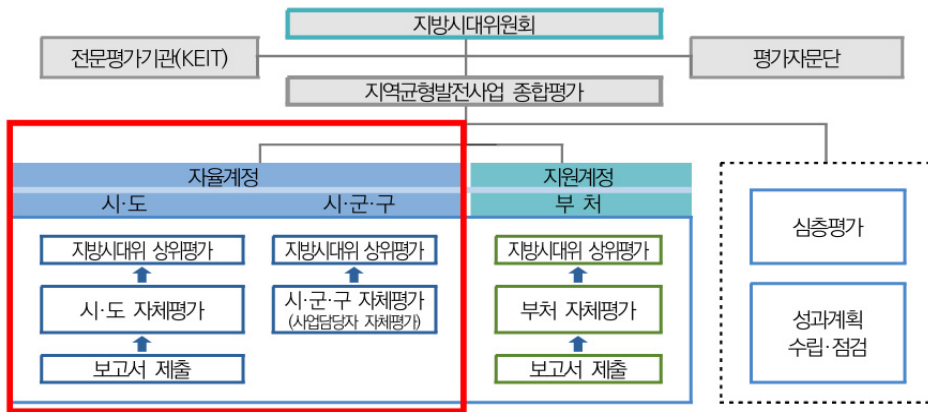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제도 변천과정]

구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23년
평가 주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별	균형위 (연구용역)	산자부 (KISTEP)	행자부 (KEIT)	행안부 (지방행정연)	지방시대위원회 (KEIT)
	부문별		균형위	산자부 (KISTEP)	지경부 (KEIT)	
평가 절차	지역지원계정	부처→균형위→산자부		부처→균형위		부처→균형위
	지역자율계정	시·도→부처→ 균형위→산자부		시·도→부처→ 행자부→균형위		시·도→(광역위) →부처→ 지방시대위
평가실행		평가위원회 (균형위)		평가위원회 (균형위)		평가자문단 (지방시대위)
근거(시행령)		2004. 4. 1.		2007. 3. 9.		2009. 5. 9.

- 주: 1. 2015년부터 상위(메타)평가 도입
 2. 지방시대위원회의 기관명 변경 이력 : ('03~'09)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 ('09~'18)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 → ('18~'23)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 ('23)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
 3. KISTEP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EIT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임
 자료: 산업연구원, 「지특회계 사업평가 20년 고찰 및 향후 발전방안」(2024)

현행 지특회계 평가체계는 2026년에 시행하는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부터 적용되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역지원계정의 사업평가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이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상위평가의 형태로 운영하며, 지역지원계정의 사업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체계(2025년도 평가기준)]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이와 함께 2025년도부터 신규 도입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평가와 함께 지특회계 사업평가(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와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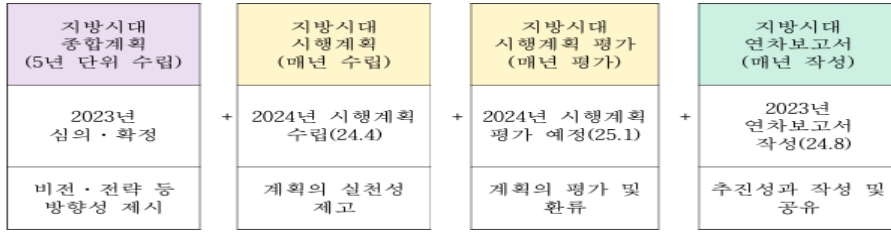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시행계획 종합평가 추진체계]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전년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보완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항은 계승하는 방식을 통해 차년도 시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목적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지특회계 사업평가는 지특회계에 포함된 사업에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시행계획 평가는 특정 사업에 편향되지 않고 계획 단위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평가 대상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시대 계획체계]



[지특회계 사업평가와 시행계획 평가 비교]

구분	지특회계 사업평가	지방시대 시행계획 평가
평가목적	등급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특회계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 제고	전년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의 완성도 제고
평가대상	지특회계 사업(사업비 20억원 이상) - 2026년 평가(2025년도 추진실적)부터 지원계정 제외	시·도 시행계획, 부처 시행계획, 초광역권 시행계획
도입시기	2005년	2025년 시범운영, 2026년 본격 도입
평가환류	- 종합평가: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평가결과 송부 - 자체평가: 상위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측면에서 자체환류 미흡	- 종합평가: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평가결과 송부 -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체환류(점검)의 과정 수행
자체평가위원회구성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의무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불필요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결과 및 예산반영	평가백서를 통해서 평가결과 공개 및 차년도 예산안 반영	평가결과 비공개, 우수사례 공유, 차년도 예산안 미반영

자료: 산업연구원, 「지특회계 사업평가 20년 고찰 및 향후 발전방안」(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대상을 사업과 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의 평가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당 부분 평가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양 평가가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이 동일하여 이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²²⁾

22)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적 근거의 동일성은 통합 논거가 아니라 단일 주체(지방시대위원회) 수행의 정당성 근거이며, 제85조는 평가결과를 차등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평가의 독

[지특회계 사업평가와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 법령]

구분	조문 내용
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4조~17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지특회계 사업) 평가의 근거로는 오히려 취약하며 시행계획의 평가 실시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갖는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지특회계 평가체계는 자율편성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의 통제력이 확인되지 않고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체계 운영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환류 결과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가제도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자율계정 사업(포괄보조사업)의 평가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지원계정의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현행 지특회계 사업평가는 지특회계 대상 사업 중 재정규모 면에서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자율계정, 제주·세종계정)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과거 지역지원계정 평가의 경우,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지방시대위원회)에서 부적절 판단 시 재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상위평가의 적절성 점검을 통한 자체평가 통제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²³⁾ 포괄보조

자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운용 및 사업관리 능력이 중앙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경우, 지자체 자체평가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방법]

- (시·도)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 → 지방시대위원회 상위평가
 - (자체평가) 각 시·도가 선정한 자체평가 대상사업간 상대평가 실시, 3단계로 등급배분
 -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20% 내외), 보통(65% 내외), 미흡(15% 내외)
 - (상위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자체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의 적절성을 점검
- (시·군·구) 지자체 자체평가(점수 부여) → 지방시대위 상위평가(점수·등급 부여)
 - (자체평가) 각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25년 수행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위 미구성) → 사업별 점수 부여
 - (상위평가)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자체평가 기준과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자체평가 점수는 참고로만 활용)
 -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 → 평가점수 부여 및 등급 배분
 - * 포괄보조사업별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 ** 평가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집행-기획 순으로 높은 점수에 상위등급 부여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의 자체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평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자율계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포괄보조사업 유형이 급증하면서 평가대상 사업의 수가 2025년부터 500개를 넘기는 수준에 이르러 상위평가의 적절한 감시기능이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자칫 형식화될 우려가 높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추진일정에 따르면 상위평가는 대략 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23)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성과계획서 수립지침 마련을 통해 자율편성 사업의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성과계획-평가-사후관리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등 상위평가의 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일정]

프로세스	수행주체	추진 일정	내용
2026년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지침 통보	지방시대위 → 지자체	'25.12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평가계획 및 지침 통보 평가계획 설명회('25.12.4.)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자체평가 실시)	지자체	'25.12월 ~'2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작성기준 : '25.1.1~'25.12.31)
↓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지자체 → 지방시대위	'26.02.09. ~ '26.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도)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사도 자체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증빙자료, 포괄보조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군구)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위 : 공문 및 보고서, 증빙 제출 → eval.nabis.go.kr : 보고서, 증빙 업로드
지방시대위 상위평가(1차)	지방시대위 (KEIT)	'2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도)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사군구) 포괄보조사업별 상위평가 실시
↓			
(이의신청)	지자체 → 지방시대위	'26.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별로 이의신청 의견작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지방시대위 상위평가(2차)	지방시대위 (KEIT)	'2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상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지방시대위	'2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평가결과 통보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이와 같이 현행 평가체계는 상위평가의 통제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는 17개 시·도별 평가등급(우수·보통)만 산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대평가를 통해 10% 내외의 미흡사업만 발굴하여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절차만으로는 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가 기획예산처의 지특회계 차등지원 시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사업별 평가 결과가 최종점수(등급)로만 공개되는 반면, 해당 사업에 직접 매칭되어 차년도 예산안에 환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안 반영 이외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별 최종 등급 판정 외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2025년도에 시행한 자율계정 사업평가의 경우, 504개(시도사업 144개, 시군구사업 360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 등급(우수/보통/미흡)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 시행중인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이 518개(시도사업 166개, 시군구사업 35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시행 2024년도 자율계정(시·도 사업) 평가결과]

< 자율계정(시·도 사업) 상위평가 결과 >

※ 시·도 자체평가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 적절성, 대상선정, 등급배분, 평가결과와 적절성, 지출 구조조정, 사업구조조정 항목을 상위 평가하여 등급 산출

'우수'등급(가나다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보통'등급(가나다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시·도 지자체별 평가대상사업 자체평가 결과 >

※ 평가대상 : 시 최소 5개 사업, 도 최소 9개 사업을 자체평가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도	구분	자체평가 결과				시	구분	자체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경기		2	6	1	9	서울	1	3	1	5	
강원		2	7	1	10	부산	1	4	1	6	
충북		2	7	1	10	대구	1	3	1	5	
충남		3	10	2	15	인천	1	3	1	5	
전북		2	7	2	11	광주	1	3	1	5	
전남		3	9	2	14	대전	1	3	1	5	
경북		2	7	1	10	울산	1	3	1	5	
경남		2	6	1	9	세종	1	3	1	5	
제주		3	10	2	15	총계	29	94	21	144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보장하고 있지만, 재정사업 운영의 전문성, 체계성,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 환경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이 포괄보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획예산처와 소관부처의 세밀한 운영·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

지만, 이를 계정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대신에 사업 성과평가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지역지원계정과 같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이관하거나 사업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한 부처 자체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지방소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의 심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인구와 생활 기반이 점차 소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¹⁾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저출생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구별된다.²⁾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의 유출 억제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력 회복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1항³⁾은 시·도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2022년~2023년) 추진⁵⁾에 따라, 지역격차 및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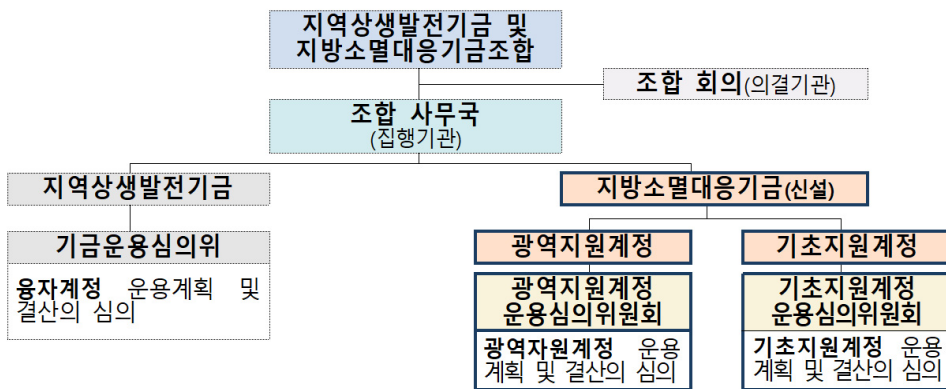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⁶⁾을 관리·운영하는 기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3741)

- 1) 하혜수,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자치 재검토 -다양화와 차등화-,” 「한국지방행정학회」 제14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pp.1-24.
- 2) 최철호,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법제연구」 제6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pp.79-110.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안부고시)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나머지 10%는 시·도별 인구·재정여건을 고려한 배분계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따라 관내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인구·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과 세종에는 배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세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 5)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연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보도자료, 2021.11.12.

금관리조합⁷⁾이며, 공식명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다. 기금의 재원은 2031년까지⁸⁾ 연간 정부출연금 1조원⁹⁾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운영하는 한시재원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분기부터 시행되어 7,500억원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9.75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영한다.
-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 500억원으로 한다.
-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및 운영 체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이지만, 동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10)에 따른 정부출연금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11)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 등 기금의 배분 대상 및 배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와 광역 배분 결정 로직]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전체 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시·도’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표]에 제시된 시·도별 배분계수에 따른다. 이에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님에도 2025년에 각각 12억원, 19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았다.

[광역지원계정 배분 계산식(「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배분대상	배분 계산식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i \times a1i \times a2i}{\sum (Ai \times a1i \times a2i)}$ <p> A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p>										
시·도	<p>해당 시·도 배분금액 =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 0.1 × 해당 시·도 배분계수</p> <p>[시·도 배분계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도</th> <th>배분계수</th> </tr> </thead> <tbody> <tr> <td>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td> <td>0.100</td> </tr> <tr> <td>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td> <td>0.075</td> </tr> <tr> <td>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td> <td>0.050</td> </tr> <tr> <td>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td> <td>0</td> </tr> </tbody> </table>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4, p.9.

기초지원계정(매년 7,500억원)의 95%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 5%는 18개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다만 기초지원계정은 선정된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¹²⁾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액은 조합회의¹³⁾에서 결정된다. 2025년 기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준 최대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약 160억원, 관심지역 약 40억원이다.

[기초지원계정 배분 구조]

2025년 기준: 우수/양호 2등급 차등 배분 (총 7,480억)								2026년 기준: S/A등급 신설 및 추가 배분 (총 7,580억)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등급	인구감소지역 ^A			관심지역 ^B			배분총액 C=A+B	등급	인구감소지역 ^A			관심지역 ^B			배분총액 C=A+B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합계	89	-	7,112	18	-	368	7,480	합계	89	-	7,208	18	-	372	7,580
우수	8	160	1,280	2	40	80	1,360	우수	8	120	960	2	30	60	1,020
								S	11	88	968	-	-	-	968
								A	30	80	2,400	4	24	96	2,496
양호	81	72	5,832	16	18	288	6,120	양호	40	72	2,880	12	18	216	3,096

변화 (Change) 7,480-7,580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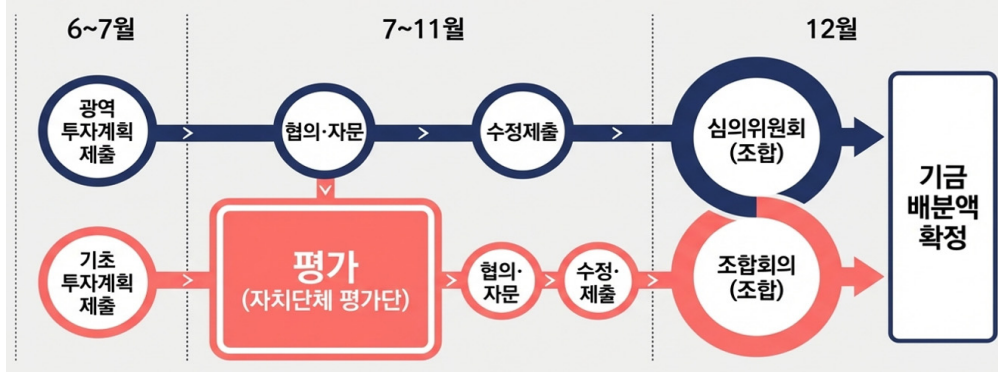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광역지원계정 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¹⁵⁾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 13) 지역발전상생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회의(의결기관)
 - (구성) 시·도 기획실장(17명),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안부 장관 추천 지방재정전문가(2명)
 - (역할) 조합규약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사업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 (실무협의회) 시·도 예산(재정)담당 과장,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과장으로 구성, 상정 안건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
-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¹⁶⁾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이원화 로드맵]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 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3.6.28.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첫 논의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23.7.12.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발표
'23.8.31.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 발표 * 펀드제도(거버넌스 및 투자가이드라인)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원 방안 등
'23.9.22.	펀드 참여자 대상 투자설명회(IR) 및 투자 매칭데이 개최 * 제도 소개 및 시장 참여자간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성공적 사업추진 도모
'23.10.24.	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관] * 학술단체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
'23.12.07.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추진동향 점검
'24.1.03.	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선정
'24.1.16.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문 게시 * 「 http://www.kgrowth.or.kr > 공지사항 > 출자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24.3.26.	펀드 출범식 + 1호 프로젝트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p.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17)에 근거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중앙정부(금

17)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체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에 광역지원체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융위원회),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연계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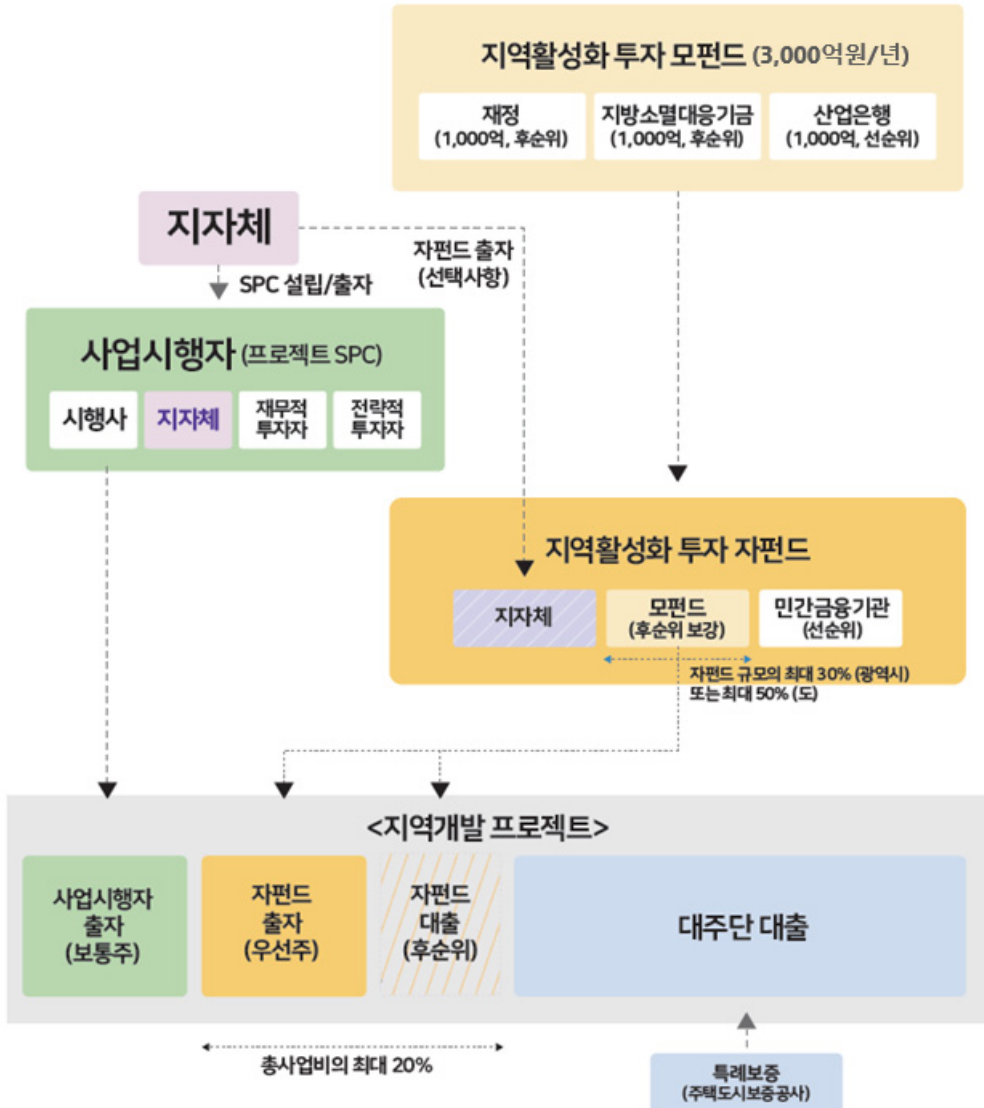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체계]

펀드 목적	지역이 발굴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본 방향	펀드 조성	프로젝트 발굴	인센티브 제공
	단발적 · 소규모 재정의존 ⇨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Top-Down ⇨ 지자체 Bottom-up	투자 걸림돌 ⇨ 마중물 + 규제완화
세부 구조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 · 산은 · 소멸기금, 모펀드에 출자 ▪ 지자체·민간·금융기관 SPC 설립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민간 금융기관 PF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gative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 대규모 용 · 복합 프로젝트 등 추진 ▪ 시장 경쟁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선정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순위 출자, PF 보증 등 안정적 수익 창출 ▪ 지자체 출자, 중앙투자심사 등 투자규제 개선 ▪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 · 해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3-16-3(공개), 2023.7.12, p.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매년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비수도권 소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2024, p.3.

모펀드의 투자기간(프로젝트 선정 기간)은 2년이지만, 자펀드 형태의 하위 펀드에 대한 자금 집행은 수시납(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며, 모펀드의 존속 기간은 최대 25년까지 설정될 수 있다.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에는 충북 단양과 경북 구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1호 프로젝트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이후 총 6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총사업비는 3조 6,345억원에 달한다.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승인된 8개 프로젝트 중 충북 단양, 경북 구미, 전남 여수, 전남 장성 등 4개 사업은 이미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사업 현황(2025.12. 기준)]

(단위: 억원)

프로젝트명	최초승인	재선정	자펀드 결성시한 ¹⁾	자펀드 결성일	총사업비 (모펀드투자금액)	기금 약정액
1호 인구감소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4.2.16.	2차 '24.11.27.	'25.9.29.	'25.9.26.	680(68)	23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3차 '25.1.24.	'25.8.25.	876 (39)	13
3호 전남 여수 모도 LNG 터미널	'24.8.29.	-	'25.4.2.	'25.2.28.	14,362 (1,436)	478
4호 관심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심사중 ²⁾ (2025.12.)	-	-	8,191 (786)	262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컴플렉스 1단계	'24.12.24.	'25.10.2.	'26.2.2.	결성중	900 (90)	3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5.11.4.	-	'26.3.5.	결성중	7,200 (420)	140
7호 인구감소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1.4.	-	'26.3.5.	'25.12.1 0.	3,959 (372)	124
8호 인구감소 충남 태안, 「Seed Farm 1호」	'25.11.28.	-	'26.4.1.	결성중	177 (17)	6
합계					36,345 (3,228)	1,076

주: 1)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에 3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개월내 결성('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

2)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으로 제안 철회 후 재신청

자료: 행정안전부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요

2025년에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을 포함한 총 536개이다. 사업을 계정별로 구분하면, 광역지원계정에 따른 기금 투자사업은 총 98개로, 이에는 기초지원계정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395개로, 광역지원계정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아울러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43개로, 이 역시 광역지원계정 연계사업을 포함한 수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단위: 개)

구분		계정 유형	사업 수	비고
2024	전체	-	503	광역-기초 연계사업 중복 포함
	광역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98	기초계정 연계사업 포함
	인구감소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365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관심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40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2025	전체	-	536	광역-기초 연계사업 중복 포함
	광역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98	기초계정 연계사업 포함
	인구감소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395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관심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43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자료: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5, p.11.
2. 행정안전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기금 투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총합은 1조 8,652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한정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5개 시·도에 배분·투자된 사업비는 3,78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는 1조 3,904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관심지역 18개 시·군·구에는 962억원이 투입되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광역단위	226,736	11,546	124,053	16,176	378,512	
기초단위	인구감소지역	747,587	132,714	365,997	144,125	1,390,422
	관심지역	37,547	6,280	32,148	20,258	96,233
합계 ¹⁾	1,011,870	150,540	522,198	180,559	1,865,167	

주: 1)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 연계사업 합산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1)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지역별로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지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정주여건 개선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재정 유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선정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¹⁸⁾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가 요구되는 지역¹⁹⁾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²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수단으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개선 자체가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의 정착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방식은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별 투자 규모와 기대 효과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은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 분석 결과, 정주여건 개선의 정책 목표로 볼 수 있는 정주민구 1인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13억원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민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도 1인당 약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민구가 성과지표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업비	정주민구 1인당 사업비
정선군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주민구 증가	21명	28,500	1,357
		일자리 창출	4명		
		이용객 수 증가	2.5% 증		
		의료서비스 만족도	85점		
진안군	진안군 행복주택 건립	정주민구 증가	27명('28)	3,000	111
부안군	부안밀 제빵학교· 베이커리타운 조성	교육생 중 정주민구수	21명('26) ¹⁾	1,700	81
		생활인구수	7천명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정주민구(근로자수)	10명('27)	500	50
		방문객수	2만명('27)		
성주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확대	+70호	-	-
강화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유입	70명('28)	-	-
경남 고성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48,005명(2024) → 48,000명(2028)	-	-
	종합목표	귀농·귀촌 인구	연 1,000명 확보 (904명(2024) → 1,000명(2028))	-	-

주: 1) 부안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71쪽은 '교육생 중 정주민구수' 최종목표를 21명('26)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9쪽은 '28년 5명, '29년 7명으로 제시
 자료: 지역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한편, 다음 [표]에 따르면 정주민구 증가는 지역 내 소비 확대, 지방세수 증가, 생산유발 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이전지출, 의료·돌봄, 교육·보육 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증가 시 연간 정량적 주요 효과]

편익 항목		비용 항목	
효과 영역	측정 지표	효과 영역	측정 지표
① 직접 소비효과	지역내 소비지출	① 사회보장 이전지출	기초생계·주거·의료급여
② 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기여	②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원 지급
③ 지방세수 효과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③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재가돌봄, 방문요양 등
④ 지방교부세 효과	기준재정수요 증가	④ 의료·보건 서비스	공공보건의료, 방문간호, 의료급여
⑤ 사회서비스 존속 효과	학교·의료·대중교통	⑤ 교육·보육 서비스	소규모 학교 운영, 방과후, 보육
⑥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 내 고용유발	⑥ 귀촌·이주 정착 지원 등	이주지원금, 주거·창업 보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재정효과는 유입 인구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일부 유형에서는 순 재정효과가 음(-)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순 재정효과가 양(+)의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와 소비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인한다. 반면, 아동·청소년 및 고령 인구는 교육·보육, 의료·돌봄, 사회보장 지출 등 공공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순 재정효과가 낮거나 음(-)의 값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인구는 의료 및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시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 등 주요 경제지표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이는 동일한 인구 유입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정주인구의 편익으로 볼 수 있는 지역별 1인당 소비지출 수준은 다음 [표]와 같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별 산업구조, 재정자립도, 소비기반 등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정 투입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정책 효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자원배분 및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2024년 기준)]

(단위: 천원)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제천시	14,633	강화군	6,419	영양군	2,933
홍천군	10,533	울진군	4,301	순창군	2,732
삼척시	9,435	옹진군	2,967	신안군	1,786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PoplDcrsForm.do>(검색일: 2026.3.18.)

이처럼 인구 유입에 따른 재정효과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유입 인구의 구조적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른 재정 유입 및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선 비용효과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약 11배 수준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해 정책펀드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된 정책금융 수단으로,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통해 최소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으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펀드는 펀드 방식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일환으로,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활성화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²¹⁾

2025년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 규모는 총 6,000억원이며, 현재까지 8개 프로젝트에 3,228억원의 투자가 결정되었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약 3조 6,345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모펀드 투자비율은 약 8.9%이며, 레버리지 효과는 약 11.3배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모펀드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의 사업투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 제도 설계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민간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민간을 통한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해 공공성과 정책 타겟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1) 박진경·양원탁,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재정연구원, 2024, p.91.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총사업비 및 모펀드 투자금액]

(단위: 억원,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합계
총사업비(A)	4,816	8,191	23,338	36,345
모펀드 소진금액(B)	457	786	1,985	3,228
2024	68	786	1,565	2,419
2025	389	0	420	809
비율	14.2	24.3	61.5	100.0
레버리지 배수(A/B)	10.5	10.4	11.8	1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 구조]

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이 매년 3,000억원 조성(마중물 역할) ▶ 모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자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 결성 ▶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에 자본금, 대출금 투자(총사업비의 20% 內)
↓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 지방정부, 자펀드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HUG 특례 보증 제공)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 설계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사업 관련 정보는 사업 주체가 관리하며, 모펀드 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가 자펀드 출자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²²⁾은 투자자의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운용 개입을 제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출자기관은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펀드 구조상 출자자는 특정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모든 출자자가 동일 사업에 출자 비율에 따라 참여하게 되므로,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기획예산처는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위원회 및 운용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 운용사의 수익성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자금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방식은 제도 설계와 사후 관리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민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와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정책목표와 투자 의사결정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투자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 및 자금 운용 구조 개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적시 집행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분할 출연, 출연 시기의 조정, 실제 집행 수요와 연계한 단계적 출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집행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가 설치 주체이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다.²³⁾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²⁴⁾으로 구성되며, 2023~2025년 동안 매년 1월 정부출연금 1조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계좌의 월별 입금액, 지출액 및 잔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23년에는 1월 입금된 기금 중 9,967억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다. 반면 2024년에는 1조원이 입금된 이후 2월에 6,284억원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으며, 2025년에는 2월 기준 4,948억원만 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지 않은 자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여유자금 형태로 누적되면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 제6항및제2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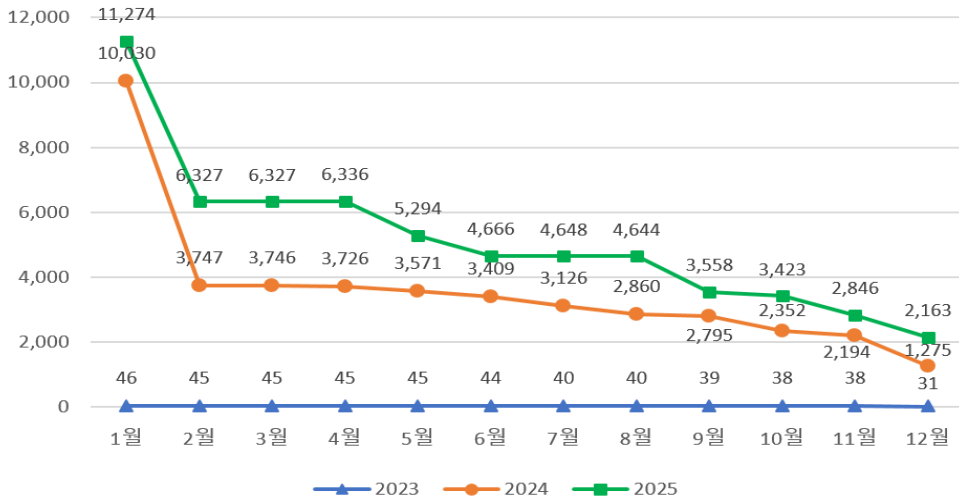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월별 잔액 내역]

(단위: 억원)



(단위: 백만원)

연도	월	입금	출금	잔액	연도	월	입금	출금	잔액	
2022	9	750,001	748,038	1,963	2024	5	2	15,485	357,149	
	10	1	3	1,961		6	192	16,431	340,910	
	11	1	30	1,932		7	2	28,307	312,606	
	12	1	684	1,249		8	2	26,577	286,031	
2023	1	1,000,008	996,700	4,557		9	288	6,834	279,485	
	2	2	32	4,527		10	2,008	46,278	235,214	
	3	2	30	4,498		11	1	15,815	219,401	
	4	2	20	4,479		12	597	92,528	127,470	
	5	2	10	4,471		2025	1	1,000,004	121	1,127,352
	6	21	52	4,440			2	115	494,797	632,670
	7	1	435	4,006			3	5	25	632,651
	8	1	22	3,985			4	1,025	35	633,641
	9	1	98	3,889	5		5	104,213	529,433	
	10	1	93	3,798	6		1,164	63,994	466,602	
	11	1	45	3,754	7		5	1,827	464,781	
	12	1	695	3,060	8		5	414	464,372	
2024	1	1,000,001	25	1,003,037	9		1,593	110,123	355,841	
	2	47	628,413	374,671	10		5	13,547	342,299	
	3	2	23	374,649	11		2,410	60,141	284,568	
	4	2	2,018	372,633	12		2,092	70,408	216,253	

주: 월별 입금액은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의 집행 부진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미집행액 총액은 2025년 말 기준 0.95조원이다. 기금사업의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배분금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금액	집행률	
광역지원계정		735,365	708,041	96.3	27,324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2,664,800	1,782,313	66.9	882,487
	관심지역	137,800	96,841	70.3	40,959
합계		3,537,965	2,587,194	73.1	950,771

주: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은 3.75조원이며, 0.2조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투자, 59.39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조합의 행정비용으로 지출, 61.96억원은 지자체 배분금 계산잔액 및 운영비의 집행 잔액임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의 미시행 사업(2025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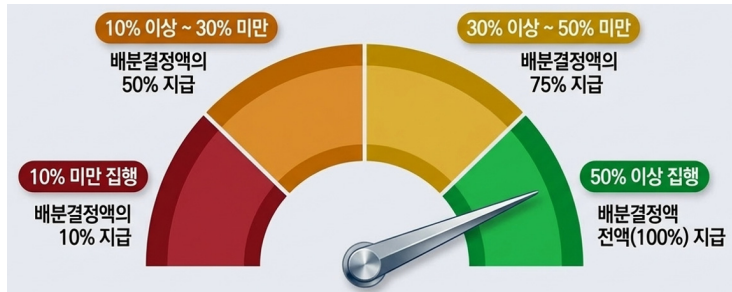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미시행 사업(집행률 0%)		구분	미시행 사업(집행률 0%)	
	사업수	배분액(A)		사업수	배분액(A)
2022	1	300	2024	24	45,480
2023	9	19,925	2025	85	140,08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금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4년 2월부터 집행률을 반영한 배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투자계획에 기반한 기금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분할 배분 기준]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러나 2025년 12월 기준 약 0.95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구조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집행되지 않은 대규모 자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것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분할 출연, 출연 시기의 조정, 실제 사업 집행 수요와 연계한 단계적 출연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⁵⁾ 현재와 같이 연초에 대규모 자금을 일괄 출연하는 방식은 상당 규모의 미집행 여유자금을 발생시켜 자금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출연 시기와 규모를 실제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 적체를 최소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적시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실제 사업 준비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자금 교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5) 지방소멸대응기금 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자금으므로, 교부금의 성격도 갖고 있다.

(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미출자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모펀드 출자가 수시납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자금액은 636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미출자 상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해 정기에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자금 활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82조²⁶⁾는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⁷⁾ 이에 따라 실시되는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63조²⁸⁾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프로젝트 공정률에 따라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납입하는 수시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계획된 출자금 전액이 즉시 집행되지 않고 상당 규모의 자금이 일정 기간 유휴자금으로 남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

26)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등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28)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소멸대응기금),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이 모펀드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6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한 금액 역시 62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모펀드가 사업 추진 일정 및 프로젝트 공정률에 연계하여 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금은 실제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운용 대기자금으로 보유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관리주체는 수시납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집행 자금에 대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 및 자펀드 출자액('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출자기관 모펀드 출자액	모펀드별 자펀드 출자액
'24년 모펀드	420	414
'25년 모펀드	216	211
합계	636	625

자료: 기획예산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실출자금액('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

프로젝트명		자펀드 결성일	모펀드 실출자금액		
			2024	2025	합계
1호	인구감소 총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5.9.26.	0	0	0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5.8.21.	0	39	39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5.2.28.	0	214	214
4호	관심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0	0	0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결성 중 ¹⁾	0	0	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결성중	0	0	0
7호	인구감소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2.10.	0	372	372
8호	인구감소 충남 태안, 「Seed Farm 1호」	결성중	0	0	0
합계(A)			0	625	625
펀드 누적 조성액(B)			3,000	6,000	6,000
실투자비율(A/B)			0.0%	10.4%	10.4%

주: 1) '26.4.9 자펀드 결성 완료

자료: 기획예산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2,000억원 출자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 실제 출자액은 212억원에 불과하여 1,788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러한 미출자 자금을 수시 입출금 필요성, 원금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기예금(이자율 2.60~3.74%)에 예치하고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 모펀드 운용사는 미투자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여,²⁹⁾ 2024년 모펀드 5.4억원('25년말 기준)의 미투자금을 통해 2025년 말 약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펀드 운용사의 미투자금 및 운용수익('25년말 기준)]

구분	모펀드 미투자금	미투자금 운용수익
'24년 모펀드	5.4억원	2.6억원
'25년 모펀드	5.2억원	3백만원 ¹⁾
합계	10.6억원	2.6억원

주: 1) '25.12.19일 최초 설정 이후 '25년말까지 발생한 수익
자료: 기획예산처

29) 모펀드 미투자금은 여유자금 확보, 단수 조정 등의 사유로 자펀드에 투자되지 않은 유보금으로,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됨

* 기업신용등급 AA 이상 금융기관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등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발전 경향의 지속으로 인구·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간 건강 수준 및 의료접근성 격차도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설정과 더불어 다수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료 관련 주요 관계법령 및 계획 현황]

구분	주요 법령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료기본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법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계획기간: 2016~2020년) 및 제2차(계획기간: 2021~2025년) ※제3차 미수립 응급의료 기본계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계획기간: 2005~2010년), 제2차(계획기간: 2013~2017년), 제3차(계획기간: 2018~2022년) 및 제4차(계획기간: 2023~2027년) / 제1차와 제2차 간에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계획기간: 2010~2012년) 추진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계획기간: 2018~2022년) 및 제2차(계획기간: 2023~2027년) 암관리종합계획(「암관리법」 제5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계획기간: 1996~2005년), 제2차(계획기간: 2006~2015년), 제3차(계획기간: 2016~2020년), 제4차(계획기간: 2021~2025년) 및 제5차(계획기간: 2026~2030년)

주: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중 지역의료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의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지역의료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낙후,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문제 등 필수의료 공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구축 현황, 향후 정부의 주요 제도의 개편방향,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44-1.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

가.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예·결산 개괄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보건복지와 교육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22개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2023년 4,846억원에서 2026년 1조 256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¹⁾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결산 추이 (2021~2026년)]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추경	결산	추경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추경	결산	본예산
441,564	333,046	503,458	365,913	484,598	360,256	620,312	455,794	803,267	574,170	1,025,628
	(75.4)		(72.7)		(74.3)		(73.5)		(71.5)	

주: 결산은 실적행액 기준.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실적행률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와 각 부처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 2026.2.를 바탕으로 작성

1)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원 분야이나, 분야 간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3개 분야별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의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8월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포함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한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예·결산 내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다.

나.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별 예·결산 현황

2021~2026년간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연도별 예산 규모 상위 3개 세부사업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국립대병원 지원'이 지속적으로 해당되었으며, 이외에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이 각 연도별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에 포함되었다. 이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가 1,433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컸으며,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610억원), '국립대병원 지원'(568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2년의 경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1,703억원), '국립대병원 지원'(746억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649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으며,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2024년의 경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1,940억원), 국립대병원 지원(1,114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570억원) 등의 순으로 큰 예산 규모를 보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26년의 경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가 3,459억원으로 가장 예산 규모가 컸으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1,783억원), 국립대병원 지원(1,284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다.

2021~2025년간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중 연도별 실적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50.4~72.8%), '국립대병원 지원'(39.1~79.5%)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연도별 실적행률 80% 미만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50.4%),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72.1%),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76.8%),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77.3%), '국립대병원 지원'(79.5%) 등 5개 사업이 해당되었다. 2022년에는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36.3%),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52.2%), '국립대병원 지원'(58.5%),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76.2%) 사업의 실적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는 '국립대병원 지원'(43.2%),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59.5%) 등 2개 사업이 실적행률 80%에 미달하였다. 2024년의 경우에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27.8%), '국립대병원 지원'(54.4%),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72.8%), '국가암관리(균등한 암관리 기반구축(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74.3%),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75.3%) 사업이 해당되었다. 2025년에는 국립대병원 지원(39.1%),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지역필수의사제 운영)(56.3%)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61.9%),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63.4%), 고 위험 산모·신생아 지원(72.9%) 등 5개 사업이 해당되었다.

[지역의료 관련 주요 지원 사업 예·결산 내역 (2021~2023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	2021			2022			2023		
		추경(A)	실집행액 (B)	실집 행률 (B/A)	추경(C)	실집행액 (D)	실집 행률 (D/C)	본예산 (E)	실집행액 (F)	실집 행률 (F/E)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특	143,266	72,269	50.4	170,348	88,996	52.2	151,115	89,864	59.5
국립대병원 지원	고특	56,840	45,188	79.5	74,635	43,657	58.5	78,833	34,032	43.2
중증의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응급	61,046	46,890	76.8	64,903	49,465	76.2	58,467	47,380	81.0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건증	40,317	40,317	100.0	42,453	42,453	100.0	45,805	45,805	100.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	29,843	27,739	92.9	30,893	28,673	92.8	30,819	30,583	99.2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응급	20,590	20,026	97.3	24,663	19,800	80.3	23,961	21,662	90.4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응급	25,008	24,218	96.8	25,008	24,312	97.2	23,257	22,579	97.1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특	17,330	12,487	72.1	16,890	14,486	85.8	16,836	14,093	83.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	10,175	9,247	90.9	10,831	10,325	95.3	10,961	10,212	93.2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 지원	응급	9,889	9,114	92.2	10,182	9,816	96.4	10,854	13,080	120.5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응급	7,103	6,880	96.9	7,103	6,460	90.9	10,258	9,255	90.2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응급	6,199	5,461	88.1	5,647	5,053	89.5	7,426	6,181	83.2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응급	4,016	4,016	100.0	6,220	10,868	174.7	5,598	5,598	100.0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응급	3,950	3,334	84.4	3,950	3,724	94.3	5,250	4,939	94.1
응급의료정보망구축 (정보화)	응급	1,276	1,251	98.0	1,336	1,413	105.8	1,624	1,621	99.8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지특	640	636	99.4	2,978	1,081	36.3	1,100	1,037	94.3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 교육	응급	1,213	1,213	100.0	1,213	1,132	93.3	1,092	1,022	93.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일반	410	317	77.3	544	538	98.9	778	751	96.5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정보화)	일반	2,453	2,443	99.6	3,661	3,661	100.0	564	562	99.6
합계		441,564	333,046	75.4	503,458	365,913	72.7	484,598	360,256	74.3

주: 일반은 일반회계, 지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응급은 응급의료기금, 건증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고특은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지칭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의료 관련 주요 지원 사업 예 · 결산 내역 (계속, 2024~2026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	2024			2025			2026
		본예산 (G)	실집행액 (H)	실집 행률 (H/G)	추경 (I)	실집행액 (J)	실집 행률 (J/I)	본예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특	193,955	141,155	72.8	313,326	193,896	61.9	345,818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	54,848	45,735	83.8	75,033	63,171	84.2	178,276
국립대병원 지원	고특	111,369	60,572	54.4	117,057	45,775	39.1	128,357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응급	56,211	15,604	27.8	67,508	57,858	85.7	82,600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건증	56,953	56,953	100.0	66,371	66,276	99.9	78,852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응급	24,021	23,315	97.1	22,810	22,263	97.6	42,446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응급	23,878	23,137	96.9	27,074	25,556	94.4	29,144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응급	25,712	22,486	87.5	27,159	22,122	81.5	26,372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특	17,154	14,517	84.6	17,575	15,964	90.8	19,256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응급	10,048	9,794	97.5	11,471	11,274	98.3	16,371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	10,811	10,444	96.6	14,266	10,402	72.9	15,388
국가암관리 (균등한암관리기반구축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	건증	6,350	4,719	74.3	9,006	8,830	98.0	10,144
응급의료정보망구축(정보화)	응급	2,164	2,430	112.3	1,800	1,788	99.3	8,833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시니어의사 지원)	일반	-	-	-	3,205	2,572	80.2	7,225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응급	7,144	6,135	85.9	6,901	5,598	81.1	6,960
응급환자미수급대지급	응급	7,310	7,310	100.0	6,583	6,583	100.0	6,845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응급	4,339	4,225	97.4	4,107	3,986	97.1	4,075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일반	-	-	-	-	-	-	3,900
국가암관리 (균등한암관리기반구축 (지역암센터 시설장비))	건증	1,500	1,500	100.0	3,600	3,600	100.0	3,600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	응급	3,155	2,377	75.3	2,855	2,323	81.4	2,828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	2024			2025			2026
		본예산 (G)	실집행액 (H)	실집 행률 (H/G)	추경 (I)	실집행액 (J)	실집 행률 (J/I)	본예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일반	-	-	-	1,352	761	56.3	2,794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일반	-	-	-	-	-	-	1,323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일반	1,038	1,018	98.1	1,038	895	86.2	1,038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일반	-	-	-	1,301	825	63.4	1,014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일반	1,372	1,372	100.0	969	969	100.0	969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지특	1,000	996	99.6	900	883	98.1	900
지역필수의료 실태조사	일반	-	-	-	-	-	-	300
합계		620,332	455,794	73.5	803,267	574,170	71.5	1,025,628

주: 일반은 일반회계, 지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응급은 응급의료기금, 건증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고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지칭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와 각 부처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2.를 바탕으로 재작성

44-2. 법정계획의 조속한 발표 및 주요 계획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가. 주요 계획 수립 현황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응급의료 기본계획」,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암관리 종합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법정계획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발표되는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2026.2.),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2026.3.) 등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법정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관계법령 제정 이래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될 계획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1월 제정(2000년 7월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²⁾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의료 관련 최상위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7.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부터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수립된 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2026년 2월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총 8차례 진행되었으나, 해당 연구용역이 동 발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최근 연구용역인 “중장기 보건의료발전 방향 연구”(연구용역 수행기간: 2025년 5월 ~ 2026년 2월)를 포함한 관련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0~2026년 2월까지 추진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관련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내역]

구분	주요 내용
중장기 보건의료발전 방향 연구 (2025~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25.5.2.~2026.2.6.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연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19.5.15.~2019.11.29.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18.6.12.~2018.11.20.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15.9.15.~2015.12.31.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 (2009~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09.5.29.~2010.2.28.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안 (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06.12.1.~2007.6.30.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2003~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03.4.28.~2004.12.27. 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0~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2000.7.26.~2001.2.28. 시행기관: 한국보건복지연구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³⁾의 경우에도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

(2019.10.시행) 이래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27년 3월 시행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수립하도록 한 ‘필수의료종합계획’은 다수의 법정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계 계획 중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포함⁴⁾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2026년 5월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5조(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암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료와 관련하여 다수의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계획 간 위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필수의료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여타 지역의료 관련 계획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정비하거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계획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역의료와 관련된 최상위계획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주요 계획별 근거법령에서 주요 연계 계획을 대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주요 계획 간 법적·제도적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은 수립 목적에 따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등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 계획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존재할 경우, 해당 계획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설령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계획에 따른 성과평가가 중복적으로 시행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필수의료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여타 지역의료 관련 계획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정비하거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계획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와 「지역보건법」 제6조 등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법령 간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동일 명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체계적 관계 설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4-3.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별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우리나라 공공병원 규모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가 OECD 평균 대비 적은 수준인 가운데, 지역간 의료격차, 지역소멸 등에 따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개로 OECD 평균(2.7개)보다 적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38개국 중 27위 수준이었다.⁶⁾

전체 병상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최상위(2018년 2위, 2023년 1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을 통한 병상 공급이 많아 공공병원 병상 수가 적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료의 경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 병상 수 확대 등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2018년 및 2023년)]

(단위: 개/인구 1,000명)

구분	전체		공공병원		구분	전체		공공병원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호주	3.8	-	2.6 (15)	- (-)	한국	12.4 (2)	12.6 (1)	1.2 (27)	1.2 (27)
오스트리아	7.3	6.6	5.1 (4)	4.5 (5)	라트비아	5.5	5.0	4.9 (5)	4.7 (4)
벨기에	5.6	5.4	1.5 (26)	1.4 (26)	리투아니아	6.4	5.5	6.3 (1)	5.4 (1)
캐나다	2.6	2.5	2.5 (16)	2.5 (13)	룩셈부르크	4.5	3.9	- (-)	- (-)
칠레	2.1	1.9	1.6 (25)	1.5 (25)	멕시코	1	1.0	0.7 (29)	0.7 (29)
콜롬비아	1.8	1.9	0.6 (30)	0.6 (30)	네덜란드	3.2	2.3	- (-)	- (-)
코스타리카	1.1	1.1	1.1 (28)	1.0 (28)	뉴질랜드	2.6	2.5	2.2 (20)	2.1 (21)
체코	6.7	6.4	5.7 (2)	5.4 (1)	노르웨이	3.5	3.3	2.7 (14)	2.5 (13)

6) 2018년과 2023년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단위: 개/인구 1,000명)

구분	전체		공공병원		구분	전체		공공병원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덴마크	2.6	2.3	2.5 (16)	2.3 (19)	폴란드	6.5	6.3	5.2 (3)	5.0 (3)
에스토니아	4.5	4.1	4.2 (7)	3.9 (7)	포르투갈	3.4	3.4	2.3 (19)	2.3 (19)
핀란드	3.6	2.6	3.4 (10)	2.5 (13)	슬로바키아	5.7	5.7	- (-)	- (-)
프랑스	5.9	5.4	3.6 (8)	3.3 (9)	슬로베니아	4.4	4.1	4.4 (6)	4.0 (6)
독일	8	7.7	3.2 (11)	3.0 (10)	스페인	3	2.9	2.0 (23)	2.0 (22)
그리스	4.2	4.2	2.8 (13)	2.8 (11)	스웨덴	2.1	1.9	- (-)	- (-)
헝가리	7	6.5	- (-)	- (-)	스위스	4.6	4.4	- (-)	- (-)
아이슬란드	2.9	2.6	2.9 (12)	2.6 (12)	튀르키예	2.9	3.1	2.2 (20)	2.4 (17)
아일랜드	3	2.9	- (-)	2.5 (13)	영국	2.5	2.4	2.5 (16)	2.4 (17)
이스라엘	3	3.0	2.0 (23)	2.0 (22)	미국	2.8	2.8	0.6 (30)	0.6 (30)
이탈리아	3.2	3.0	2.1 (22)	2.0 (22)	평균	4.4	4.2	2.8	2.7
일본	13	12.5	3.5 (9)	3.5 (8)					

- 주: 1. 2018년의 경우 호주는 2016년 수치임
 2. 2023년의 경우 코스타리카, 폴란드, 미국은 2022년 수치임
 3.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는 공공병원 병상 수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4. 평균은 2018년과 2023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2018년 공공병원 31개국, 2023년 공공병원 31개국)의 평균을 의미
 5.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국가의 연도별 순위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5, 2025.8.

나. 분석의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목표가 공사비 상승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공공병원의 병상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역 공공병원 확충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후시설·장비·운영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등을 지원하여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나 실집행률은 50.4~72.8% 수준으로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실)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2024~2025년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다년도 건축공사로 인한 실집행 부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방비 미매칭으로 인한 불용 등이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 예·결산 추이]

2021		2022		2023		2024		2025	
추경	실집행액 (실집행률)	추경	실집행액 (실집행률)	본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본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추경	실집행액 (실집행률)
143,266	72,269 (50.4)	170,348	88,996 (52.2)	151,115	89,864 (59.5)	193,955	141,155 (72.8)	313,326	193,896 (61.9)

주: 실집행률은 각 연도의 추경 또는 본예산 대비 실집행액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와 각 부처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의 미달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1.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2. 양질의 적절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및 “3.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목표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1.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경우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와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2. 양질의 적절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의 성과지표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과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를, “3.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의 경우 ‘중앙 및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과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목표 〉

1.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명당 43.8→30.7명, 5분위 격차비 1.41→1.27배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 1만개→1.5만+ α 개
2.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 30→40명, 간호사 150→200명
 -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20개소
3.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중앙 및 17개 시·도별 구성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1.6.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성과지표 중 하나인 지역 공공병원의 신·증축의 경우 지역 공공병원 병상 수 확대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과지표이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상 지역 공공병원의 신·증축 관련 주요 성과지표 내역〕

구분	주요 대상
(주요 성과지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신축(3+ α)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 + α
이전·신축(6)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의정부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증축(11)	속초의료원, 충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포천의료원, 순천의료원, 포항의료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1.6.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 공공병원 신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공공병원 주요 신축 대상인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의 경우 공사비 상승,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26년으로 계획되었던 개원 시점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연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총 900개의 지역 공공병원 병상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공공병원 신축 추진 현황 (3개소)]

(단위: 개)

구분	병상수 (개)		완공/운영개시 시점		지연 사유
	계획	실제	기존(계획)	지연	
서부산의료원	300	300	2026년	2028년	공사비 상승,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등
대전의료원	300	300	2026년	2030년	
진주권 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300	300	2026년	2029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지역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추진의 경우에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2021.6.)에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나 부지 관련 협의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추진되는 등 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공병원 이전·신축 추진 현황 (6개소)]

(단위: 개)

구분	병상수		완공/운영개시 시점		지연 사유
	계획	실제	기존(계획)	지연	
삼척의료원	250	250	2024년	2026년	오염토 발생 등 추가 공사 발생
영월의료원	300	300	2030년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설립주체인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
거창적십자병원	300	미정	2029년	미정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24.8.~현재)
통영적십자병원	300	미정	미정	미정	대한적십자사-통영시 이전·신축 부지 관련 협의 중('24~계속)
상주적십자병원	350	미정	미정	미정	상주시 부지 매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24~계속)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지역의료 관련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목표가 공사비 상승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공공병원의 병상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역 공공병원 확충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4-4.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미지정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

가. 중진료권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현황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 광역시·도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70개 중진료권 중 15개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민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구규모·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중진료권은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수도권 20개 및 비수도권 50개)로 구분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및 설정 현황 (2019년 11월~)]

구분	주요 기준
인구규모	•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 약 15만명 이상
이동시간	•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 약 60분 이내
의료이용률	•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 약 30% 이상
공급계획	•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권역별 중진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서울(4개), 인천(4개), 경기(12개) • 비수도권: 부산(3개), 대구(2개), 광주(2개), 대전(2개), 울산(2개), 세종(1개), 강원(6개), 충북(3개), 충남(5개), 전북(5개), 전남(6개), 경북(6개), 경남(5개), 제주(2개)
----------	--

자료: 보건복지부, 「민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19.11.

보건복지부는 이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였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중 7개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진료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중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보조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2022.8.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 권역별로 1개씩 지정이 되어 있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경우 증진료권 70개 중 55개 증진료권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15개 증진료권(수도권 1개 및 비수도권 14개 증진료권)에는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1월과 4월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고가 실시되었고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14개 증진료권을 대상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지정되지 않은 15개 증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경우 2026년 5월 현재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7)

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추가 공고는 미 실시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권역별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현황 (2026.1.기준)]

구분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구분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기관명	권역별 중진료권	기관명		권역	기관명	권역별 중진료권	기관명		
수도권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서북	서울적십자병원	비수도권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서남	동강병원		
			서울동북	서울의료원				울산동북	울산병원		
			서울서남	서울특별시서남병원				대구경북대	대구동북	미지정	
			서울동남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대구학교병원	대구서남	대구의료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서북	나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서부	미지정		
			인천동북	인천세종병원				대전동부	미지정		
			인천중부	인천광역시의료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천안권	천안의료원
	인천남부	인천적십자병원	공주권	공주의료원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원권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권	청주의료원
			성남권	성남시의료원				충주권	충주의료원		
			의정부권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제천권	명지병원		
			안양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미지정
			부천권	부천세종병원						광주동남	광주기독병원
			평택권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안산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여수시	미지정						
고양권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순천권	순천의료원						
남양주권	미지정	나주권	미지정								
파주시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해남권	미지정								
이천시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영광권	미지정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주권	전주예수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서부	미지정	군산시	군산의료원				
				부산중부	부산광역시의료원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부산동부	미지정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항권	포항의료원	남원권	남원의료원				
경주권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춘천권	미지정				
안동권	안동의료원					원주권	원주의료원				
구미권	김천의료원					영월권	영월의료원				
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강릉시	강릉의료원				
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동해권	삼척의료원						
비수도권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권	마산의료원	속초권	속초의료원						
		진주권	미지정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미지정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	미지정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3.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19년부터 70개 증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지역에서 종합병원급 국·공립 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및 지자체의 신청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의 의료접근성 확보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15개 미지정 증진료권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미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증진료권이 11개, 신청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진료권이 4개로 나타났다.⁸⁾

[증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진료권 내역 (2025년 4분기 기준)]

구분	대상 진료권
지자체 미신청 (11개)	부산서부권, 대구동북권, 세종권, 대전서부권, 춘천권, 나주권, 해남권, 여수시, 영광권, 진주권, 제주도
지정요건 미충족 (4개)	남양주권, 부산동부권, 광주광서권, 대전동부권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 2025.1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지역별·종별·설립구분별 기관수 - 2025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종합병원급 국·공립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서부권(서부산의료원), 대전서부권(대전의료원), 진주권(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 개시 시점이 2026년이었으나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2028년, 대전의료원은 2030년,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은 2029년으로 개원 시점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서부권, 대전서부권 및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 지연 동향 〉

- 부산서부권: 서부산의료원 / 개원 시점: (기존)2026년 → (지연)2028년
- 대전서부권: 대전의료원 / 개원 시점: (기존)2026년 → (지연)2030년
- 진주권: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 개원 시점: (기존)2026년 → (지연)2029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미지정 증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증진료권 재설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2021.6.,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5년까지 70개소(70개 중진료권 대상)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26년 1월 기준 10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신축이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준공·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 관련 주요 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구분 또한 적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의료기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⁹⁾ 실제로, 상기에서 분석한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공립의료기관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책임의료기관의 책무와 기능·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신청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 등의 미지정에 따른 지역의 의료접근성 저하 해소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되는 포괄 2차 병원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민간 병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9)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단위와 기능·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나, 법령 상에 명확한 역할 지정 및 기능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간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구분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단위	• 17개 광역시·도 단위	• 70개 중진료권 단위
기능·역할	•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파견 등 역할	•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5.12.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진료권 재설정 방안을 검토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44-5.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실적행률 제고 및 기능 개선 필요

가.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 현황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관련 재정사업인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적행률은 39.1~58.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신축, 개·보수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립대병원의 시설 확충 및 보수, 장비 구입 및 교체,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포함한 정책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는 2022~2026년간 746~1,284억원으로,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2~3위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국립대병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25~75%)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재정 여건 등이 실적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국립대병원의 적자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적행률도 2022년 58.5%에서 2025년 39.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 추이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74,635 (58.5)	78,833 (43.2)	111,369 (54.4)	117,057 (39.1)	128,35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실적행률을 의미

자료: 교육부, 각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실적행 저조 관련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 재정 악화에 따른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 포기·취소 및 계획 축소 등을 들 수 있다.¹¹⁾

나. 분석의견

첫째,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관련 재정 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저조한 실적행률을 보이고 있고,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의 질적 향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적행률 제고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국립대병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상 국립대병원 경비 부담 관련 법조항〕

법령	법조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자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前)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021~2025년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및 지역 국립대병원 본원·분원 포함 17개¹³⁾)의 손익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 손실 폭은 2021년 -3,619억원, 2023년 -4,507억원, 2025년 -7,51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11) 교육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3. 및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2026.3.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12) 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13) 본 보고서에서의 국립대병원 손익 추이와 관련하여,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경우 규정 상 정식 분원이 아니므로 전남대병원(본원)에 포함하여 손익 추이를 작성하여 손익 추이는 16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2021년 및 202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실을 기록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前)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1년에는 4,250억원 규모의 흑자 폭을 보였으나, 2023년과 2025년에는 각각 -2,734억원, -4,281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2021년에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22~3,478억원의 흑자 폭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3개 국립대병원에서 3~317억원 흑자를, 2025년에는 4개 국립대병원에서 2~1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기관별 흑자 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前)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2021년 2,982억원 흑자였으나, 2023년 -2,808억원 적자, 2025년 -3,892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기존의 주요 적자 요인이었던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화되었고, 의정갈등(2024.2.~2025.10.)이 일정 부분 봉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적자 폭이 대규모이고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단기기간에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본연의 활동인 진료를 통한 의료이익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의료기관 손익계산서 상 주요 지표 설명]

구분	주요 개념
의료수익(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주된 영업수익 병원 고유의 의료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합한 금액.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
의료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진료 및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 병원의 고유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 소모를 총칭.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기타의료비용으로 구분
의료이익(C=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본연의 의료서비스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의료수익이 의료비용보다 많으면 의료이익, 적으면 의료손실로 표시
의료외수익(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활동 이외의 활동(매점, 주차장, 임대료, 이자, 연구, 기부금 수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의료외비용(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의 의료활동 이외의 활동(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부금, 연구비, 연구비지원금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F=C+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이익에서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반영하기 전 단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익(손실)

구분	주요 개념
법인세비용(소득세) (G)	• 병원이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또는 소득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 (H=F-G)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에서 법인세비용(소득세)을 차감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전 단계에서 확정되는 순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I)	• 병원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중 일부를 법적 요건에 따라 본래의 의료 목적사업(예: 연구비, 장학금, 사회공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금으로 설정·전입하는 금액 •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그만큼 최종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J)	• 과거에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립해 두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이 소멸·변경되어 바꿔 넣을 때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금액 •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
당기순이익 (K=H-I+J)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전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되는 이익(손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병원경영분석」, 2025.12.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대병원 손익 추이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분	의료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前)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021	2023	2025	2021	2023	2025	2021	2023	2025
서울대병원	△643	△917	△1,564	3,478	△209	88	2,894	△4	308
분당서울대병원	42	150	△189	431	317	176	△18	26	339
강원대병원	△210	△213	△387	△104	△196	△337	△104	△196	△337
경북대병원	△282	△474	△933	△117	△338	△851	△117	△338	△851
칠곡경북대병원	△247	△117	△167	324	△70	△79	324	△70	△79
경상대병원	△50	△64	△304	103	3	△242	103	3	△242
창원경상대병원	△344	△269	△319	△241	△286	△354	△241	△286	△354
부산대병원	△244	△409	△650	255	△305	△416	255	△305	△416
양산부산대병원	△55	△243	△405	155	△131	△302	155	△131	△302
전남대병원	△343	△437	△683	△34	△392	△554	△273	△385	△548
화순전남대병원	263	154	△10	349	173	39	349	174	39
전북대병원	△238	△214	△588	22	△76	△406	22	△76	△406
제주대병원	△199	△365	△354	△34	△339	△316	△30	△335	△316
충남대병원	△239	△362	△208	82	△180	2	82	△180	2
세종충남대병원	△590	△576	△284	△474	△659	△327	△474	△659	△327
충북대병원	△240	△151	△465	55	△46	△402	55	△46	△402
합계	△3,619	△4,507	△7,510	4,250	△2,734	△4,281	2,982	△2,808	△3,892

주: 1. 각 연도말 자료 기준

2. 의료이익은 (의료수익-의료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 당기순이익은 (의료이익+의료외수익-의료외비용-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 당기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산출

3.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규정 상 정식 분원이 아니므로 전남대병원(본원)에 포함하여 작성

자료: 각 병원별 손익계산서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2025년간 국립대병원의 주요 적자 요인]

구분	주요 적자 요인
서울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에 따라 낮아진 병상이용률 및 환자수 등 진료실적 회복세 둔화 및 손실보상개산급 등 정부 재정지원 감소 2024년: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역량 축소에 따라 의료수익 감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따른 구조적 재료비 상승
분당서울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비상진료체제로 인한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의료수익 감소
강원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 손실보상개산급 감소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전문의(계약의) 급여 상승
경북대 병원 및 칠곡경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로 인한 환자 수 감소 2024~2025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경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및 고정비 부담 가중
창원경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손실보상개산급 대축 축소 및 인건비성 비용 증가 2024년: 의정갈등에 따른 수익 대비 인건비 증가 2025년: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및 고정비 부담 가중
부산대 병원 및 양산부산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손실보상개산급 감소 및 보건의료노조파업(23.7.13.~23.8.1.)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2024년: 전공의 의료공백(24.2.20.~)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2025년: 전공의 의료공백(24.2.20.~)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전문의 급여 증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 비상진료 관련 보조금 감소
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2024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2025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화순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환자수 감소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
빛고을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과다. 코로나19 회복기(국고보조금 수익 감소) 2024년: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과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건수 감소 및 병동 축소 2025년: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과다, 병원 기능 이전 준비에 따른 운영 규모 축소
전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비용 증가 2024~2025년: 의정갈등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
제주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미회복으로 의료수익 감소,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 증가, 재료비·이자비용 등 전반적인 운영비용 증가 2024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 건수 및 병상 가동률 하락, 대체 인력 운용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재료비·이자비용 등 비용 지속 증가 2025년: 의료외수익 감소,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수익 회복 지연,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재료비 증가
충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세종충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19 2024~2025년: 의정사태로 인한 의료진 이탈
충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코로나 손실보상개산급 감소로 적자 전환 2024~2025년: 의정사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의료수익이 감소하면서 적자 발생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국립대병원의 개선 필요 부분과 관련하여,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¹⁴⁾에 따르면 ‘전문의료인력 확보’, ‘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 역량 고도화’, ‘병원 및 시설 장비 개선’ 등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높으므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립대병원 개선 필요 부문에 대한 국민 인식]

(단위: %)

구분	개선 필요성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전문의료인력 확보	36.1	44.9	13.9	3.8	1.3
응급질환 역량 고도화	43.2	37.3	14.8	3.7	1.0
중증질환 역량 고도화	43.8	36.3	14.7	3.6	1.6
필수진료과 확충	33.3	45.2	15.4	4.6	1.4
병원 및 시설 장비 개선	33.6	42.9	17.6	4.8	1.1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	31.7	41.9	21.6	3.7	1.0
환자 중심 문화 구축	29.9	41.4	23.0	4.7	1.0
지역 의료기관 연계	30.6	44.1	20.5	3.1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2025.6.

종합하면,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저조한 실적행률을 보이고 있고,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적행률 제고¹⁵⁾와 함께,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로 해당 사업이 이관되는 등 관리체계가 개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관련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동 조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 중인 만 19~69세 남녀 1,050명(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북권·경남권 각 200명 및 제주권 5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지역 주민의 지역 국립대병원 이용 의도 및 추천 의사, 지역 국립대병원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로 구성되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2025.6.)

15)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6년 3월에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로 해당 사업의 소관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적행률을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비수도권의 전공의 충원율이 수도권 대비 낮은 수준이고 회복세도 저조한 실정이며,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국립대병원 개선 사업을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하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 변경을 감안하여 해당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방안을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병원은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충원은 권역 및 지역의 중점의료기관을 지속적인 운영과 질적 향상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정갈등(2024.2.~2025.10.)에 따른 전공의 사직 및 미충원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충원율이 급감하면서 2023년에는 88.7%였던 전공의충원율이 2024년 8.9%로 급락하였으나, 의정갈등이 일부 봉합된 이후 2025년 63.9%, 2026년 72.9% 수준으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역별 전공의 정원충원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중심의 회복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3년 전공의 정원충원율이 95.8%였고 2024년 7.7%로 급락한 이후 2025년 75.2%, 2026년 93.6%로 의정갈등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의정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인 2023년의 경우에도 정원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저조(85.1%)하였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2024년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9.5%)한 이후 2025년 59.0%, 2026년 65.2%로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수도권 대비 저조한 전공의 정원충원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과목 등 비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현상은 비수도권의 전공의 충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충원을 현황 (2023~2026년)]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정원 (A)	현원 (B)	충원율 (B/A)	정원 (C)	현원 (D)	충원율 (D/C)	정원 (E)	현원 (F)	충원율 (F/E)	정원 (G)	현원 (H)	충원율 (H/G)	
수도권	소계	1,125	1,078	95.8	1,128	87	7.7	1,123	845	75.2	1,051	984	93.6
	서울대병원	827	793	95.9	829	60	7.2	821	618	75.3	761	763	100.3
	분당서울대병원	298	285	95.6	299	27	9.0	302	227	75.2	290	221	76.2
비수도권	소계	2,254	1,919	85.1	2,428	231	9.5	2,620	1,547	59.0	2,804	1,828	65.2
	강원대병원	118	101	85.6	129	16	12.4	136	77	56.6	133	90	67.7
	경북대병원	222	194	87.4	232	11	4.7	249	152	61.0	300	167	55.7
	칠곡경북대병원	115	86	74.8	133	5	3.8	143	72	50.3	178	83	46.6
	경상대병원	168	146	86.9	178	10	5.6	186	106	57.0	184	114	62.0
	창원경상대병원	48	39	81.3	60	6	10.0	67	36	53.7	69	37	53.6
	부산대병원	275	244	88.7	290	71	24.5	314	193	61.5	305	225	73.8
	양산부산대병원	196	164	83.7	214	2	0.9	233	146	62.7	229	176	76.9
	전남대병원	257	229	89.1	274	9	3.3	286	198	69.2	290	231	79.7
	화순전남대병원	80	64	80.0	88	65	73.9	96	9	9.4	91	52	57.1
	빛고을전남대병원	5	5	100.0	5	0	0.0	6	0	0.0	-	-	-
	전북대병원	223	189	84.8	237	6	2.5	261	171	65.5	268	195	72.8
	제주대병원	113	97	85.8	119	16	13.4	128	76	59.4	132	80	60.6
	충남대병원	266	218	82.0	286	6	2.1	313	201	64.2	419	246	58.7
	세종충남대병원	-	-	-	9	0	0.0	9	3	33.3	14	4	28.6
충북대병원	168	143	85.1	174	8	4.6	193	107	55.4	192	128	66.7	
합계	3,379	2,997	88.7	3,556	318	8.9	3,743	2,392	63.9	3,855	2,812	72.9	

주: 1. 각 연도말 자료 기준

2. 2026년 수치의 경우,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26년 3월 기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2026년 4월 기준, 여타 국립대병원은 5월 기준임

3. 충북대병원의 2025년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

4. 빛고을전남대병원의 2026년도 전공의 정원 미배정은 권역 류마티스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본원 이 전, 노인특화병원 및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전환 중인 등의 기능전환에 따른 수련병원 정원 반납에 기인

5. 세종충남대병원의 2023년도 전공의 정원 미배정은 충남대병원(본원)과 세종충남대병원(본원) 간의 모자 협약에 의거하여 수련의가 본원과 본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 2023년도 세종충남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수는 충남대병원(본원)에 포함됨에 기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2025년간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충원을 저조 요인]

구분	주요 적자 요인
서울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전공의 사직, 기피 진료과 신규 지원 저조 등
분당서울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으로 인한 미복귀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지원율이 낮은 과목의 신규 지원 저조 등
강원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충원을 감소 추세 지속,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및 (일부)미복귀 발생 등
경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졸업자 감소 등
칠곡경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졸업자 감소 등
경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의 미지원 및 집단사직 등
창원경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의 미지원 및 집단사직 등
부산대 병원 및 양산부산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 미달 및 전공의 사직 등
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등
화순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등
빛고을전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등
전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인기 진료과 지원자 저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저조 등
제주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필수과목 중심 지원 부족 지속 및 수도권 수련병원과 경쟁 심화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기존 수련 전공의 이탈 전공의 지원 심리 위축, 필수과 지원 감소 및 수련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역 정주 부담으로 일부 과목 충원 제한 등
충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갈등 인기과 및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등
세종충남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지던트 수련병원 미지정(2023년), 의정갈등, 인기과 및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등
충북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중증의료분야 중심의 기피현상에 따른 전공의 수급 미원할 의정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 및 미복귀 신규 의대 졸업생 및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급감에 따른 신규 유입 지연, 레지던트 공백 지속 및 필수·중증의료과목 기피 고착화 경향 등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충원율을 살펴보면, 의정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3년에도 수도권(95.5%)이 비수도권(75.3%) 대비 20.2%p 높았으며, 2025년에는 24.6%p, 2026년의 경우에도 35.7%p로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의정갈등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공의 충원이 이루어지며 권역간 격차도 확대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의 모집이 원활하다고 평가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수도권 국립대병원 대비 필수의료자원 충원이 저조하다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1차, 2차 병원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자원의 모집이 더욱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의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26년 1월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노후화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하여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서울 이외 지역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시행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영향이 조속히 발현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강화 제도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이 2026년 8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율 개선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총원을 현황 (2023~2026년)]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정원 (A)	현원 (B)	총원율 (B/A)	정원 (C)	현원 (D)	총원율 (D/C)	정원 (E)	현원 (F)	총원율 (F/E)	정원 (G)	현원 (H)	총원율 (H/G)
수도권	426	407	95.5	439	18	4.1	429	306	71.3	385	332	86.2
소계	426	407	95.5	439	18	4.1	429	306	71.3	385	332	86.2
서울대병원	301	285	94.7	312	16	5.1	306	222	72.5	275	264	96.0
분당서울대병원	125	122	97.6	127	2	1.6	123	84	68.3	110	68	61.8
비수도권	871	656	75.3	937	72	7.7	1,006	470	46.7	1,033	522	50.5
소계	871	656	75.3	937	72	7.7	1,006	470	46.7	1,033	522	50.5
강원대병원	48	33	68.8	52	7	13.5	57	20	35.1	53	20	37.7
경북대병원	84	68	81.0	88	2	2.3	95	44	46.3	105	46	43.8
칠곡경북대병원	46	32	69.6	55	2	3.6	57	24	42.1	68	26	38.2
경상대병원	67	52	77.6	70	6	8.6	73	33	45.2	69	33	47.8
창원경상대병원	23	14	60.9	27	4	14.8	30	7	23.3	31	12	38.7
부산대병원	99	75	75.8	99	1	1.0	106	51	48.1	101	62	61.4
양산부산대병원	82	57	69.5	87	2	2.3	94	38	40.4	81	42	51.9
전남대병원	104	84	80.8	112	7	6.3	118	74	62.7	117	75	64.1
화순전남대병원	29	25	86.2	33	26	78.8	37	3	8.1	36	17	47.2
전북대병원	79	60	75.9	86	2	2.3	90	56	62.2	89	58	65.2
제주대병원	46	33	71.7	44	6	13.6	50	24	48.0	53	24	45.3
충남대병원	94	68	72.3	105	4	3.8	110	61	55.5	139	67	48.2
세종충남대병원	-	-	-	8	0	0.0	8	2	25.0	12	2	16.7
충북대병원	70	55	78.6	71	3	4.2	81	33	40.7	79	38	48.1
합계	1,297	1,063	82.0	1,376	90	6.5	1,435	776	54.1	1,418	854	60.2

주: 1. 각 연도말 자료 기준

- 2026년 수치의 경우,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26년 3월 기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2026년 4월 기준, 여타 국립대병원은 5월 기준임
- 충북대병원의 2025년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
- 빛고을전남대병원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 미배정은 인턴만 수련하여 전공 구분이 없었고, 2026년 도의 경우 권역 류마티스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본원 이전, 노인특화병원 및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전환 중인 등의 기능전환에 따른 수련병원 정원 반납에 기인하여 전공의 정원이 미배정되어 본 표에서 제외
- 세종충남대병원의 2023년도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 미배정은 충남대병원(본원)과 세종충남대병원(본원) 간의 모자 협약에 의거하여 수련의가 본원과 분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 2023년도 세종충남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수는 충남대병원(본원)에 포함됨에 기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4-6.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필요

가. 지역 암 치료 환경 및 지역암센터 현황

10대 암 수술의 자체충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7개 시도 중 서울 등 7개 시도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경북 간 차이는 80.1%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진료의 경우 13개 지역암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의료인력이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로 암환자가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을 기준으로 10대 암 수술의 자체충족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곳은 17개 시도 중 7개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은 서울(91.8%)과 가장 낮은 경북(11.7%) 간 차이는 80.1%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를 고려할 때, 지역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완결적 암 진료·치료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10대 암 수술의 자체충족률 (2024년 기준)]

(단위: %)

구분	자체충족률	구분	자체충족률
서울	91.8	경남	50.0
대구	82.9	광주	48.7
부산	78.6	제주	48.2
울산	70.6	충남	39.4
대전	67.9	전남	33.8
인천	67.7	충북	33.8
전북	65.3	세종	19.1
경기	63.3	경북	11.7
강원	56.1	전국 평균	63.6

주: 1. 10대 암은 암 발생률 기준으로 갑상선, 대장, 폐, 유방, 위, 전립선, 간, 췌장, 담낭 및 기타 담도, 신장 순임

2. 수술의 자체충족률은 신규암환자의 지역 내 수술 치료 비율을 의미

자료: 국립암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15개 시·도에 13개 지역암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암센터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구분	지정연월	구분	지정연월
전북(전북대병원)	2004.9.	충북(충북대병원)	2006.3.
광주전남(화순전남대병원)	2004.9.	제주(제주대병원)	2006.3.
경남(경상국립대병원)	2004.9.	인천(가천대길병원)	2011.2.
부산(부산대병원)	2005.3.	울산(울산대병원)	2011.6.
대전(충남대병원)	2005.3.	경기(아주대병원)	2011.6.
대구경북(칠곡경북대병원)	2005.3.	충남(단국대병원)	2023.2.
강원(강원대병원)	2006.3.	합계	13

자료: 국립암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지역내 암치료의 거점기관인 지역암센터의 경우 센터당 연간 1억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암센터의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나 지역암센터가 역내 암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암센터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가암관리(2756-301)” 사업의 내내 역사업인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비’와 ‘지역암센터 장비비’가 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은 지역암센터 1개소당 국비 1억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2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후 2026년까지 13억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매년 편성되고 있다. ‘지역암센터 장비비’의 경우 2024년에는 지역암센터 1개소,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3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비비 지원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해당 사업 이외의 지역암센터 지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암센터의 경우 암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구조로 운영¹⁶⁾되고 있다.

16) 예를 들어, 위암수술이 급여 대상이고 지역암센터에서 해당 수술을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해당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들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원 사업(암관리사업비 및 장비비) 예산 추이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가암관리(2756-301)	58,309	60,618	69,484	83,570	126,640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	2,620	2,920	10,765	15,521	16,659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비	1,200	1,300	1,300	1,300	1,300
지역암센터 장비비	-	-	1,500	3,600	3,600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암관리법」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지역암센터는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계획 관련 사업수행’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지역암센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 예산 규모로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 규모 현실화 방안 또는 지역암센터의 암치료 집중 환경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관리법」 상 지역암센터 관련 주요 법조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② 지역암센터 수행 사업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 ❖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등 </div>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등 • 「암관리법」 제46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자료: 국가법령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4-7. 공중보건의 충원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모색 필요

가. 공중보건의 제도 개요와 충원 현황 및 전망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 인원 감소에 따라 전체 복무 인원이 급감하여 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전체 공중보건의 복무 인원이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지칭한다.¹⁷⁾

「병역법」 제3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경우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이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편입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행한(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의무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보건의로 3년간 복무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 불산입)
편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편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사관후보생: 의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지원 불요

자료: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바탕으로 제작성

17)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최근 10년간(2017~2026년) 공중보건의 전체 복무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3,614명에서 2026년 1,995명으로 55.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공중보건의로 신규 편입된 인원도 40.4%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원율의 경우에도 2017년 96.9%에서 2026년 65.9%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¹⁸⁾

[최근 10년간 공중보건의 현황 (2017~2026년)]

(단위: 명, %)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2026
필요인원(A)	1,412	1,489	1,182	1,484	784	839
편입인원(B)	1,368	1,211	1,035	1,114	743	553
- 충원율(B/A)	96.9	81.3	87.6	75.1	94.8	65.9
복무인원(C)	3,614	3,539	3,524	3,172	2,548	1,995

- 주: 1. 2026년은 5월 기준 자료임
 2. 필요인원: 소관부처에서 요청한 당해연도 신규 편입 수요인원
 3. 편입인원: 해당연도 신규 편입인원
 4. 충원율: 해당연도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 비중
 5. 복무인원: 연도말 기준 복무 중인 전체인원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

다만,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이 2018년 66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2018~2025년간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¹⁹⁾이 가장 짧은 육군이 70.6~9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8) 보건복지부는 읍·면 단위 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 수는 2025년 730개소에서 2026년 1,02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에는 1,083개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과 공중보건의 규모를 전망하면서 2027년은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예측되어 전체 복무 인원은 400~5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8~2031년 전체 복무인원은 300~500명대, 2032~2033년에는 1,000명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 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 에 총력」 및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 2026.3.)

19) 국방부는 2018년 9월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026년 현재 육군과 해병대는 각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국방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2018.9.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 현황 (2018~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	전체	66 (100.0)	94 (100.0)	122 (100.0)	189 (100.0)	170 (100.0)	249 (100.0)	1,324 (100.0)	2,895 (100.0)
	- 육군	59 (89.4)	86 (91.5)	114 (93.4)	174 (92.1)	156 (91.8)	229 (92.0)	1,241 (93.7)	2,043 (70.6)
	- 공군	5 (7.6)	8 (8.5)	5 (4.1)	12 (6.3)	10 (5.9)	18 (7.2)	50 (3.8)	765 (26.4)
	- 해군	2 (3.0)	0 (0.0)	3 (2.5)	2 (1.1)	2 (1.2)	1 (0.4)	13 (1.0)	62 (2.1)
	- 해병대	0 (0.0)	0 (0.0)	0 (0.0)	1 (0.5)	2 (1.2)	1 (0.4)	20 (1.5)	25 (0.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연도의 전체 대비 군종별 비중을 의미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의대생의 공중보건의 편입 감소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병 급여인상 등이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주요 사유로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현역병 임금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관련하여, 최근 수행된 의과대학생 대상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을 감소 원인과 지원을 향상을 위한 유인책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응답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설문 항목은 복무기간 관련 응답이었다. 세부적으로, 의과대학생 2,469명이 응답한 지원을 감소 원인 설문의 경우 '사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99.0%, 지원을 향상 유인책 설문의 경우 '복무 기간 단축'이 97.7%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지역의사제²¹⁾를 통해 실제 의사인력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지역의사의

20) 국방부 및 병무청 제출자료

21) 지역의사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가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지칭한다.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배출된 지역의사의 공중보건의 복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의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생 대상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을 감소 원인 및 지원을 향상을 위한 유인책 설문 결과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지원을 감소 원인 설문 결과	사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2,445	99.0
	개선되지 않는 처우(급여, 생활환경 등)	1,452	58.8
	진료 관련 법적 책임 부담	675	27.3
	과중한 업무 부담	576	23.3
	일반의/군의관 병행 선발 (2022년 개정)	549	22.2
지원을 향상 유인책 설문 결과	복무 기간 단축	2,412	97.7
	급여 인상, 생활관 리모델링 등 처우 개선	1,287	52.1
	진료 관련 법적 책임 완화	765	31.0
	군의관/공보의 별도 지원	680	27.5
	법제화를 통한 신분 상태 개선	621	25.2
	업무 부담 조정	593	24.0
	지원 대상자 확대(의대정원 확대, 여성인력 등)	388	15.7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 통합	271	11.0

주: 설문응답자 수는 각 문항당 2,469명. 복수응답 가능

자료: 의료정책연구원,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2025.5.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공중보건의와 더불어 군의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충원율이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고, 공중보건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부부처·기관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부처·기관 간에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조율 과정 운영 및 국회 보고·협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운영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의 유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2025~2026.4.)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병역법’, ‘군인사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태로 발의된 바 있다. 발의법안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등에서 차이(2년 또는 2년 2개월로 단축)가 있으나, 대체로 의무복무기간을 사병과 유사한 수준인 2년 가량으로 조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병역법」 상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개정 관련 주요 법안 발의 내용 (2025~2026.4.)]

주요 제안 이유 및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의안번호 2218117 (2026.4. 황희의원 대표발의)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8, 황희의원 대표발의(2026.4.))과 연동</p>	
<p><input type="checkbox"/> 의안번호 2216081 (2026.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2026.1.))과 연동</p>	
<p><input type="checkbox"/> 의안번호 2214942 (2025.12.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p><input type="checkbox"/>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68, 정동만의원 대표발의(2025.12.))과 연동</p>	
<p><input type="checkbox"/> 의안번호 2210500 (2025.5.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등의 문제가 발생할 	

주요 제안 이유 및 내용
<p>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공중보건조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로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로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 <p>□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6, 한지아의원 대표발의(2025.5.))과 연동</p>

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공중보건조사 등의 의무복무기간 개정안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있으나, 본 표에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수록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편입지원율 상승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한 편입요건과 복무형태를 가진 제도와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의 불가역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입장]

구분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지원율을 높여 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
국방부 및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등의 복무기간(3년)은 다른 분야 특수병과 장교 및 보충역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선발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선발 소요 인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단축하는 것이 적정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병무청: 공중보건조사 등(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은 공공분야 보충역 복무제도로서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와 유사한 자격요건 및 선발절차를 따르는 등 근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보충역 및 현역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자원 현황·추이,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자료: 국방부 및 병무청 제출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6.3. 및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6.3.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군의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사병에 비해 장기인 의무복무기간(3년)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군의관의 경우 2017~2025년간 충원율이 100.0%였으나, 2026년의 경우 38.7%로 감소하였다. 공익법무관의 경우 2017년 충원율은 93.2%였으나, 2025년에는 64.0%, 2026년에는 32.0%로 2017년 대비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100.0%²²⁾였으나 이후 2023년 84.7%, 2025년 68.0%, 2026년 1.6%로 하락세를 보였다.²³⁾

[군의관,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2026
군의관	필요인원(A)	748	706	822	754	692	785
	편입인원(B)	748	706	822	754	692	304
	- 충원율(B/A)	100.0	100.0	100.0	100.0	100.0	38.7
	복무인원(C)	2,444	2,449	2,446	2,426	2,430	2,001
공익법무관	필요인원(D)	192	130	130	102	100	100
	편입인원(E)	179	61	28	63	64	32
	- 충원율(E/D)	93.2	46.9	21.5	61.8	64.0	32.0
	복무인원(F)	583	324	142	131	195	195
공중방역 수의사	필요인원(G)	150	150	150	150	150	127
	편입인원(H)	150	150	150	127	102	2
	- 충원율(H/G)	100.0	100.0	100.0	84.7	68.0	1.6
	복무인원(I)	469	497	447	423	332	207

- 주: 1. 2026년은 5월 기준 자료임
 2. 필요인원: 소관부처에서 요청한 당해연도 신규 편입 수요인원
 3. 편입인원: 해당연도 신규 편입인원
 4. 충원율: 해당연도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 비중
 5. 복무인원: 연도말 기준 복무 중인 전체인원

자료: 국방부 및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2)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2016~2022년간 충원율이 100.0% 수준이었다.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
- 2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 2016~2026년간 대체적으로 100.0%의 충원율을 보였다. 한편, 2022년에도 98.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6년의 경우 74.5%로 감소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감소세나 상승세를 판단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 대비 필요인원 규모가 적어(2016~2026년간 필요인원: 49~66명), 본문에서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충원율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2026.3)을 발표하면서,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 중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지원대상 선정 시 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기관 지원을 추진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현재 참여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였으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²⁴⁾ 역량 제고 및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일부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공중보건의 주요 배치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시니어의사 채용인원은 2025년 15명에서 2026년 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채용되는 경우에도 2025년 90명에서 2026년 88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우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미한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배치 가능 범위 확대 및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 조정을 통해 공중보건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단기적·즉각적 활용 가능성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2026년간 시니어의사(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지역필수의사 채용 규모]

구분	2025	2026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시니어의사 채용인원	총 채용인원 85명 중 15명	총채용인원 76명 중 12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따른 지역필수의사 채용인원	90명 (계획: 96명)	88명 (계획: 268명)

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2026년 계획인원은 추경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하여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24주 이상 관련 직무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으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운영하여 관계 부·처·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²⁵⁾

더불어,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군 운영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항인 만큼, 이견 조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기간 관련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역종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의 점진적·단계적 조정, 공중보건의 선발과정 및 횡수 개편 등을 통한 제도 변화 충격 완화, 전역(소집해제) 이후 경력인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력단절 우려 감소, 지역의료기관 임용 시 인센티브 제공구조 검토 등과 같은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임상경험 축적을 위한 유의미한 경력 확보, 지역의료 경험을 통한 지역사회 의사로의 유입을 위한 선형적 계기 등으로 인식하여 공중보건의로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25)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국방부의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경우 2025년 5월과 11월에 보건복지부와 실무급 면담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2026.3., 서영석의원실 주관)를 통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방부 의견을 설명하였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국방부 및 병무청 제출자료)

가. 현황

(1)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첫 지급연도)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 또는 기준 이하 1주택 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이후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조정되어 왔다. 2014년에는 부양자녀 수 기준이 폐지되고,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 중심의 지급체제로 개편되었다.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단독가구의 연령요건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2015년 60세 이상에서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 2018년에는 3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8년(2019년 시행)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홀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재산요건 역시 가구원 재산합계액 기준이 기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최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체제도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소득 발생 다음 해에 연 1회 지급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2회 반기지급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가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대규모 개편의 영향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7년에는 약 179만 가구에 1조 3천억원이 지급되었으나, 2018년에는 약 410만 가구에 4조 5천억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요건 폐지와 소득기준 완화의 영향으로 수혜 가구 수가 2017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¹⁾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비율도 2017년 9.1%에서 2018년 20.5%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2018년 개편 이후에도 제도 개편은 지속되었다. 2019년에는 최소지급액이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되었다. 이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²⁾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보다 많은 근로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제도 개편을 거쳐 현행(2026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소득 상한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1) 2017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단독가구 수는 85만 가구였으나, 2018년에는 약 3배 규모인 253만 가구로 확대되었다.

2)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현행(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 기준]

구분	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¹⁾	재산 요건 ²⁾	최대 지급액 ³⁾
단독	2,200만원 미만	2.4억원	165만원
홀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주: 1) 총소득기준금액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포함함

2)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 기준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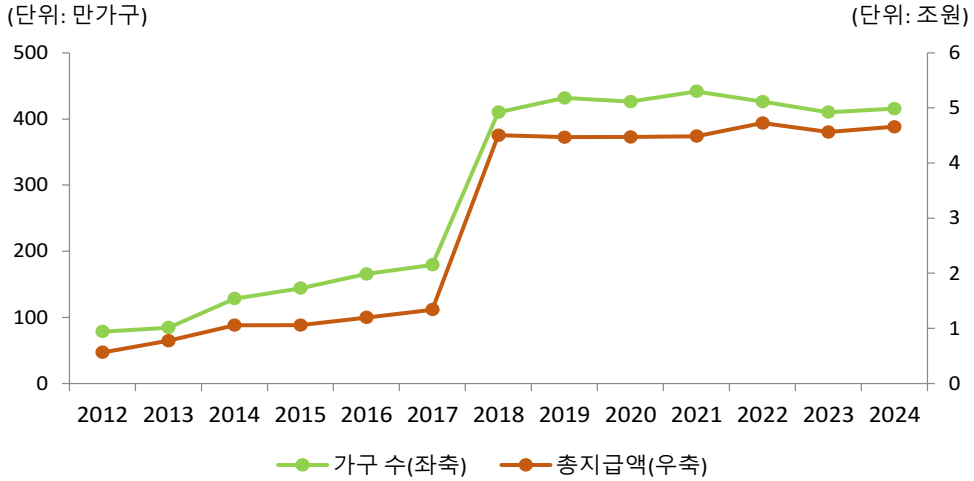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만가구, 조원, %)

귀속연도	가구		지급액		가구당 지급액 (만원)
	가구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8	59	-	0.45	-	77
2009	57	△4.2	0.44	△3.7	77
2010	52	△7.8	0.40	△8.0	77
2011	75	44.0	0.61	52.7	82
2012	78	4.2	0.56	△8.5	72
2013	85	8.0	0.77	37.9	92
2014	128	51.5	1.06	36.4	82
2015	144	12.3	1.06	0.1	73
2016	166	15.0	1.20	13.2	72
2017	179	8.3	1.34	11.8	75
2018	410	128.7	4.50	236.7	110
2019	432	5.3	4.47	△0.8	103
2020	426	△1.3	4.47	0.1	105
2021	442	3.6	4.49	0.3	102
2022	426	△3.5	4.73	5.3	111
2023	410	△3.8	4.56	△3.4	111
2024	416	1.4	4.66	2.0	112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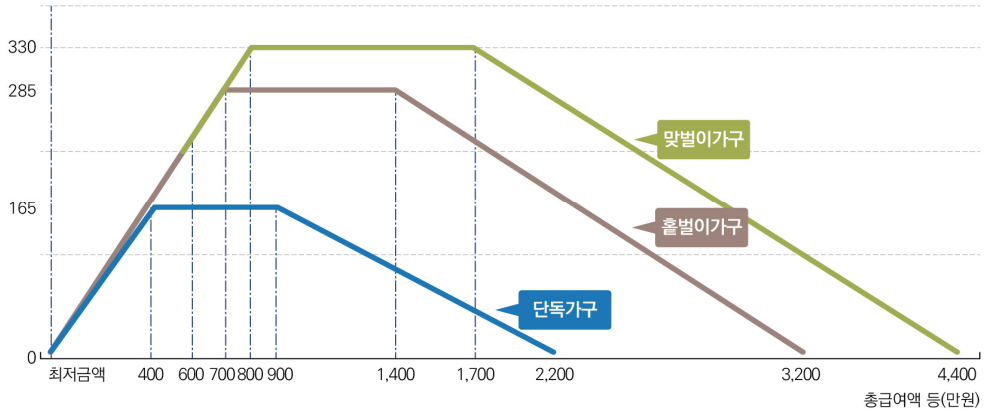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최대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분되며, 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에 따라 점증·평탄·점감구간의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한다. 이후 총소득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최대지급액인 165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총소득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며, 총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 2026년 기준]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최종 검색일 2026. 6.1.)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017~2024년]

(단위: 만 가구, 억원)

구분	가구유형	2017	2018	2021	2022	2023	2024
가구 수	단독	85	253	300	294	287	290
	홀벌이	84	128	118	111	105	99
	맞벌이	11	29	24	21	19	27
	소 계	179	410	442	426	410	416
지급액	단독	3,837	21,860	25,409	27,394	26,989	27,559
	홀벌이	8,312	19,039	16,150	16,697	15,802	14,822
	맞벌이	1,232	4,150	3,312	3,163	2,845	4,186
	소 계	13,381	45,049	44,871	47,254	45,636	46,567
가구 수 비중	단독	47.5	61.8	67.9	69.0	69.9	69.8
	홀벌이	46.6	31.3	26.6	26.1	25.6	23.7
	맞벌이	5.9	6.9	5.5	5.0	4.5	6.5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급액 비중	단독	28.7	48.5	56.6	58.0	59.1	59.2
	홀벌이	62.1	42.3	36.0	35.3	34.6	31.8
	맞벌이	9.2	9.2	7.4	6.7	6.2	9.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귀속연도 기준

2.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득 귀속연도와 지급연도 간에는 1년의 시차가 존재함. 따라서 2018년 제도 전면 개편(2019년 시행)에 따른 지급액의 큰 폭 증가는 지급연도 기준으로는 2019년에,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는 2018년에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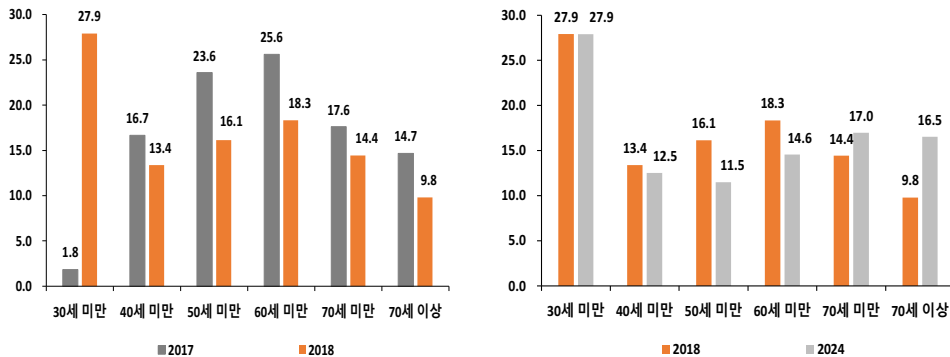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구유형별 수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제도 개편을 계기로 수혜 구조가 단독가구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소득 귀속연도 기준)에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비중이 각각 47.5%, 46.6%로 유사하였으나,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중은 단독가구 61.8%, 홑벌이가구 31.3%, 맞벌이가구 6.9%로 변화하였다. 이후에도 단독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69.8%를 차지한 반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각각 23.7%, 6.5%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면서 수혜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30세 미만 수혜가구의 비중은 2017년 1.8%에서 2018년 27.9%로 크게 확대되었으나³⁾, 30세 미만 수혜가구의 유입으로 다른 연령대의 수혜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는 30세 미만 계층의 비중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30~50대 연령층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70세 이상 수혜가구의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4년 16.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비중 변화]

(단위: %)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중 30세미만 가구는 2017년 3.3만 가구에서 2018년 114.5만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8년 전체 수혜가구 410.2만 가구의 27.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변화]

시행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5~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단, 고소득 전문직,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신청 제외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포함																																									
연령 요건	4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3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폐지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 요건	<table border="1">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r> <td>단독</td> <td>1,300</td> <td>77</td> </tr> <tr> <td>출발이</td> <td>2,100</td> <td>185</td> </tr> <tr> <td>맞벌이</td> <td>2,500</td> <td>230</td> </tr>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출발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table border="1">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r> <td>단독</td> <td>2,000</td> <td>150</td> </tr> <tr> <td>출발이</td> <td>3,000</td> <td>260</td> </tr> <tr> <td>맞벌이</td> <td>3,600</td> <td>300</td> </tr>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출발이	3,000	260	맞벌이	3,600	300	<table border="1">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r> <td>단독</td> <td>2,200</td> <td>165</td> </tr> <tr> <td>출발이</td> <td>3,200</td> <td>285</td> </tr> <tr> <td>맞벌이</td> <td>3,800</td> <td>330</td> </tr>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출발이	3,200	285	맞벌이	3,800	33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출발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출발이	3,000	260																																								
맞벌이	3,600	3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2,200	165																																								
출발이	3,200	285																																								
맞벌이	3,800	330																																								
재산 요건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지급)		2억원 미만 (1.4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지급)		2.4억원 미만 (1.7억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장려세제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시행연도	제도 변화
2009	2008년 제도 도입/2009년 지급, 대상: 근로소득자 총소득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의 1주택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직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제외
2012	(대상자 추가) 무자녀 가구 추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대상에 추가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 (지급기준 변경) 부양자녀수(0~3인)에 따른 소득요건·지급수준 차등화 소득요건: 1,300~2,500만원, 지급액: 70~200만원
2013	(대상자 추가) 60세이상 단독가구
2014	(지급기준 변경) 자녀수 기준에서 가구유형별 단위로 소득요건 및 지급액 변경 - 자녀수: 0~3인 → 가구유형: 단독/홀벌이/맞벌이 - 소득요건: 1,300/2,100/2,5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70/170/210만원
2015	(대상자 추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규정 삭제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기준 삭제 (재산요건 완화) 1억원 미만 → 1.4억원 미만
2016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50세 이상)
2017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40세 이상) (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70/170/210만원 → 77/185/230만원
2018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30세 이상) (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77/185/230만원 → 85/200/250만원
2019	※ 신청자격 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지급시기 변경 등 단독가구 연령 제한(30세 이상) 폐지 소득요건(단독/홀벌이/맞벌이): 1,300/2,100/2,500 → 2,000/3,000/3,6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최대지급액(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 150/260/300만원 지급시기 변경: 다음연도 1회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별 2회
2020	2019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홀벌이가구 범위 확대
2021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
2022	소득요건(단독/홀벌이/맞벌이): 2,000/3,000/3,600 → 2,200/3,200/3,80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2023	최대지급액(단독/홀벌이/맞벌이): 150/260/300만원 → 165/285/330만원
2025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0~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제도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약 108만 가구에 총 6,579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와 지급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귀속연도 기준으로 수급 가구 수는 도입 초기 약 108만 가구에서 2022년 약 52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지급 규모 역시 두 차례의 지급액 인상(2018년, 2022년)에도 불구하고 6,579억원에서 5,035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출생아 수 감소에 더해 소득 요건(총소득기준금액)이 장기간 유지된 결과, 소득 증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누적되면서 수혜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2023년 말에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 지급분(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행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기준]

구분	현행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¹⁾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²⁾
지급액 ³⁾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으로서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홑벌이가구는 소득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급여(100만원)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초과 시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2014~2024년]

(단위: 천가구, 억원, %)

귀속연도	가구			지급액			가구당 지급액 (만원)	증가율	
	합계	홑벌이	맞벌이	합계	홑벌이	맞벌이		가구수	지급액
2014	1,075	-	-	6,579	-	-	61.2	-	-
2015	944	-	-	5,700	-	-	60.4	△12.2	△13.4
2016	1,062	844	218	5,637	4,515	1,122	53.1	12.5	△1.1
2017	937	748	189	4,917	3,956	961	52.5	△11.8	△12.8
2018	879	714	165	7,543	6,143	1,400	85.8	△6.2	53.4
2019	743	614	129	6,457	5,361	1,096	86.9	△15.5	△14.4
2020	705	586	119	6,060	5,066	994	86.0	△5.1	△6.1
2021	578	484	94	4,966	4,178	788	85.9	△18.0	△18.1
2022	519	439	80	5,035	4,280	755	97.0	△10.2	1.4
2023	954	647	307	9,720	6,997	2,723	101.9	83.8	93.0
2024	876	604	272	8,900	6,515	2,385	101.6	△8.2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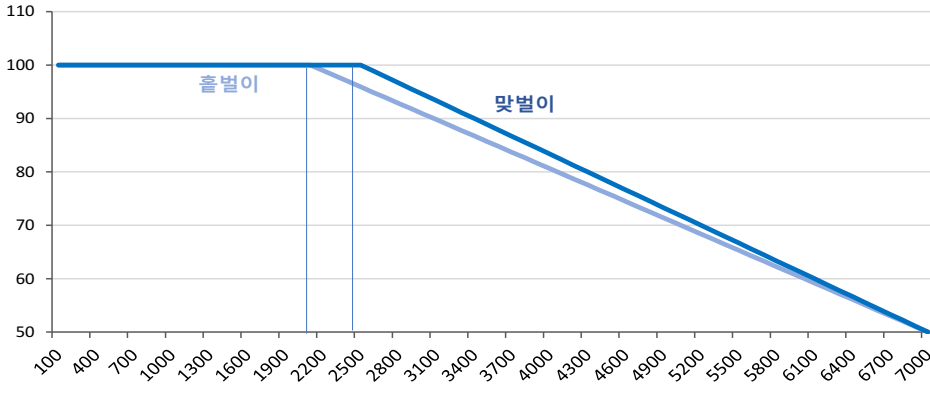
주: 2016년, 2018년, 2022년, 2023년은 각각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었던 시기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까지 자녀 1명당 최대급여를 지급하며, 일정 소득구간 초과 시 지급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평탄·점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계산식에 따라 50만원까지 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감소한다.

[자녀장려금 지급구조: 자녀 1명 기준]

(단위: 만원)



주: 가로축은 소득(총급여액 등), 세로축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장려세제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시행연도	제도 변화
2015	2014년 제도 도입, 2015년 시행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가구 및 사업소득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직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제외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2017	(재산요건 완화)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주택요건 폐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 폐지 (최저지급금액 상향) 1.5만원 → 3만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1.5~3만원 미만 시 3만원 지급
2018	(대상자 추가) 한부모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자녀)에게 자녀장려세제 적용 종교인소득('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대해서도 자녀장려세제 적용
2019	(대상자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허용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 70만원 (감액규정 완화)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기준: 재산 1억원 → 1.4억원 이상
2023	(재산요건 완화)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 80만원 (감액규정 완화)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기준: 재산 1.4억원 → 1.7억원 이상
2024	(소득요건 완화)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지급액 상향)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1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 의견

(1)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체계의 합리화 필요

첫째, 근로장려금의 급여 수준과 소득기준은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되어 온 만큼, 향후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운영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9년 0.5조원에서 2024년 4.7조원으로 확대되어 약 10배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최근 10년(2014~2024년) 동안 전체 국세감면액이 연평균 7.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은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24년 6.7%로 상승하였다. 또한 조세지출 항목 내에서도 2018년 제도 개편 이전에는 지출 규모 기준 12위 수준이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상위 1~2위 규모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¹⁾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p)

구 분		201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4~'14 ¹⁾
금액	국세감면액	34.3	39.7	44.0	49.6	53.0	57.0	63.5	69.8	70.5	36.2
	근로장려금	0.8	1.2	1.3	4.8	4.5	4.6	4.5	4.7	4.7	3.9
	(비중)	(2.3)	(3.0)	(3.0)	(9.8)	(8.5)	(8.1)	(7.1)	(6.8)	(6.7)	(4.4)
증감률	국세감면액	1.5	6.1	10.7	12.8	6.8	6.8	7.7	11.4	9.8	7.5
	근로장려금	38.2	14.3	11.2	268.1	-9.0	-9.0	2.7	-2.2	5.0	19.8

주: 1) 금액은 2014년 대비 2024년 국세감면액 증가분, 증감률은 2014~2024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득 귀속연도와 지급연도 간 1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통계는 소득귀속연도 기준과 제도 시행연도 기준을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지급액의 큰 폭 증가는 지급연도 기준으로는 2019년에,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는 2018년에 반영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적정 급여 수준 및 소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원칙 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이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왔다. 그간 급여수준의 변화를 제도 시행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2014년(단독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2년 연속 약 10% 인상되었으며, 2019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76%,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 20% 인상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3년에도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이 10% 인상되어 현재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각각 285만원, 33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기준 역시 2014년 이후 2019년, 2022년, 2025년 등 여러 차례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 및 지급기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단위: 만원)

구 분		2014	2017	2018	2019	2022	2023
총소득기준금액(A)		1,300	1,300	1,300	2,000	2,200	2,200
최대지급액(B)		70	77	85	150	150	1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C) ¹⁾		1,875	1,950	1,984	2,007	2,193	2,334
기준 중위소득 대비	총소득기준 금액(A/C)	69.3%	66.7%	65.5%	99.7%	100.3%	94.3%
	근로장려금 지급액 (B/C)	3.7%	3.9%	4.3%	7.5%	6.8%	7.1%

주: 1) 1인 가구의 월 기준 중위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각 연도 1인 가구의 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독가구의 소득기준 및 급여 수준(최대지급액)을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보면, 2019년 이후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약 100%, 급여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7%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사후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정부가 이를 공식적인 제도 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기준 및 급여수준의 조정 방향

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급여 수준 조정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물가상승률, 저소득층 소득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와 연계한 조정 체계를 도입할 경우, 지급기준 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86년 이후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수준을 물가와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 역시 공제율 또는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 확대 자체보다 지원 수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²⁾

둘째, 자녀장려세제는 소득기준 완화 이후에도 수급 규모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대상 확대보다 자녀 수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녀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체계와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녀장려금은 도입 이후 수급 가구 수와 지급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이 유지된 점과 함께, 저출생에 따른 18세 미만 인구 감소³⁾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말 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다음 연도 지급 가구 수와 지급 규모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향후 자녀양육 지원 확대 과정에서 전체 수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자녀 수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2023) 보고서에서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급대상 확대보다는 기존 수급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18세 미만 인구(내국인)는 2015~2024년 기간동안 연평균 3.0% 감소하였다.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소득 요건 비교]

국가	구분	소득상한액		
		자국통화 기준 ¹⁾	미국달러 기준 ²⁾	1인당 GDP 대비 비율 ³⁾
미국 ⁴⁾ (2023)	자녀1명	(부부, 단독) 240,000	240,000	314.3
	자녀2명	(부부, 합산) 440,000	440,000	576.2
	자녀3명			
영국 (2023-2024)	자녀1명	27,945	34,547	76.3
	자녀2명	35,835	44,301	97.8
	자녀3명	43,725	54,055	119.3
캐나다 ⁵⁾ (2023)	자녀1명	(6세 이상) 182,656	140,278	255.4
		(6세 미만) 218,969	168,166	306.2
	자녀2명	(6세 이상) 199,379	153,121	278.8
		(6세 미만) 240,151	184,434	335.8
	자녀3명	(6세 이상) 214,249	164,541	299.6
		(6세 미만) 257,824	198,006	360.6
뉴질랜드 (2022)	자녀1명	65,000	41,315	86.5
	자녀2명	84,500	53,709	112.4
	자녀3명	102,500	65,150	136.4
우리나라 (2024)	자녀1명	7,000	54,171	168.5
	자녀2명			
	자녀3명			

주: 1) 미국 US달러(USD), 영국 파운드(GBP), 캐나다 캐나다달러(CAD),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NZD), 우리나라 만원(KRW) 기준

2) 각국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국통화 기준 소득기준 금액을 US달러(2022년, 평균 자료)로 환산한 값

3) 2022년 US달러 기준 각국의 1인당 GDP 대비 US달러 기준 각국의 소득상한액 비율

4) “부부, 단독”은 부부 단독신고, “부부, 합산”은 부부 합산신고 기준 소득상한액을 나타냄

5) 캐나다는 자녀 연령에 따라 소득상한액 차등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p 62. 재인용

자녀장려세제의 소득기준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부양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인 반면, 영국·캐나다·뉴질랜드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상한액도 함께 확대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영국은 자녀 증가에 따라 소득상한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조인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수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또는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자녀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녀장려세제의 운영방식뿐 아니라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자녀양육 지원체계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지원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인적공제(기본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지원으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아수당은 2022년 도입된 이후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 개편되었다.

이처럼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지원제도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로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자녀양육 지원의 전체 규모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개별 제도의 확대 여부뿐 아니라 자녀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체계와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규 제도 도입 또는 지원 수준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목표가 유사한 제도 간 연계 또는 통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2) 근로·자녀장려세제 평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제도 규모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확대 이전에는 정책효과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 이후에는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사후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과정에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가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면제되어 왔다. 향후에는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변경으로 인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주요 제도 개편은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여건 악화 대응,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대응, 2023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는 저출산 대응을 사유로 각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제도 개편에 따른 정부 추정 연간 세수감소 규모는 각각 약 0.3조원, 1.1조원, 0.5조원 수준이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연도	조세특례 항목	내용	면제 사유
202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여건 악화 대응 (조특법§142⑤1)
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약 10%수준 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저소득층 지원 시급 (조특법§142⑤1)
2022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2023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연간 4,000만원 → 연간 7,000만원), 최대지급액 인상(80만원 → 100만원)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심화에 대응 (조특법§142⑤1)
2024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연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	저출산 심화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 및 사회에 상당한 위축 발생 우려, 대책 마련 필요 (조특법§142⑤1)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의 도입 또는 확대 이전에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 재정 영향 및 유사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조세지출은 제도가 확대된 이후에는 조정이나 축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전 검토 절차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최근과 같이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세특례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일부 수급계층에서 노동공급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이후 제도 확대의 추가적인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노동공급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김문정·김빛마로(2020)⁴⁾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노동공급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유형 및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독가구와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에서는 경제활동참가확률과 주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⁵⁾에서도 2017~2021년(소득 귀속연도 기준) 및 2018년 세법개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공급 제고 효과(외연 및 내연)와 소득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로 점증구간과 수혜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단독가구 및 30세 미만 계층에서 노동공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4)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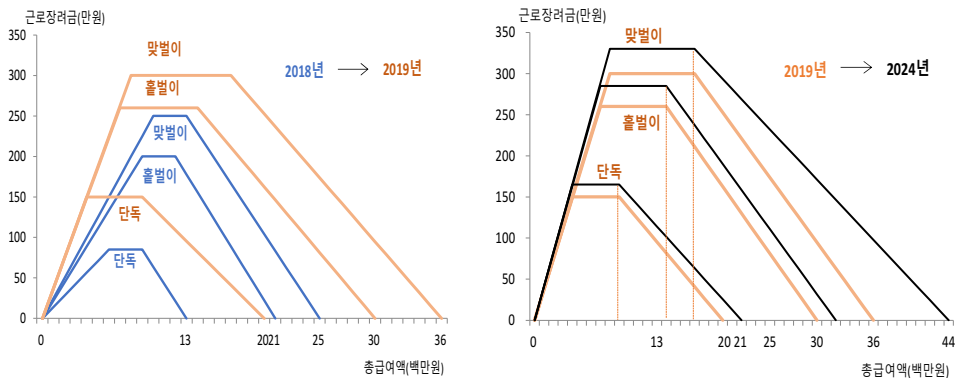
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9.

6) 국세청 미시자료(2017~2021년)를 활용한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은 외연적·내연적 노동공급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연적 노동공급효과는 점증구간(16.47%), 단독가구(9.4%)에서, 내연적 노동공급효과는 점증구간(34.9%), 30세 미만 가구(21.5%)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2018년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외연적 노동공급은 40%, 내연적 노동공급은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18년 전면 개편의 효과 또는 2017년 이후 근로장려세제의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후 이루어진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최대지급액 인상의 정책효과를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제도 확대 조치가 노동공급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18년 전면 개편과 이후의 제도 확대 과정에서 점증구간보다 점감구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점감구간 확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노동공급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확대의 정책효과와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이후 근로장려세제 지급구조 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세출예산으로의 관리방안 검토 필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제도들에 대한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중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현금지급분을 세출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

세기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 절차를 통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환급금은 세출예산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 수입에서 차감되는 환급세액 형태로 관리·지급되고 있다.⁷⁾

이러한 구조는 제도의 운영상 장점을 가지는 한편,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한 지점도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일반적인 현금복지사업과 달리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는 저소득 가구에도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상 조세지출 방식으로 관리됨에 따라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정책들과 재정 규모 및 정책 효과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되며 예산상 세입 감소와 재정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액 중 납세의무 범위 내 금액은 세입 감소(조세지출)로 처리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되는 금액은 재정지출(outlays)로 계상한다. 이에 따라 환급형 세액공제의 현금지급 규모가 정부 재정지출에 반영된다. 미국 EITC의 경우 총공제액 중 환급액(현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73.8%(2012~2021년 평균 85.1%) 수준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소득세 납부액은 약 4,100억원 규모로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5.5조원)의 약 7.3% 수준이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국고금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소득세 납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인원	납부액	인원	납부액	인원	납부액
근로장려금	302,826	35,801	527,956	78,383	830,782	114,184
자녀장려금	175,901	194,967	139,542	97,438	315,443	292,405
합 계	478,727	230,768	667,498	175,821	1,146,225	406,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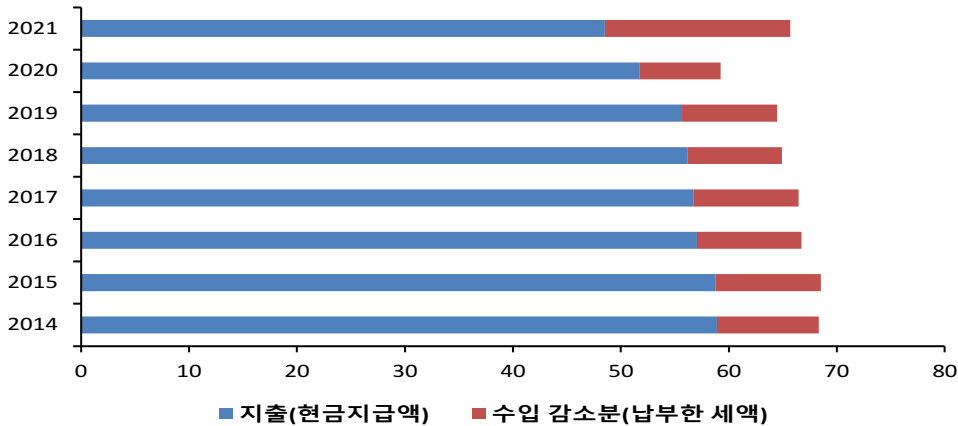
주: 1. 2024년 귀속소득 기준

2.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집계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집계하여 중복을 제거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미국 EITC 총 지급액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http://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recipient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9년 약 0.5조원에서 2024년 4.7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총 지급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이 여러 차례 조정되면서 수혜 범위도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제도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구분이 정책 전체 규모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 현금지원 정책이 서로 다른 재정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정책 간 비교와 자원 배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제도들의 재정 규모 및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정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중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현금지급분에 대해서는 국고 편입 및 세출예산 관리 여부를 포함한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실적]

(단위: 만가구, 만원, 조원)

귀속 연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합계 (A+B)
	가구수	가구당 지급액	총지급액 (A)	가구수	가구당 지급액	총지급액 (B)	
2008	59	77	0.45	-	-	-	0.45
2009	57	77	0.44	-	-	-	0.44
2010	52	77	0.40	-	-	-	0.40
2011	75	82	0.61	-	-	-	0.61
2012	78	72	0.56	-	-	-	0.56
2013	85	92	0.77	-	-	-	0.77
2014	128	82	1.06	107	61	0.66	1.71
2015	144	73	1.06	94	60	0.57	1.63
2016	166	72	1.20	106	53	0.56	1.76
2017	179	75	1.34	94	52	0.49	1.83
2018	410	110	4.50	88	86	0.75	5.26
2019	432	103	4.47	74	87	0.65	5.11
2020	426	105	4.47	71	86	0.61	5.08
2021	442	102	4.49	58	86	0.50	4.98
2022	426	111	4.73	52	97	0.50	5.23
2023	410	111	4.56	95	102	0.97	5.54
2024	416	112	4.66	88	102	0.89	5.5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산분석시리즈 III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V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3239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822-10

ISSN 3140-3239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